주요국의 조세제도

– 대만 편 –

2011. 4.

KIPF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상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 언

한국과 대만은 상호 5대 교역국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상대이면서 국제시장에서 상호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1992년 8월의 단교 이래 우리의 대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점점 멀어져서 현재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구조가 유사해 반도체, LCD, 화학, 철강, 태양광, LED 등 주력산업에서 세계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경쟁력은 우리와 상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말에 관세철폐 및 서비스산업의 개방 및 투자자 ·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框架)協議” : ECFA)에 서명함에 따라 대만의 국제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 산업에서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을 놓고 대만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세제도는 투자기업의 경영과 투자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대만의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청됨에 따라 본 보고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정부는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제개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대만 조세제도의 대부분을 망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또한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대만 정책당국이 지속적으로 세제개혁을 단행하고 있음에 따라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대만 조세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만 財政部 賦稅署 및 國稅局 등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 등의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히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세무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전북대학교 한상국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김진수 박사, 정재호 박사 및 초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4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목차

제1편 총 론 ····· 17

Ⅰ. 경제 및 사회 환경 ····· 17
1. 대만의 사회 환경 ····· 17
2. 대만의 최근 경제 상황 ····· 19

Ⅱ. 조세체계 ····· 23
1. 국세와 지방세 ····· 23
2. 직접세와 간접세 ····· 24
3. 대만의 세무행정조직 ····· 25
4. 조세법의 법률 성격 ····· 27
5. 법령의 발효일 ····· 28
6. 조세법의 기본원칙 ····· 29

Ⅲ. 재정수지획분법과 지방세법통칙 ····· 38
1. 조세수입 : 국세, 직할시 및 현(시)세 ····· 38
2. 각급 정부간 조세수입의 분배 ····· 39
3. 세액의 일괄배분(統籌分配) ····· 40
4. 징수의 제한 ····· 41
5. 특별조세, 임시조세 및 부가조세의 징수 ····· 42
6. 징수연한, 대상 및 세율(세액)의 제한 ····· 43
7. 각 조세의 상환(受償)순서 ····· 44
8. 재정수입 ····· 44

9. 재정지출 ····· 47

Ⅳ. 조세수입 규모 및 추이 ····· 48

Ⅴ.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 53
1. 현행 세제개혁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54
2. 구체적인 조세정책 ····· 56

제2편 소득세제 ····· 61

Ⅰ. 종합소득세 ····· 61
1. 서론 ····· 61
2. 납세의무자 ····· 62
3. 과세대상소득 ····· 62
4. 세율 ····· 65
5.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 66
6. 조세우대 ····· 79
7. 징수관리 ····· 87

Ⅱ. 영리사업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 ····· 100
1. 서론 ····· 100
2. 납세의무자 ····· 100
3. 과세대상 ····· 101
4. 세율 ····· 103
5. 납부세액의 계산 ····· 104
6. 조세우대 ····· 126
7. 징수관리 ····· 133
8. 자산 평가(資産估價) ····· 139

9. 장려 및 처벌 ····· 150

Ⅲ. 소득세 양세합일제도(兩稅合一制度) ····· 156
1. 서론 ····· 156
2.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설정 ····· 157
3.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시작, 종료 기간 ····· 157
4.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計入)하는 조건 ····· 158
5.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 ····· 160
6.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서 차감해야 하는 항목 및 차감시점 ····· 160
7. "세액공제비율"의 계산과 공제가능세액의 분배 ····· 161
8. 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 ····· 163
9. 이익신고 및 조사 ····· 166
10. 세액환급 ····· 168
11. 비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에 분배받는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에 관한 규정 ····· 169
12. 처벌 ····· 169

Ⅳ. 소득최저세부담제도(所得最低稅負制) ····· 173
1. 서론 ····· 173
2. "소득기본세액조례"의 주요 내용 ····· 174
3. 실시대상 및 배제대상 ····· 177
4. 일반소득세액과 기본세액의 크기 비교 ····· 180
5.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세액의 계산 ····· 182
6. 기본세액과 양세합일의 결합 ····· 185
7. 개인기본세액의 계산 ····· 185
8. 처벌 ····· 189
9. 과도기간의 완충규정 ····· 190

Ⅴ. 이전가격세제(移轉訂價稅制) ····· 192
1. 법원 ····· 192
2. 적용대상 ····· 194
3. 관련 용어 정의 ····· 195
4. 독립기업원칙(常規交易原則) ····· 198
5. 비교가능대상의 선정 ····· 202
6. 정상교역방법(常規交易方法) ····· 205
7. 유형자산의 정상교역방법 ····· 208
8. 무형자산의 정상교역방법 ····· 208
9. 서비스 제공의 정상교역방법 ····· 208
10. 자금사용의 정상교역방법 ····· 209
11. 조사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 및 자료(文據) ····· 209
12. 이전가격사전합의(預先訂價協議) ····· 210
13. 조사·확정(核定) 및 조정 ····· 213
14. 처벌 ····· 214

제3편 소비세제 ····· 216

Ⅰ.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치형 영업세 ····· 216
1. 서론 ····· 216
2. 납세의무자 ····· 217
3. 과세대상 ····· 218
4. 세율 ····· 221
5. 납부세액의 계산 ····· 224
6. 감면범위 ····· 235
7. 징수관리 ····· 241
8. 통일영수증제도(統一發票制度) ····· 244
9. 겸영영업인 ····· 255

10. 처벌 ····· 259

Ⅱ. 화물세(貨物稅) ····· 263
1. 서론 ····· 263
2. 납세의무자 ····· 264
3. 과세대상 재화의 종류·세율 및 세액 ····· 264
4. 납부세액의 계산 ····· 266
5. 감면규정 ····· 268
6. 징수관리 ····· 269
7. 처벌 ····· 272

Ⅲ. 담배주류세(菸酒稅) ····· 274
1. 서론 ····· 274
2. 납세의무자 ····· 274
3. 과세대상품목 및 세액 ····· 275
4. 과세시점 ····· 279
5. 건강복지세(健康福利捐)의 추가징수 ····· 279
6. 감면규정 ····· 280
7. 징수관리 ····· 281

Ⅳ. 오락세(娛樂稅) ····· 285
1. 서론 ····· 285
2. 납세의무자 및 대리징수인 ····· 285
3. 과세대상 ····· 285
4. 세율 ····· 286
5. 감면규정 ····· 287
6. 징수관리 ····· 288
7. 장려 및 처벌 ····· 289

제4편 재산세제 ····· 291

Ⅰ. 지가세(地價稅) ····· 291
1. 서론 ····· 291
2. 납세의무자 ····· 292
3. 과세대상 ····· 294
4. 세율 ····· 295
5. 과세표준 ····· 299
6. 감면규정 ····· 299
7. 징수절차 ····· 306
8. 처벌 ····· 307

Ⅱ.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 308
1. 서론 ····· 308
2. 납세의무자 ····· 310
3. 과세대상 ····· 310
4. 세율 ····· 311
5. 납부세액의 계산 ····· 315
6. 감면규정 ····· 318
7. 징수관리 ····· 320
8. 처벌 ····· 321
9. 공고지가(公告地價)와 공고현치(公告現値)의 비교 ····· 321

Ⅲ. 방옥세(房屋稅) ····· 323
1. 서론 ····· 323
2. 납세의무자 ····· 323
3. 과세대상 ····· 324
4. 세율 ····· 324

5. 과세표준 ····· 326
6. 감면규정 ····· 327
7. 징수관리 ····· 329
8. 처벌 ····· 331

Ⅳ. 유산세(遺産稅) 및 증여세(贈與稅) ····· 332
1. 서론 ····· 332
2. 과세유형 ····· 333
3. 납세의무자 ····· 334
4. 과세대상 ····· 335
5. 세율과 계산 ····· 339
6. 유산 및 증여재산 가치의 계산 ····· 342
7. 감면 및 공제 규정 ····· 345
8. 납세절차 ····· 350
9. 행정구제 및 벌칙 ····· 352
10. 기타 ····· 353

Ⅴ. 계세(契稅) ····· 358
1. 서론 ····· 358
2. 납의무자 ····· 358
3. 과세대상 ····· 359
4. 세율 ····· 360
5. 납부세액의 계산 ····· 361
6. 감면규정 ····· 361
7. 징수관리 ····· 362
8. 장려 및 처벌 ····· 363

Ⅵ. 전부(田賦) ····· 365
1. 서론 ····· 365
2. 명사 정의 ····· 365
4. 과세대상 ····· 365
5. 징수기준 ····· 366
6. 荒地稅 부가징수 ····· 367
7. 감면규정 ····· 368
8. 납세절차 ····· 368
9. 처벌 ····· 368

Ⅶ. 증권교역세(證券交易稅)와 선물교역세(期貨交易稅) ····· 369
1. 서론 ····· 369
2. 증권교역세(證券交易稅) ····· 370
3. 선물교역세(期貨交易稅) ····· 375

Ⅷ. 인화세(印花稅) ····· 378
1. 서론 ····· 378
2. 납세의무자 ····· 378
3. 과세대상 ····· 378
4. 세율 또는 세액 ····· 379
5. 감면세 ····· 379
6. 징수관리 ····· 380
7. 처벌 ····· 383

Ⅸ. 사용패조세(使用牌照稅) ····· 385
1. 서론 ····· 385
2. 납세의무자 ····· 385
3. 과세대상 ····· 385

4. 납부세액의 계산 ····· 386
5. 감면세 ····· 389
6. 징수관리 ····· 390
7. 처벌 ····· 393

제5편 조세행정법제 ····· 394

1. 서론 ····· 394
2. 조세우선권 ····· 395
3. 납세의무 ····· 395
4. 조세의 보전과 재산의 담보 ····· 397
5. 징수절차(稽徵程序) ····· 399
6. 조사, 수사, 비밀유지 및 납세자 성명의 公告 ····· 405
7. 납세자권리의 보호 ····· 408
8. 행정구제 ····· 408
9. 행정구제 후의 환급, 보충 세액의 처리 ····· 410
10. 재조사(復査)와 更正의 구별 ····· 411
11. 강제집행 ····· 411
12. 세금의 자동보충(自動補稅) 시 이자 가산 및 처벌 면제 ····· 412
13. 경과(情節)가 경미할 경우 처벌의 면제 ····· 412
14. 처벌 ····· 412

참고문헌 ····· 416

표목차

제1편

〈표 1-Ⅰ-1〉 대만의 최근 경제성장률 ····· 19
〈표 1-Ⅰ-2〉 대만의 교역량 ····· 20
〈표 1-Ⅱ-1〉 국세와 지방세 세목의 구분표 ····· 23
〈표 1-Ⅱ-2〉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 ····· 24
〈표 1-Ⅳ-1〉 연도별 조세 수입 ····· 48
〈표 1-Ⅳ-2〉 각 세목의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 50
〈표 1-Ⅳ-3〉 연도별 국세 수입(1) ····· 51
〈표 1-Ⅳ-4〉 연도별 국세 수입(2) ····· 51
〈표 1-Ⅳ-5〉 연도별 直轄市 및 縣(市)稅 수입 ····· 52

제2편

〈표 2-Ⅰ-1〉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차액 ····· 65
〈표 2-Ⅰ-2〉 1997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차액 ····· 65
〈표 2-Ⅰ-3〉 2010년부터의 종합소득세 세율 ····· 66
〈표 2-Ⅰ-4〉 퇴직소득의 계산 ····· 72
〈표 2-Ⅰ-5〉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98
〈표 2-Ⅱ-1〉 영리사업소득세의 세율 ····· 103
〈표 2-Ⅱ-2〉 접대비의 연간 사용 한계 ····· 118

제3편

〈표 3-Ⅰ-1〉 소규모영업인의 영업세 과세개시점(起徵点) ····· 224
〈표 3-Ⅱ-1〉 화물세 세율(세액)표 ····· 264

〈표 3-Ⅳ-1〉 오락세의 세율 ····· 287

제4편

〈표 4-Ⅰ-1〉 지가세의 일반세율표 ····· 296
〈표 4-Ⅰ-2〉 지가세의 우대세율과 중과세율표 ····· 299
〈표 4-Ⅱ-1〉 토지증치세 세율 ····· 313
〈표 4-Ⅱ-2〉 수정후의 일반토지세율 속산표 ····· 314
〈표 4-Ⅱ-3〉 공고지가와 공고현치의 비교 ····· 321
〈표 4-Ⅲ-1〉 방옥세의 세율 ····· 325
〈표 4-Ⅳ-1〉 2009년 1월 23일 유산세 세율 및 속산표 ····· 340
〈표 4-Ⅳ-2〉 이전의 증여세 세율 및 속산표 ····· 341
〈표 4-Ⅴ-1〉 계세의 세율 ····· 361
〈표 4-Ⅸ-1〉 소형차 使用牌照稅 세액표 ····· 386
〈표 4-Ⅸ-2〉 대형차 및 화물차 使用牌照稅 세액표 ····· 387
〈표 4-Ⅸ-3〉 오토바이(機器脚踏車) 使用牌照稅 세액표 ····· 387

제5편

〈표 5-Ⅰ-1〉 납세의무자 ····· 396
〈표 5-Ⅰ-2〉 내지세의 행정구제 수리기관 및 기한 ····· 410

그림목차

제1편

〔그림 1-Ⅱ-1〕 세무행정조직계통 ····· 26

제5편

〔그림 5-Ⅰ-1〕 징수절차 ····· 401

제1편 총 론

I. 경제 및 사회 환경

1. 대만의 사회 환경

中華民國(Republic of China, 이하 臺灣으로 칭하나, 고유명사화된 부분은 中華民國으로 사용함)은 타이완 지구(臺灣地區)의 최대의 섬이고, 일본 류큐 제도(琉球諸島)와 중국 대륙, 필리핀의 가운데에 위치한 교통 요지이다. 대만의 육지는 本島와 澎湖群島의 64개의 섬, 기타 15개의 섬 등 모두 7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3만 5,981㎢(한반도의 1/6)로서 중국 총면적의 0.31%에 불과하다.

현재 대만의 실효 통치 지역은 臺灣地區, 金馬地區(金門 및 馬祖地區), 東沙群島, 南沙群島의 太平島이다. 동쪽으로는 일본, 북쪽과 서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남쪽으로는 필리핀과 접한다. 金馬地區의 섬들은 중국 대륙 해안에 위치한다. 東沙群島와 南沙群島의 太平島는 남중국해에 위치하며, 모두 무인도이다.

타이완 섬의 대부분은 산지이며, 서해안의 평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가장 높은 산은 타이완 섬 중앙부에 위치한 玉山으로, 높이는 3,952m이다.

대만의 지형은 산이 많아, 산지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7%(100m 이상의 산지가 2/3)로서 평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臺灣山脈이 섬의 동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봉우리들의 평균 고도는 3,000m를 넘는다. 산맥의 동쪽은 평야가 적고, 태평양 연안에서는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솟은 절벽이 계속된다. 그에 비해 서쪽은 비옥한 평야가 완만하게 臺灣海峽을 향해 펼쳐져 있다. 대부분의 강이 타이완 산맥에서 발원하고 있어 모두 짧고 험난하다. 주요 하천은 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타이완의 기후는 섬의 중앙부를 지나는 북회귀선을 기준으로 북부는 온난습윤한 기

후이고, 남부는 열대기후로 구분된다. 섬 전체의 연평균 기온은 23℃로 온난하다. 섬 전체의 연간 강수량은 2,540mm로, 평지보다 산지가, 서해안보다 동해안 쪽이 많다. 또 6월부터 10월에는 태풍이 많이 거쳐가서 매년 큰 피해가 나고 있다.

현재 대만의 통화 단위는 新台幣(NT$; New Taiwan Dollar)이며, 통화의 발행은 중앙은행(中華民國 中央銀行)이 맡고 있다. 회계연도가 기존에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었으나, 1999년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뀌었다. 인구는 2,317만명(2010년 말 추정)이다.

대만성 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온난한 기후로 인해서 농업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명나라 이래로 중국 대륙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토지여건으로 인해 이주해 왔다. 청나라 및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대만은 높은 농업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지위를 서서히 확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대만은 1945년 대만으로 반환된 이후,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60년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신흥공업경제지역(NIES)의 일원이 되었다. 중국 대륙으로부터 대만성으로 천도한 대만(中華民國) 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강력하게 경제 개발정책을 추진했다. 수출 지향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어, 1973년에는 "十大建設"이라는 계획적인 중공업 개발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 철강, 조선, 석유화학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경제발전의 밑바탕이 마련되었다. 대만 내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 등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동시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만으로 유입되었다.

1949년 이후로 대만 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크게 타이완 지구(臺灣地區)와 대륙 지구(大陸地區)로 구분하고 있다. 타이완 지구에는 대만 정부의 실효 통치 지역인 臺灣, 澎湖, 馬祖, 金門 등의 섬들이 포함된다. 대륙 지구에는 대만 정부의 실효 통치 지역은 아니지만 대만의 영토로 간주되는 중국 대륙, 몽골 등이 포함된다.

대만(中華民國)은 국내를 省과 直轄市로 구분하여 각각 지방정부를 두고 있다. 다만 1949년 이후 중앙정부의 통치 구역과 타이완 省政府의 통치 구역이 거의 겹치게 되었기 때문에 省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즉, 福建省의 省政府 기능은 1996년

1월 15일에 정지되었으며, 臺灣省의 省政府 기능은 1998년 12월 20일에 정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도 省政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縣을 관할하며, 직할시와 성 직할시는 동급으로 간주된다.

臺灣地區의 1급 행정구역은 台北市, 高雄市, 臺灣省, 福建省의 4개이며, 수도는 台北市이다.

2002년 1월에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무역 관련 제도의 개선, 관세의 인하, 서비스 · 무역의 자유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6월 말에는 중국과 대만 간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양안(兩岸) 간에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1948년 8월에 수교했으며, 1992년 8월에 단교했다가 1993년 11월에 台北代表部를 설치했다. 2004년에 민간항공협정을 체결하고 복항(復航)하였다. 대만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근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기초유분 및 철강판이며,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및 컴퓨터이다. 2009년 말 대만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중국(홍콩 포함 1,092.4억달러), 일본(507.2억달러), 미국(417억달러), 한국(193.5억달러)의 순서이다.

2. 대만의 최근 경제 상황

대만의 2009년의 국내총생산(GDP)는 약 3,425억달러이며,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2009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9.22%(2004년 2/4분기 이래 최고의 성장률 기록)를 기록하여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이 -1.87%를 기록하였다(〈표 1-Ⅰ-1〉 참조). 이 수치는 1951년 국민소득 통계를 산출한 이래 최저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1인당 GDP는 2008년의 17,277달러에서 2009년에는 15,025달러(예상치)로 감소하였다.

〈표 1-Ⅰ-1〉 대만의 최근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06	'07	'08	2009(p)					2010(f)				
				전체	Q1	Q2	Q3(r)	Q4(p)	전체	Q1(f)	Q2(f)	Q3(f)	Q4(f)
경제성장률	4.80	5.70	0.06	-1.87	-9.06	-6.85	-0.98	9.22	4.72	9.24	6.05	3.95	0.66

주: p: Preliminary; f: Forecast; r: Revised
자료: 행정원 주계처 통계DB, 2010. 2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2009년 전체 수출(-20.3%) 및 수입(-27.5%) 모두 감소하여 총교역규모(수출 2,037억달러, 수입 1,744억달러)는 3,781억달러였으나, 수입 감소폭이 더욱 커 29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2009년 4/4분기 이래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였다(〈표 1-Ⅰ-2〉 참조).

〈표 1-Ⅰ-2〉 대만의 교역량

(단위: 10억 US달러, %)

연 도	교역규모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04	3,511	1,823	21.1	1,688	31.8	136	-39.7
2005	3,811	1,984	8.8	1,826	8.2	158	16.2
2006	4,267	2,240	12.9	2,027	11.0	213	34.8
2007	4,661	2,467	10.1	2,193	8.2	274	28.6
2008	4,965	2,556	3.6	2,405	9.7	152	-44.6
2009	3,781	2,037	-20.3	1,744	-27.5	293	93
2010.1	410	217	75.8	193	115.4	24	-27.5
2010.2	325	167	32.6	158	45.8	9	-48.6
2010.3	453	234	50.1	219	80.3	15	-56.4

자료: 행정원 주계처 통계DB, 2010. 2

중국과 대만은 2010년 1월 26일 중국의 北京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2010년 6월 29일 重慶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관세 철폐 및 서비스산업의 개방 및 투자 자·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海峽兩岸經濟合作

架構(框架)協議" :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자본과 대만 기술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ECFA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 경제부진에서 벗어나려는 대만의 실리적 목적과 대만의 對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여 장기적 통합여건을 조성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결합되어 협상 개시 5개월 만에 신속하게 타결된 FTA 협정이다.

ECFA의 주요 내용 및 전망을 정리한다[1].

첫째,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장벽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양자 간 배타적 FTA협정이다. ECFA는 당사국 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다. 또한 ECF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양자 간 교역의 대부분이 적용대상인 포괄적 FTA이다.

둘째, 협정문 본문에는 ECFA 발효 후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개방 협상개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ECFA는 양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사항만 명기하고, 구체적 시장개방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다.

셋째, ECFA는 기본협정으로서 시장개방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대만측의 요구로 조기수확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명기하고 있다. 조기수확은 긴급 사유로 인해 협정 전체가 발효되기 전에 협정 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먼저 자유화(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하는 조치를 지칭한다. 중국은 자동차 부품과 액정표시장치(LCD), 유리 등을 포함해 대만의 539개 품목에 이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넷째, 중국은 대만에게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기구 등 5개 분야에서 539개 상품 품목(HS 기준)의 관세 인하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품목은 ECFA 발효 후 2년 내에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3년차부터 완전 무관세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금융, 전문직 서비스 등 11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대만에 개방하였다.

다섯째, 대만은 석유화학, 기계, 방직 등 6개 분야에서 267개 품목의 개방에 동의하였다. 단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은행 서비스만 개방하였다.

---

1)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SERI 경제포커스』, 2010. 7. 6(제300호), 삼성경제연구소

양측은 올해 말 추가 협상을 통해서 보호 등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고 무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화폐인 "元貨" 경제권에 포섭하여 "元貨"의 국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만의 첨단기술을 습득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추진하였다. ECFA를 계기로 중국은 중화경제권 형성을 통한 장기적 대만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대만은 ECFA를 계기로 국가의 장래를 둘러싼 고민을 해결하고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관계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만은 ECF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FTA 경쟁에 뛰어들 발판을 마련하였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ECFA 발효 이후 먼저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ECFA는 중국시장에서 대만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Ⅱ. 조세체계

1. 국세와 지방세

대만의 "財政收支劃分法" 제6조는 "조세는 國稅, 直轄市 및 縣(市)稅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는 국세의 항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直轄市 및 縣(市)稅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자를 中央稅라 하고 후자를 지방세라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國稅와 直轄市 및 縣(市)세를 정리하면 〈표 1-Ⅱ-1〉과 같다.

〈표 1-II-1〉 국세와 지방세 세목의 구분

國 稅	直轄市 및 縣(市)稅
1. 所得稅	1. 土地稅 1) 地價稅 2) 田賦 3) 土地增值稅
2. 遺産 및 贈與稅	
3. 關稅	
4. 營業稅	
5. 貨物稅	
6. 담배주류세(菸酒稅)	2. 房屋稅
7. 證券交易稅	3. 使用牌照稅
8. 先物(期貨)交易稅	4. 契稅
	5. 印花稅
	6. 娛樂稅
	7. 특별조세(特別稅課)

주: 1. 田賦는 1987년 하반기(제2기)부터 징수가 정지됨.
2. 특별조세란 直轄市 정부, 縣(市)정부, 鄕(鎭, 市)公所가 地方稅法通則의 규정에 따라 자치재정의 수요를 감안하여 징수하는 특별조세를 말한다. 다만 이미 貨物稅 또는 담배주류세(菸酒稅)를 징수한 화물(재화)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3. 2003년 礦業法 수정 이후 礦區稅는 없어졌다.
4. 營業稅는 1999년 7월부터 국세가 되었으며, 印花稅 및 使用牌照稅는 2009년 7월부터 직할시 및 縣(市)가 되었다.

대만의 국세와 지방세는 법정 세목에 따른 구분이지 세수가 중앙 또는 지방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財政收支劃分法" 제8조는 "…… 소득세 총수입의 10%, 營業稅 총수입에서 統一發票福券制[2]에 따른 당첨 상금(統一發票給獎獎金)를 차감한 후의 40% 및 貨物稅 총수입의 10%는 중앙에서 直轄市, 縣(市) 및 鄉(鎭, 市)에 통일적으로 계획해서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소득세, 영업세 및 화물세는 모두 국세이긴 하나 세수는 모두 중앙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直轄市, 縣(市) 및 鄉(鎭, 市)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이동이 어렵기에 조세수출(租稅輸出)의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고 또한 응익부담의 원칙(受益原則)에 부합되므로 지방세에 귀속되는 편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房屋稅, 토지세는 모두 지방세에 속한다. 화물세, 소득세 등은 유동성이 높고 조사·징수(稽徵)가 어려우므로 국세에 속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국세에 속한다.

현재 대만의 국세는 중앙의 조사징수기관인 國稅局에서 징수하고, 直轄市 및 縣(市)稅는 지방의 조사징수기관인 稅捐稽徵處에서 징수한다.

2.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는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세란 조세를 납부하는 자와 조세의 실제부담자가 동일인인 경우, 즉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를 말하고, 간접세란 조세를 납부하는 자와 조세의 실제부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경우, 즉 전가의 발생이 예상되는 조세를 말한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정리하면 〈표 1-Ⅱ-2〉와 같다.

2) 統一發票는 과세당국에서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영업세 영수증(세금계산서)이며, 영수증 주고받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 시점(매 2개월)마다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II-2〉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

직접세	간접세
1. 所得稅 2. 遺産 및 贈與稅 3. 證券交易稅 4. 先物(期貨)交易稅 5. 土地稅 1) 田賦 2) 地價稅 3) 土地增值稅 6. 房屋稅 7. 契稅	1. 關稅 2. 貨物稅 3. 담배주류세(菸酒稅) 4. 營業稅 5. 印花稅 6. 使用牌照稅 7. 娛樂稅

3. 대만의 세무행정조직

行政院 財政部는 대만의 최고 세무행정기관이며, 관련 세무단위 및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 賦稅署 : 전국 內國稅(內地稅)의 행정 업무를 주관

○ 臺北市 國稅局 : 臺北市의 國稅의 조사·징수를 주관

○ 高雄市 國稅局 : 高雄市의 國稅의 조사·징수를 주관

○ 臺灣省 北區 國稅局 : 臺灣省 北區 및 金馬지역의 國稅의 조사·징수를 주관

○ 臺灣省 中區 國稅局 : 臺灣省 中區의 國稅의 조사·징수를 주관

○ 臺灣省 南區 國稅局 : 臺灣省 南區의 國稅의 조사·징수를 주관

○ 關政司 : 전국 관세의 행정 업무를 주관

○ 關稅總局 : 전국 관세의 조사·징수 업무를 주관

○ 稅制委員會 : 세제·세정 연구발전 업무를 주관

○ 財稅資料中心 : 전국 재정 조세 자료의 처리 업무를 주관

○ 財稅人員訓練所 : 신입 및 재직 재정 조세 인원의 교육 업무를 주관

○ 臺北市 및 高雄市 정부 財政局-稅捐稽徵處 : 直轄市稅의 조사·징수를 담당

○ 각 縣(市) 정부 稅捐稽徵處 : 縣(市)의 조사·징수 업무를 담당

이를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림 1-Ⅱ-1]과 같다.

〔그림 1-II-1〕 세무행정조직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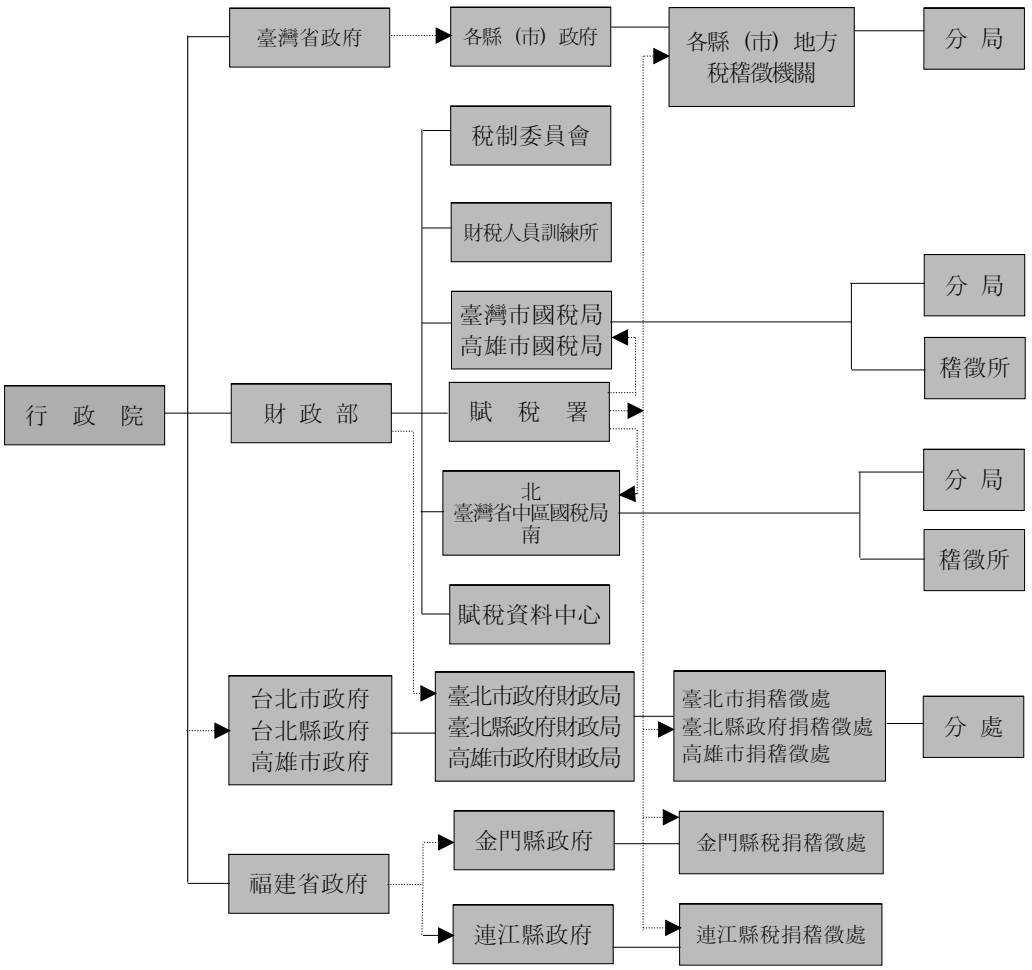

주: ———— 행정예속관계
····· 업무감독 및 지휘 관계

자료: 『2008年度 中華民國賦稅年報』, 財政部賦稅署編印, 2009

4. 조세법의 법률 성격

가. 조세법은 주로 국내법이다

국내법은 국가의 주권 작용에 의하여 제정되고, 이러한 주권 영역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구속력을 발생한다. 국제법은 나라를 단위로 구성된 국제사회 가운데서 국가를 규범의 주체로 하여 나라와 나라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범하는 것이다. 조세법은 주로 국가가 조건에 부합되는 국민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가의 주권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조세법은 주로 국내법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나라와 나라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당해 조약은 동시에 조세법의 법원(法源)으로 되고 이러한 조세법은 예외적으로 국제법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나. 조세법은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

대륙법계 국가의 법률은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공법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및 그 요건을 규범하며, 사법은 私人과 私人 간의 私權 관계를 규정한다. 대만의 법제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조세법 규정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관계의 법률에 속하고 따라서 조세법은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

다. 조세법은 행정법이다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권력 및 행정조직을 규범하는 법규이다. 조세법은 조세의 요건을 규범하여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행정권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조세법은 행정법의 일종이다.

라. 조세법은 강행법적 성격을 가진다

조세법은 강행법의 성격을 가진다.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예를 들면 공익에 관계될 경우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자유로 변경 또는 선택할 여지가 없을 경우를 강행법이라 하고, 공익과는 상관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임의법이라 한다. 조세법은 국가재정 및 공익과 관계되고 국민에게 납세의무의 이행과 준수를 강제하기 때문에 강행법이다.

마. 조세법은 실체법 및 절차법을 겸한 성격을 가진다

법률은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규범하는지 또는 권리의무 실현의 절차를 구분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법 규범의 범위는 과세실체요건(과세권의 내용) 및 국가가 과세권을 실현하는 각종 절차에 관련되므로 조세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바. 조세법은 보통법 또는 특별법일 수 있다

법률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모든 지역, 국민, 사항에 실시되는 법률을 보통법이라고 하고, 특정 지역, 특정인, 특정 사항 또는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特別法이라 한다. 보통법 또는 특별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구분이다. 예를 들면 "稅捐稽徵法"은 기타 각종 세법에 비할 때 특별법이나, "稅捐稽徵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비할 때는 관세법이 특별법이 되고 "稅捐稽徵法"이 반대로 보통법이 된다.

5. 법령의 발효일

"中央法規標準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규는 시행일자를 규정하거나 명령에 위임하여 시행일자를 규정해야 한다." 동법 제13조는 또 "법규가 공포 또는 발포

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을 경우 공포 또는 발포일로부터 기산하여 제3일째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는 "법규가 발포일로부터 기산하여 제3일째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특정할 경우 공포 또는 발포 당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조세법의 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또한 조세법정주의라고도 하는바, 행정법학상의 법률보류원칙에서 온 것이다. 조세가 국가의 재정 명맥과 국민의 재산권의 부담에 관련되므로 대만 헌법은 이를 특히 중시하여 제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3]. 조세법률주의는 두 개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국가가 모든 조세를 제정하고 징수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자체로 어떠한 조세도 제정 및 징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납세의 의무를 지고 법정 범위를 초과하면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조세의 항목은 다른 법령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거나 행정명령으로 별도 보충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이 국민의 법정 납세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 법령의 감면규정을 유추 적용하거나 행정명령으로 별도 감면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모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게 된다.

나. 법률우위원칙(法律優越原則)

법률우위원칙이란 행정행위 또는 기타 일체의 행정활동은 모두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동 원칙이 말하는 규범 위계의 의의는 행정명령과 행정처분 등 각

3) 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종 행정행위는 규범의 위계상 모두 법률보다 낮고, 다시 말하여 법률의 지위는 각종 행정행위보다 높다. 동 원칙은 학리상의 중요한 원칙일 뿐만 아니라, 대만 헌법 제171조는 "법률이 헌법에 저촉될 경우 무효이다", 제172조는 "명령이 법률 또는 헌법에 저촉될 경우 무효이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은 행정법의 일환이므로 동 원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조세 관련 행정명령 ·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는 모두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본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무효가 된다.

법률은 가끔 행정기관에 명령의 반포를 위임하는데, 즉 授權命令 또는 委任命令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령은 법률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상위 단계에 있는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또 원래 법률에 없는 제한을 추가해서도 안 된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우위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다. 법률불소급원칙(法律不溯既往原則)

법률불소급원칙이란 법률의 시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이 공포 실시된 후에만 적용되고 당해 법률이 공포 실시되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원칙이다. 동 원칙은 로마법에 기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질서의 안정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행위 시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납세자 및 과세당국 쌍방이 모두 이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동 원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구속이 있으나, 입법기관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4]. 예를 들어, 새로 수정한 세법이 국민의 권리에 유리할 경우, 입법기관은 당해 세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소급적용함을 명문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미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4) 법률시효 및 소급효문제는 행정법학에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라. 신법우위원칙 및 미확정사건 유리원칙(未確定案件適用有利原則)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원칙(新法優於舊法原則)에 관하여 어떤 학자들은 後法이 前法에 우선하는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전후로 두 가지 다른 규정의 법률이 존재할 경우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즉, 새로운 법률이 공포 시행된 경우 종전의 법률은 폐지해야 하고 그 효력을 잃게 되며[5], 해당 사안에 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명령도 앞뒤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원칙도 마찬가지로 신법우위원칙이다. 학설상 이를 後令이 前令에 우선하는 원칙이라고 한다.

사건의 사실이 新舊法 두 개의 시기를 모두 거치고, 신법 실시 후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미확정사건 유리원칙(未確定案件適用有利原則)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稅捐稽徵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財政部가 동법 또는 세법이 발표한 해석 函令에 관하여, 이러한 해석 函令을 근거로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경우 아직 확정 및 과세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의무자 간에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마. 특별법우위원칙(特別法優於普通法原則)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당해 각 법률의 상대성을 비교하여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선택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특별법이 보통법에 우선하는 원칙이다[6]. 특별법과 보통법의 구분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적용범위가 비교적 넓어 모든 사람 · 사건 · 사물에 적용되는 것은 보통법이고, 적용범위가 비교적

---

5) 대만 中央法規標準法 제21조는 또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규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폐지된다. … 4)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이미 새로운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시행의 공포 또는 발포를 한 경우."

6) 中央法規標準法 제16조: "법규가 기타 법규가 규정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기타 법규를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좁아 특정 사람 · 사건 · 사물에만 적용되거나 또는 특정 시기에만 발효하는 것은 특별법이다. 즉 전자는 일반 대상에 적용되고, 후자는 특정 대상에만 적용된다.

동 원칙은 다시 다음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① 동일 시간 내에 특별법과 보통법이 동시에 유효한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원래부터 보통법이 존재하고 사후에 특별법을 새로 공포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③ 원래부터 특별법이 존재하고 사후에 보통법을 새로 공포하는 경우 여전히 舊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舊특별법은 여전히 新보통법에 우선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른 "新보통법이 舊특별법을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일컫는다. 실제로 특별법이 적용대상의 사람 · 사건 · 사물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획정하였다면 동 범위 내에서 본래 보통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나 이 외에 또 다시 별도로 다른 법률원칙을 세워야 할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특별법의 적용이 보통법에 우선해야 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끔 특별법에서 특별법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促進産業昇級條例"[7]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促進産業昇級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본 조례에 규정이 없을 경우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법률의 규정이 본 조례보다 더욱 유리할 경우 가장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바. 실체는 舊法, 절차는 新法을 따르는 원칙(實體從舊程序從新原則)

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실체에 관해서 구법을 적용하는 원

7) 2010년 5월 12일 總統令(華總一義字 第09900112321號)에 의해 폐지됨. 그 대신에 "産業創新條例"가 2010년 5월 12일 總統令(華總一義字 第09900112301號)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제정목적은 산업혁신, 산업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의 제고에 있음.

칙은 전술한 법률불소급원칙의 의미와 같고, 모두 법률시효를 처리하는 문제이다. 조세실체법이란 과세요건과 관련되고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감면의 요건 및 세율 등 내용을 포함한다. 세법실체의 부분에서는 납세의무 발생 시(즉 행위 시)의 세법의 규정에 의해야 하고, 즉 행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舊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행정기관이 과세권을 실현하는 방식 · 절차 등 조사와 징수(稽徵) 절차에 속할 경우 "조세절차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조세구제 · 조사징수 절차 등이 있다. 이러한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사 징수 · 신고 · 납부 등의 절차는 납세자 및 과세의 편의에 목적이 있으므로 신고 · 납부 시 신규정의 세법에 따른다.

사.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新法 및 가벼운 처벌 적용 원칙(租稅罰法從新從輕原則)

대만의 조세법은 실체는 舊法을 적용하고, 절차는 新法을 적용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조세처벌(租稅罰則) 부분에 있어서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죄질(惡性)이 중한 범죄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며, 형법 제2조 제1항은 新法 및 가벼운 처벌 적용 원칙(從新從輕原則)을 채택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8]. 이와 비교할 때 조세불법행위의 죄질(惡性)은 범죄행위에 비하여 가볍고 또한 新法 및 가벼운 처벌 적용 원칙(從新從輕原則)을 채택하기도 쉽다. 따라서 "稅捐稽徵法" 제48-3조는 "납세의무자가 동법 또는 각 세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 처벌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재, 처벌 전의 법률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세처벌법에 있어서의 新法 및 가벼운 처벌 적용 원칙(從新從輕原則)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 원칙은 미확정 사건에만 적용되고 이미 제재 · 처벌이

8) 刑法 제2조 제1항: "행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재판 전의 법률이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 행위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번복할 수가 없으므로 동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 조세구제에 있어서 절차가 실체에 우선하는 원칙

"조세구제에 있어서 절차가 실체에 우선하는 원칙(租稅救濟程序優先實體)"이란, 조세구제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우선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경우에만 실체 문제를 심사한다는 의미이다. 동 원칙은 행정구제 또는 사법구제에 모두 적용된다. 즉, 행정 또는 사법기관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는 절차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절차상 부적격일 경우 실체적으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실체 문제를 심사할 수가 없고 기각(駁回)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訴願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원의 제기는 행정처분의 도달 또는 공고 기한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바로 행정구제상의 절차규정이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30일이 지난 이후에 소원을 제기한다면 실체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소원심리기관은 모두 실체를 심사하지 않고 직접 절차불부합으로 소원을 기각하게 된다.

자. 조세행정벌은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고 행위벌과 조세탈루벌(漏稅罰)은 그 중 하나를 택하여 무겁게 처벌(重處)한다.

"조세행정벌"이란 세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법이 규정한 형벌[9] 이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벌금 · 몰수 · 영업중지 · 등기취소 · 연체신고금(滯報金) · 태만신고금(怠報金) 및 체납금 등의 처분을 포함한다. 1991년 3월 8일 司法院 大法官은 釋字 第275號의 해석에서 인권보장을 위하여 행정벌은 행위인에게 귀착할 만한 과실

9) 刑罰의 刑名은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다. "主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死刑; 2. 무기징역, 3. 유기징역 2개월 이상 15년 이하. 다만 가감이 있을 경우 2개월 미만 또는 20년까지 가할 수 있다. 4. 구류, 1일 이상 60일 미만, 다만 가중이 있을 경우 120일까지 가할 수 있다. 5. 벌금, 신대만폐 1,000원 이상, 100원 단위로 계산한다."

이 있을 경우를 그 제재벌의 조건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행위인에게 지워서, 본인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해석하였다[10]. 예를 들어, 허위설치(虛設)한 상점 영수증(行號發票)을 취득함에 있어서, 행위인이 자신이 과실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증빙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영수증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제재벌을 가하게 된다. 반면에 행위인이 자신이 과실이 없고 사정을 모른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벌을 면하게 된다.

조세행위벌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조세탈루벌이란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조세를 탈후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다. 조세법은 납세의무자의 불법의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고 동시에 서로 다른 제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한 행위가 동시에 조세행정벌 및 세금누락벌에 저촉될 경우 "그 중 하나를 채택하여 무겁게 처벌(重處)하는 원칙"을 채택해야 하고 병과(并罰)하지 않는다[11].

---

10) 司法院 大法官 釋字第275號의 해석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故意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過失을 그 책임요건으로 해야 한다. 다만 행정벌을 받아야 할 행위는 禁止規定 또는 作爲義務를 위반한 경우만 속하고, 손해 또는 위험의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며, 행위인이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한다. 行政法院은 62년도 判字 第30號의 판례에서 "행정벌은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같은 연도 判字第350號에서 "行政犯의 행위의 성립은 故意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재화 품질 가치의 등급을 어떻게 허위로 보고했는지 원인은 묻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헌법상 국민권리보장의 취지에 저촉되므로 인용(援引)하지 말아야 한다."

11) 동 원칙은 형법상의 "一事不二罰"의 의미와 같다. 사법실무 상동 원칙은 司法院 大法官 釋字第503號의 해석을 인용하여 그 근거로 할 수 있다. 동 해석문은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가 作爲義務를 위반하여 행위벌에 처할 경우 다만 作爲義務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누락벌은 법정요건인 세금누락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 양자의 처벌목적 및 처벌요건은 다르지만, 그 행위가 동시에 행위벌 및 세금누락벌의 처벌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처벌의 성격과 종류가 달라 반드시 부동한 처벌방법과 수단을 채택해야 행정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 처벌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당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이다. 作爲義務를 위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세금누락행위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또는 세금누락행위의 방법에 속하나 처벌 종류가 같을 경우, 그 중 하나만 重處함으로

차. 조세형사벌은 고의를 책임요건으로 한다.

"조세형사벌"이란 조세법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형법이 규정한 자유형 또는 벌금 등 刑名의 제재[12]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유기징역, 구류, 벌금 및 몰수 등 세 가지 主刑을 포함한다. 기타의 형명에 관해서는 조세처벌에 비교적 적게 사용한다. 이러한 조세형사벌은 이미 형벌을 사용하였으므로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극히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고의를 그 책임요건으로 한다[13]. 故意란 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한 일부러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明知並有意使其發生). 고의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행위 시에 "분명히 아는 것(明知)"과 "일부러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카. 실질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이란 경제이익의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과세구성요건 이외의 외관형식과 그 실질인 경제이익의 귀속이 다르다면 그 과세구성요건의 인정은 외관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한 경제이익의 귀속을 찾아서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동 원칙은 과세주체와 과세객체 두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과세주체는 납세의무자를 말하고 과세객체는 과세대상물(課稅標的)을 말하며, 납세의무자를 놓고 말하면 납세의무자가 형식상 인원수에 따라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저소득의 외관을 만들고 세부담을 회피하고, 세무기관이 진실한 납세의무자를 조사해낸다면 그가 분산한 소득을 진실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그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과세대상물을 놓고 말하면, "과세대상물"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과세

써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기타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竝行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권리의 취지에 부합된다. 本院 釋字 第356號해석은 보충해야 한다."

12) 어떤 학자는 租稅犯罪라 한다.

13) 형법상에는 故意를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過失의 처벌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형법 제12조 참조.

대상물의 존재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떠나 모두 과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稅捐處는 위장건축한 부동산에 대하여 房屋稅를 징수하고, 國稅局은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서 얻은 불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만 "所得稅法" 제4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리사업이 국내외 기타 영리사업과 종속관계가 있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상호간의 관련 수익, 원가, 비용 및 손익의 계산상 영업관습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安排)가 있어 세금을 회피 또는 감소시키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당국(稽徵機關)은 당해 사업의 소득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財政部에 보고하여 영업관습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실질과세원칙의 명문 규정이고, 사법실무상에는 行政法院 1994년 判字 第351號 판결이 가장 대표적이다[14].

14) 行政法院 1994년 判字 第351號 판결의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조세법이 중요시하는 것은 납세능력을 충분히 나타낸 실질적인 경제사실이어야 하고 … 조세부과의 구성요건의 판단 및 인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제適時관계 및 발생하는 실질경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형식외관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

Ⅲ. 재정수지획분법과 지방세법통칙

각급 정부는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만 공공지출을 충당할 수 있고 각급 정부 간 재원의 조달, 지출의 분배 및 부유지역과 빈곤지역 간, 상급정부와 하급정부 간의 협조와 평형은 모두 法源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財政收支劃分法"을 제정하여 이를 규범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中華民國 각급 정부 재정수지의 구분, 조절(調劑) 및 분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재정수지시스템은 4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즉 ① 중앙, ② 直轄市, ③ 縣, 市(이하 縣〈市〉), ④ 鄉, 鎭 및 縣轄市(이하 鄉〈鎭, 市〉)의 4개 등급이다(財政收支劃分法 §3). 재정 수입은 주로 조세수입이며, 지방정부는 자치재정의 수요에 따라 地方稅法通則에 의해 특별조세(特別稅課), 임시조세(臨時稅課) 또는 부가조세(附加稅課)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세수입 : 국세, 직할시 및 현(시)세

대만의 재정수입의 주요 연원은 조세수입이며, 조세수입은 국세, 直轄市 및 縣(市)稅 등 2급으로 나눌 수 있다(財政收支劃分法 §6). 전자는 中央稅라 하고 후자는 地方稅라고도 한다. 국세와 直轄市 및 縣(市)稅는 〈표 1-Ⅱ-1〉과 같다(財政收支劃分法 §8 및 §12).

일반적으로 국세는 중앙의 과세당국(稽徵機關), 즉 國稅局이 징수하고, 直轄市 및 縣(市)稅는 지방의 과세당국(稽徵機關), 즉 稅捐稽徵處에서 징수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 관련 사항은 國稅局에서 처리하고, 토지세 관련 사항은 稅捐稽徵處에서 처리한다.

2. 각급 정부 간 조세수입의 분배

일반적으로 국세의 세수는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세의 세수는 지방정부에 귀속되나, 국세의 과세표준이 비교적 넓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세수도 비교적 여유롭다. 이에 비해 지방세의 세수는 본래부터 그 규모가 비교적 작은데다가 일부 지방은 궁벽(偏僻)한 곳에 위치해 있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당해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전체가 당해 지역의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財政收支劃分法"에 일부 국세 세수의 일정부분을 직할시 및 현시정부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총수입의 10%, 영업세 총수입에서 법에 따라 계산하는 "統一發票福券制"에 따른 당첨 상금(統一發票給獎獎金)를 차감한 후의 40% 및 貨物稅 총수입의 10%를 중앙에서 직할시, 현(시) 및 향(진, 시)에 배분해야 한다. 유산 및 증여세는 직할시에서 징수하는 수입의 50%를 당해 직할시에 배분하고, 市에서 징수하는 수입의 80%를 당해 市에 배분해야 하며, 향(진, 시)에서 징수하는 수입의 80%를 당해 향(진, 시)에 배분해야 한다. 담배주류세(菸酒稅)는 그 총수입의 18%를 인구비례에 따라 직할시 및 대만성 각 현(시)에 분배하고, 2%를 인구비례에 따라 福建省 金門 및 連江 두 현에 배분해야 한다(財政收支劃分法 §8).

그 외에, 각 향진(시)의 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財政收支劃分法 §12).

① 地價稅 : 현은 당해 향(진, 시)에서 징수하는 수입의 30%를 당해 향(진, 시)에 배분해야 하고, 2%는 현에서 소속 향(진, 시)에 일괄 배분해야 한다.

② 田賦 : 현은 향(진, 시)에서 징수하는 수입의 전부를 당해 향(진, 시)에 배분해야 한다(田賦는 현재 징수정지 상태임).

③ 土地增值稅 : 현(시)에서 징수하는 수입의 20%를 중앙에 납부하여 각 현(시)에 일괄 배분하게 한다.

④ 房屋稅 : 현은 향(진, 시)에서 징수하는 수입의 40%를 당해 향(진, 시)에 배분하고, 2%를 현에서 소속 향(진, 시)에 일괄 배분해야 한다.

⑤ 契稅 : 현은 향(진, 시)에서 징수하는 수입의 80%를 당해 향(진, 시)에 배분하고,

2%를 현에서 소속 향(진, 시)에 일괄 배분해야 한다.

⑥ 娛樂稅 : 현은 향(진, 시)에서 징수하는 수입의 전부를 당해 향(진, 市)에 배분해야 한다.

3. 세액의 일괄배분(統籌分配)

국세 또는 지방세는 모두 그 중 일부 세수에 대해서 일괄배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의 일괄배분은 투명 및 公式의 원칙에 따라 배분해야 하고, 배분을 받는 지방정부는 배분받은 부분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조세수입에 산입해야 한다(財政收支劃分法 §16-1).

가. 소득세, 영업세 및 화물세

소득세, 영업세 및 화물세에 관하여 중앙에서 직할시, 현(시) 및 향(진, 시)에 일괄배분하는 금액은 총액의 6%를 특별일괄배분세액으로 계산하여 배분을 받는 지방정부의 긴급 및 다른 중대 사항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해야 한다. 남은 94%는 보통 일괄배분세액으로 계산하고 각각 일정한 비례에 따라 직할시, 현(시) 및 향(진, 시)에 배분하고, 직할시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후 배분을 받는 직할시의 이전 연도의 영리사업조직의 영업액 · 재정능력 및 그 관할 지역 내의 인구 및 토지면적 등 요소를 참작하여 공식을 연구 · 결정(研訂)한 후 이에 따라 각 직할시에 배분해야 한다.

나. 土地增值稅

土地增值稅에 관하여 중앙에서 각 현(시)에 일괄배분하는 금액은 모두 보통일괄배분세액으로 계산하여 현(시)에 배분해야 한다.

다. 보통일괄배분세액 : 각 縣(市)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

보통일괄배분세액에 관하여 각 현(시)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후, 다음의 방식에 따라 각 현(시)에 배분한다.

① 배분가능금액의 85%는 최근 세 개 연도의 배분을 받는 현(시)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차액의 평균치에 따라 각 현(시) 사이의 배분비율을 산정해야 하고, 산정한 배분비례는 매 3년에 한 번씩 검토하여 조정한다.
② 배분가능금액의 15%는 각 현(시) 관할구역의 영리사업조직의 영업액에 따라 각 현(시) 사이의 배분비례를 산정해야 한다.

라. 보통일괄배분세액 : 산정한 각 鄕(鎭, 市)에 배분 가능한 금액

보통일괄배분세액에 관하여 산정한 각 향(진, 시)에 배분 가능한 금액은 향(진, 시)의 정식 편제인원의 인건비 및 기본건설수요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공식을 연구 · 제정하여 각 향(진, 시)에 배분해야 한다.

마. 縣에서 鄕(鎭, 市)에 일괄배분하는 금액

현에서 향(진, 시)에 일괄배분하는 금액은 財政盈虛調節의 원칙에 따라 縣정부에서 배분방법을 제정하고, 그 중 공식에 따라 배분하는 금액은 배분가능총액의 9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4. 징수의 제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민은 법에 따라 납세할 의무가 있으나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세법" 또는 "地方稅法通則"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정부는 임의로 조세를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조세징수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각급 정부는 타급 또는 동급 정부의 조세에 대하여 재징수하거나 부가징수할 수 없다. 다만 직할시 정부, 현(시)정부가 자치사항을 처리하고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地方稅法通則"의 규정에 따라 부가징수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급 지방정부는 입국(入境)화물에 대하여 입국세(入境稅) 또는 通過稅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財政收支劃分法 §18).

○ 각급 정부는 특별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해당 급 민의기관의 입법을 통하여 임시성격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財政收支劃分法 §19)

5. 특별조세, 임시조세 및 부가조세의 징수

대만은 2002년 12월 11일에 "地方稅法通則"을 공포하여 직할시 정부, 현(시) 정부, 향(진, 시)公所는 자치재정의 수요를 감안하여 규정에 따라 특별조세(特別稅課), 임시조세(臨時稅課) 또는 부가조세(附加稅課)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다.

① 관할구역 밖에서의 교역
② 관할구역 밖으로 유통한 천연자원 또는 광산품 등
③ 경영범위가 관할구역을 넘는 공용사업
④ 국가전반이익 또는 기타 지방공공이익에 손해를 주는 사항

직할시 정부, 현(시) 정부, 향(진, 시) 公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地方稅自治條例"에 따라(擬具) 직할시 의회, 현(시) 의회, 향(진, 시) 民代表會에서 입법절차를 완성한 후 공포 · 실시해야 한다. "地方稅自治條例"가 공포되기 전에는 각 해당 자치감독기관, 財政部 및 行政院 主計處에 보고하여 비치(備查)해야 한다(地方稅法通則 §3 및 §6).

6. 징수연한, 대상 및 세율(세액)의 제한

가. 징수연한

특별조세 및 부가조세의 징수연한은 최장 4년이고, 임시조세는 최장 2년이다. 연한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징수해야 할 경우 본 통칙의 규정에 따라 다시 처리해야 한다(地方稅法通則 §3).

나. 대상 및 용도

특별조세는 貨物稅 또는 담배주류세(菸酒稅)를 징수한 재화(貨物)를 과세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임시조세는 동 세목을 징수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용도를 지정해야 하며 전문계좌를 만들어야 한다(地方稅法通則 §3)

다. 부가조세의 세율(세액)의 제한

직할시 정부, 縣(市)정부가 자치사항을 처리하고 재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印花稅, 土地增值稅 외에 그 지방세에서 본래 규정한 세율(세액)의 상한을 30%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여 징수율(징수액)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본래 규정한 세율이 누진세율일 경우 각 단계(級距) 세율은 동시에 상향조정해야 하고, 단계수(級距數目)는 변경할 수 없다. 세율(세액)을 조정 실시한 후 중앙에서 본래 규정한 세율(세액)을 상향조정하면, 이와 더불어 조정하는 외에 2년 이내에 상향조정할 수 없다(地方稅法通則 §4).

직할시 정부, 현(시)정부가 자치사항을 처리하고 재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세, 화물세 및 부가가치형 영업세 이외에 현행 국세에 대하여 부가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징수율은 본래에 규정한 세율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부가징수하는 국세의 과세표준이 동시에 특별조세 또는 임시조세의 과세표준일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부가징수세율은 중앙정부의 세율 증감에 따라 조정하는 외에 공포 실시한 후 2년 이내에 상향조정할 수 없다(地方稅法通則 §5).

7. 각 조세의 상환(受償)순서

각 조세의 우선순위는 지방세가 국세에 우선하고, 향(진, 시)세가 현(시)세에 우선한다.

8. 재정수입

정부의 재정수입은 주로 세수이고 기타 독점 및 專賣收入, 공사수익비수입(工程受益費收入), 벌금 및 배상수입(賠償收入), 수수료(規費)수입, 신탁관리수입, 재산수입, 영업이익기부증여(營業剩餘捐獻贈與) 및 기타 수입, 補助 및 協助수입, 公債 및 借款 등이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세수입

나. 독점 및 專賣收入

각급 정부는 법률의 허가를 거쳐 독점공용사업을 경영하고 법에 따라 특허비를 징수하며 개인에게 경영을 허가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국고수입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생산소비를 절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화(貨物)를 전매 · 생산할 수 있다(財政收支劃分法 §20 및 §21).

다. 공사수익비수입(工程受益費收入)

각급 정부는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도로, 제방, 용수로, 부두, 항구 또는 기타 토지개량의 水陸工程으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보는 부동산 또는 수익선박에 대하여 공사수익비를 징수할 수 있다. 공사수익비의 징수는 각 해당 공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공사의 경비가 차입(賒借)일 경우에 그 공사수

익비의 징수는 차입자금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한도로 하고, 다만 당해 공사를 계속하여 유지 ·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요에 따라 계속하여 징수할 수 있다(財政收支劃分法 §22).

라. 벌금 및 배상수입

법에 따라 징수한 벌금, 罰鍰 또는 몰수, 沒入의 재물 및 배상의 수입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각각 각급 정부의 公庫에 귀속해야 한다(財政收支劃分法 §23).

마. 수수료(規費)수입

사법기관, 고시기관 및 각급 정부의 행정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각각 입법기관 또는 민의기관의 결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징수할 수 없다(財政收支劃分法 §24). 수수료는 조세와 달라 강제성이 없고 또한 개별보상이 있다. 조세는 강제성이 있고 개별보상이 없으며 공동보상만이 있다.

바. 신탁관리수입

각급 정부 및 그 소속기관은 법에 따라 신탁관리를 하거나 또는 위탁을 받아 업무를 대리할 경우 신탁관리비를 수취할 수 있다(財政收支劃分法 §財26).

사. 재산수입

각급 정부의 모든 재산의 수익(孳息; 과실), 재산의 판매가(售價) 및 자본의 회수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각급 정부의 公庫에 귀속되어야 한다(財政收支劃分法 §財27).

아. 영업이익기부증여 및 기타 수입

각급 정부의 모든 영업이익, 기부 또는 증여받은 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각급 정부의 公庫에 귀속되어야 한다(財政收支劃分法 §29).

자. 보조 및 협조수입

하급정부가 상급정부로부터 받는 보조를 보조수입이라 하고, 상급정부가 하급정부로부터 받는 협조금을 협조수입이라 한다(財政收支劃分法 §30, §31, §33)

- ○ 중앙은 전국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에 적절히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한한다.
  - 계획의 파급효과가 크고 정체성을 가진 계획항목
  - 직할시, 현(시) 또는 두 개 이상의 현(시)를 넘는 건설계획
  - 시범성 작용이 있는 중대건설계획
  - 중앙의 중대정책 또는 건설에 따라 지방정부가 협조·처리해야 하는 사항
- ○ 현은 향(진, 시) 간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향(진, 시)에 적당히 보조할 수 있다. 그 보조방법은 縣정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 ○ 각 상급정부는 특별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재정상황이 비교적 좋은 하급정부로부터 협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협조금은 각 당해 하급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 공채 및 차관

각급 정부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외에는 공채 또는 1년 이상의 국내외 차관을 발행할 수 없다. 공채 및 차관의 미상환 잔액의 한도액은 "公共債務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각급 지방정부가 국외에서 공채 또는 차관을 발행하는 경우 우선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財政收支劃分法 §34).

9. 재정지출

정부의 재정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가. 예산의 계획, 편제(籌編)

각급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급 정부의 연도 총예산, 추가예산과 특별예산 수지의 계획·편제 및 공동비용기준은 기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行政院이 제정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 계획편제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財政收支劃分法 §35, §35-1)

나. 보조금의 적당한 증감

지방정부가 預算籌編原則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재원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그 상급 정부는 실제상황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감소하여 계산 또는 발급해야 한다. 재원의 개발에 노력하고 성적이 좋은 경우 그 상급정부는 보조금을 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財政收支劃分法 §35-1).

Ⅳ. 조세수입 규모 및 추이

경제가 발전하고, 세무행정이 개선되고,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만의 조세수입(관세, 公賣利益, 금융보험업 영업세 및 健康福利捐 포함)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회계연도의 전국 조세 실제 징수액은 新台幣(NT$) 1조 7,604억원이며, 이는 1999년도 실제 징수액 新台幣(NT$) 1조 3,221억원의 1.33배로서 그 성장률이 33%에 이르며, 그 중에서 국세의 성장률은 41%, 직할시 및 縣市稅의 성장률은 7%이고, 담배주류세(菸酒稅)가 2002년 1월부터 부과됨에 따라서 공매이익은 0(零)이다(〈표 1-Ⅳ-1〉 참조).

1999년도(1999년 포함) 이전에는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이었으나, 2000년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바뀌었다. "財政收支劃分法"이 1999년 1월에 수정된 이후 營業稅는 1999년 7월부터 국세로 편입되었으며, 印花稅 및 使用牌照稅는 1999년 7월부터 직할시 및 현(시)로 개편되었다.

〈표 1-Ⅳ-1〉 연도별 조세 수입

(단위: 新台幣(NT$) 천원)

	합 계	국 세	직할시/縣市稅	教育捐	公賣利益	금융보험업 영업세	健康福利捐
2000	1,322,120,677	1,036,691,571	232,398,450	60,088	52,970,568	-	-
2001	1,257,840,609	997,265,845	202,986,604	25,149	57,563,011	-	-
2002	1,225,600,850	981,609,508	209,241,080	23,359	346,450	26,082,669	8,297,784
2003	1,252,766,218	991,380,204	228,718,070	17,887	-	22,433,266	10,216,791
2004	1,387,300,291	1,097,710,291	255,6990,593	8,626	-	24,229,514	9,661,267
2005	1,567,396,363	1,269,562,886	261,724,809	9,531	-	25,712,124	10,387,013
2006	1,600,803,894	1,295,680,319	260,963,574	7,889	-	26,643,871	17,508,231
2007	1,733,894,782	1,420,741,449	265,128,923	5,034	-	28,130,888	19,888,488
2008	1,760,438,282	1,461,840,358	248,771,541	5,400	-	29.706,001	20,114,982

주: 위의 세수에는 防衛捐 및 臨時捐이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中華民國97年度 賦稅年報』, 財政部賦稅署編印, 2009. 9.

대만의 조세수입에는 내국세 · 관세 · 공매이익 · 금융보험업 영업세 및 健康福利捐가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내국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의 88.3%에서 2008년에는 92.6%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내국세는 정부재정수입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2008년도 전체 조세수입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3.0%에 달해서 1999년도의 58.2%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는 1999년 7월부터 營業稅가 省市稅에서 국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도 직할시 및 縣(市)稅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서 1999년도의 성 및 직할시세 그리고 縣(市)稅가 차지하였던 비중이 37.7%인 점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였다. 즉 營業稅가 국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공매이익이 2002년도부터 0(零)인데, 이는 담배 및 주류의 전매제도가 폐지되고 담배주류세(菸酒稅)가 과세되었기 때문이다(〈표 1-Ⅳ-2〉 참조).

최근 10여 년 동안의 조세구조에는 현저한 변화가 있어서, 소득세의 비중이 2000년의 38.1%에서 47.4%로 증가하였다. 이는 조세구조가 소득세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IV-2〉 각 세목의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과세수입	95.4	97.2	97.4	97.6	97.7	97.2	97.2	97.2
(1) 국세	79.3	80.1	79.1	79.1	81.0	80.9	81.9	83.0
① 관세	7.4	7.0	6.6	5.7	5.3	5.0	4.7	4.6
② 鑛區稅	0.0	0.0	0.0	0.0	0.0	0.0	0.0	0.0
③ 所得稅	38.1	32.1	32.8	32.9	39.9	40.4	42.1	47.4
ㅁ 營利事業所得稅	18.6	13.5	17.1	17.4	21.0	19.5	22.1	25.3
ㅁ 綜合所得稅	19.5	18.5	15.8	15.5	18.9	20.9	20.0	22.1
④ 遺産 및 贈與稅	1.8	1.9	2.4	2.1	1.9	1.8	1.6	1.6
⑤ 貨物稅	10.6	11.7	11.7	11.5	10.7	9.9	8.6	7.2
⑥ 담배주류세(菸酒稅)	0.0	3.4	4.0	3.5	3.2	3.2	2.9	2.8
⑦ 證券交易稅	5.1	6.3	5.5	6.1	4.4	5.6	7.4	5.1
⑧ 期貨交易稅	0.1	0.2	0.4	0.6	0.4	0.3	0.3	0.4
⑨ 營業稅	16.2	17.5	15.8	16.8	15.2	14.8	14.2	13.9
(2) 직할시 및 縣(市)稅	16.1	17.1	18.3	18.4	16.7	16.3	15.3	14.1
⑩ 土地稅	7.4	8.0	8.9	9.7	8.6	8.2	7.7	6.6
ㅁ 田賦	0.0	0.0	0.0	0.0	0.0	0.0	0.0	0.0
ㅁ 地價稅	4.0	4.1	4.1	3.8	3.4	3.4	3.4	3.4
ㅁ 土地增値稅	3.4	3.9	4.9	5.9	4.2	4.8	4.3	3.2
⑪ 房屋稅	3.8	3.8	3.8	3.6	3.2	3.3	3.1	3.1
⑫ 使用牌照稅	3.6	3.7	3.8	3.6	3.3	3.3	3.1	3.0
⑬ 契稅	0.7	0.8	0.9	0.9	0.8	0.9	0.8	0.7
⑭ 印花稅	0.6	0.6	0.6	0.6	0.5	0.5	0.5	0.5
⑮ 娛樂稅	0.1	0.1	0.1	0.1	0.1	0.1	0.1	0.1
(3) 教育捐	0.0	0.0	0.0	0.0	0.0	0.0	0.0	0.0
2. 公賣利益	4.6	0.0	0.0	0.0	0.0	0.0	0.0	0.0
3. 금융보험업 營業稅	0.0	2.1	1.8	1.7	1.6	1.7	1.6	1.7
4. 健康福利捐	0.0	0.7	0.8	0.7	0.7	1.1	1.1	1.1

주: 위의 세수에는 防衛捐 및 臨時捐이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中華民國97年 財政統計年報』, 財政部統計處編印, 2009. 8.

연도별 국세수입은 증권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등락이 심했던 證券交易稅 및 1998년 7월부터 과세된 期貨交易稅을 제외하고서, 세수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01~2002년은 불경기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Ⅳ-3〉 연도별 국세 수입(1)

(단위: 新台幣(NT$) 천원)

	營所稅	綜所稅	遺贈稅	貨物稅	菸酒稅	證交稅
2000	210,355,701	207,964,401	26,812,196	150,332,116	-	109,819,295
2001	233,677,981	244,958,392	22,710,416	133,883,209	-	63,899,313
2002	165,758,919	227,180,159	23,537,164	143,641,480	41,188,051	76,794,435
2003	213,682,897	197,404,075	30,106,227	146,011,511	49,772,631	69,283,205
2004	241,088,853	214,824,969	29,047,708	159,643,630	48,336,188	84,148,343
2005	329,357,079	296,449,973	30,450,904	168,410,908	50,443,151	68,203,675
2006	311,887,576	334,330,223	28,693,738	159,201,482	51,041,996	89,954,385
2007	382,633,510	347,526,356	28,481,129	149,036,726	50,415,193	128,894,627
2008	445,244,861	389,743,539	28,977,696	126,659,613	49,506,301	90,630,291

〈표 1-Ⅳ-4〉 연도별 국세 수입(2)

(단위: 新台幣(NT$) 천원)

	期交稅	營業稅	鑛區稅	小 計	關稅	合 計
2000	1,701,577	222,259,289	10,010	929,254,585	107,436,986	1,036,691,571
2001	1,862,161	203,707,318	9,289	904,708,079	92,557,766	997,265,845
2002	2,864,026	314,734,692	10,039	895,708,965	85,900,543	981,609,508
2003	4,805,704	197,521,003	10,187	908,597,440	82,782,764	991,380,204
2004	8,272,379	233,459,833	3,799	1,018,825,702	78,884,589	1,097,710,291
2005	6,341,673	237,531,217	638	1,187,189,218	82,373,668	1,269,562,886
2006	4,072,486	236,931,350	158	1,216,113,394	79,566,925	1,295,680,319
2007	5,757,834	246,136,725	279	1,338,882,379	81,859,070	1,420,741,449
2008	6,691,514	243,960,817	21	1,381,414,653	80,425,705	1,461,840,358

주: 위의 세수에는 防衛捐 및 臨時捐이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中華民國97年 財政統計年報』, 財政部統計處編印, 2009. 8.

연도별 직할시 및 縣(市)稅 수입은 營業稅가 1999년 7월부터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절대적인 규모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8년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1-IV-5〉 연도별 直轄市 및 縣(市)稅 수입

(단위: 新台幣(NT$) 천원)

	合 計	印花稅	使用牌照稅	土地稅	房屋稅	娛樂稅	契稅
2000	232,398,449	7,558,133	31,987,638	147,665,638	33,184,427	1,542,846	10,459,850
2001	202,986,604	7,035,817	44,687,556	93,182,039	48,055,633	1,532,913	8,492,646
2002	209,241,080	6,911,442	45,885,799	98,069,452	46,463,784	1,648,789	10,261,814
2003	228,718,070	7,785,901	47,764,976	111,802,984	48,012,750	1,751,110	11,600,349
2004	255,690,593	7,770,687	49,904,368	133,893,333	49,323,149	1,862,094	12,936,962
2005	261,724,809	8,458,054	51,863,060	135,370,017	50,876,888	1,978,782	13,178,008
2006	260,963,574	8,713,667	52,548,499	131,207,704	52,493,513	1,986,335	14,013,856
2007	265,128,923	8,837,312	53,271,422	133,691,191	53,882,845	1,809,257	13,636,896
2008	248,771,541	9,649,862	53,254,944	116,082,367	55,343,250	1,745,023	12,696,095

주: 위의 세수에는 防衛捐 및 臨時捐이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中華民國97年 財政統計年報』, 財政部統計處編印, 2009. 8.

Ⅴ.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2008년도에 馬英九 정권의 출범 이후 5대 혁신 및 10대 정책을 포함하는 "公平納稅, 輕稅減政"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세제개혁 부분에서는 租稅改革委員會를 설치하여 세제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에 납세자권리보호관을 두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8년 6월 30일에 "행정원조세개혁위원회성립대회"가 성립되고, 동 위원회는 세제개혁에 있어서 사회공의, 경제발전, 국제경쟁력과 영속환경의 4대 목표를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 즉 효율 증가, 과세기반의 확충과 세정의 간소화라는 3대 원칙을 제기하였다. 우선 효율 증가와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목표의 실현에 있어서는 소유세제(소득세, 재산세와 판매세, 기타)에 중점을 두고, 세정의 간소화는 세정간소화와 납세자권익의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동 위원회는 2010년도 1월 28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세제", "세정" 등 20여개의 의제에 관하여 연구·논의하였다. 그 중 "효율 증가", "과세기반의 확충", "세정의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세제개혁에 관하여 모두 9개의 세법수정안을 연구 제정하였고, 그 중 6안이 총통령으로 수정·공포되었으며, 수정 공포한 子法規(하위단계에 있는 행정법규의 의미) 및 행정규칙은 19개, 행정조치는 26개에 달하여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아직 입법원에서 심사중인 세법수정안에 관하여는 여당과 야당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강화하여 공통된 인식을 얻어냄으로써 입법절차를 조속히 완성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녹색세제의 입법 및 지가세, 방옥세 세율의 상향조절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결의에 관해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에너지세에 관하여 공통된 사회인식을 얻어 내어 가장 적정한 시기에 도입하며, 이에 따른 제반 조치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경제발전", "사회공의", "국제경쟁력" 및 "영속환경"의 세제개혁목표에 따라 전 국민의 최대이익에 부합되는 정책 및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 현행 세제개혁의 목표 및 주요 내용

현행 세제의 개혁에 관통되는 목표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세제개혁의 4대 목표를 살펴보면 사회공의(공평)과 국제경쟁력(효율), 영속환경과 경제발전의 평형에 있고, 또한 정책목표에서는 공평과 효율을 같은 위치에 두어 그 어느 목표도 편향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느 단체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 사회공의

현재 대만은 M형 사회에 있고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조세공평 외에도 산업경쟁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조세공평의 비중은 조금 높여야 하고, 과거처럼 산업발전을 위하여 조세공평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조세공평의 비중은 적어도 산업발전보다 낮지 않아야 진정으로 "세수기반의 확대, 세부담의 인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발전목표

세제개혁은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범위도 커져야 한다. 예를 들어 兩稅合一소득세제의 존폐나 개혁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모두 논의되고 있고, 소득세 세수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세의 비중을 높이며 조세구조를 개선하고 경제활력과 산업경쟁력을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종합소득세는 12개의 공제액 항목이 있는데 이는 너무 많고, 과세기반의 침식이 심각하며 징수와 납부 쌍방의 비용이 높아 불필요한 낭비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대폭적으로 통합하고 세제를 간소화하여 단일세율, 단일면세액의 Flat Tax의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2009년 5월에는 입법원에서 법인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3단계 법인세율

구조(0%, 15%, 25%)를 20%의 단일세율 구조로 개편하는 대신 법인세 면제소득 구간을 新台幣(NT$) 5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하하였다. 둘째, 직전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셋째, 회사 형태가 아닌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 대신 소유주 또는 파트너가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2010년도 5월에는 소득세법 제5조 및 제126조의 수정안이 입법원에서 통과되어 2010년도부터 영리사업소득세의 세율을 다시 20%에서 17%로 인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제공한 각종 조세우대조치가 소득세의 과세기반을 침식하고 산업 간 소득세 부담이 불공평하며 세제가 복잡하고 징수납부 쌍방의 분쟁 등 문제가 해결될 계기를 마련하였고 "輕稅簡政"의 개혁이념도 더욱 관철시켰다.

다. 영속환경목표

사회환경보호 의식이 제고되었고 지구환경보호의 중요성 및 녹색세제의 국제 추세를 감안하여 에너지세를 징수하여 에너지의 사용효율을 높여야 한다. 녹색세제의 수입으로는 기업이 에너지 사용효율을 제고하는 데 보조하도록 쓰고 기업이 직원이 대한 사회복지지출을 분담하도록 한다. 세제구조에서는 영속환경을 4대 목표에 넣어 본래 무임승차의 관념으로부터 사용자 비용부담원칙을 도입하고, 자원배분과 효율적인 운영 및 경제의 공평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특히 환경자원을 낭비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생산자에 대하여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즉, 녹색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대중의 오염행위를 변경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조세수입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조세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경제의 영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라. 국제경쟁력목표

비교이익법칙하에서 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을 찾기 마련이고, 투자자는 예산수익이 가장 높은 곳에 투자하기 마련이며, 자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또한 세계화 추세하에서의 "국제조세경쟁"이라고도 한다. "국제경쟁

력"을 세제개혁의 목표로 하는 것은 국제화 조류에서 특히 인근 국가의 격렬한 경쟁하에서 세제개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만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인근 국가와 서로 경쟁해야 하고, 세제개혁은 중국 대륙,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곳의 세제를 참조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取長補短)해야 하며,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2010년 4월에는 "가치형 및 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7-1조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해 수정안은 외국의 사업, 기관, 단체, 조직이 대만 경내(境內)에서 고정영업장소가 없으나 전시 또는 임시상무활동에 종사할 경우, 특정 재화 또는 노무를 구매하면서 지불한 가치형 영업세에 관하여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호혜원칙에 따라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진출 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 구체적인 조세정책

구체적인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468방안"(EITC)

중저수입의 노동자 가정에 대하여 세액환급 보조금을 실시하는 "468방안(EITC)"을 고려하고 있다[15].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노동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자 가정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세액환급방식이기 때문에 납부할 만한 세금이 없는 더욱 빈곤한 가정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15) 馬英九 총통이 대선 후보자일 때 발표한 조세정책으로, 4인 가족의 연간소득이 新台幣(NT$) 48만元 이하의 중저수입의 가정(약 90만 가구)에 대해서 세액환급 보고금을 지급하는 정책(EITC)임. 연간 소득이 新台幣(NT$) 36만元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13% 보조하고, 新台幣(NT$) 36만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서 지급하되, 新台幣(NT$) 48萬元에 도달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책임.

나. 급여특별공제액 및 장애특별공제액, 교육공제액을 증가

이러한 공제액의 증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선 공제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정수입을 예상한 후, 다시 급여특별공제액과 교육공제액을 사회보조의 방식으로 빈곤층 가정을 보조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특별공제액에 관해서는 장애인의 실제 생활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확실히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제액 증가는 국가재정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시급하게 실행해야 할 방책은 아니다.

다. 산업별 장려를 취소하고 기능별 장려를 강화

산업별 및 기능별 장려는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집행 시에는 국내에 공평하고도 효과적으로 기능별 장려를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교적 실제적인 개혁은 일시적으로 촉진산업승급조례를 없애기는(落日하기는) 곤란하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산업별의 인정지표를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기능별 장려기준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량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있다. 그 밖에 투자공제제도는 종합소득세의 차원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促進産業昇級條例"를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하고, 각 정책주관기관이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적으로 보조하며 민의기관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특례도 있으므로 이러한 특례는 정부가 장래 발전할 형태를 감안하여 특정하게 장려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녹색에너지산업 등이 있다. 그러나 녹색에너지산업의 표준정의는 엄격해야만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를 감소"를 격려한다는 취지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하에 실제로 2010년도 5월에 "促進産業昇級條例"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라. 영리사업소득세

영리사업소득세의 세율을 25%에서 20%로, 다시 17%로 인하하였고, 미분배 이익에

대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하는 것을 취소하였다. "促進産業昇級條例"가 취소(落日)됨에 따라 新台幣(NT$) 1,500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과세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마. 녹색세제

녹색세제를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녹색세제의 실시로 인하여 증가된 세수는 소득세 인하 또는 저소득자 보조에 사용할 수 있다. 녹색세제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일부 화물세의 폐지, 차량류, 가스류 화물세 및 오염방치와 관련된 세비 등을 녹색세제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증가된 세수는 가령 소득세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방향도 긍정적이다. 또한, 진정한 고소득자가 사용하는 소비품(주로 국외 수입품)에 대하여 "사치세"(특정소비세에 속함)를 징수하는 것도 응능과세의 원칙에 부합되고 세제의 공평성 증진을 촉진하며 세수증가를 통하여 빈곤구제의 재원을 충실히 증가할 수 있고,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녹색세제는 우선 세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관련 稅費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 녹색세제를 추진하면서 취소해야 할 세수로는 가스류(油氣)의 화물세를 에너지세로 전환하는 것과 기타 4가지 화물세 및 오락세, 인지세가 있다.

바. 유산세

유산세의 면세액을 新台幣(NT$) 2,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유산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증여총액으로부터 100만원의 면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유산 및 증여세의 면세액을 통합(합병)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비교적 공평하고 많은 징수납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매년 매 사람의 증여세의 과세 개시점(起徵點)을 낮출 수 있다.

사.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는 주로 증권소득세 부분인데, 자본이득 비과세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현상이고, 특히 징수상 비효율적이다. 주가의 등락으로 자본이득의 공제를 한다면 소액주주에 대한 영향은 실제로 매우 작다. 다른 한편 주식시장은 경제의 창구이므로 증권소득세를 다시 징수한다고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여전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합리적인 규제와 완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가령, 증권소득세의 징수비용이 높고 과세할 만한 금액이 많지 않다면 이를 간단히 하여 단순히 "(無償주식배당)"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증권소득세를 대신함으로써 공평과 정의에도 부합되고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아. 地價稅와 房屋稅

지가세는 공업구의 공업용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업 이외의 기타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그 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업용지의 세율에 따라 징수해야 하고, 공장등기증이 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토지소유인의 신고도 필요없다. 또한 자택으로 쓰이는 토지의 지가세 및 방옥세의 조세우대조치도 고정세액의 면세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자. 兩稅合一제도

초기에는 기업소득에 관하여 기업단계에서 기업소득세를 한번 징수하고,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할 때는 개인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이는 이중과세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되어 많은 나라에서 兩稅合一제도를 실시하게 되고 "設算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즉 "設算法"으로부터 "주식배

당면세법", "주식배당 50% 면세법" 또는 "주식배당 우대세율법"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와서 부시대통령이 兩稅合一制를 채택할 것을 제의하고 "주식배당전액면세법"을 채택하기로 준비하였으나 국회에서 "주식배당우대세율법"을 채택·통과시켰다. 대만의 兩稅合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편 소득세제

Ⅰ. 종합소득세

1. 서론

대만의 소득세는 個人綜合所得稅와 營利事業所得稅로 분류할 수 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람이고, 과세객체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또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연인의 일정한 기간(통상 1년)의 소득에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法人의 소득에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법인소득세라고 한다. 대만에서는 법인 외에 獨資企業, 동업기업(合夥)의 소득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소득세를 영리사업소득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통상 누진세율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소득세는 응능부담의 원칙(量能課稅原則)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종합소득세는 수입지출실현제(收付實現制)를 취하고, 영리사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발생주의(權責發生制)를 취한다. 비회사조직일 경우 기존 관습에 따르거나 또는 영업범위가 좁아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 시에는 현금수입지출제(現金收付制)를 취한다. 따라서 어떤 영리사업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분의 임금급여를 2009년 1월에 지급하였다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당해 소득은 직원의 2009년도의 소득으로 되기에 직원은 2010년 5월에 납세신고를 해야 하지만, 영리사업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당해 임금급여 비용은 당해 영리사업의 2008년도의 비용으로 되므로 동 영리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2. 납세의무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대만 원천소득이 있고, 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개인이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所得稅法 §7).

가. 거주자

대만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로 약칭한다. 거주자는 결산신고(結算申報)를 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거주자라 함은 다음 두 가지 경우의 개인을 말한다,

① 대만 경내에 주소가 있고 대만 경내에서 경상적으로 거주하는 자

② 대만 경내에 주소가 없으나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 대만 경내에서의 거주일자의 합계가 183일 이상일 경우. 하나의 과세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따라서 183일은 연도를 넘겨(誇年度)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비거주자

대만 경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로 약칭한다.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방식(就源扣繳方式)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따로 결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라 함은 위의 규정 이외의 개인을 말한다.

3. 과세대상소득

대만의 종합소득세는 무릇 대만 국적을 가진 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모두 대만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방식인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이 화교의 애국 열정에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대만 국적의 보유를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속지주의(屬地主義), 즉 대만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무릇 대만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대만 국적의 보유 여부 및 대만 거주 여부를 떠나서 대만 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해야 한다(所得稅法 §2).

한편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대만지역과 대륙지역의 인민관계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만지역 국민이 대륙지역 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대만지역 원천소득과 함께 소득세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다만 당해 납세자가 대륙지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에 관해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은 대륙지역 소득을 합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증가된 납부세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대만지역 국민이 홍콩 또는 마카오 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香港澳門關係條例(홍콩·마카오 關係條例)"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 또는 마카오 원천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대만 원천소득은 다음 각 항의 소득을 말한다(所得稅法 §8).

가. 영리소득

대만 회사법(公司法)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한 회사 또는 대만 정부의 인가 및 허가를 받아 대만 경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서 배분하는 주식배당(股利)과 대만 경내의 合作社 또는 동업조직(合夥)의 영리사업에서 배분하는 이익(盈餘)을 말한다.

나. 급여소득(薪資所得)

대만 경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이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 ○ 대만 경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 대만 경내에서 거주한 날짜의 합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가 대만 경외(境外)의 고용주로부터 취득하는 노무보수는 대만 원천소득에 속하지 않는다.
- ○ 대만 정부에서 국외로 파견하여 주재하는 업무인원(工作人員) 및 일반 고용인원이 국외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대만 원천소득이다.

다. 이자소득(利息所得)

대만 각급 정부, 대만 경내의 법인 및 대만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자를 말한다.

라. 임대소득(租賃所得) 및 권리사용료(權利金)所得

전자는 대만 경내에 있는 재산의 임대로 인하여 취득한 임대료(租金)를 말한다. 후자는 특허권(專利權),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秘密方法) 및 각종 특허권리를 대만 경내에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서 취득하는 권리사용료을 말한다.

마. 재산교역소득(財産交易所得)

대만 경내에 있는 재산의 교역으로 얻은 이익(增益)을 말한다.

바. 영업이익(營業盈餘)

대만 경내에서 工商, 農林, 漁牧, 鑛冶 등 산업을 경영하고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

사. 경기, 시합 및 복권당첨금(機會中獎)소득

대만 경내에서 각종 경기, 경연, 복권활동(中獎) 등에 참가하여 취득한 상금 또는 급여를 말한다.

아. 기타 소득

대만 경내에서 취득한 기타 수익을 말한다.

4.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제(超額累進制)를 채택하고 과세구간(級距)의 금액은 매번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번 조정연도에 비해 지수상승이 누계 10% 이상일 경우 재정부에서 상승 정도에 따라 계산, 조정 후 공고하는데 과세구간 및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Ⅰ-1〉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차액

(단위: %, 원)

종합순소득	세 율	누진차액
NT$ 370,000 이하	6	0
NT$ 370,001 ~ 990,000	13	NT$ 25,900
NT$ 990,001 ~ 1,980,000	21	NT$ 105,100
NT$ 1,980,001 ~ 3,720,000	30	NT$ 283,300
NT$ 3,720,001 이상	40	NT$ 655,300

〈표 2-Ⅰ-2〉 1997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차액

(단위: %, 원)

종합순소득	세 율	누진차액
NT$ 410,000 이하	6	0
NT$ 410,001 ~ 1,090,000	13	NT$ 28,700
NT$ 1,090,001 ~ 2,180,000	21	NT$ 115,900
NT$ 2,180,001 ~ 4,090,000	30	NT$ 312,100
NT$ 4,090,001 이상	40	NT$ 721,100

자료출처: 臺北市 國稅局

〈표 2-Ⅰ-3〉 2010년부터의 종합소득세 세율

(단위: %, 원)

종합순소득	세 율
NT$ 500,000 이하	5
NT$ 500,001 ~ 1,190,000	12
NT$ 1,190,001 ~ 2,180,000	20
NT$ 2,180,001 ~ 4,090,000	30
NT$ 4,090,001 이상	40

5.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稅基)

대만의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의 종합순소득(綜合所得淨額)에 대한 과세이다. 종합순소득이라 함은 종합소득총액에서 면세액 전체와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 부분을 말한다. 종합소득총액은 본인, 배우자 및 신고부양가족(申報受扶養親屬)이 당해 연도에 취득한 다음 각종 소득의 합계를 말하며, 여기에는 총 10가지가 있다(所得稅法 §14).

1) 영리소득

회사의 주주가 분배받은 주식배당(股利)총액, 합작사(合作社) 사원이 분배받은 이익총액, 동업조직(合夥組織) 영리사업의 동업자(合夥人)가 매년 분배받은 이익총액을 말하며, 독자기업(獨資企業) 기업주의 매년 독자경영 사업소득의 이익총액 및 개인의 일시무역의 이익도 이에 포함된다. 일시무역의 이익이라 함은 비영리사업조직인 개인이 상품의 매매로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데 그 계산은 소득세법상 영리사업소득금액에 관한 계산규정을 준용한다(소득세법시행세칙 §12).

2) 업무집행소득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사, 의사, 약사, 조산사, 저작자, 매니저, 대필자(代書人), 공예가(工匠)와 공연인원(表演人) 및 기타 기예로 자력 경영하는 경우에 획득하는 업무수입 또는 연기수입에서 필요비용 또는 원가(成本)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 ○ 업무를 집행하는 자의 수입 또는 연기수입에서 업무소의 건물임대료 또는 감가상각, 업무상 사용하는 기자재, 설비의 감가상각 및 수리비 또는 대가를 받고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약품 · 재료 등의 원가, 업무상 고용인원의 임금급여, 업무집행과 관련된 출장비 및 기타 직접적인 필요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최소 하나의 일기장(日記帳)을 설치하여 업무수지 항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업무지출은 확실한 증빙을 취득하여야 한다. 장부 및 증빙은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장부 · 증빙의 설치, 취득, 보관 및 기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규정한다.
- ○ 개인이 취득한 원고료, 인세, 악보, 작곡, 편극, 만화 및 연설의 시간당 수입의 연간 합계액이 新台幣(NT$) 1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그 액수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부분에서 원가 및 필요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업무집행소득으로 신고한다.

3) 급여소득(薪金給與所得)

공공기관, 교육, 군대, 경찰, 공공 및 사립 사업조직 직원의 임금급여 및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말한다.

- ○ 임금급여는 임금(薪金), 봉급(俸給), 급여(工資), 수당(津帖), 歲費, 상여금(獎金), 배당금(紅利), 각종 보조금 및 기타 급여(예를 들어 교통비 등)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주의 목적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수령한 출장비(差旅費), 일상지출비용(日支費), 초과근무비용(加班費)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및 법에 의하여 면세되는 항목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노동자퇴직금조례(勞動者退退休金條例)"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원해서 납부한

퇴직금 또는 연금보험비는 합계한 금액이 매달 임금의 6% 범위 내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소득과세에 계상하지 않는다. 연금보험비 부분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보험비용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자소득(利息所得)

공채, 회사채(公司債), 금융채권, 각종 단기채권(票券), 예금 및 기타 대출금 이자의 소득 및 저축 성격이 있는 만기원금보장(到期可還本)의 당첨가능저축권(有獎貯蓄券)의 당첨금을 말한다.

- ○ 단기채권 :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권(國庫券), 양도 가능한 은행정기예금서(單), 은행인수환어음(銀行承兌匯票), 상업어음(商業本票) 및 기타 목적사업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단기채무증빙을 말한다. 단기채권이 만기된 후 인수상환(兌償)금액이 첫 발행판매가격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20%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扣繳)한 후, 이를 다시 개인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 “金融資産證券化條例” 또는 “不動産證券化條例”의 규정에 근거하여 분리과세하는 수익증권(受益證券) 또는 자산기초증권(資産基礎證券)의 이자소득은 분배금액에 따라 6%의 세액을 원천징수(扣繳)하고 종합소득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신고를 면제하고, 이미 원천징수(扣繳)한 세금은 납부세액에서 공제(抵繳)하거나 세액환급을 신고할 수 없다.
- ○ 우체국의 存簿預金利子는 종합소득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채, 회사채 및 금융채권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방식을 취한다. 즉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되, 이를 종합소득 총액에 산입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당해 이자소득은 저축투자특별공제(貯蓄投資特別扣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원천징수 세액도 납세의무자의 綜合所得稅 결산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所得稅法 §14-1).

5) 임대소득(租賃所得) 및 권리사용료소득(權利金所得)

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소득, 재산을 전당(出典)으로 인한 전당가격(典價)을 운용하여 취득한 소득 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秘密方法) 및 각종 특허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사용료소득이다.

- ○ 재산임대소득 및 권리사용료소득의 계산은 연간 임대료 수입 또는 권리사용료 수입에서 필요한 손실(損耗) 및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 ○ 합리적이고 필요한 손실(損耗) 및 비용은 감가상각(折舊), 수리비, 地價稅, 房屋稅 및 그 부가조세(附加捐), 임대재산을 보험대상물로 보험에 가입한 보험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구매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이자 등은 각 항목마다 증빙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필요비용표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수입의 43%를 손실(損耗) 및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토지임대수입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地價稅만 공제할 수 있고, 43%의 필요한 손실(損耗) 및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 ○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영업 또는 업무집행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현지의 일반적인 임대료 상황에 근거하여 임대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 ○ 재산을 무상으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친속 이외의 개인에게 빌려주고 또한 영업 또는 업무집행에 사용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무상차용계약(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할 경우 쌍방당사자는 무상차용계약을 체결하고 쌍방당사자 이외의 2인이 무상차용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公證法"의 규정에 따라 공증을 해야 한다〈所得稅法施行細則 §88〉)을 제출하여 확인하는 외에는 현지의 일반적인 임대료 상황에 근거하여 임대료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

6) 자력경작, 어업·목축업·임업·광업 소득

매년 발생되는 연간 수입에서 원가 및 필요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자력경작, 어업, 목축업, 임업의 원가 및 필요비용은 수입의 100%이다.

7) 재산교역소득(財産交易所得)

재산 및 권리금의 교역으로 취득한 소득이다.

○ 본 법에서 말하는 재산교역소득 및 재산교역손실이란, 납세의무자가 경상적으로 구입 · 판매를 하는 영리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에 대하여 매매나 교환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 토지 및 유가증권은 모두 재산으로서 그 교역소득은 재산교역소득에 속하며, 종합소득세를 부과 · 징수해야 하나, 전자에 대하여 이미 土地增値稅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총액에 넣어 과세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는 증권교역소득에 대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소득세의 징수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양자에 대하여 현재 모두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지 않고, 교역손실 역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선물교역소득은 소득세 과세를 잠정 중지한다. 그 교역 손실 역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8) 경기, 시합(競賽) 및 복권당첨 활동의 상금(機會中獎之獎金)

각종 경기시합 및 각종 복권당첨 활동에 참가하여 취득한 상금은 모두 이에 속한다.

○ 경기, 시합에 참가하므로 인하여 지불한 필요비용은 공제를 허용한다.

○ 복권당첨활동에 참가하므로 인하여 지불한 원가는 공제를 허용한다.

○ 정부에서 주관하는 복권의 당첨금, 예를 들면 통일영수증(統一發票), 공익복권당첨금(公益彩券中獎獎金) 등은 법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외에 종합소득총액에 산입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즉 분리과세방식을 취하여 원천징수의무인이 20%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다시 소득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9) 퇴직소득

개인이 수령한 퇴직금(退休金), 資遣費, 퇴직금(退職金), 離職金, 종신봉급(終身俸), 보험급부에 속하지 않는 양로금 및 "勞工退休金條例規定"에 근거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의 보험급부 등 소득이다. 다만 개인이 매년 급여소득에서 자체로 납부한 저금 또는 "勞工退休金條例規定"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 납부연도에 이미 급여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한 부분 및 그 수익(孳息; 과실, 이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일회성 수령(一次領取)의 경우, 그 소득금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일회성으로 수령한 총액이 新台幣(NT$) 15만원에 퇴직복무연한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소득금액은 0이다.
- 新台幣(NT$) 15만원에 퇴직복무연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新台幣(NT$) 30만원에 퇴직복무연한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반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 新台幣(NT$) 30만원에 퇴직복무연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퇴직복무연한의 마지막 자리의 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반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이상일 경우 1년으로 계산한다.

○ 분할수령(分期領取)의 경우 연간 총수령 금액에서 新台幣(NT$) 65만원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 일회성 수령방식과 분할 수령방식을 겸하여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앞의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일회성 또는 분할 수령한 퇴직소득의 비례에 따라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대만에서는 통화팽창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지수연동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매번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번 조정연도의 지수에 비해 그 상승이 일정한 정도 이상에 도달할 경우, 상승 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물가지수연동법에 따라 조정한 후 2009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6].

○ 일회성적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일회성 수령금액이 新台幣(NT$) 169,000원에 퇴직복무연한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소득금액은 0이다.

② 新台幣(NT$) 169,000원에 복무퇴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新台幣(NT$) 339,000원에 퇴직복무연한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은 그 절반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新台幣(NT$) 339,000원에 퇴직복무연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 분할방식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할 경우 연간 총수령 금액에서 新台幣(NT$) 733,000원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표 2-Ⅰ-4〉 퇴직소득의 계산

항 목	단 계(級距)	신고해야 할 퇴직소득
일회성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169,000원 × 연한 금액 이하	0
	169,000원 × 연한~339,000원 × 연한	절반을 소득금액으로 함
	339,000원 × 연한 금액 초과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분할방식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총액에서 733,000원을 공제	나머지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일회성 및 분할 수령방식을 겸해서 수령하는 경우	일회성 및 분할방식으로 수령한 비례에 따라 각각 계산함	

16) 財政部 2008. 12. 29. 台財稅字 第09704569880號 公告.

10) 기타 소득

상기 각 유형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모두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보습반을 경영한 소득 등이다. 기타 소득은 그 수입에서 당해 수입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원가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단 職工福利委員會에서 발급한 福利金은 공제할 원가와 필요비용이 없다. 고발 또는 적발 상금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외에 이를 종합소득총액에 넣어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변동소득(變動所得)

개인종합소득총액 가운데 다음의 소득(장기 누적으로 형성되었고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현하고자 할 경우 변동소득이라 함)이 있을 경우 그 절반만을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면세할 수 있다(所得稅法 §14).

- ○ 자력으로 임업을 경영한 소득(自力耕作所得에 속함)
- ○ 피고용인으로서 원양어업에 종사하며 매번 출항 후 일회성적으로 분배받은 보수(급여소득에 속함)
- ○ 농경지 임대인이 농경지를 회수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平均地權條例" 제7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를 수용(徵收)함으로 인하여 지불하는 지가보상(기타 소득에 속함)
- ○ 개인이 직무집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닐 경우, 그 유족이 법령 또는 규정에 근거하여 일회성적으로 수령한 撫恤金 또는 사망배상과 퇴직소득을 합산한 후 정액면세를 초과한 부분(기타 소득에 속함)

상기 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되었지만 소득이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이런 종류의 소득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력 임업 경영의 경우, 10년 정도가 지나야 성과를 볼 수 있는데 9년 동안은 아무런 수입이 없다가 전체 수입이 십년 째

되는 해에 집중적으로 실현된다면 제10년차 연도의 수입에 대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공평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상기 성격의 소득(變動所得)에 대하여 절반만 과세한다.

다. 공식형소득(公式型所得)

소득세의 과세객체는 소득이고 일반소득의 계산은 수입총액에서 당해 수입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원가 및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부 원가 및 비용은 계산(估算)이 어려우므로 수입의 일정한 율(백분율)로 그 소득금액을 추산해야 하는데 이를 공식형소득이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공식형소득이 있다.

- ○ 임대소득은 임대료수입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손실(損耗)과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소득으로 한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손실 및 비용에 관해서는 매 항목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항목별로 신고하지 않고 직접 임대료수입의 43%를 필요한 원가 및 비용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곧 공식형소득이다.
- ○ 각종 업무집행소득에 있어서 원가 및 비용을 계산·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재정부에서 공포한 執行業務者收入標準 및 費用標準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확인·계산한다.
- ○ 자력경작, 어업, 목축업, 임업의 원가 및 필요비용의 기준은 수입의 100%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0(零)이고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영리사업소득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공식형소득이 있다.

- ○ 영리사업조직의 장부기재근거(帳載簿據)가 완전(完備)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는 동종 업종의 이익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확정한다.
- ○ 본부가 대만 경외에 있는 영리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서 국제운송, 공사도급경영건설, 기술서비스제공 또는 기계설비의 임대 등의 업무를 경영할 때, 그 원가

비용의 분담(分攤)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만에서의 영업액의 10%(국제운송업무) 또는 15%(그 외 업무)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所得稅法 §25).

○ 국외영화사업조직이 대만에 영업대리인을 설치할 경우, 대만에서의 영업수입의 50%를 소득금액으로 한다(所得稅法 §26).

라. 물가지수연동법(物價指數連動法)

대만은 통화팽창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명목소득의 증가로 인한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면세액, 기준공제액, 급여소득 특별공제액, 장애특별공제액, 퇴직소득 및 과세구간(級距) 금액 등에 대하여 물가지수연동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면세액, 기준공제액, 급여소득 특별공제액, 장애특별공제액, 퇴직소득 등 항목금액은 매번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번 조정연도의 지수에 비해 3% 이상 상승 시 상승 정도에 따라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금액은 천원을 단위로 천원 미달 시에 백원 단위 숫자를 사사오입(所得稅法 §5, §5-1 및 §14)한다. 과세구간(級距)의 금액은 매번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번 조정연도에 비해 지수상승누계가 10% 이상에 도달할 경우 상승 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금액은 만원을 단위로 하고, 만원 미달 시에는 천원 단위 숫자에 대하여 사사오입을 진행한다(所得稅法 §5). 면세액, 기준공제액, 급여소득 특별공제액, 장애특별공제액은 소득수준 및 기본생활 변동상황에 따라 매 3년에 한번 평가한다(所得稅法 §5-1).

마. 분리과세

분리과세라 함은 어떤 소득을 종합소득총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기타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며(일반적으로 비례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지만, 다만 토지를 매각한 부가가치이득〈增值利得〉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 원천지과세방식을 취하고 당해 부분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결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대만에서 현재 분리과세방식을 취하는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단기채권(短期票券)

단기채권이 만기 후의 지불금액이 처음의 발행판매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이자소득으로서 20%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개인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하지 않는다(所得稅法 §14).

2)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보유한 공채, 회사채 및 금융채권의 이자소득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보유한 공채, 회사채 및 금융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종합소득총액에 합산하지 않는다(所得稅法 §14-1).

3) 당첨금(中獎獎金)

정부에서 주관하는 복권당첨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20%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다시 종합소득총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지 않는다(所得稅法 §14).

4) 토지매각이익(出售土地之增益)

토지매각이익은 재산교역소득의 하나로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대만에서는 토지증치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소득총액에 넣어 계산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증치세는 소득세의 분리과세로 되어 있다.

5) 영리사업소득세에도 분리과세와 유사한 규정이 있음

분리과세는 영리사업소득세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본점이 대만 경외

에 있는 영리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의 기타 영리사업조직에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배당 순소득(股利淨額) 또는 이익 순소득(盈餘淨額)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외에 별도로 영리사업소득금액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所得稅法 §24).

바. 종합소득세의 투자세액 공제(投資稅額抵減) 및 손익상계(盈虧互抵)

1) 투자세액 공제(投資稅額抵減)

경제발전에 중대한 효과와 이익이 있고 리스크가 크며 부양 필요성이 큰 중요한 전략성 신흥 산업의 개척 및 확장을 격려하기 위하여 개인이 당해 중요한 전략성산업회사에서 발행하는 기명주식을 원시구매(原始認股) 또는 응모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각 연도 종합소득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개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가격의 10%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납부세액을 공제하되, 매년 공제금액은 당해 개인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최종 연도의 공제 금액은 이 한도에 제한받지 않는다.
- ○ 전항의 공제율(抵減率)은 2000년 1월 1일부터 매 2년마다 1포인트씩 낮춘다.

2) 손익상계(盈虧互抵)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종합소득총액을 계산 시에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가 두 개 이상의 영리사업을 경영하고 그 중 손실을 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확정(核定)한 손실을 조사확정(核定)한 영리소득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당해 공제는 영리사업조직이 모두 “청색신고서(藍色申報書)”를 사용하여 제때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사. 자가거주주택을 재구매(重購)할 경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

납부의무자가 자가거주주택을 매각한 후 당해 재산교역소득 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액과 관련하여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가거주주택을 재구매하는 경우, 그 가격이 원판매가격을 초과하면 자체 거주용주택의 이전등기를 완료한 연도의 종합소득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원재산교역소득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재산교역손실에서 공제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가 자체거주용주택을 먼저 구매한 후 다시 원주택을 매각했을 경우에도 2년 이내라면 공제 또는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所得稅法 §17-2).

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우선 자체거주용주택(토지 불포함)을 매각한 재산교역소득을 포함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 다음에 자체거주용주택(토지 불포함)을 매각한 재산교역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 상기 양자를 상쇄(相減)하면 당해 재산교역소득으로 인하여 증가한 소득세액이 바로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세액의 上限이다.

아. 세액의 계산

독신 또는 부부소득세액을 합산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소득총액 = 10대 유형 소득의 합계 (영리소득 + 업무집행소득 + 급여소득 + 이자소득 + 임대소득 및 권리사용료소득 + 自力耕作漁牧林鑛소득 + 재산교역소득 + 경기시합 및 복권당첨 활동의 당첨금 + 퇴직소득 + 기타소득)

② 종합소득총액 - 免稅額 - 공제액 = 종합순소득(과세소득금액라고도 함)

③ 종합순소득 × 세율 - 累進差額 = 납부세액

④ 납부세액 - 투자공제세액 - 자가거주주택 재구매 공제세액 - 원천징수(扣繳)세액 및 원

천징수(扣繳)가능세액 - 대륙지구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공제가능세액 = 결산신고 해야 할 자진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6. 조세우대

가. 면제

다음 각 항의 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所得稅法 §4).

○ 현역군인의 봉급(薪餉)

○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초등학교 및 사립중학교 교직원의 임금 급여

○ 상해 또는 사망의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취득한 배상금

○ 개인이 직무집행으로 인한 사망 시, 그 유족이 법령 또는 규정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撫恤金 또는 사망보상. 개인이 직무집행이 아닌 원인으로 사망 시 그 유족은 법령 또는 규정에 근거하여 일회성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撫恤金 또는 사망보상을 수령하고 이 경우 일회성 또는 연간 정기수령총액을 퇴직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며, 그 수령총액은 퇴직소득의 공제한도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공공기관, 교육기관, 군대, 경찰 인원 및 노동자가 수령하는 정부가 발급하는 특별지원비용(特支費), 실물배급 또는 그 대금 및 주택임대료수당(房租金津帖). 공영기구 복무인원이 수령하는 단일임금봉급(單一薪俸) 중 실물배급 및 주택임대료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 법령규정에 근거하여 강제 성격이 있는 저축예금의 이자.

○ 인신보험, 노동자보험 및 군대, 공공기관, 교육 보험의 보험급부.

○ 대만 정부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교육, 문화, 과학연구, 단체 또는 기타 공공 및 사립 조직이 연수(進修)·연구를 장려하거나 또는 과학,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연구·시찰(考察)보조비용 등. 다만 수령하는 장학금 또는 보조비용이 수급인(授與人)이 노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수라면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각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 및 기타 외교관 대우를 받는 인원의 직무상의 소득

○ 각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 영사관 및 그 부속기관에 주재하는 외교관 · 영사관 및 외교관 대우를 받는 인원 이외의 기타 각 해당국 국적 직원의 직무상 소득. 다만 각 해당 국가가 대만의 당해 국가 주재 대사관 · 영사관 및 그 부속기관 내의 대만 국적 직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외로부터 초빙한 기술인원 및 대학 교수, 외국의 정부기관, 단체, 교육, 문화기구와 대만의 정부기관, 단체, 교육기구가 체결한 기술합작 또는 문화교육교환약정에 근거하여 대만 경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외국의 정부기관, 단체 또는 교육, 문화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급여

○ 개인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이 가정일상용 의복, 가구를 판매할 경우의 교역소득. 개인이 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股分有限公司)의 주식 또는 회사채를 매각할 경우 그 교역소득금액 가운데서 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

○ 1990년 1월 1일 부터 증권교역소득은 소득세 부과징수를 중지하고 증권교역손실 역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所得稅法 §4-1).

○ “선물교역세조례(期貨交易稅條例)”에 의하여 선물교역세를 징수하는 선물교역소득은 소득세의 징수를 잠정 중지하고, 그 교역 손실 역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所得稅法 §4-2).

○ 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 당해 부분의 소득은 규정에 근거하여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총액에 넣어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영리사업조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동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인의 원고료, 인세, 악보, 작곡, 편곡, 만화 및 연설의 시간당 비용의 수입. 다만 연간 합계 금액이 18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 정부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학술단체가 취급하는 각종 시험 및 각급 공립, 사립학교에서 취급하는 입학시험에서 試務 업무인원에게 발급하는 각종 업무비용

○ 공공시설보류지가 "都市計劃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됨으로 인하여 취득한 加成補償
○ 영리사업조직에서 재산을 제공하여 공익신탁을 설립하거나 규정에 부합되는 공익신탁에 기부 또는 가입한 경우, 수익인이 향유하는 당해 신탁이익의 권리가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所得稅法 §4-3).

나. 면세액(所得稅法 §17)

납세의무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본인, 배우자 및 다음 규정에 부합되는 부양가족 면세액을 공제한다. 납세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직계가족이 70세 이상일 경우 면세액을 50% 증액한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면세액은 매번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번 조정연도에 비해 지수 상승이 누계 3% 이상에 달할 시 재정부에서 상승 정도에 따라 계산, 조정 후 이를 공지한다. 물가지수연동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2009년도에 면세액을 1인당 연간 新台幣(NT$) 82,000원으로 증액조정하였고, 70세 이상일 경우는 新台幣(NT$) 123,500원으로 증액조정하였다. 납세의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할 경우, 급여소득을 구분 계산한 자의 면세액을 다시 공제해서는 안 된다.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60세 이상이고 생계능력이 없으며 납세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
○ 납세의무자의 자녀로서 20세 미만, 또는 20세 이상이지만 재학중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생계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경우. 따라서 자녀가 2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어도 단독으로 신고하지 못한다. 단 기혼자는 제외이다.
○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의 同胞형제, 자매가 20세 미만이거나 또는 20세 이상이지만 재학중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생계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경우

○ 납세의무자의 기타 친족 또는 가족(숙부, 조카, 손자, 외조카, 외삼촌 등)이 민법 제1114조 제4항(家長家屬相互間) 및 제1123조 제3항(친족이 아니지만 영구적인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한 집에 동거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간주함)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고 생계능력이 없으며 납세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경우. 단 부양을 받는 자의 부친 또는 모친이 현역군인 또는 탁아소, 유치원, 공립 · 사립 초등학교의 교직원일 경우 공제할 수 없다(不得列報減除).

연도 중에 결혼 또는 출산에도 불구하고 그 면세액은 모두 전액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그 면세액 및 기준공제액의 공제는 각각 연도 사망 전의 일수 또는 대만 경내에서의 거주일자가 전 연도 일수에서 차지하는 비례에 따라 환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所得稅法 §17-1). 배우자가 합계하여 결산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면세액 및 기준공제액의 공제는 모두 전액 계산하여 공제한다(所得稅法施行細則 §25-1).

다. 공제액(扣除額)(所得稅法 §17)

공제액은 일반공제액 및 특별공제액을 포함한다. 납세의무자는 일반공제액 중의 표준공제액 또는 열거공제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고 동시에 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각종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공제액

표준공제액 및 열거공제액으로 나뉘는데 양자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표준공제액 : 표준공제액은 독신자의 경우 新台幣(NT$) 76,000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新台幣(NT$) 152,000원을 공제한다.

○ 열거공제액 : 다음 각종 비용 중 확실한 증빙 또는 영수증이 있고,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신고할 수 있다.

① 기부 :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구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총액은 최고 한도가 종합소득총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국방, 勞軍과 관련한 기부 및 정부에 대한 기부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보험료 : 납세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친족의 인신보험, 노동보험 및 군대·공공기관·교육기관 보험의 보험료는 1인당 매년 공제액수가 新台幣(NT$) 2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전국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의 보험료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의약 및 생육비용 :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의약비 및 생육비용은 공립병원 및 진료소, 公務人員保險特約病院 및 진료소, 노동자보험특약 병원 및 진료소, 전국민건강보험특약병원(全民健康保險特約病院) 및 진료소 또는 재정부에서 그 회계기록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인정한 병원에 한한다. 단, 보험급부를 받은 부분은 공제하지 못한다.

④ 재해손실 :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불가항력적인 재해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험배상 또는 구제금을 받은 부분은 공제하지 못한다.

⑤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購屋借款利息) : 납세의무자가 자체 거주용주택 구매로 인해 금융기구에 대출을 받아 지불한 이자에 관하여 매 신고인(申報戶)당 매년 공제금액을 新臺幣(NT$)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저축투자특별공제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저축투자특별공제금액은 상기 주택구매 차입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즉 주택구매차입금이자지출(ZK)에서 저축투자특별공제액(ZD)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0 \leq ZK-ZD \leq 300,000$). 납세의무자가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차입금이자를 공제할 경우 주택 한 채를 한도로 한다. 주택구매차입금이자의 공제는 다음의 각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납세의무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등기 및 소유할 경우.

ⓑ 납세의무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과세연도에 당해 주소에 호적등기를 하였고, 또한 임대, 영업 또는 업무집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구에 주택구매대출로 인한 당해 연도 이자를 지불한 증빙서류(單據)가 있을 경우(所得稅法施行細則 §24-3)

⑥ 주택임대료지출 :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와 부양직계친족이 대만 경내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자체 거주하고 또한 영업과 업무집행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가 지출한 임대료는 매 신고인(申報戶)당 매년 공제액을 12만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택구매차입금이자가 있음을 신고한 경우는 공제할 수 없다. 주택임대료지출공제액을 신고할 경우 다음의 증명문서를 별첨해야 한다,

ⓐ 주택임대 및 임대료 지불 증명문서 : 임대계약서 또는 기타 충분한(足資) 증명문서 및 금액지불증명 사본

ⓑ 임대주택의 자체거주 증명문서 : 납세의무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직계친족이 과세연도에 당해 주소에 호적등기를 한 증명 또는 납세의무자가 임대한 주택을 과세연도 내에 자체거주하고 또한 영업 또는 업무집행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기재한 切結書(所得稅法施行細則 §24-6)

⑦ 정당, 정치단체 및 경선 후보자에 대한 기부(捐贈)

ⓐ 개인이 정치헌금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 정치단체 및 경선 후보자에 대한 기부는 매 신고인당 공제총액은 당해 연도 신고한 종합소득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총액은 新臺幣(NT$)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당에 대한 기부는 정당이 추천한 경선후보자가 당해 연도 입법위원선거의 평균득표율이 2%에 미달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연도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 지난번 선거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창립 정당일 경우 다음번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 동일 경선후보자에 대한 매년 기부총액은 新臺幣(NT$)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경선후보인의 경선경비

경선후보인이 선거공고일로부터 투표일 후 30일 내에 경선활동과 관련하여 지불한 경선경비는 규정된 최고한도액 내에서 접수한 기부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문서를 별첨해야 한다.

ⓐ 정치헌금전문구좌를 개설하여 정치헌금을 접수한 경우, 감찰원에 신고한 회계보고서 사본(影本) 및 경비지출증빙의 사본(影本) 또는 증명문서를 별첨하여야 한다.

ⓑ 정치헌금전문구좌를 개설하지 않고 정치헌금을 접수한 경우, "政治獻金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항목에 근거하여 경선경비를 각각 열거하고 경비지출증빙의 사본(影本) 또는 증명문서를 별첨하여야 한다.

⑨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 : 개인이 "私立學校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사립학교와 학기금회(學基金會)를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는 그 금액이 종합소득총액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영수증 正本을 별첨하여 조사·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2) 특별공제액

① 재산교역손실 :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 부양가족의 재산교역손실은 매년 공제액이 당해 연도 신고 재산교역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당해 연도 재산교역소득이 없을 경우의 공제 또는 공제 부족의 경우 향후 3개 연도의 재산교역소득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급여소득 특별공제액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세액신고납부를 합산신고하는 개인에게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 1인당 매년 新台幣(NT$) 104,000원을 공제하고 그 급여소득이 新台幣(NT$) 104,000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급여소득금액을 전부 공제한다. 배우자의 급여소득은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경우 매년 新台幣(NT$) 104,000원을 공제하고 신고 급여소득이 新台幣(NT$) 104,000원에 미달할 경우 급여소득 전액을 공제한다.

③ 저축투자 특별공제액 : 납세의무자 및 그와 합산신고 및 납부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금융기관의 저금, 공채, 회사채, 금융채권의 이자, 저축성격 신탁자금의 수익 및 회사가 공개발행하여 상장한 記名주식의 주식배당의 합계가 연간 新台幣(NT$) 27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액을 공제하고, 新台幣(NT$) 2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新台幣(NT$) 27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兩稅合一制度 실시 후 1999년 1월 1일부터 회사공개발행 및 상장 記名주식의 주식배당을 취득한 경우 저축투자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所得稅法 §17-3). 다만 "郵政貯蓄法"에서 규정한 면세 存簿儲金利子 및 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

세의 단기채권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장애특별공제액 : 납세의무자 및 그와 합계하여 신고, 납부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심신장애자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장애자 또는 정신위생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환자일 경우 1인당 매년 新台幣(NT$) 104,000원을 공제한다.

⑤ 教育學費特別控除 : 납세의무자의 자녀가 전문학교(大專) 이상의 학교에 재학할 경우 자녀교육비를 매년 新台幣(NT$) 25,000원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空中大學), 전문학교(專校) 및 이미 정부보조를 받았거나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학비특별공제액을 신고할 경우 학비납부영수증의 사본(影本)을 별첨하여야 한다(所得稅法施行細則 §24-5).

3) 경제발전에 중대한 효과와 이익이 있고 위험성이 높지만 육성이 필요한 새로이 떠오르는 중요전략성산업의 창립 또는 확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이 原始認股(최초 청약한 주식) 또는 당해 신흥의 중요전략성산업의 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주식을 배정받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각 연도의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개인이 그가 취득한 해당 주식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매 연도의 공제금액은 당해 개인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다만 마지막 연도의 공제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개인이 原始認股하거나"獎勵民間參與交通建設條例"에서 장려하는 민간기구가 창립 또는 확충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기명주식을 배정(應募) 받은 경우, 그 주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그가 취득한 당해 주식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공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이후 4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당해 투자공제에 있어서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은 당해 개인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다만 마지막 연도의 공제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獎勵民間參與交通建設條例 §33).

7. 징수관리

가. 결산신고 및 자진납부(自繳)

① 결산신고 처리 시간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원 바코드(二維條碼) 또는 인터넷(網際網路)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결산신고서(結算申報書)를 작성하여 호적 소재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이전 연도의 개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결혼 또는 이혼할 경우 합산 또는 구분 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분거(分居) 상태여서 합산(合併)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신고서에 배우자의 성명 및 국민신분증 통일번호(統一編號)를 기입하고 분거를 밝혀야 한다. 부양친속이 당해 연도에 20세 이상일 경우에도 합산신고(合併) 또는 구분 신고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②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자

대만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 총액이 당해 연도에 규정한 면세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결산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扣繳稅款) 및 공제가능세액(可扣抵稅額)의 환급(退還)을 신청할 경우는 여전히 신고를 해야 한다(所得稅法 § 17).

③ 과세단위

종합소득세의 과세단위에 관하여 각국의 세법 규정은 모두 달라서 개인단위제(Individual Unit System)를 채택하여 가족 구성원이 단독으로 신고 과세하는 경우와, 소비단위제(Consumption Unit System)를 채택하여 부부 및 부양자녀가 소득세를 합산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대만은 소비단위제를 위주로 하지만 부부의 급여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을 구분·계산(分開計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납세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면세액의 차

감을 신고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은 모두 합산신고해야 하고, 부부가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소득에 관하여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합산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급여소득에 관하여 규정에 따라 세액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 당해 급여소득자의 면세액 및 급여소득의 특별공제액은 세액을 구분 계산하는 급여소득에서 공제해야 하고, 기타의 면세액 또는 공제액은 세액을 구분 계산하는 급여소득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며 모두 납세의무자가 공제를 신고해야 한다(所得稅法 §17).

④ 간이신고서(簡式申報書) 또는 일반신고서(一般申報書)

종합소득세의 신고서는 간이신고서와 일반신고서 두 가지가 있다. 소득에 임금급여, 이자, 회사에서 분배한 주식배당, 합작사에서 분배한 이익, 職工福利委員會로부터 받는 福利金 및 연간수입이 新台幣(NT$) 18만원 이하인 원고료에 관하여 표준공제액을 채택하고, 투자공제세액(投資抵減稅額), 자가주택의 재구매(重購自用住宅) 공제세액 또는 대륙지역 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신고서를 사용하고, 기타의 경우는 일반신고서를 사용한다.

⑤ 세금의 납부 또는 환급

납세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세액을 결산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신고부양가족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5월 31일 만기의 세금납부출금위탁서〈繳稅取款委託書〉를 작성), 은행자동입출금기 또는 수표,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결산신고에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배우자나 신고부양가족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세액환급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나. 원천징수(扣繳)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扣繳)는 당해 소득의 지불인(給付人, 扣繳義務人)이 소득 지불 시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扣繳率)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所得稅法 §88).

1) 원천징수의 면제

다음 소득은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① 금액이 비교적 작은 소득

㉮ 지불하는 소득에 관하여 매번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新臺幣(NT$) 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동일 납세의무자의 연간 지불액에 대하여 新臺幣(NT$) 1,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소득(분리과세)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단기채권의 이자
- "金融資産證券化條例", "不動産證券化條例"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자산기초증권의 이자
- 공채, 회사채 및 금융채권의 이자
- 정부 주관 복권의 당첨금
- 고발 또는 적발 상금(各種所得扣繳率標準 §11)

㉯ 정부 주관 복권 당첨금과 관련하여 매 聯(組, 注)의 당첨금이 新臺幣(NT$) 2,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2).

㉰ 개인의 원고료, 인세, 악보, 작곡, 편극, 만화, 연설의 시간당 수입(鍾點費)에 있어서 매번 지불액이 新臺幣(NT$) 5,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3).

② 면세소득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각종 소득, 세금을 면제하는 투자수익 및 郵政存簿貯金의 이자 등은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그 이유는 법에 따라 면세하는 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③ 납세의무자 및 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금융기관 예금의 이자 및 저축 성격이 있는 신탁자금의 수익이 있는 경우, "저축원천징수면제증실시판법(貯蓄免扣證實施辦法)"의 규정에 따라 면제증(免扣證)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소득 지불 시에 등기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누계하여 新臺幣(NT$) 27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郵政存簿貯金의 이자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2)

④ 군대,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퇴직금우대저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2)

⑤ 영업수입

일방의 지불(給付)이 상대방의 영업수입일 경우,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교역의 회수가 빈번하고 이익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징수·납부 쌍방의 곤란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⑥ 원가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成本計算不易)

예를 들면, 재산교역소득에 있어서 구매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⑦ 적당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그 이유는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의 규정에 관하여 통상 잘 모르기에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면 많은 곤란과 불편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세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어렵고, 따라서 개인이 방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2) 주식 배당에 따른 원천징수

兩稅合一제도의 실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회사가 대만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영리사업에 대하여 주식을 배당(股利, 합작사는 이익을 분배)할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이 1998년도 이후 또는 1997년도 이전의 이익에 속하는지를 불문하고 지불 시에 모두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다만, 1997년도 이전에 속하는 주식배당 또는 이익을 분배할 경우, 원천징수를 할 필요는 없으나 여전히 규정에 따라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를 해야 한다.

3)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세율(扣繳率)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의 규정에 따르면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의무자가 대만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또는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영리사업일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2).

㉮ 임금급여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원천징수하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자체로 선택한다.

○ 월간 급부 총액에 관하여 "薪資所得扣繳辦法(급여소득원천징수방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부두 · 역의 운반공 및 건축업 등에 있어서 일당으로 계산하고 일당으로 지급하는 임시공의 경우, 그 임금은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월간 급부총액의 6%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커미션은 지급액에 따라 10%를 원천징수한다.

㉰ 이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단기채권의 이자는 지급액에 따라 20%를 원천징수한다.

○ 군대,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퇴직금우대예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金融資産證券化條例" 및 "不動産證券化條例"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자산기초증권의 이자는 이자 금액의 6%를 원천징수한다.

○ 공채, 회사채, 금융채권의 이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 기타 각종 이자는 모두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 납세의무자 및 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금융기관 예금이자 및 저축 성격이 있는 신탁자금의 수익이 있을 경우, "저축원천징수면제증실시판법(貯蓄免扣證實施辦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면제증(免扣證)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급부 시에 등기하게 할 경우, 누계하여 新台幣(NT$) 27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郵政存簿貯金의 이자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대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 권리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 경기, 시합 복권의 당첨금은 총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정부주관 복권의 당첨금에 있어서 매 聯(組, 注)의 상금 금액이 新臺幣(NT$) 2,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매 聯의 상금 금액이 新臺幣(NT$) 2,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 업무집행의 보수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 퇴직소득은 지급액에서 정액면세를 차감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 6%를 원천징수한다.

㉳ 고발 또는 적발 상금은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 대만지역에서 거주 · 체류한 일자가 183일을 초과하는 대륙지역 인민과 대만지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대륙지역의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대만지역 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상술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各種所得扣繳率

標準 §2).

② 납세의무자가 대만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아니거나 또는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리사업일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3).

㉮ 주식배당금, 이익

대만 경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주식배당금, 합작사로부터 받는 이익, 동업조직 영리사업의 동업자가 매년 분배받는 이익, 독자조직 영리사업의 자본주의 매년 소득의 이익은 지급액, 분배액 또는 소득금액에 따라 30%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華僑回國投資條例(화교귀국투자조례)" 또는 "外國人投資條例"에 따라 투자를 신청하고 비준을 받는 경우, 투자사업으로부터 취득 또는 분배받는 이익에 대해서 원천징수의 무자는 지급 시 지급액 또는 분배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임금급여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정부가 외국에 파견 주재하는 업무인원이 정부가 발급하는 임금급여를 수령할 경우 월간 급부총액이 新臺幣(NT$)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를 원천징수한다.

㉰ 커미션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 이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金融資産證券化條例" 및 "不動産證券化條例"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자산기초증권의 이자는 이자금액의 6%를 원천징수한다.

㉲ 임대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 권리사용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 경기, 시합 복권 당첨금

총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정부 주관 복권의 당첨금은 매 聯(組, 注) 상금 금액이 新臺幣(NT$) 2,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 업무집행의 보수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개인의 원고료, 인세, 악보, 작곡, 편극, 만화, 연설의 시간당 수입(鍾點費)의 수입은 매번 지급액이 新臺幣(NT$) 5,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 기타 소득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 및 영업대리인이 없는 영리사업에 관하여 전 ㉮항에 열거한 각종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 퇴직소득

지급액에서 정액면세를 차감한 후의 잔액에 따라 20%를 원천징수한다.

㉱ 고발 또는 적발 상금은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 대만지역에서 거주·체류한 일자가 183일 미만의 대륙지역 인민과 대만지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륙지역의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대만지역 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전항의 각종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③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 및 영업대리인이 없는 영리사업, 대만 경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 및 영업대리인이 없는 영리사업과 관련하여 재산교역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의 20%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만 경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 재산교역소득 또는 漁·牧·林·礦業 및 自力耕作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의 20%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의 20%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9).

④ 규정에 따라 투자를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 자

본부가 대만 경외에 있는 영리사업에 있어서 국내의 기타 영리사업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배당금의 순소득(股利淨額) 또는 순이익(盈餘淨額)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귀국화교투자조례(華僑回國投資條例)" 또는 "外國人投資條例"에 따라 투자를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 경우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9-1).

⑤ 규정에 따라 대만지역에서의 투자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

㉮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 대만 지역에서 거주·체류한 일자가 183일 미만인 대륙지역의 인민이 규정에 따라 대만지역에서의 투자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가 분배 받는 주식배당금의 순소득 또는 순이익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에 지급액 또는 분배액의 30%를 원천징수한다.

㉯ 대륙지역의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규정에 따라 대만지역에서의 투자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가 분배받는 주식배당금의 순소득(股利淨額) 또는 순이익(盈餘淨額)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에 지급액 또는 분배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 대륙지역의 인민,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제3지역에 투자한 회사가 규정에 따라 대만지역에서 투자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가 분배받는 주식배당금의 순소득(股利淨額) 또는 순이익(盈餘淨額)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에 지급액 또는 분배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3-2).

⑥ 국제운송사업

본부가 대만 경외에 있는 영리사업이 대만 경내에서 국제운송, 건설도급공사, 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계설비의 임대 등 업무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원가비용의 분담 계산이 곤란한 경우, 財政部의 비준 또는 확정을 거쳐 그 소득금액은 대만 경내의 영업수입의 10% 또는 15%로 계산하며, 납부해야 할 영

리사업소득세는 영업대리인 또는 지급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며, 대만 경내의 영리사업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7).

⑦ 국외영화사업

대만 경내에 분점 · 지점이 없고, 영업대리인이 영화를 임대하고 받은 수입은 그 절반을 대만 경내의 영리사업소득금액으로 하며, 대만 경내의 영리사업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8).

⑧ 신용공여(授信)수입

국제금융업무의 지점이 대만 경내의 개인, 법인,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신용을 공여하고 얻은 수입이 있으면, 신용공여수입총액에 대해서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신고납세해야 한다(各種所得扣繳率標準 §10).

〈표 2-Ⅰ-5〉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소득의 유형	원천징수세율	
	대만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 및 고정사업장이 있는 영리사업	대만 경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및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리사업
주식배당, 이익	–	30% 또는 20%
업무집행보수	10%	20%
임금급여	1) 6% 2) 급여소득 공제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20%
이자	A. 10% B. 군, 공공기관, 교육 퇴직금 우대 예금의 이자는 원천징수 면제 C. 단기채권의 이자는 20%에 따라 분리과세 D. 金融資産證券化條例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자산기초증권의 이자는 6%에 따라 분리과세 E. 공채, 회사채, 금융채권의 이자는 給付額에 따라 10%를 공제	A. 20% B. 왼쪽과 같음
임대료	10%	20%
커미션	10%	20%
권리사용료	10%	20%
경기, 시합 및 복권의 당첨금	A. 10% B. 정부 주관 복권 당첨금의 경우 聯獎額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20%에 따라 분리과세	A. 20% B. 거주자의 경우와 같음
재산교역소득		20%에 따라 신고납세
漁牧林鑛 自力耕作의 소득		20%에 따라 신고납세
기타 소득		20%
퇴직소득	定額免稅를 차감한 후 6%에 따라 원천징수	定額免稅를 차감한 후 20%에 따라 원천징수
고발 또는 적발 賞金	給付額에 따라 20%를 원천징수	給付額에 따라 20%를 원천징수
국제운송, 건축도급공사, 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계설비 임대 등의 업무자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	25%(財政部의 비준을 받아 영업수입의 10% 또는 15%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국외영화사업에 관하여 법에 따라 원천징수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	20%(임대수입〈片租收入〉)의 50%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다. 장려 및 처벌

1) 고발상금(擧發獎金)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은닉, 과소신고 또는 사기 및 기타 부정당한 행위로 세금을 회피하는 상황이 있음을 고발 또는 적발하여 조사 확인 결과 사실임이 입증되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벌금의 20%를 고발자에게 고발상금으로 지급(奬給)해야 하고, 또한 고발자에 관하여 절대비밀유지의무를 가진다(所得稅法 §103).

2) 체납금

납세의무자가 기한을 초과하여 세금 · 연체신고금(滯報金) 및 태만신고금(怠報金)을 납부하는 경우, 매 2일에 1%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고,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당국(稽徵機關)에서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하는 외에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자율에 따라 일별 이자를 가산한다(所得稅法 §112).

3) 과소, 누락신고에 대한 처벌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를 처리하였으나 과세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누락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所得稅法 §110).

4) 결산신고 미처리에 대한 처벌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자체로 결산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할 소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보충징수해야 하는 외에 보충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所得稅法

§110).

5) 일정 금액 이하의 처벌 면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미신고 또는 과소 · 누락신고하는 경우, 조사 확인의 결과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할 소득의 금액이 新臺幣(NT$) 25만원 이하 또는 누락세액이 新臺幣(NT$) 15,000원 이하이고, 또한 다음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한다.

㉮ 부부소득 구분신고로 소득세를 탈루하는 경우
㉯ 면세액 또는 공제액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

Ⅱ. 영리사업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

1. 서론

영리사업소득세는 영리사업의 소득(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이다. 그 성격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유사하다. 다만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회사법인(公司法人) 외에 독자기업(獨資), 동업기업(合夥) 및 합작사(合作社)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비교적 넓다.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屬人主義를 채택하지만 屬地主義를 겸하여 채택하기도 한다. 영리사업조직의 회계기초와 관련하여 회사조직일 경우는 권리책임발생주의(權責發生制)를 채택하고 비회사조직일 경우는 기존의 습관 또는 영업범위의 협소로 인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여 현금수취지불제(現金收付制)를 채택한다(所得稅法 §22).

대만은 兩稅合一제도를 실시한 후 영리사업조직이 1998년도 또는 그 이후 연도의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이익분배 시에 주주(股東), 社員, 동업자(合夥人) 또는 기업주(資本主)가 분배받은 주식배당금총액 또는 이익총액에 포함된 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결산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所得稅法 §3-1). 이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고, 또한 영리사업소득세를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세(扣繳稅)로 만들기도 하였다.

2. 납세의무자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사업조직이고 과세객체는 소득이다. 따라서 영리사업조직이 곧 영리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 과세대상

가. 과세대상

대만 경내에서 경영하는 영리사업조직은 모두 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所3). 영리사업조직은 공영(公營), 민영(私營), 또는 공영 및 민영 합작경영(公私合營)방식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상호(營業牌號) 또는 장소를 구비한 독자기업 · 동업기업 · 회사 및 기타 공업 · 상업 · 농업 · 임업 · 어업 · 목축업 · 광업 · 야금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사업조직을 말한다(所得稅法 §11).

나. 과세범위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 속인주의

대만 "所得稅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사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한다. 본부가 대만 경내에 있는 영리사업조직은 대만 경내외의 모든 영리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같은 항목이지만 경외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중복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의 세법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원천지국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동일 연도의 납세증빙을 제출하고 동시에 소재지 대만 대사관, 영사관 또는 기타 대만 정부 인허가기구의 증명(簽證)을 취득한 후 영리사업소득의 결산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제액수는 국외소득을 합산한 후 국내의 적용세율로 계산하여 증가된 납부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所得稅法 施行細則 §2).

① (국내소득액 + 국외소득액) × 세율 - 누진차액
= 영리사업조직 소득액의 납부세액
② (국내소득액 × 세율) - 누진차액 = 영리사업조직 국내소득액의 납부세액
③ 영리사업조직 소득액의 납부세액 - 영리사업조직 국내소득액의 납부세액
= 국외소득을 합산한 후 증가한 결산납부세액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만지역의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구가 대륙지역의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대만지역의 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해 조직이 대륙지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만지역의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구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제3지역에 투자 · 설립한 회사 또는 사업조직을 통하여 대륙지역에서 투자에 종사함에 있어서 제3지역의 회사 또는 사업에 관한 투자수익을 신고 시, 대륙지역의 회사 또는 사업조직이 분배하는 투자수익을 이전투자(轉投資)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대륙지역의 원천소득으로 보고 상술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대륙지역 투자수익에 관하여 대륙지역 및 제3지역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합산 공제액은 대륙지역의 원천소득을 합산한 후 대만지역의 적용세율로 계산하여 증가한 납부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 밖에, "홍콩 · 마카오 관계조례(香港澳門關係條例)"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만지역의 법인 ·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홍콩 또는 마카오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대만지역의 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해 조직의 기타 국외소득과 함께 소득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수는 홍콩 또는 마카오의 소득 및 국외소득을 합산한 후 (대만의) 적용세율로 계산하여 증가한 납부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속지주의

대만 "所得稅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사업조직의 본부가 대만 경외에 있을 경우,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영업대리인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만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대만 경내의 영리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所得稅法 §3).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지주의를 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세율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의 기존의 20%에서 2010년도부터는 17%로 인하되었다. 그 과세개시액(起徵額), 과세구간(課稅級距) 및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所得稅法 §5).

① 연간 과세소득이 新臺幣(NT$) 12만원 이하일 경우,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연간 과세소득액이 新臺幣(NT$)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소득에 대하여 17%로 과세한다. 다만 그 납부세액은 당해 영리사업조직의 과세소득금액이 1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2-II-1〉 영리사업소득세의 세율

(단위: 新臺幣(NT$), %)

과세구간	과 세 소 득	세 율
1	12만원 이하	면제
2	12만원 초과	17

5. 납부세액의 계산

가. 회계연도

1) 曆年制와 非曆年制

회계연도는 역년제와 비역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역년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리사업조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기존의 습관 또는 영업계절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심사·비준을 거친 경우 시작일과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 영리사업소득세의 과세연도는 영리사업의 회계연도와 그 시작일 및 마감일이 동일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역년제 방식을 채택한다(所得稅法 § 11).

2) 非曆年制 각종 신고기한의 추산(推算)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결산신고기한은 역년제를 위주로 한다. 따라서 비역년제를 채택하는 영리사업조직은 반드시 각종 신고기한을 자체적으로 추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제출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령 4월제(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채택할 경우 그 결산신고기한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7월제(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를 채택할 경우 그 결산신고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리사업조직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납신고를 해야 하는데, 4월제를 채택할 경우 예납신고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고, 7월제를 채택할 경우의 예납신고기한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된다.

나. 일반소득금액의 계산

영리사업소득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 수입총액에서 각종 원가 비용, 손실 및 세금(稅捐)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純益額)을 소득액이라 한다. 영리사업조직이 단기채권(短期票券)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외에 별도로 영리사업소득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所得稅法 §24). 매매업(買賣業), 제조업 및 기타 노무공급 또는 신용관련 각 업종(信用各業) 소득금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所得稅法 施行細則 §31).

1) 매매업

① 매출 – (매출환불액 + 매출할인) = 순매출액
② 期初재고 + 〔입하(進貨) – (입하퇴출〈進貨退出〉 + 입하할인〈進貨折讓〉)〕 + 입하비용 - 期末재고 = 매출원가
③ 순매출액(銷貨淨額) – 매출원가(銷貨成本) = 매출 총이익(銷貨毛利)
④ 매출 총이익(銷貨毛利) – (판매비용 + 관리비용) = 영업순익(營業淨利)
⑤ 영업순익 + 비영업수익 – 비영업손실 = 순이익(純益額) (즉 소득액)

2) 제조업

① (期初재고〈期初存料〉 + 입하(進料) – 期末재고〈期末存料〉 + 직접인건비 + 제조비용 = 제조원가
② 期初미완성품재고조사(期初在製品盤存) + 제조원가 – 期末미완성품재고조사 = 완성품원가(製成品成本)
③ 期初완성품재고조사(期初製造成品盤存) + 완성품원가(製造品成本) – 기말완성품재고조사(期末製成品盤存) = 매출원가
④ 매출(銷貨) – 매출원가(銷貨成本) = 매출총이익(銷貨毛利)
⑤ 매출총이익 – (판매비용 + 관리비용) = 영업순익

⑥ 영업순익 + 비영업수익 – 비영업손실 = 순이익(즉 소득액)

3) 기타 노무공급 또는 신용 관련 각 업종

① 영업수익 – 영업원가 = 영업이익
② 영업이익 – 관리 또는 사무비용 = 영업순익
③ 영업순익 + 비영업순이익 – 비영업손실 = 순이익(즉 소득액)

다. 특수소득금액의 계산

1) 국제운송사업

소득세법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본부가 대만 경외에 있는 영리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서 국제운송, 건설공정도급, 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계설비의 임대 등 업무를 경영함에 있어서 그 원가 비용을 분담(分攤)하여 계산하기 곤란할 경우, 대만 경내에 지사 또는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財政部에 심사·비준(核准)을 신청하거나 또는 재정부에서 심사·결정(核定)할 수 있다. 국제운송업무는 대만 경내의 영업수입의 10%를, 기타 업무는 대만 경내의 영업수입의 15%를 대만 경내의 영리사업 소득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39조의 결손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만 경내의 영업수입은 국제운송업무를 경영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른다.

○ 해운사업

대만 경내로부터 승객과 화물(客貨)을 경외로 운송하므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부의 티켓금액(票價) 또는 운송비를 말한다.

○ 空運事業

① 여객운송(客運) : 대만 경내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만 경외 첫 도착지 사이의 운임(票價)을 말한다.

② 화물운송(貨運) : 화물을 운송하는 전 노정의 운송비를 말한다. 다만 화물을

싣고 수출(出口)하는 國際空運事業組織이 항로 제한 등 원인으로 비행 도중에 운송하는 화물을 기타 國際空運事業組織의 항공기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당해 國際空運事業組織이 실제 운송한 항로에 따라 운임을 계산한다(所得稅法 §25).

2) 국외영화사업

소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외영화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 지점(分支機構) 등이 없고 영업대리인을 통하여 영화를 임대한 수입은 그 절반을 대만 경내의 영리사업소득액으로 하여야 한다. 대만 경내에 지사가 있을 경우 영화를 임대한 원가는 임대료 수입의 45%로 계산할 수 있다(所得稅法 §26).

3) 할부판매

소비습관의 변화에 따라 현대의 소비자는 갈수록 할부교역을 이용하여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식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영리사업조직이 할부교역 상황에 부딪치는 경우도 나날이 빈번해지고 있다. 판매소득이 서로 다른 연도에 분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만은 "영리사업소득세 조사·확정 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제16조는 영리사업조직의 할부판매에 있어서 당기손익(當期損益)의 계산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전체 매출총이익법(全部毛利法)

판매연도 내의 전체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할부교역 재화의 전체 원가 포함)를 차감한 후 계산한다.

② 매출총이익 백분율법(毛利百分比法)

판매연도에 약정한 할부교역 재화의 판매가액 및 원가에 따라 할부교역의 총이익률(毛利率)을 계산하고, 이후 각 기간에 수취하는 기간별 가액은 동 비율에

따라 그 이익 및 분담해야 할 원가를 계산한다. 할부교역의 이익은 또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도 있다.

할부교역 미실현 총이익 연초 잔액 + 당해 연도 할부교역 총이익) ÷ (할부교역 외상매출금 연초 잔액 + 당해 연도 할부교역 총액

매출총이익 백분율법의 채택은 할부기간이 1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차액분담계산법(差價攤計法)

동 할부판매에 있어서 일반판매가격(現銷價格) 및 원가에 따라 당해 연도의 손익을 확정(核定)하는 외에, 그 약정 할부판매가액과 일반판매가격 간의 "差額"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이후 각 기간의 대금을 계속하여 수취한 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차액이익(差價利益)을 계산하여 당해 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한다.

약정할부판매가격 – 일반판매가격(現銷價格)) ÷ 약정할부판매가격 = 당해 연도에 계산해야 할 차액수익(當年度應列計差價收益)

④ 일반판매법(普通銷貨法)

일반판매가격(現銷價格) 및 원가에 따라 당해 연도의 손익을 산정(核計)하는 외에 약정(約載)할부판매가격이 일반판매가격(現銷價格)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실현 이자수입으로 보아 사후에 기간별로(分期) 이자법(利息法)에 따라 이자수입을 계산한다.

상기 각종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채택하면 당기(本期) 내에 변경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제품의 同期 할부판매의 손익은 모두 동일한 계산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른 종류의 제품은 규정에 따라 각기 다른 계산방법을 채택할 수 있지만 전 기간(全期)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할부판매의 손익을 계산해야 하고 중도에 변경해서는 안된다. 할부판매에 관하여 당기(本期)에 회수한 대금 이익(帳款利益)은 前期 판매 시에

본래 채택하였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계산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16).

4) 장기공사

영리사업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관련 공사손익의 계산은 완공비례법(完工比例法; 진행기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공사손익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완공법(全部完工法; 완성기준법)을 채택하여 완공연도에 다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 ○ 각 기간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 ○ 협의(合約)를 이행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원가와 期末완공 정도를 모두 예상할 수 없는 경우
- ○ 협의에 귀속된 원가를 분별(辨認)할 수 없는 경우

영리사업 도급공사에 관하여 전부완공법(全部完工法; 완성기준법)을 채택하여 공사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해를 넘길(誇年度) 경우에는 그 관리비용을 비용발생 연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연(遞延)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완공비례는 다음 방법을 채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공사원가비례법
  투입원가가 예상한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 공사진도비례법
  투입하는 공사시간 또는 인건비용이 예상 총공사시간 또는 총인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 산출단위(産出單位)비례법
  공사의 산출단위가 협의(合約)의 총단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 연도에 2개 이상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그 공사원가를 각기 계산하여야 하며, 분별이 어려워 장부조사로 그 소득액을 확정(查帳核定)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所

得稅法施行細則"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24).

라.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우선 그 소득액을 실제영업기간이 전체 기간(全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간 소득액을 환산하여, 규정된 세율에 따라 연간 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본래의 비례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산해야 한다. 영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所得稅法 §40).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다.

실제소득액 × 12/실제영업개월수 = 환산된 연간소득액
환산된 연간소득액 × 세율 − 누진차액 = 환산된 연간 납부세액
환산된 연간 납부세액 × 실제영업개월수/12 = 실제납부세액

마. 영업관례(常規)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

일부 영리사업조직의 경우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모회사와 자회사, 자매회사 등이다. 이들은 영업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교역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規避)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회사가 이익을 보고 자회사가 손실을 볼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총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회사에서 판매가격을 높여 모회사에게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모회사의 구입원가를 높이고 모회사 이익의 일부를 자회사에게 이전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43-1조에서는 "영리사업조직이 국내외 기타 영리사업조직과 종속관계 또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조직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상호간의 관련 수익, 원가, 비용과 손익의 분담 계산에 있어서 영리사업조직의 관례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당해 사업조직의 소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財政部에 보고하여 심사 · 비준을 받은 후 영업조직의 관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업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교역은 조사(查稽) 또는 입증이 모두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규정의 저지(嚇阻)작용은 실제 집행효과보다 더 강했고, 따라서

2004년 12월 28일에 "영리사업소득세가 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확정준칙(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제2편 제Ⅴ장 참조)을 공표하여 영업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교역의 조사확정(查核)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바. 청산소득

1) 결산 또는 청산 신고(所得稅法 §75)

소득세법 제75조에 따르면 영리사업조직은 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결산 또는 청산 신고를 해야 한다.

- ○ 영리사업조직이 해산, 폐지, 합병 또는 양도 등의 경우, 해산, 폐지, 합병 또는 양도일 까지 당기(當期)결산을 해야 하고 45일 내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영리사업소득액 및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하고, 또한 신고 전에 자진납부해야 한다.
- ○ 영리사업조직의 청산기간의 청산소득은 청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해야 하고, 또한 신고 전에 당해 연도의 영리사업소득세 적용세율에 따라 자진 계산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면제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영리사업조직이 본조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당기(當期) 결산소득액 또는 청산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즉시 그 소득액 및 납부세액을 확정(核定)해야 한다.
- ○ 파산을 선고한 영리사업조직은 법원이 공시한 채권등기기간 마감일의 10일 전에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당기(當期) 영리사업소득세 결산신고를 제출해야 하고, 제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즉시 그 소득액 및 납부세액을 확정(核定)해야 한다.

2) 청산소득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所得稅法 施行細則 §64).

① 재고(存貨) 현금화(變現)수입 – 재고 현금화 원가 = 재고 현금화 손익
② 비재고(非存貨)자산 현금화 수익 + 부채상환수익 + 청산종료 잔여자산 평가수익 + 기타 수익 = 청산수익
③ 비재고(非存貨)자산 현금화 손실 + 채권수취손실 + 청산종료 잔여자산 평가손실 + 청산비용 + 기타 손실 = 청산손실
④ 재고(存貨) 현금화 손익 + 청산수익 - 청산손실 = 청산소득 또는 손실
⑤ 청산소득 – 법에 의하여 공제를 허용한 이전 5년의 확정결손액 – 법에 의하여 소득산입을 면제한 각종 수익 – 법에 의한 각종 면세 소득 = 청산과세소득

사. 영리사업조직의 수입, 원가 비용, 손실의 확정(核定)

영리사업조직의 소득액은 수입, 원가, 비용과 손실로 구성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이에 관한 완벽한 규정이 없으므로 財政部에서 별도로 "영리사업소득세 조사·확정 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을 공포하여 각종 수입, 원가, 비용과 손실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수입, 원가, 비용과 손실 관련 규정은 모두 소득세법과 "영리사업소득세 조사·확정 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1) 물품의 구입 및 판매 증빙이 없는 경우

영리사업조직의 물품구입 시 물품구입증빙을 취득 또는 보존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주소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불확실한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해당 항목에 속하는 물품의 당해 연도(當年度) 현지 최저가격에 따라 그 물품구입원가를 확정(核定)할 수 있다. 영리사업조직이 물품판매 시에 타인에게 물품판매증빙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물품판매증빙의 부본(存根)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해당 물품의 당해 연도 현지 최고가격으로 그 물품판매가격을 확정(核定)할 수 있다(所得稅法

§27).

2) 제조업 원료 사용기준

① 제조업조직이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의 영리사업 회계장부증빙 관리방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평소에 원료의 구입, 수령, 환불, 제품생산(產品), 人工, 제조비용 등에 대하여 모두 기록을 하였으며, 또한 조사 가능한 내부증빙이 있고 생산일일보고표(生產日報表) 또는 생산통지단(生產通知單) 및 원가계산표를 작성하여 조직 내부의 제작 또는 회계부서의 담당자가 서명한 경우, 그 제품의 원재료 사용 수량은 관련 장부증빙 기록에 의하여 확인·인정해야 한다.

② 초과사용(超耗) : 제조업조직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 원료가 해당 각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제출하여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통상수준의 제정 : 각 사용원료의 통상수준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서 실사(實地調查)를 진행하고, 해당 각 업종의 동업조합(同業公會)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입안(擬訂)한 후 財政部에 보고하여 확정(核定)한다.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확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 제조절차, 원재료의 품질 등이 상당한 동종 업종의 원료사용 상황과 비교하여 확정할 수 있다. 동종 업종의 원료사용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조직의 이전 연도의 확정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이전 연도에 확대서면심사(擴大書面審核)를 적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전 연도의 확정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의 확정상황에 따라 확정하고, 신흥사업 또는 신제품이고 또한 동종 업종의 원재료사용 상황 및 당해 사업의 이전 연도 확정상황 등 비교대상이 없을 경우는 과세당국(稽徵機關)에서 조사·확정한다. 동종 업종이라 함은 각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 관할 또는 인근 현(시)의 동종 업종을 말하고, 이전 연도의 확정상황이란 이전 연도에 원료사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했던 근거를 말한다(所得稅法 §28,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58).

3) 임금급여지출(薪資支出)(所得稅法 §32,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71)

① 영리사업조직 직원의 임금, 급여가 다음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 회사 · 합작사 직원의 임금급여, 사전결정 또는 약정을 통해 업무를 집행하는 주주 · 이사(董事) · 감사(監察人)의 임금급여가 조직의 정관 · 주주대회(股東大會) 또는 社員大會의 예비결의에 따라 영업손익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우

○ 동업조직 및 독자기업조직 직원의 임금급여, 업무를 집행하는 동업자(合夥人) 및 기업주(資本主)의 임금급여에 있어서 영업손익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또한 동종 업종의 통상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임금급여총액은 임금, 봉급, 급여, 수당, 상금, 退休金, 퇴직금, 양로금, 資遣費, 정기정액지급의 교통비 및 식사, 숙소 비용(膳宿費), 각종 보조비 및 기타 給與를 포함한다.

4) 직원퇴직금(職工退休金)

영리사업조직이 퇴직금(退休金), 양로금 또는 資遣費를 지급할 경우, 이를 임금급여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영리사업조직은 해마다 사전에 계산(提列)할 수 있고(營利事業可預先逐年提列) 그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 "勞動基準法"을 적용하는 영리사업조직이 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적립(提拔)한 노동자퇴직준비금(勞工退休準備金), 또는 "노동자퇴직조례(勞工退休金條例)"에 의하여 적립한(提繳) 노동자퇴직금(勞工退休金) 또는 연금보험료는 매년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한 임금급여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 "勞動基準法"을 적용하지 않는 영리사업조직에서 직원퇴직판법(職工退休辦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매년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한 임금급여의 4%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원퇴직금(職工退休金) 준비를 계산하여(提列)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리사업조직이 직원퇴직기금(職工退休基金)을 설치하여 당해 영리사업조직과 완전히 분리되고, 또한 보관, 운용, 및 분배 등이 財政部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한 임금급여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원퇴직기금(職工退休基金)을 적립(提拔)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기 두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퇴직준비금(勞工退休準備金), 직원퇴직금준비금(職工退休金準備金), 또는 직원퇴직기금(職工退休基金)을 적립한 경우, 직원의 퇴직 또는 資遣 시에 규정에 따라 退休金 또는 資遣費를 발급함에 있어서 우선 노동자퇴직준비금(勞工退休準備金), 직원퇴직준비금(職工退休金準備) 또는 직원퇴직기금(職工退休基金) 항목하에서 지급 또는 충당(沖轉)해야 하고 지급 또는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만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리사업조직이 해산, 폐지, 합병 또는 양도로 인하여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을 계산 시, 勞工退休準備金, 職工退休金準備 또는 職工退休基金의 누적잔액은 당해 연도 수익으로 전환하여 처리해야 한다(所得稅法 §33,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71).

5) 修繕費

○ 수선비지출은 기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모두 자본지출로 해야 한다.

○ 수선비지출의 효능이 2년 내에 전부 소모되지 않을 경우, 자본지출로 하여 기존 자산의 실제 원가 잔액에 산입해야 한다. 다만 그 효능의 연한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평균 분담할 수 있다(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77).

○ 영리사업조직이 고정자산을 수선 또는 구입 시 그 내용연한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용연한이 2년을 초과하지만 지출금액이 新臺幣(NT$) 6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원가를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한번에(整批) 대량의 기구를 구입하고 매건의 금액이 新臺幣(NT$) 6만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내용연한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지출로 해야 한다(所得稅

法 §33,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77-1).

6) 기부(捐贈)

영리사업조직의 기부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로 계산할 수 있다(所得稅法 §36,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79).

① 국방건설, 군대 위로를 위한 각급 정부에 대한 기부,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한 기부 및 재정부의 전문안건(專案)에 대한 심사비준을 거친 기부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政治獻金法"의 규정에 의한 정당, 정치단체 및 경선참여 후보자 등에 대한 기부는 소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그 총액이 新臺幣(NT$) 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상술한 소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인정을 거친 수익총액〔영업총이익〈營業毛利〉, 분리과세수익 및 비영업수익〕 - 각항 損費(제①항의 기부를 포함하고 제②항 및 제④항 내지 제⑥항의 기부를 포함하지 않음)〕 / (1 + 10 %) × 10%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政治獻金法" 제9조 규정의 위반

ⓑ 경선참여 후보자에 대한 정치헌금의 기부와 관련하여 "政治獻金法" 제11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음

ⓒ 법에 의하여 경선인으로 등기되지 않았거나 또는 등기 후 경선인 자격을 취소당한 자에 대한 기부

ⓓ 정당에 대하여 기부하였으나 정당이 추천한 경선인이 당해 연도 입법위원선거의 평균득표율이 2% 미만인 경우. 당해 연도에 선거를 치르지 않았을 경

우, 그 전기 선거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창립한 정당은 차기 선거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④ 대륙지역에 대한 기부는 行政院 大陸委員會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득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행해야 하며, 또한 당해 기관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收據)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직접 대륙지역에 기부할 경우는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⑤ 제④항에 부합하는 기부, 소득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부 및 동 법 제4조 3의 각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공익신탁을 성립 또는 이에 기부하거나 가입한 재산은 합산하여 소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소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제②항 규정의 계산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⑥ "私立學校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사립학교와 학기금회(學基金會)를 통하여 행해지는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는 소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소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제②항 규정의 계산산식을 유추(類推) 적용하여 계산한다.

기부의 원시증빙 및 기부금액의 인정(認定)은 다음과 같다.

① 증정용으로 구입한 물품은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취득하여야 하고, 심사비준 결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사용을 면제받은 소규모 영리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는 보통영수증(普通收據)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입원가를 기부금액으로 인정한다. 본 사업조직의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장부에 기부물품의 명칭, 수량 및 원가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의 장부상 원가를 기부금액으로 인정한다.

② 기부는 수령기관단체의 영수증(收據) 또는 증명을 취득해야 하고, 정당, 정치단체 및 경선인 후보자에 대한 기부는 監察院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발행한 수증영수증(受贈收據)을 취득해야 한다.

7) 접대비(交際費)

영리사업조직이 비용처리하는 접대비에 관하여 규정에 따라 증빙을 취득하고 조사결과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연간 지급총액은 다음의 최고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所得稅法 §37,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80).

〈표 2-II-2〉 접대비의 연간 사용 한계

(단위: 新台幣 1천만원)

항 목	계 산 기 초	구 간	보통신고	청색신고 (藍色申報) (簽證申報)
물품구입을 목적으로 함	순구입가격(進貨淨額)	3 이하 3~15 15~60 60 이상	1.5‰ 1‰ 0.5‰ 0.25‰	2‰ 1.5‰ 1‰ 0.5‰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함	순판매가격(銷貨淨額)	3 이하 3~15 15~60 60 이상	4.5‰ 3‰ 2‰ 1‰	6‰ 4‰ 3‰ 1.5‰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함	운송비수입	3 이하 3~15 15 이상	6‰ 5‰ 4‰	7‰ 6‰ 5‰
노무나 신용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영업수익	0.9 이하 0.9~4.5 4.5 이상	10‰ 6‰ 4‰	12‰ 8‰ 6‰

주: 1. 대외판매업무(外銷業務) : 영리사업조직이 대외판매업무를 경영하여 외화수입을 취득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서 열거한 접대비 외에 당해 연도 대외판매 외환결제수입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접대비를 계산할 수 있음.

2. 공영사업(公營事業) : 주관기관에서 각각 확정(核定)하고 예산에 산입

8) 직원복리(職工福利)(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81)

① 직원복리금의 계산(提撥)은 "직원복리금조례(職工福利金條例)"의 규정에 의하여 職工福利委員會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그 복리금의 계산기준 및 비용의 인정처리(認列)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실제납부자본총액(實收資本總額)에 따라 계산(計提) : 창립 시 실제납부자본총액의 5% 한도 내에서 일회성적으로 계산한다. 매년 계산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 증자자본액(增資資本額)으로 계산(計提) : 증자자본액의 5% 한도 내에서 일회성적으로 계산한다. 매년 계산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 영업수입으로 계산(計提) : 매달 영업수입총액 내에서 0.05% 내지 0.15%를 계산한다.

ⓓ 자투리수입(下脚收入)으로 계산(計提) : 자투리(下脚)를 현금화(變價)할 경우 20% 내지 40%를 계산(計提)한다.

ⓔ 상술한 복리금의 계산(計提)은 실제계산(計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달 영업수입총액의 비례에 따라 계산(計提)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마지막 한 달에 계산(計提)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비용(應付費用)으로 장부처리할 수 있다.

③ 자투리(下脚)로 직원복리를 충당(撥充)할 경우 여전히 우선 잡항목 수입(雜項收入)으로 장부처리해야 한다.

④ 부산품 및 사용할 수 없는 고정자산이 자투리(下脚)가 아닐 경우, 자투리(下脚)로 복리금을 충당하는 경우를 참조할 수 없다.

⑤ "職工福利金條例"에 따라 복리금을 계산(計提)하고 중앙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 복리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시 복리비용 科目으로 그 어떤 비용처리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원의 의약비는 확인 후 인정해야 한다.

⑥ 영리사업조직이 법에 따라 직원복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직원복

리금을 계산(計提)하는 경우, 직원의 문화건강, 여행활동 및 회식 등에 지출한 비용은 우선 복리금 항목하에 비용처리하고 부족할 경우 다시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⑦ 직원복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리금을 계산(計提)하지 못한다. 실제 지급한 복리비용은 직원의 의약비에 대하여 확인 · 인정하는 외에 ②항의 ⓒ 및 ⓓ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해야 한다.

⑧ 직원복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문화, 건강, 여행활동 및 회식 등을 조직한 비용은 우선 직원복리 科目으로 비용처리해야 하고, 전항의 규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9) 保險費

보험대상물(保險標的)이 본 사업조직의 소유가 아닐 경우 지급한 보험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체결로 본 사업조직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확인하고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영리사업조직에서 부담하는 보험비는 확인 · 인정해야 하고, 피보험직원의 임금급여로 보지 않는다.

영리사업조직이 직원을 위하여 가입한 단체생명보험(團體壽險)에 관하여 영리사업조직이 보험비를 부담하고 영리사업조직 또는 피보험직원 및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할 경우 그 보험비를 인정한다. 1인당 월 보험비가 新臺幣(NT$) 2,000원 이내의 부분은 피보험직원의 임금급여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초과부분은 직원에 대한 보조비용으로 보아 당해 피보험직원의 임금급여소득으로 전환하여 계산해야(轉列) 하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해야 한다(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83).

10) 식비(伙食費)(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88)

영리사업조직이 실제로 식사를 공급하는지 또는 월정액으로 직원에게 식사비용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업에서 공급하는 식사는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단의 제공을 면제한다.

영리사업조직이 실제로 식사를 공급하는지 또는 월정액으로 직원에게 식사비용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기준 범위 내에서는 직원의 임금급여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초과부분은 월정액으로 직원에게 식사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직원의 임금급여소득으로 비용처리해야 하고 식사를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로 직원임금급여소득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일반 영리사업조직의 비용처리기준 : 직원의 1인당 월 식비는 초과근무식비(加班誤餐費)를 포함하여 최고 新臺幣(NT$) 1,800원을 한도로 한다.

○ 항공운송업 및 어업에 관하여 1998년 8월 1일부터의 비용처리기준

① 國際遠洋航線 : 1인당 일 최고 新臺幣(NT$) 250원을 한도로 한다.

② 국제近洋航線(대만, 홍콩, 琉球항선을 포함) : 1인당 일 최고 新臺幣(NT$) 210원을 한도로 한다.

③ 國內航線 : 1인당 일 최고 新臺幣(NT$) 180원을 한도로 한다.

11) 조세(稅捐)(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90)

○ 개인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영업세법(加値型及非加値型營業稅法)" 제51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추징 · 납부하는 영업세는 본 사업조직의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 영리사업소득세는 이익분배에 속할 경우,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房屋稅, 地價稅 및 敎育捐 등)이 본 사업조직의 소유 또는 전당권(典權)을 취득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한다.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영업세법(加値型及非加値型營業稅法)"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 및 규정에 따라 환급(退還) 또는 충당(留抵)하는 과납(溢付)세액에 관하여 자동으로 공제를 포기한 경우, 그 지출에 대하여 비용 또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체납금, 연체신고금(滯報金), 태만신고금(怠報金) 등과 각

종 법규에 따른 벌금에 관하여 모두 법에 따라 원천징수(扣繳)하지 않고 보충납부(補繳)한 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영리사업조직이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당해 매각토지의 수입항목에서 공제해야 한다.

○ 토지, 건물(房屋)을 구매함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契稅, 印花稅 등은 토지 또는 건물의 원가에 산입해야 한다.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영업세법(加値型及非加値型營業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본래의 支出계정(科目)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영업세법(加値型及非加値型營業稅法)" 제4장 제2절에 따라 계산(총영업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부하는 영업세는 조세계정(稅捐科目)으로 비용처리해야 한다.

12) 이자지출(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97)

○ 자본이자는 이익의 분배로서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하지 못한다.

○ 고정자산의 증축을 위하여 대금을 차입하고 건축기간에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은 당해 항목 자산의 원가로 하여 자본지출로 장부처리(列帳)해야 한다. 다만 완공 후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완공이라 함은 使用執照의 취득일 또는 실제로 완공되어 인수(受領)한 날을 말한다.

○ 토지구입의 차입금이자는 자본지출로 처리해야 하고 명의이전절차(過戶手續)를 밟았거나 사용에 交付한 후의 차입금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정자산에 속하지 않는 토지의 차입금이자는 지연비용(遲延費用)으로 장부처리해야 하고 토지 매각 시에 다시 그 수입의 차감항목(減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금융업 이외의 차입금이자는 이자율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자율의 최고기준은 財政部 각 지역의 國稅局이 해당 지역의 시장이자율을 참작(參酌)하여 제정한 후 財政部에 보고하여 확정(核定)한다.

○ 할부로 설비를 구입한 이자지출 또는 할부가격과 일반구매가격(現購價格)의 차

액은 해당 자산의 실제원가에 산입해야 한다. 다만 설비구매로 인하여 금융사업조직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당해 자산을 취득한 후 지불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3) 개인(私人)지출, 징벌(懲罰)성지출

본업 및 부속업무를 경영하는 이외의 손실 또는 가정의 비용 및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연체신고금(滯報金), 태만신고금(怠報金), 滯納金 등 각종 세법에 의한 벌금은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所得稅法 §38, 所得稅法 施行細則 §42-1).

14) 재해손실

○ 불가항력의 재해손실로 인하여 보험배상을 받은 부분은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불가항력의 재해란 지진, 風災, 水災, 旱災, 蟲災, 화재 및 戰火 등을 말한다.

○ 불가항력적인 재해손실의 공제는 재해 발생 후 15일 이내에 손실명세서 및 증명문서를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보고하여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전항의 규정된 기간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만기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한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한다(所得稅法 §35, 所得稅法 施行細則 §10-1).

15) 일반영수증의 취득한도액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비용처리하는 제조비용 및 영업비용과 관련하여 소규모 영리사업조직이 발급하는 보통영수증을 취득할 경우 그 연간 누계금액이 당해 연도 과세당국(稽徵機關)에서 확정한 제조비용 및 영업비용 총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초과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67). 영리사업조직의 물품구입(進貨)에서 보통영수증을 취득하였다면 상기 3%의 제

한을 받지 않는다.

아. 영업수입과 통일영수증 차이의 조정(調節)

영리사업조직의 영업수입 승인(承認)시점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발행(開立) 시한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업수입과 영업세 매출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사업조직은 영리사업소득세 결산신고서 제1페이지에 본 연도 결산신고 영업수입총액과 본부 및 지사(總分支機構) 매출액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자. 손익상계(盈虧互抵)

소득세법은 영리사업소득세와 개인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모두 손익상계(盈虧互抵)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다.

1) 영리사업소득세

영리사업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환급해야 할 것인가?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전 연도 영업의 손실은 당해 연도에 계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조직의 영리사업에 있어서 회계장부가 완벽하고 결손 및 공제신고 연도에 모두 청색신고서(籃色申報書)를 했거나 또는 회계사의 확인 증명을 거쳤으며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해당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확정(核定)을 거쳐 이전 5년 이내의 손실(虧損)을 당해 연도의 순이익(純益額)에서 공제한 후 다시 과세(核課)할 수 있다. 즉, 규정에 부합되어 손익상계가 가능한 영리사업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액환급(退稅)으로 인한 세무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과거로 소급해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 향후 5년 동안 이월하여(不可前抵, 但可後延五年), 향후 5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1999년도의 소득이 新台幣(NT$) 100만원이고 영리사업소득세를 新台幣(NT$) 24만원 납부하였으며, 2000년도에 新台幣(NT$)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01년도의 소득

이 新台幣(NT$) 15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A회사가 손익상계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2001년도의 과세소득은 0(零)이 되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新台幣(NT$) 50만원의 손실에 대하여도 이후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2) 종합소득세

전술한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도 손익상계(盈虧互抵)에 관한 규정이 있다.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종합소득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가 두 개 이상의 영리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된 결손에 대하여 확정된 영리소득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당해 공제는 경영하는 영리사업에 관하여 모두 청색신고서(籃色申報書)를 사용하여 신고하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차. 과세소득과 회계소득의 차이

"회계소득"은 一般公認會計原則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과세소득"은 회계소득을 기초로 세법 및 "영리사업소득세 조사확정 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등 규정에 따라 장부외 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계소득과 과세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와 시간적인 차이로 나눌 수 있다. 영구적인 차이는 일단 발생하면 이후 연도에 자동으로 상쇄(抵銷) 또는 되돌릴(迴轉)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세법이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액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무릇 초과한 부분은 비용처리(認列)할 수 없다. 시간적인 차이란 회계와 세법의 규정이 수익 및 비용의 귀속연도에 대한 인정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동 차이는 이후 연도에 되돌릴(迴轉)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는 다만 일시적인 차이일 뿐이다. 예를 들어, 일반공인회계원칙의 감가상각방법은 매우 많지만 세법에는 평균법, 정률법 및 작업시간법만 허용하고 있고, 감가상각방법이 다름으로 인하여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6. 조세우대

가. 다음의 각종 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所得稅法 4).

○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 중 行政院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자체의 소득 및 그 부속작업조직의 소득

○ 법에 의하여 대외 영업을 하지 않는 소비합작사를 경영하는 경우의 이익

○ 영리사업조직이 매각하는 토지 또는 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대비(戰備)물자를 준비하기 위하여 처리한 재산의 교역소득. 영리사업조직이 매각하는 토지는 이미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증권교역소득

① 영리사업조직이 매각하는 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주식유한회사(股分有限公司)의 주식 또는 회사채의 교역소득금액 중에서 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

② 1973년 1월 1일부터 증권교역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중지하고 증권교역손실 역시 소득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所得稅法 §4-1).

○ 선물(期貨)교역소득: "선물교역조례(期貨交易稅條例)"에 따라 선물교역세를 부과하는 선물교역소득은 소득세 부과를 잠정 중지하고 그 교역손실 역시 소득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所得稅法 §4-2).

○ 회사 간 전환투자의 주식배당금(公司間轉投資之股利) : 회사조직인 영리사업조직이 국내 기타 영리사업에 투자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획득한 주식배당금(股利) 또는 이익(盈餘)의 순이익(淨額)은 소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연도의 미분배이익(未分配盈餘)에 산입해야 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분배받고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 연도의 소득액 및 미분배이익에 산입하지 않는다(所得稅法 §42,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30).

○ 주식유한회사(股分有限公司)인 영리사업조직이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소득의 초과발행금액(益額)은 資本公債로 할 경우 소득액에 산입하여 과세하

는 것을 면한다.

○ 각급 정부기관의 각종 소득

○ 각급 정부 공공사업(公有事業)의 소득. 공공사업은 각급 정부에서 모종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손익계산 및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사업조직을 말한다(所得稅法 §11). 이는 公有營業機關과 다르고 公有營業機關의 소득은 여전히 과세한다.

○ 외국국제운송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서의 영리사업소득. 다만 각 당해 나라가 대만의 국제운송사업조직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영리사업조직이 신규 생산기술 또는 제품을 도입하거나 또는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외국영리사업조직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및 각종 특허권리를 사용하고 정부 주관기관의 전문사건 심사비준을 거칠 경우, 외국사업조직에 지불한 권리사용료. 정부주관기관의 확정을 거친 중요한 생산사업조직이 공장건설로 인하여 외국사업조직에 지불한 기술서비스보수

○ 관련 외국정부 및 외국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대출금 이자의 면세에 관한 규정

①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개발금융기구에서 대만 정부 또는 대만 경내의 법인에 제공하는 대출금 및 외국금융기구에서 대만 경내의 지사 또는 기타 대만 경내 금융사업조직에 대한 융자의 소득이자는 면세한다.

② 외국금융기구가 대만 경내의 법인에게 제공하여 중요한 경제건설계획에 사용하는 대출금에 관하여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경우 그 소득이자에 대하여 면세한다.

③ 수출융자 또는 담보제공을 전문업으로 하는 외국정부기구 및 외국금융기구가 대만 경내의 법인에게 제공 또는 보증한 우대이율수출대출금(優惠利率出口代款)의 소득이자는 면세한다.

○ 수증(受贈)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다만 영리사업조직이 증여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공시설보류지가 "都市計劃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산보상(加成補償)

○ 공익신탁 : 영업사업조직이 다음의 규정에 부합되는 공익신탁을 설립하거나 그

에 대한 기부 또는 가입을 위하여 재산을 제공할 경우, 수익자가 가지는 당해 신탁이익의 권리가치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所得稅法 §4-3).

① 수탁자는 "信託業法"에서 말하는 신탁업조직을 말한다.

② 해당 공익신탁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업을 조직하는 데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특정인으로부터 특수이익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신탁행위에 관하여 신탁관계의 해지, 종료 및 감소(消減)을 명확하게 결정(明定) 시, 신탁재산이 각급 정부, 및 유사목적이 있는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탁에 이전되는 경우

나. 가속상각(加速折舊), 투자공제(投資抵減), 5년 면세 등

대만의 영리사업조직에 대한 조세우대와 장려는 매우 많은데 가속상각(加速折舊), 투자공제(投資抵減), 5년 면세 등의 규정이 있다.

1) 가속상각(加速折旧)

회사가 연구와 발전, 실험 또는 품질검사 전용의 측정기(儀器) 설비 및 에너지절약 또는 에너지 정화(新及淨潔)의 기계설비를 구입할 경우, 2년에 따라 가속상각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된 후의 내용연한 내에 전액 상각하지 못한다면 소득세법이 규정한 내용연수 내에서 전액 상각할 때까지 1년 또는 몇 년 계속하여 상각할 수 있다.

전항의 가속상각의 확정기관, 신청기한, 신청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은 行政院에서 결정한다(促進産業昇級條例 §5).

2) 영리사업소득세의 투자공제

영리사업조직이 일부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정부의 장려규정에 부합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례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산업 승급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는 다음 용도의 지출금액의 5% 내지 20%의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각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자동화설비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② 자원회수, 오염방지설비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③ 에너지정화, 에너지 절약의 이용 및 공업용수의 재이용 설비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④ 온실가스체 배출량 감량 또는 에너지사용효율 제고의 설비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⑤ 인터넷 및 TV기능, 기업자원계획, 통신 및 電信 제품, 전자, TV영상통신설비 및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등 기업의 디지털정보효과를 제고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 회사는 연구와 발전 및 인재양성에 투자한 지출금액의 35%의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각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사의 당해 연도의 연구발전지출이 이전 2개 연도의 연구개발경비의 평균을 초과하였을 경우 또는 당해 연도의 인재양성지출이 이전 2개 연도의 인재양성경비의 평균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부분은 추가로 50%를 공제할 수 있다.

○ 앞의 2개 항의 투자공제에 있어서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은 당해 회사가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다만 마지막 연도의 공제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공제의 적용범위는 각 산업의 실제 능력수준을 감안해야 한다(促進産業昇級條例 §6).

○ 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회사가 자원이 빈약하거나 발전이 완만한 鄉鎭지역의 일정한 산업에 투자할 경우, 일정한 투자금액 또는 일정 수의 직원을 증가 고용 시, 그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각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促進産業昇級條例 §7).

○ 경제발전에 중대한 효과와 이익이 있고 리스크가 크며 시급히 육성해야 할 신흥의 중요 전략성산업의 창립과 확충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리사업조직이 原始認股(최초 청약한 주식)하거나 또는 당해 신흥의 중요 전략성산업의 회사가 발행하

는 기명주식을 배정(응모) 받아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영리사업조직은 그가 취득한 해당 주식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각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促進産業昇級條例 §8).

○ 獎勵民間參與交通建設條例에서 장려하는 민간기구는 다음 지출금액의 5% 내지 20%의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당해 연도에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이후 4년 이내에 공제할 수 있다.

① 건설, 운영설비 또는 기술에 투자할 경우

② 오염방지설비 또는 기술을 구입할 경우

③ 연구와 발전,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지출

④ 기타 行政院의 확정을 거친 투자지출

상술한 투자공제에 관하여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은 당해 회사가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다만 마지막 연도의 공제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獎勵民間參與交通建設條例 §29).

○ 영리사업조직이 原始認股(최초 청약한 주식) 또는 "獎勵民間參與交通建設條例"에서 장려하는 민간기구가 창립 또는 확충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명주식을 배정(應募)받아서,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에 달할 경우, 그가 취득한 당해 주식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당해 연도에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후 4년 이내에 공제할 수 있다.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은 당해 영리사업조직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다만 마지막 연도의 공제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獎勵民間參與交通建設條例 §33).

○ 민간기구는 그가 참여하는 중대공공건설의 다음 지출금액의 5% 내지 20%의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후 4년 이내에 공제할 수 있다.

① 건설, 운영설비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② 오염방지설비 또는 기술을 구입하는 경우

③ 연구발전,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지출

상술한 투자공제에 관하여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은 당해 기구가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다만 마지막 연도의 공제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37).

○ 영리사업조직이 原始認股 또는 중대공공건설의 민간기구가 창립 또는 확충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기명주식을 배정(응모) 받음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그가 취득한 당해 주식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이후 4년 이내에 공제할 수 있다.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은 당해 영리사업조직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다만 마지막 연도의 공제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40).

3) 5년 면세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구는 그가 참여하는 중대공공건설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과세소득이 있는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최장 5년 동안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상술한 민가기구는 각 해당 중대공공건설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과세소득이 있는 연도로부터 4년 이내에 면세를 시작하는 기간을 연체(延遲)하는 것을 자체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연체기간(延遲期間)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延遲) 후 면세기간의 시작일은 한 회계연도의 시작일이어야 한다(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36).

회사가 새로운 중요 전략성산업의 적용범위에 부합되는 경우, 그 주주가 주식가액을 납입하는 당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쳐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주주투자공제의 적용규정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영리사업소득세의 면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 신규투자설립의 경우, 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5년 이내에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한다.

○ 증자확장의 경우, 새로 증가한 설비를 가동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5년 이내에 그 새로 증가한 소득에 관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증자로 독립생산 또는 서비스단위를 확장하거나 또는 주요생산, 서비스 설비를 확충하는 것에 한한다.

○ 상술한 영리사업소득세의 면제는 당해 회사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면세시작기간의 延遲(연체)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다. 연체기간은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최장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체 후의 면세기간의 시작일은 하나의 회계연도의 시작일이어야 한다(促進産業昇級條例 §9).

건전한 경제발전과 제조업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투자설립 또는 증자확장에 관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신규투자설립의 경우, 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5년 이내에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한다.

○ 증자확장의 경우, 새로 증가한 설비를 가동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5년 이내에 그 새로 증가한 소득에 관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증자로 독립생산 또는 서비스단위를 확장하거나 또는 주요생산, 서비스 설비를 확충하는 것에 한한다.

○ 상술한 영리사업소득세의 면제는 당해 회사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면세시작기간의 연체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다. 연체기간은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최장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체 후의 면세기간의 시작일은 하나의 회계연도의 시작일이어야 한다(促進産業昇級條例 §9-2).

7. 징수관리

가. 장부 및 증빙

1) 영리사업조직이 비치해야 할 장부

"商業會計法"을 실시하는 모든 영리사업조직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稅捐稽徵機關管理營利事業會計帳簿憑證辦法 §2).

○ 매매업(買賣業)

일기부(日記簿), 총분류장(總分類帳), 재고자산명세서(存貨明細帳) 및 기타 필요한 보조장부

○ 제조업

일기부, 총분류장, 원재료명세서(原物料明細帳), 미완성품명세서(在製品明細帳), 완제품명세서(製成品明細帳), 생산일일보고표(生產日報表) 및 기타 필요한 보조장부

○ 건설(營建)업

일기부, 총분류장, 건설중공사명세서(在建工程明細帳), 시공일일보고표(施工日報表) 및 기타 필요한 보조장부

○ 노무업(勞務業) 및 기타 각 업종

일기부, 총분류장, 운송량기록부(營運量紀錄簿) 및 기타 필요한 보조장부

"商業會計法" 실시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사용해야 하는 영리사업조직은 다음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稅捐稽徵機關管理營利事業會計帳簿憑證辦法 §2).

○ 매매업

일기부(日記簿), 총분류장(總分類帳), 재고자산명세서(存貨明細帳) 또는 재고자산통계장(存貨計數帳)

○ 제조업

일기부, 총분류장, 원재료명세서 또는 원재료통계장부(原物料計數帳), 생산기록부

○ 노무업 및 기타 각 업종

일기부, 총분류장, 운송량기록부

심사결정(核定)을 거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사용을 면제받은 소규모 영리사업조직은 간이일기부(簡易日記簿) 한 가지를 설치할 수 있다(稅捐稽徵機關管理營利事業會計帳簿憑證辦法 §5). 소규모영리사업조직이란 규모가 작고 교역이 적으며 매달 평균 영업액이 新臺幣(NT$) 20만원 미만이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심사결정을 거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사용을 면제받고 조사확정(查定)에 따라 영업세(營業稅)를 부과·징수하는 자를 말한다.

노점상(攤販)은 장부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稅捐稽徵機關管理營利事業會計帳簿憑證辦法 §6).

2) 장부증빙의 보관

① 영업장소에 비치(留置)

영리사업조직의 장부증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손실을 급히 피하거나 또는 관련 기관에서 공무로 가져가서 열람하거나(因公調閱) 적격(合格) 회계사에게 보내주어 증빙조사(查核簽證)를 하는 외에 영업장소에 비치하여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서 수시로 조사확정(查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稅捐稽徵機關管理營利事業會計帳簿憑證辦法 §25).

② 장부보존기한

영리사업조직에서 설치한 장부는 관련 未結회계사항을 제외하고 회계연도 결산절차를 밟은 후 최소 10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멸실(滅失)될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보고하여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稅捐稽徵機關管理營利事業會計帳簿憑證辦法 §26).

③ 회계증빙 보존기한

영리사업조직의 각항 회계증빙은 영구보존 또는 관련 未結회계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결산절차가 끝난 후 최소 5년을 보존하여야 한다(稅捐稽徵機關管理營利事業會計帳簿憑證辦法 §27).

나. 납세절차

1) 신고기관

영리사업조직은 신고 시 소재지(登記地)의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예납신고 및 결산신고를 해야 한다.

영리사업조직의 본부가 대만 경내에 있고 대만 경내에 기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당해 영리사업조직의 본부에서 신고 시 소재지(登記地)의 과세당국(稽徵機關)에 합산신고(合併辦理申報)해야 한다.

본부가 대만 경외에 있고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 당해 고정사업장에서 각자의 신고 시 소재지(登記地)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의 영리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영업대리인이 있을 경우는 영업대리인이 신고 시 소재지(登記地)의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해야 한다(所得稅法 施行細則 §49).

2) 예납신고(暫繳申報)

영리사업조직은 예납면제규정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전연도에 결산신고한 영리사업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납세액으로 자진 납부해야 하고, 규정된 서식에 따라 예납세액신고서를 작성하고 예납세액 납부영수증을 별첨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조직인 영리사업조직이 회계장부(帳册簿據)가 완벽하고 청색신고서(藍色申報書)를 사용하거나 또는 회계사의 평가확인서명을 거쳤으며 적시에 예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연도 처음 6개월의 영업수입총액을 근거로 동법의 영리사업소득세 관련 규정

에 따라 그 상반연도의 영리사업소득액을 試算하고 당해 연도의 세율에 따라 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전항의 예납세액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所得稅法 §67).

영리사업조직이 규정된 기간에 예납신고를 하지 않고 10월 31일 이전에 이전 연도에 결산신고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계산하여 예납세액을 보충신고 및 보충납부하는 경우, 10월 1일부터 예납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예납세액에 대하여 규정된 예금이자율에 따라 일별 이자를 가산하여 함께 징수해야 한다.

영리사업조직이 10월 31일이 지나서도 규정에 따라 예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이전연도에 결산신고한 영리사업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납세액으로 하고 또한 규정된 예금이자율에 따라 1개월의 이자를 가산하여 예납세액 확정통지서를 작성, 발급하여 납세의무자가 15일 이내에 국고(公庫)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所得稅法 §68).

다음의 각종 경우에는 예납신고를 면제한다(所得稅法 §69).

①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리사업조직이 그 영리사업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8조 1의 규정에 따라 영업대리인 또는 지급인(給付人)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② 확정(核定)을 거친 소규모영리사업조직
③ 소득세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3) 결산신고

영리사업조직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전연도의 영리사업소득액에 관하여 결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결산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신고 전에 자진납부해야 한다(所得稅法 §71). 신고일자는 신고서를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송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우편으로 보낼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우편발송 당일의 우체국 소인 일자를 신고일자로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는 신고자료를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전송한 일자를 신고일자로 한다(所得稅法 施行細則 §50).

영리사업소득세의 결산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눈다(所得稅法 §77).

① 보통신고서 : 일반 영리사업조직에 적용한다.
② 청색신고서 : 과세당국(稽徵機關)의 확정을 거칠 경우에만 적용하고 전적으로 성실신고하는 영리사업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③ 간이신고서: 소규모 영리사업조직에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결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연체신고통지서(滯報通知書)를 작성 · 발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연체신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충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이 지나 여전히 결산신고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조사자료 또는 동종 업계의 이익기준에 따라 그 소득액 및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확정세액통지서(核定稅額通知書)를 작성 · 발급해야 하며 세금납부서(繳款書)와 함께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한다(所得稅法 §79).

4) 조사

과세당국(稽徵機關)은 결산신고서를 받은 후에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그 소득액 및 납부세액을 확정해야 한다(所得稅法 §80).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 또는 재조사(復查)를 진행할 때 납세의무자는 소득액을 증명하는 각종 관련 장부 및 문서자료(文據)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稽徵機關)이 규정한 시간에 따라 조사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시 또는 과세당국(稽徵機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원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所得稅法 §83).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조사 또는 재조사(復查) 시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업무장소(辦公處)에 와서 질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所得稅法 §84).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는 하였으나 규정에 따른 장부문서자료(帳簿文據)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조사자료 또는 동종 업계의 이익기준에 따라 그 소득액을 확정할 수 있다. 사후에 조사결과 별도로 과세자료를 발견할 경우 여전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所得稅法 §83).

과세당국(稽徵機關) 또는 財政部에서 지정한 조사인원이 조사를 진행 시, 납세의무자가 중대한 세금탈루(逃漏稅)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財政部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거친 뒤 납세의무자의 순자산가치(資產淨值), 자금흐름 및 영업관례에 부합되지 않는 영업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所得稅法 §83-1).

5) 원천징수(扣繳)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경우, 지급(給付) 시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또는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所得稅法 §88).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10일 전에 이전 달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전부 납부해야 하고, 매년 1월 말 전에 이전연도에 원천징수한 각 납세의무자의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증빙(扣繳憑單)을 발급하여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보고하고 조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2월 10일 전에 원천징수증빙(扣繳憑單)을 납세의무자에게 작성 · 발급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빙으로 결산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所得稅法 §92).

영리사업조직이 해산, 폐지, 합병 또는 양도의 상황이 있거나, 기관 · 단체가 철폐(裁撤), 변경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수시로 원천징수증빙을 작성, 발급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해야 한다(所得稅法 §92).

대만 경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리사업조직이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전액 납부하고 원천징수증빙을 발급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된다(申報核驗)(所得稅法 §92).

공기관, 사립기관, 단체, 학교, 사업조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매년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기산액(起扣点)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원천징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1월 말 전에 수령인의 성명, 주소, 국민신분증 통일코드 및 연간지급금액 등을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2월 10일전에 원천징수면제 증빙을 납세의무자에게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所得稅法 §89).

6) 자진납부(自繳)

과세당국(稽徵機關)은 납세의무자가 매년 결산신고하는 소득액에 관하여 확정을 거친 후에 납세의무자의 연간 납부세액에서 예납세액, 공제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未抵繳之扣繳稅額), 공제가능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 세금납부서(絞款書)를 작성·발급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所得稅法 §100).

다. 행정구제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稽徵機關)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 불복 시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납부세액 또는 보충세액이 있을 경우) 또는 확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의 30일 이내(납부세액 또는 보충세액이 없을 경우)에 재조사(復查)를 신청할 수 있다(稅捐稽徵法 §35).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불복 시 법에 따라 訴願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稅捐稽徵法 §38).

8. 자산 평가(資産估價)

자산의 평가는 영리사업의 원가 비용 및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평가는 판매비용(銷貨成本)에, 외상매출금(應收帳款)의 평가는 대손금(呆帳損失)에, 고정자산의 평가는 감가상각비용(折舊費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제3장 제4절에 자산평가(資産估價)에 관한 전문적인 節을 두고 있다. 다음은 재고자산(存貨), 외상매출금(應收帳款) 및 고정자산(固定資産)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상품, 원료, 자재(物料), 미완성품(在製品), 완제품(製成品), 부산물(副産品) 등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원가가 時價보다 높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時價란 결산일에 당해 자산의 현지 시장가격을 말한다(所得稅法 §46). 원가는 자산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서 실제 원가를 채택하거나 또는 선입선출법(先進先出法), 후입선출법(後進先出法), 가중평균법(加權平均法), 이동평균법(移動平均法), 간단평균법(簡單平均法) 또는 주관 기관이 규정한 기타의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제한

후입선출법(後進先出法)을 채택하는 경우, 원가와 시가 가운데서 낮은 것을 채택하는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양자를 동시에 채택할 경우 영리사업에 있어서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 시에 모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동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계산방법의 채택

각종 계산방법의 채택은 매년도에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예상(預估)할 때에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본래 채택하였던 계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평균법(加權平均法)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다. 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할 경우 본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所得稅法 §44).

나. 외상매출금(應收帳款)의 평가

외상매출금(應收帳款) 및 받을 어음(應收票據債權)의 평가는 예상대손충당금(預計備抵呆帳)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손금(呆帳損失)의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所得稅法 §49,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94).

1)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應收帳款) 및 받을 어음(應收票據債權)에 한하고 이미 할인(帖現)한 어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어음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현금지급(兌現)을 받지 못하여 어음소지인이 법에 따라 소구권(追索權)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당해 영리사업조직이 금액을 지불(付款)해야 할 경우, 실제 상황에 비추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또는 대손금으로 비용처리(列支)할 수 있다.

2)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최고로 외상매출금(應收帳款) 및 받을 어음(應收票據債權) 잔액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업의 경우 債權의 잔액에 관하여 상술한 한도에 따라 예상 설정(估列)해야 한다.

3) 영리사업조직이 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실제발생 대손금의 비례가 상술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 3개 연도에 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실제발생 대손금 비례의 平均數 한도 내에서 예상 설정(估列)해야 한다.

4) 영리사업조직의 할부판매(分期付款銷貨)에 있어서 매출총이익백분비법(毛利百分比法)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고, 외상매출금에 관하여 차액계산법(差額攤計法) 또는 보통판매법(普通銷貨法)을 채택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할부판매의 판매가격(分期付款售價)과 현금판매가격(現銷價格)의 차액 부분의 債權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5) 외상매출금(應收帳款), 받을 어음(應收票據債權) 및 각종 대여금채권(欠款債權)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대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발생한 당해 연도에 대손충당금으로 상쇄(沖抵)해야 한다.

① 도산(倒閉), 逃匿, 화해 또는 파산선고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② 債權 가운데 2년이 지나서 독촉했음에도 원금(本金) 또는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술한 채권이 2년을 넘는다는 계산은 당해 채권의 본래의 만기상환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고, 채무자가 상술한 만기일 이후에 일부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 대손금에 관하여 채무자가 도산(倒閉), 逃匿 등의 원인으로 독촉할 수 없는 경우 우정사업상 송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류(存證函)를 받는 외에 당해 영리사업조직의 도산 또는 逃匿 전의 확실한 영업주소를 적어야 한다.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대만의 주외국 대사관, 영사관, 商務代表 또는 대외무역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대륙지역에 거주할 경우 行政院 大陸委員會에서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 왕래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화해의 경우, 파산 전 법원의 화해 또는 소송상의 화해 등 법원의 화해인 경우에는 법원의 화해기록(和解筆錄) 또는 裁定書 正本이 있어야 하고, 商業會, 工業會의 화해일 경우에는 화해기록(和解筆錄)이 있어야 하고, 파산선고에 속하거나 또는 조정(重整)의 경우에는 법원의 裁定書 正本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이 발급한 債權證憑이 있어야 한다. 2년을 초과하였고 채권자가 독촉하였음에도 원금(本金)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郵政事業상 이미 송달했다는 증명서류(存證函) 또는 법원에 訴追한 독촉증명(催收證明)이 있어야 한다.

다. 고정자산의 평가

건축물, 인테리어 부속설비(裝修附屬設備), 선박, 기계, 공구, 기구 등 고정자산의 평가는 그 실제원가에서 정기적으로 감가상각을 한 부분을 차감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所得稅法 §50). 따라서 토지 외의 고정자산의 평가는 실제원가와 감가상각으로 구성되므로, 이하 원가의 인정 및 감가상각의 계산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원가의 결정

자산의 指定價(出價)취득은 모두 취득가액을 말하고, 이는 취득한 대가 및 취득 후 영업상의 사용을 위하여 지불한 모든 필요비용을 포함한다. 자체적으로 제조하거나 건축할 경우 제조 또는 건축가격을 말하고, 이는 자체 설계, 제조, 건축하여 영업상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지불한 모든 필요 인력과 자재(工料), 비용을 포함한다. 期初 재고로부터 전입(期初盤存轉入)할 경우에는 본래의 재고가격(原盤存價格)을 말한다. 자산이 확충, 換置, 개량, 수리로 인하여 그 가치 또는 효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에 지불하는 비용은 본래의 가치 또는 효능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실제 원가 잔액(實際成本餘額) 내에 산입할 수 있다(所得稅法 §45).

2) 감가상각의 계산 및 관련 규정(所得稅法 §51,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95)

① 감가상각방법

영리사업조직은 하나의 회계연도 내에 여러 종류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법의 감가상각을 신청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平均法, 정률법(定率遞減法), 작업시간법(工作時間法)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술한 방법의 채택 및 변경은 매년 예납신고(暫繳申報) 시에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있어서 평균법 또는 정률법을 채택할 경우 1년을 계산단위로 하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실제사용 개월 수가 연간에서 차지하는 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월로 계산한다.

ⓐ 평균법 : 평균법을 채택할 경우 고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격(殘價)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로 평균하여 매 기간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所得稅法 施行細則 §48).

○ 매년의 감가상각액 = (고정자산의 원가 - 잔존가격) / 내용연수

○ 잔존가격(殘價) = 고정자산 원가 /(내용연수표에 규정한 내용연수 + 1)

ⓑ 정률법 : 정률법을 채택할 경우, 고정자산의 매 기간에서 해당 기간의 상각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의 순서를 각 기간에 계산하는 상각의 基數로 하여 일정한 비율로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所得稅法 § 54, 所得稅法 施行細則 § 48).

○ 상각률 = 1 − 내용연수√(잔존가격/실제원가). √는 루트 기호임

○ 매년의 상각액 = 매년 期初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상각률

○ 잔존가격 : 정률법을 채택할 경우 잔존가격은 원가의 10분의 1이 됨

ⓒ 작업시간법 : 작업시간법을 채택할 경우, 고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격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서 예상작업시간 총액을 나누어서 매 단위시간에 부담해야 할 상각액을 계산하고, 다시 각 기간에 사용하는 작업시간을 곱하여 해당 기간의 상각액으로 하며, 다만 예상작업시간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한 내용연수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所得稅法 施行細則 §48).

○ 매년의 상각액 = (고정자산의 원가 - 잔존가격) / 예상작업시간 총액 ×해당 연도에 사용한 작업시간

○ 잔존가격의 계산방법은 평균법을 참조

그 밖에, 영리사업의 감가상각자산을 내용연수가 만기된 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가치(殘値)에 대해서 자체로 사용가능연수를 예상하여 잔여가치를 다시 예상한 후 본래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있다. 평균법을 예로 들면 감가상각의 계속계산산식(續提折舊)은 다음과 같게 된다.

○ 본래의 잔여가치 / (예상사용가능연수 + 1) = 재예상잔여가치(重行估列之殘值)
○ (본래의 잔여가치-재예상잔여가치) / 예상사용가능연수 = 상각액

②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한 내용연수보다 짧지 않아야 하고, 해마다 비율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계산해야 할 연도에 조정하여 보충 계산해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 또는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설치한 설비의 내용연수는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미사용연한을 내용연수로 하고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③ 자본적 지출과 비용지출

고정자산을 구입 설치함에 있어서 그 내용연수가 2년 이하이거나 또는 2년을 초과하지만 지출금액이 新臺幣(NT$) 6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원가를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 번에 대량의 기구를 사들일(整批購置) 경우, 매건의 금액이 新臺幣(NT$) 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그 내용연수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적 지출로 계산해야 한다(所得稅法 §58,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77-1).

④ 고정자산의 폐기(報廢)

고정자산을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전액 상각한 후 폐기(毁滅, 廢棄)할 경우, 그 폐기물의 판매가격수입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預留) 잔여가치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손실로 처리할 수 있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預留) 잔여가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당해 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

특정 사고로 인하여 고정자산을 규정된 내용연수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할 경우, 확실한 증명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문서가 없을 경우, 상장(上市), 上櫃회사에 있어서 회계사가 조사 확인하여 발급한 보고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청하여 비준(核備)을 받고 절감(折減)하지 않은 잔액을 당해 연도의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판매가격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수익으로 해야 한다(所得稅法 § 57).

⑤ 승용차 감가상각의 제한(乘人小客車提列折舊之限制)

정부는 사회의 사치스런 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리사업조직이 구입하는 호화 승용차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제한을 두어 그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승객용 소형승용차(乘人小客車) : 영리사업조직이 새로 사들인 승객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 규정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그 실제원가는 新臺幣(NT$)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新臺幣(NT$)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하며, 초과부분에 대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용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 임대업 승용차: 승용차 렌터카업을 경영하는 영리사업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부터 새로 구입한 영업용 승객용 소형승용차(乘人小客車)에 대하여 규정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그 실제원가는 新臺幣(NT$) 3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新臺幣(NT$)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하며, 초과부분에 대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용에 대하여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 전 2항의 小客車(소형승용차)에 대하여 사용 후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그 수익 또는 손실의 계산은 여전히 소득세법에 규정한 정상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 未折減 잔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

라. 遞耗자산의 평가

체감(遞耗)자산의 평가는 그 원가에서 정기적으로 소모액(耗竭額)을 공제한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모액의 계산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다만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원가법(成本法)

체감(遞耗)자산의 원가에 대하여 채굴가능 수량에 따라 단위당 소모액을 예상하고, 연말 결산 시에 다시 당해 연도의 실제 채굴 수량에 따라 상술한 예상 단위당 소모액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해야 할 소모액을 계산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모액 = (遞耗자산의 원가-잔여가치)/예상채굴 가능량 × 당해 연도의 실제 채굴량

2) 수익비율법(收益比率法)

채굴 또는 판매한 제품의 수입총액에 대하여 체감(遞耗)자산의 소모율표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로 계산한다. 다만, 매년 계산하는 소모액은 당해 자산의 당해 연도 말에 소모액을 차감하기 전의 수익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누계액도 당해 자산의 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석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경우, 체감(遞耗)자산의 생산이 없어질(枯竭) 때까지 매년 당해 연도에 판매한 생산량 수입총액에서 27.5%의 소모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계산한 소모액은 당해 체감(遞耗)자산의 당해 연도 말에 소모액을 차감하기 전의 수익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한다.

체감(遞耗)자산에 급격한 가격인상이 있는 경우, 고정자산에 관하여 자산 가격인상보상준비금계산(提列資産漲價補償準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소모액에 따라 자산 가격인상보상준비금을 계산할 수 있다(所得稅法 §59).

마. 무형자산 및 개업비(開辦費)의 평가

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專利權) 및 각종 특허권(特許權) 등을 포함하고 모두 指定價取得(出價取得)의 경우에 한한다. 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원가에서 정기적으로 감모상각액을 공제한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체감(遞耗)상각액은 그 원가에 대하여 다음의 체감(遞耗)연수에 따라 연도별로 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취득 후에 특정사고 등으로 인하여 규정된 연수에 따라 체감(遞耗)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이유를 제출하여 更正을 신청 · 비준받아야 한다.

① 영업권 : 10년을 체감(遞耗)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② 저작권 : 15년을 체감(遞耗)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③ 상표권, 專利權 및 기타 각종 特許權 등 : 취득 후 법정 연수에 따라 체감(遞耗)계산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所得稅法 §60)

2) 개업비(開辦費)

개업비(開辦費)의 평가는 실제 지출 중에서 기간별로 차감하는 감가상각(攤提)액을 표준으로 한다. 개업비의 감가상각(攤提)은 많아도 매년 원래 액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자산의 재평가(重估價)

영리사업의 고정자산, 체감(遞耗)자산 및 무형자산은 모두 역사적 원가를 기장의 기초로 하기에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에 계산하는 감가상각, 소모액 및 체감(遞耗)상각액은 모두가 낮아질 수 있어, 기업이 표면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하나, 실제

적으로는 결손(虛盈實虧)이 발생하며 또한 소득세 과다납부 및 기업자산을 낮게 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영리사업에 관하여 자산의 재평가 처리를 허용한다.

1) 재평가 처리의 조건

영리사업의 고정자산, 체감(遞耗)자산 및 무형자산은 당해 연도에 물가지수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연도 또는 이전 회에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재평가처리를 한 연도에 비하여 물가지수가 25%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자산의 재평가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평가신청일의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다.

영리사업에 관하여 자산의 재평가처리를 신청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물가지수는 財政部에서 行政院 主計處에 요청하여 매년 1월 25일 이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물가배수표를 작성·발표한다(所得稅法 §61, 營利事業所得稅重估價辦法 §3).

영리사업에 관하여 비준을 받아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그 중 일부 자산의 재평가 연도 물가지수가 당해 자산의 취득연도 물가지수의 25%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여전히 재평가할 수 있다(營利事業所得稅重估價辦法 §10).

2) 재평가 처리의 절차

① 신청기한

영리사업에 관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경우, 그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의 두 번째 달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자산재평가신청서를 제출하고(檢具) 영리사업의 설립일자, 회계연도의 시작, 마감일자 및 재평가처리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의 설명을 붙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청해야 한다(所得稅法 §17).

②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자산의 재평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의 비준 여부를 확정하고, 1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비준한 것으로 본다(營利事業所得稅重估價辦法 §18).

③ 재평가신고(重估申報)

자산의 재평가를 신청한 영리사업조직은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비준통지서(核準辦理重估通知書)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재평가신고를 해야 한다. 60일의 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營利事業所得稅重估價辦法 §19).

㉮ 자산재평가신고서
㉯ 재평가자산의 總表 및 그 명세표
㉰ 재평가 전후의 대차대조표 비교

3) 회계처리

영리사업조직은 심사 결정한 자산의 재평가가치에 따라 재평가 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의 자산계정(資産帳戶)을 조정하고 재평가 차액(差價)을 자산증치준비장부(資産增値準備帳)에 기입해야 한다. 자산의 재평가 增値는 소득에 산입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9. 장려 및 처벌

영리사업소득세의 장려 및 처벌에 관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장려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은닉(匿報), 과소신고 또는 사기 및 기타 부당한 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상황을 고발 · 적발하고,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稽徵機關)는 벌금의 20%를 고발자에게 고발상금으로 지급(獎給)해야 하고, 또한 고발자에 관하여 절대비밀유지의무를 가진다(所得稅法 §103).

나. 처벌

1) 장부의 미비치(未設置), 미기재(未記載)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設置)해야 함에도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기재(記載)하지 않은 경우, 新臺幣(NT$) 3,000원 이상 7,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비치 또는 기재하도록 통지한다.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 또는 기재하지 않을 경우 新臺幣(NT$) 7,5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개월 이내에 비치 또는 기재할 것을 다시 한 번 통지한다.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비치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휴업(停業)처분을 가하고,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 또는 기재할 때에 다시 復業한다(稅捐稽徵法 §45).

2) 규정에 따라 장부 검사(驗印)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할 장부에 대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제출하여 검사받지 않은 경우, 기한 내 보충처리를 통지하는 외에 新臺幣(NT$) 1,5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보충처리하지 않을 경우 보충처리할 때까지 연속하여 처벌한다(稅捐稽徵法 §45).

3) 장부를 영업장소에 보관(留置)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장부를 보존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를 영업장소에 보관(留置)하지 않을 경우 新臺幣(NT$) 15,000원 이상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稅捐稽徵法 §45).

4) 법에 따라 증빙을 발급, 취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발급하지 않거나, 타인으로부터 증빙을 취득해야 하나 취득하지 않거나 또는 증빙을 보존해야 함에도 보존하지 않을 경우, 증빙의 미발급, 미취득, 미보존에 대하여 조사 인정한 총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稅捐稽徵法 §44, 所得稅法 §105). 영수증을 跳開(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乙회사가 丙회사에게 다시 제품을 판매하지만, 甲회사가 직접 丙회사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할 경우, 합법적인 증빙을 발급 또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5) 과소, 누락신고 또는 결산신고 미처리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결산신고를 처리하였으나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과소신고의 상황이 있을 경우 누락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자체로 결산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세금을 보충하는 외에 보충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所得稅法 §110).

영리사업조직이 장려를 받아 세액감면을 받거나 또는 영업손실의 경우, 과소 · 누락소득액을 가산한 후 여전히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 · 누락한 소득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해야 할 영리사업소득세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라 각각 상술한 규정의 배수에 따라 처벌한다(所得稅法 §110).

6) 연체신고(滯報)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결산신고를 처리하지 않았으나 이미 법에 따라 결산신고를 보충처리하였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을 조사 확정한 경우, 확정한 납부세액에 따라 별도로 10%의 연체신고금(滯報金)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최고 新台幣(NT$) 3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 新台幣(NT$) 1,500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所得稅法 §108).

7) 태만신고(怠報)

납세의무자가 보충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결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 취득한 자료 또는 동종 업계의 이익기준에 따라 그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납부세액에 따라 별도로 20%의 태만신고금(怠報金)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최고 新台幣(NT$) 9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 新台幣(NT$) 4,500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所得稅法 §108).

8) 미분배이익의 연체 · 태만신고

영리사업조직이 기한 내에 미분배이익의 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신고를 보충처리한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 확정한 미분배이익 및 추가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한 추가징수세액에 따라 별도로 10%의 연체신고금(滯報金)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최고 新台幣(NT$) 3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 新台幣(NT$) 1,500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영리사업조직이 규정된 보충신고기한을 초과했으나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 취득한 자료에 따라 확정한 미분배이익 및 보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한 보충세액에 따라 별도로 20%의 태만신고금(怠報金))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최고 新台幣(NT$) 9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 新台幣(NT$) 4,500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所得稅法 § 108-1).

9) 원천징수의무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보충납부하고 원천징수 증빙서류를 보충 신고하도록 명하는 외에,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의 1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보충납부해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증빙서류를 보충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국고에 납입하고 다음 해 1월 31일 이전에 사실대로 원천징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2월 10일 전에 원천징수 증빙서류를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충처리 또는 보충발급을 명하는 외에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20%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新台幣(NT$) 22,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 新台幣(NT$) 1,500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한을 초과하여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발급 시 그 절반을 처벌한다. 즉 10%의 벌금에 처한다. 과세당국(國稅稽徵機關)의 기한 내 처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여전히 사실대로 보충신고하거나 보충발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3배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新台幣(NT$) 4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 新台幣(NT$) 3,000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92조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경우 매 2일 초과 시 1%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所得稅法 § 114).

④ 정부기관, 단체, 학교, 사업체 등의 경우, 기한 내에 또는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 내에 원천징수면제증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주관 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인 단체(私人團體) 또는 사업조직이 기한 내에 또는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 내에 원천징수면제증빙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사업체에 新台幣(NT$) 1,500원의 벌금에 처하

고 기한 내에 보충신고 또는 보충발급할 것을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보충신고 또는 보충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에 따라 해당 단체 또는 사업체에게 5%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최저 新台幣(NT$) 3,000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所得稅法 §111).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拘役) 또는 新臺幣(NT$)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稅捐稽徵法 §43).

Ⅲ. 소득세 양세합일제도(兩稅合一制度)

1. 서론

대만의 소득세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영리사업조직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전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영리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兩稅合一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과세제를 채택하여 영리사업조직과 영리사업조직의 기업주(業主), 주주(股東) 등을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실체로 보아, 즉 독자기업, 동업조직(合夥) 및 회사 등 영리사업조직의 이익(盈餘)에 대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부과·징수(課徵)하고 稅後의 이익을 독자기업 기업주, 동업조직 동업자(合夥人) 및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할 경우 다시 그들의 영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課徵)하였다. 과세대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 소득에 대하여 두 단계에서 모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중복과세(重複課稅)의 혐의가 있고 또한 주식모금(募股)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籌借) 회사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세부담을 낮추어 기업의 투자의욕(意願)을 격려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대만은 소득세제를 독립과세제로부터 兩稅合一制로 변경하고 이를 1998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였다. 兩稅合一制는 종합소득세와 영리사업소득세의 合一을 말하는 바, 영리사업조직의 소득과 주주가 영리사업조직으로부터 배분받는 주식 배당금(股利)을 합하여 소득세를 한번만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兩稅合一制度의 실행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해당 법률이 수정되었는데, 법률 수정의 중점은 2개이다. 하나는 유보이익과세(保留盈餘課稅)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股東可扣抵稅額帳戶)[17]을 증설한 것이다. 兩稅合一制를 실시한 후, 영리사업조직은 여전히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계산

17) 所得稅法 제3장 제5절 공제가능세액계정(股東可扣抵稅額帳戶)을 증설하여 8개 조문을 두었다.

하지만 회사의 유보이익에 대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영리사업조직이 1998년도 또는 그 이후 연도 귀속의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익 분배 시에 그 주주, 사원, 동업자 또는 기업주는 분배받는 주식배당금총액 또는 이익총액에 포함된 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액 결산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所得稅法 §3-1). 주주의 공제가능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66-1조에서는 영리사업조직이 회계장부 외에 별도로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股東可扣抵稅額帳戶)"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설정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영리사업조직은 1998년도부터 자사의 회계장부 외에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股東可扣抵稅額帳戶)"을 설치하여 주주 또는 사원에게 배당가능한 소득세액을 기록하고 규정에 따라 당해 계정 금액을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을 유지하여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 및 확인(查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로 설립한 영리사업조직은 설립일로부터 이를 설정 및 기재해야 한다(所得稅法 §66-1).

다음의 영리사업조직 또는 기관, 단체는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所得稅法 §66-1).

① 본부가 대만 경외에 있는 경우
② 독자기업, 동업조직
③ 소득세법 제11조 제4항에 규정한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
④ 기타 법령 또는 조직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할 수 없는 단체 또는 조직

3.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시작, 종료 기간

영리사업조직이 기재(記載)하는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시작, 종료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조직

회계연도의 변경을 비준(核准)받은 경우에는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청하여 그 회계연도에 따른 시작, 종료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

영리사업조직이 1998년도부터 설치한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기초잔액(期初殘額)은 0이고, 새로 설립한 영리사업조직이 설립 시에 설치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후 연도의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기초잔액은 그 이전연도의 기말잔액(期末殘額)과 같아야 한다(所得稅法 §66-2).

4.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計入)하는 조건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하는 항목은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잔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6-3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조직의 다음 각항의 금액은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잔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공제(抵繳)하게 하여야 한다(所得稅法 §66-3).

- ○ 1998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대만 영리사업소득세 결산신고 납부세액,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 확정을 거쳐 증가한 세액 및 미분배이익에 대해 추가징수(加徵)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하는 일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세금납부일이고, 예납(暫繳)세액 및 원천징수(扣繳)세액으로 결산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연도결산일이다.
- ○ 대만 경내의 기타 영리사업조직에 투자하여 분배받은 1998년도 및 이후 연도 귀속의 주식배당금총액(股利總額) 또는 이익총액(盈餘總額)에 포함된 공제가능 세액.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하는 일자는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을 분배받는 일자이다.
- ○ 1998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단기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 세액.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하는 일자는 단기채

권의 양도일 또는 이자계산수령(兌領)일이다.

○ 법정이익준비금(法定盈餘公積) 또는 특별이익준비금(特別盈餘公積)으로 자본을 충당(撥充)할 경우 소득세법 제66-4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차감(減除)한 공제가능세액.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하는 일자는 자본충당일(撥充資本日)이다.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消滅)되는 회사의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잔액. 다만 소멸되는 회사의 장부에 기재한 누적 미배분이익을 세액공제비율 상한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하는 일자는 합병발효일이다.

○ 財政部의 확정(核定)을 거친 기타의 항목 및 금액.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하는 일자는 財政部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나. 납부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 영리사업소득세 납부세액 결산신고 시에 이미 납부세액을 납부하였고, 또한 1998년도 이후 귀속의 대만 영리사업소득세에 속해야 함.

○ 사건의 자료를 조사 확인해야 하는 기간 내에 이미 실제로 납부 또는 취득한 경우는 권리의무발생주의(權責發生制)의 규정에 따라 기말에 예상(預估) 산입할 수 없다.

다. 납부세액, 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비교

이미 납부한 예납세액(暫繳稅款) 및 원천징수세액(扣繳稅款)의 합산금액과 신고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작은 것으로 인정(認定)한다. 역년제를 채택할 경우 그 산입시점은 결산일(12월 31일)이고, 비역년제의 경우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이다.

5.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

가. 영리사업조직의 다음 각항 금액은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잔액에 산입할 수 없음(所得稅法 §66-3)

○ 본부가 대만 경외에 있는 국제운송사업조직 등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영리사업소득세
○ 수탁자(受託人)의 신분으로 신탁업무를 경영하여 납부한 영리사업소득세 및 분배 받은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의 공제가능 세액
○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을 설치해야 하는 영리사업조직으로 변경하기 전에 납부한 영리사업소득세
○ 1986년도 또는 그 이전 연도 귀속 영리사업소득세의 납부
○ 납부한 연체신고금, 태만신고금, 체납금, 벌금 및 가산이자(加計利息)

나.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가 아닐 경우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할 수 없음

○ 이미 공제한 외국세액 : 국외 또는 대륙지역의 납부세액에 관하여 이미 공제한 세액
○ 행정구제충당세액(行政救濟留抵稅額)

6.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서 차감해야 하는 항목 및 차감시점

영리사업조직의 다음 각항의 금액은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잔액에서 차감(減除)하여야 한다(所得稅法 §66-4).

○ 1998년도 또는 그 이후 연도 귀속의 주식배당금총액 또는 이익총액에 포함된 공제가능 세액을 분배하는 것.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서 차감(減除)한 일자가 分配日이다.

○ 1998년도 또는 그 이후 연도에 결산신고한 대만 영리사업소득세 납부세액에 관하여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확정(核定)을 거쳐 감소한 세액. 그 차감일자는 세액환급확정통지서(核定退稅通知書)의 송달일이다.
○ 회사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提列)한 법정이익준비금(法定盈餘公積), 준비금(公積金), 공익금(公益金) 또는 특별이익준비금(特別盈餘公積)에 포함된 당해 연도의 기납부 영리사업소득세액. 그 차감일자는 계산일(提列日)이다.
○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董事), 감사, 직원에게 분배한 배당금(紅利)에 포함된 당해 연도의 기납부 영리사업소득세액. 차감(減除)일자는 분배일이다.
○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항목 및 금액.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서 차감하는 일자는 財政部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사건의 자료를 조사 확정하는 기간 내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또는 분배를 의결한 경우, 장차 지급(應付) 또는 실제지급(實際給付)을 불문하고 즉시 차감해야 한다.

7. "세액공제비율"의 계산과 공제가능세액의 분배

가. 분배제한

영리사업조직이 1998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귀속이익을 분배 시에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공제가능세액은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의 분배일에 그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所得稅法 §66-5).

나. 세액공제비율의 계산(所66-6)

영리사업조직은 1998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귀속이익을 분배 시에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 분배일의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잔액이 장부에 기재한 누적미분배이익구좌잔액(帳載累積未分配盈餘帳戶餘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세액공제비율로 하여 각 주주 또는 사원이 분배받은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의 순소득(淨額)에 따라 공제가능세액

을 계산하고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과 함께 분배한다.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비율 =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잔액 / 누적미분배이익구좌 잔액

주주(또는 사원)의 공제가능세액 = 주식배당금(또는 이익)의 순소득 × 세액공제비율

영리사업조직이 상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비율이 세액공제비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비율의 상한을 기준으로 주주 또는 사원의 공제가능세액을 계산한다. 세액공제비율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 ○ 누적미분배이익에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33.33%.
- ○ 누적미분배이익에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한 경우는 48.15%.
- ○ 누적미분배이익에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일부는 추가징수하고, 다른 일부분은 추가징수하지 않은 경우, 각자 누적미분배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전항에 규정한 상한에 따라 계산한 합계금액이다.

영리사업조직의 장부에 기재한 누적미분배이익은 영리사업조직이 "商業會計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1998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누적미분배이익을 말한다.

다. 공제가능세액의 취소(註銷)

영리사업조직은 해산 시에 잉여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을 완료한 다음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잔액을 취소해야 한다. 영리사업조직의 합병 시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消滅)하는 회사는 합병발효일에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잔액을 취소하여야 한다(所得稅法 §66-5).

라. 분배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설치를 면제받을 경우, 공제가능세액을 그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독자기업, 동업조직 형태의 영리사업조직은 별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所得稅法 §66-7).

마. 조사자료에 따라 조정한 경우

개인 또는 영리사업조직이 국내외의 기타 개인 또는 영리사업,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와 상호간에 주주권리(股權)의 이전 또는 기타 허위적인 행위(安排)를 이용하여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하여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관련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財政部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실제로 분배받아야 하거나 분배받은 주식배당금, 이익 또는 공제가능세액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所得稅法 §66-8).

8. 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

가. 미분배이익의 기본규정

1) 10%의 영리사업소득세 추가징수(加徵)

1998년도부터 영리사업조직이 당해 연도의 이익을 미분배한 경우 당해 미분배이익에 대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2) 미분배이익에 대한 제한의 취소

종합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邊際稅率)이 40%이고 영리사업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20%이므로, 미분배이익에 대해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한 후 그 세부담은 30%(20%+10%)에 달한다. 즉, 양자의 차이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

을 유보하여 소득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은 이미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유보이익의 액수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즉, 유보이익에 대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한 후에 유보이익의 금액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서도 이익의 강제적인 귀속(歸戶)을 피할 수 있었다. 종전 제도하에서 회사는 이익의 유보를 통하여 주주의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보이익이 주주의 피난처(庇護所)로 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보이익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兩稅合一 이후 미분배이익에 대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하기 때문에 2006년 5월 30일에 總統華總一義字第09500075621號令으로 종전의 소득세법 제76조 1의 규정을 삭제할 것을 공포하였다. 종전 소득세법 제76조 1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사조직인 영리사업조직에 있어서 미분배이익의 누적금액이 기납입 자본금(已收資本額)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다음 영업연도 내에 미분배이익을 이용하여 증자를 해야 하고, 증자 후 미분배이익의 유보액수는 당해 증자 후 기납부자본금(已收資本額) 액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그 한도로 한다. 규정에 따라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는 그 누적 미분배이익의 전액에 대하여 주당 분배해야 할 금액에 따라 귀속시킨 후 실제 귀속연도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나. 미분배이익의 계산

영리사업소득에 관하여 표면상 영리지만 실제는 손실(虛盈實虧)인 상황임에도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당하는 상황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대만은 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을 수정 · 공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 세무소득으로부터 재무소득으로 변경
- ○ 이전 연도의 결손을 보충하는 외에 회계사의 대조확인 서명을 통한 사건의 경우는 다음 연도의 결손을 보충할 수 있다.
- ○ 주관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이익에서 계산한 특별이익준비금 또는 분배제한부분과 세후순이익(稅後純益)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차감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 ○ 영리사업조직의 규정에 따라 제한해야 하는 이익을 추가(增訂)하고, 제한원인이

소멸(消滅)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종료 전에 미분배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한원인 소멸(消滅)연도의 미분배이익과 합산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 제66조의 9의 규정에 따르면 미분배이익이라 함은 2005년도부터 영리사업조직이 당해 연도에 商業會計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세후순이익(稅後純益)에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 이전 연도의 손실을 보충한 부분과 회계사의 조사확인서명을 거친 경우 다음 연도의 손실을 보충한 부분

ⓑ 당해 연도의 이익에서 분배한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의 순소득(淨額)

ⓒ 회사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이익에서 계산(提列)한 법정이익준비금(法定盈餘公積) 또는 合作社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준비금(公積金)과 公益金

ⓓ 본국과 외국이 체결한 조약 또는 본국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경제원조, 대출협의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 부채상환기금준비금(償債基金準備) 또는 이익분배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의 이익에서 계산하거나 제한한 부분

ⓔ 회사 또는 合作社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이익에서 지급한 이사(董事), 경리, 감사, 직원의 배당금(紅利) 또는 보수(酬勞金)

ⓕ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주관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이익에서 계산한 특별이익준비금(特別盈餘公積) 또는 분배를 제한한 부분

ⓖ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세후순이익(稅後純益)을 자본준비금(資本公積)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 財政部의 심사비준을 거친 기타의 항목

② 상기 ⓑ항부터 ⓖ항까지는 각 소득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종료 전에 이미 실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③ 영리사업조직의 당해 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사의 조사확인서명을 거

친 경우, 세후순이익(稅後純益)은 회계사가 조사확정(査定)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 후 주관기관의 조사확인을 거쳐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는 조정, 경정(調整更正)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④ 영리사업조직이 상기 ⓓ항 및 ⓕ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받는 이익은 제한원인 소멸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종료 전에 분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한원인 소멸연도의 미분배이익과 합산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9. 이익신고 및 조사

가. 주식배당금 증빙의 작성, 발급(塡發)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을 설치해야 하는 영리사업조직은 매년 1월 말 전에 이전 연도에 주주에게 배분한 주식배당금 또는 사원의 이익에 관하여 주식배당금증빙(股利憑單), 연간 주식배당금 분배총괄자료(分配匯總資料)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에 보고하여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2월 10일 전에 주식배당금증빙(股利憑單)을 납세의무자에게 작성 ·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리사업조직에 해산 또는 합병의 상황이 있을 경우는 이미 분배한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에 관하여 수시로 주식배당금증빙을 작성하여 10일내에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變動明細資料의 신고

영리사업조직은 결산신고 시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이전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변동명세자료를 작성하여 결산신고서와 함께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여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사업조직이 해산할 경우에는 청산완료일에 신고해야 한다. 영리사업조직이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발효일에 신고해야 한다.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변동명세자료란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期初殘額, 당해 연

도 증가금액의 명세, 감소금액의 명세 및 그 잔액을 말한다(所得稅法 §102-1).

다. 이익신고기한

영리사업조직은 각 당해 소득연도에 결산신고를 한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규정에 따라 계산한 미분배이익에 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해야 하고, 추가징수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전에 자진납부해야 한다. 계산한 미분배이익이 0(零) 또는 負數일 경우에도 여전히 신고해야 한다.

라. 해산, 합병 시 이익의 신고기한

영리사업조직이 상기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해산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해산 또는 합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 또는 합병일까지 아직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하지 않은 미분배이익에 대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해야 하고 또한 추가징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전에 자진납부해야 한다. 영리사업조직이 규정된 기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즉시 조사자료에 따라 그 미분배이익 및 추가징수세액을 확정하고 영리사업조직에 통지하여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마. 회계연도의 변경

영리사업조직이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거쳐 회계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부분에 대하여 아직 신고하지 않은,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추가징수해야 하는 미분배이익에 대해 변경 후의 회계연도의 미분배이익과 합산하여 상기 세 번째 규정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所得稅法 §102-2).

바. 협조신고

과세당국(稽徵機關)는 영리사업조직을 협조하여 기한 내에(依限) 미분배이익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기한 만기 15일 이전에 신고재촉서(催報書)를 작성하여 지연신고의 책임을 提示하여야 한다. 신고재촉서는 公告의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 기한초과(逾期)신고

영리사업조직이 규정된 기한 내에 미분배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즉시 연체신고통지서(滯報通知書)를 작성하여 영리사업조직에 송달하고 영리사업조직이 연체신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충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여전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미분배이익 및 추가징수세액을 확정해야 하고, 확정세액통지서를 작성하여 세액납부서(繳款書)와 함께 영리사업조직에 송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이후 조사에서 별도로 과세자료를 발견할 경우 稅捐稽徵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所得稅法 §102-3).

아. 조사

과세당국(稽徵機關)는 미분배이익신고서를 접수한 후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미분배이익 및 추가징수세액을 확정해야 한다(所得稅法 §102-4).

10. 세액환급

재조사(復查), 訴願 또는 행정소송결정을 거쳐 영리사업조직의 1998년도 또는 이후 연도의 소득세액을 환급해야 할 경우, 세액환급 시 당해 영리사업조직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잔액에 환급해야 하고, 미환급잔액은 영리사업조직이 이후 연도의 영리사업소득세 납부세액을 충당(留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所得稅法 §100-1).

11. 비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에 분배받는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에 관한 규정

대만 경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및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 · 영업대리인이 없는 영리사업조직이 분배받는 주식배당금총액 또는 이익총액에 포함된 세액은 소득세법 제3조의 1의 兩稅合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주주의 종합소득세를 공제(抵繳)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배받은 주식배당금총액 또는 이익총액에 포함된 세액이 10%의 영리사업소득세 추가징수 부분에 속하는 세액일 경우, 당해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 순소득(淨額)에 관하여 원천징수(扣繳)해야 할 세액을 공제(抵繳)할 수 있다. 당해 공제금액은 분배받은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 순소득(淨額)의 10%를 기준으로 분배일에 이미 추가징수한 10%의 영리사업소득세의 잔액이 누적미분배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所得稅法 §73-2).

12. 처벌

가. 연체신고(滯報)

영리사업조직이 기한 내에 미분배이익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충신고를 하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이 그 미분배이익 및 추가징수세액을 조사하여 확정한 경우 확정한 추가징수세액에 따라 10%의 연체신고금을 별도로 징수한다. 연체신고금의 금액은 新台幣(NT$) 1,500원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나. 태만신고(怠報)

영리사업조직이 규정된 보충신고기한을 넘겨서도 미분배이익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미분배이익 및 추가징수세액을 확정한 경우는 확정한 추가징수세액에 따라 20%의 태만신고금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태만신고금의 금액은 新台幣(NT$) 4,500원보다 적어서는 안된다(所得稅法 §108-1).

다. 과소신고(短報), 누락신고(漏報) 및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미분배이익신고를 하였지만 미분배이익의 누락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있을 경우, 누락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를 거쳐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미분배이익을 발견 시 법에 따라 추가징수세액을 보충징수하는 외에 보충징수세액에 따른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所110-2).

라. 규정에 따라"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를 설치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을 설치(기재)해야 함에도 설치(기재)하지 않을 경우 新台幣(NT$) 3,000원 이상 新台幣(NT$) 7,500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여전히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하지 않을 경우 新台幣(NT$) 7,500원 이상 新台幣(NT$) 1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시 1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여전히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할 때까지 매달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所得稅法 §114-1).

마. 영리사업조직의 보충납부 및 벌금

영리사업조직이 다음 각항 규정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초과분배한 공제가능세액에 대하여 영리사업조직이 기한 내에 보충납부할 것을 명하고 초과분배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금액을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또는 장부기재 누적미분배이익구좌 금액을 과소계산(短計)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한 공제가능세액이 규정에 따라 분배해야 할 공제가능세액을 초과한 경우

○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한 공제가능세액이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 분배일의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잔액을 초과한 경우
○ 주식배당금 순소득(淨額)을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한 세액공제비율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여 분배한 공제가능세액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바. 분배한 공제가능세액의 기한 내 보충납부

공제가능세액을 분배해서는 아니 되는 영리사업조직이 공제가능세액을 그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하고 그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분배한 공제가능세액에 관하여 영리사업조직에 기한 내에 보충납부할 것을 명하고 분배한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사. 영리사업조직의 휴업(歇業), 도산(倒閉) 또는 행방불명

영리사업조직이 휴업(歇業), 도산(倒閉)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他遷不明) 상황이 있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는 당해 영리사업조직이 주주 또는 사원에게 초과분배하였거나 또는 분배하지 말아야 할 공제가능세액에 관하여 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所得稅法 §114-2).

아. 주식배당금증빙을 사실대로 작성·보고 및 발급하지 않는 경우

영리사업조직이 규정된 기한 내에 주식배당금증빙을 사실대로 작성·보고 및 발급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보충할 것을 명하는 외에 주식배당금증빙에 기재한 공제가능세액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新台幣(NT$) 3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최저 新台幣(NT$) 1,500원보다 낮아서도 아니 된다. 기한을 넘겨 자진하여 신고, 작성, 발급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줄여 처벌한다. 과세당국(稽徵機關)이 기한 내에 주식배당금증빙을 보충할 것을 명한 후에 영리사업조직이 기한 내에 사실대로 보충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능세액의 총액에 따라 3배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최고 新台幣(NT$) 6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 新台幣(NT$) 3,000원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자. 변동명세자료의 기한 내에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

영리사업조직이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변동명세자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新台幣(NT$) 7,500원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기한 내에 보충신고할 것을 통지하며, 기한을 넘겨 보충신고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보충신고할 때까지 매달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所得稅法114-3).

Ⅳ. 소득최저세부담제도(所得最低稅負制)

1. 서론

대만은 오랫동안 경제 ·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정책을 채택하여 산업발전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기존의 "促進産業昇級條例(2010년 5월 폐지됨)" 등이 있었다. 조세감면정책을 실시한 결과 감면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감면이익은 소수 산업 또는 개인에게 집중되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세표준의 침식과 국고수입의 감소를 조성할 뿐더러 나아가서 빈부격차의 확대, 조세의 공평에 대한 의혹을 야기하여 일반 국민의 납세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행위에 부정적 인상을 가지게 한다.

현재 소득세 관련 감면규정은 여러 법규에 분산되어있고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감면규정을 전면 취소하려면 곤란과 장애가 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및 홍콩 등 국가와 지역이 감면이익의 과도집중을 해결한 방법 등을 참조하여 소득최저세부담제도(所得最低稅負制)를 도입하고,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아 저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이 적어도 일정한 비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해서 일정한 수준의 조세공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최저세부담제도(所得最低稅負制)는 國民皆稅와 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의한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 우리나라의 최저한세제도(最低限稅制度)와 유사한 제도이다.

각계의 공동인식을 얻은 후 2005년 12월 9일에 立法院 제6차 제2회기 제54차 회의에서 "소득기본세액조례(所得基本稅額條例[18])"가 통과되고 2005년 12월 28일에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시행일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18) 전문 5개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됨.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별도로 전문 법률을 입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 "소득기본세액조례"의 주요 내용

소득세법 및 기타 법률의 조세감면 관련 규정이 국가 세수의 대량 유실을 초래하고 불공평 현상을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 정부는 별도의 전문 법률을 입법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최저세부담제(最低稅負制)를 도입하였으며, 영리사업소득과 개인소득의 불공평 현상에 대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원래 직접 소득세법 및 그 관련 법규를 수정하여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의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현재 소득세 관련 감면규정이 여러 법규에 분산되어 있고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감면규정을 전면 취소하려면 곤란과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 법률을 입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그 법률이 "所得基本稅額條例"이다.

가. 구성

제1장 총칙(제1~5조)
제2장 영리사업기본세액의 계산(제6~10조)
제3장 개인기본세액의 계산(제11~14조)
제4장 처벌(제15조)
제5장 부칙(제16~18조)

나. 시행일자

1) 일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처벌

"所得基本稅額條例"는 새로 제정한 조세법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영리사업조직이나 개인이 새로운 법령을 잘 모를 것(不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 초기에는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처벌은 엄격하지 않아야 하였기에 처벌 관련 부분은 연기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3) 非臺灣 원천소득 및 홍콩, 마카오 원천소득에 대한 조치

非臺灣 원천소득 및 홍콩, 마카오 원천소득을 개인기본소득액에 포함하는 내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국제 간의 교역이 빈번해지고, 그 관계도 밀접해짐에 따라 대만 국민이 보유한 非臺灣 원천소득이 날로 증가하였으며 개인의 경내·경외 소득과세가 대칭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내외 과세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고 이는 자금의 대외유출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원을 확실히 장악하고 국고수입을 충족하려면 종합소득세를 현행의 "속지주의"(대만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屬人兼屬地主義"(해외소득도 과세범위에 넣어야 함)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세부담제는 非臺灣 원천소득 및 "홍콩 마카오 관계조례(香港澳門關係條例)"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세하는 소득을 특별히 포함시켜 소득세의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게 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치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완벽한 지지(配套) 조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所得基本稅額條例"는 당해 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필요시에 行政院이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연기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입법목적

"所得基本稅額條例" 제1조는 "조세공평을 실현(維護)하고 국가세수를 확보하며 영리사업조직 및 개인의 소득세부담이 국가재정에 기본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실시하는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조세공평의 실현(維護)

대만은 일부 사회정책 또는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조세장려 또는 감면조치를 규정하였는데 감면이익이 소수 산업 또는 개인에게 집중되어 많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또는 소액의 세금만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매우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부담불공평의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입법·제정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도록 한다.

2) 국가세수의 확보

대만은 조세감면에 대한 범위의 확대로 국가세수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는데 국가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및 한국 등 국가를 참조하여 최저세부담제도(最低稅负制)를 실시한다.

3) 영리사업조직 및 개인의 소득세부담의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공헌 실현

대만은 각종 조세의 감면이익이 소수 산업 및 개인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관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최저세부담제도(最低稅负制)의 적용대상에 영리사업조직 및 개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영리사업조직 및 개인의 소득세부담이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공헌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라. 관련법 간의 적용의 선후(立法位階)

"所得基本稅額條例" 제2조는 "소득기본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및 확정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기타 법률의 조

세감면관련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所得基本稅額條例"는 현행 "所得稅法", "교통건설에의 민간 참여 장려 조례(獎勵民間參與交通建設條例)" 등 불공평한 조세감면규정을 개선하려 하기 때문에 그 法律位階는 이러한 법규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所得基本稅額條例"의 법률위계는 소득세법 및 기타 조세감면 관련 규정보다 높고, 법률 적용에 있어서 "所得稅法" 및 "교통건설에의 민간 참여 장려 조례{獎勵民間參與交通建設條例) 등 기타 법률의 조세감면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所得基本稅額條例 §2).

3. 실시대상 및 배제대상

"所得基本稅額條例"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이 다음 각항 규정 중 하나에 부합되는 외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독자기업 또는 동업조직 형태의 영리사업조직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
3)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소비합작사(消費合作社)
4)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한 각급 정부 공공사업(公有事業)조직
5)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만 경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 및 영업대리인이 없는 영리사업조직
6) 소득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신고를 하거나 동 조항 제5항에서 규정한 파산선고를 한 영리사업조직
7) 소득세결산 또는 결산신고를 법률에서 규정한 투자공제장려를 적용하지 않고 또한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소득액이 없는 영리사업조직
8) 소득세결산신고를 법률에서 규정한 투자공제장려를 적용하지 않고 또한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액이 없는 개인
9)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본소득액이 新臺幣(NT$) 200만원 이하의 영리사업조직
10)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본소득액이 新臺幣(NT$) 600만원 이하의

개인

상기 제9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조정연도의 지수에 비해 누계 10% 이상 상승 시에 상승 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금액은 新臺幣(NT$) 10만원을 단위로 하고 新臺幣(NT$) 10만원 미만인 경우 만원자리의 수를 사사오입하며, 조정의 공고방식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所得基本稅額條例 §3).

상기 규정을 종합하면 "所得基本稅額條例"의 적용대상, 배제대상 및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시대상

"所得基本稅額條例"의 실시대상은 영리사업조직 및 개인을 포함한다.

2) 배제대상

최저세부담제도의 기본정신 및 세무행정을 고려해서 "所得基本稅額條例"는 다음 대상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다음의 대상은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독자기업 또는 동업조직의 영리사업조직

독자기업 및 동업조직 형태의 영리사업조직은 규모가 작고 또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所得基本稅額條例"의 규범을 적용받지 않는다.

② 특수한 정책적 의의가 있거나 또는 성격이 특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대상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교육, 문화, 공익, 자선 기관 또는 단체

ⓑ 소비합작사(消費合作社)

ⓒ 각급 정부 공공사업(公有事業)조직

③ 소득세 결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신고를 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한 영리사업조직

ⓐ 종합소득세 : 경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결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영리사업소득세 : 경내에 고정사업장 및 영업대리인이 없는 영리사업조직은 영리사업소득세 결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규정에 따라 청산신고 또는 파산선고를 한 영리사업조직 : 당해 기업은 경영부진으로 그에 대한 세수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만일 당해 기업을 "所得基本稅額條例"의 적용범위에 넣을 경우 징수와 납부 쌍방의 곤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원칙과도 거리가 있다.

④ 투자공제장려 및 본 조례(제7조 및 제12조) 규정의 각 항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 : 당해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공제장려를 적용하지 않거나 조세감면을 향유하지 않기 때문에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최저세부담제도의 정신에 부합된다.

ⓐ 영리사업조직 : 소득세결산 또는 결산신고에 있어서 투자공제장려를 적용하지 않고 또한 본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액이 없는 영리사업조직

ⓑ 개인 : 소득세 결산신고에 있어서 투자공제장려를 적용하지 않고 또한 본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이 없는 개인

⑤ 기본소득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영리사업조직 및 개인 : 세무행정의 고려 및 영향범위를 줄이고 납세의무자의 반발을 감소시키며 최저세부담제도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하여 "所得基本稅額條例"는 소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였다.

ⓐ 영리사업조직 : 기본소득액(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액에 면세소득을 부가한 합산금액)이 新臺幣(NT$) 200만원 이하인 영리사업조직은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적용하지 않는다. 新臺幣(NT$) 200만원의 기준은 확대서면신청의 영리사업조직(영업규모가 작은 자에 대해 세무행정상의 고려에

따라 장부증빙이 건전할 경우 장부증빙을 가져와서 열람(調閱)하지 않고 신고서에만 의거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그 영업액이 新臺幣(NT$)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적용 순소득률(純益率)은 대부분이 6%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조직의 기준을 新臺幣(NT$) 200만원으로 정한다.

ⓑ 개인 : 기본소득액(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순소득액에 면세소득을 가산한 후의 합산금액)이 新臺幣(NT$) 600만원 이하의 개인은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상기 영리사업조직의 新臺幣(NT$) 200만원 및 개인의 新臺幣(NT$) 600만원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조정연도 지수에 비하여 10% 이상 누적상승하였을 경우 상승 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금액은 新臺幣(NT$) 10만원을 단위로 新臺幣(NT$)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만원자리 수를 사사오입함으로써 물가상승으로 면세기준이 낮아지고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한다.

4. 일반소득세액과 기본세액의 크기 비교

가.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의 당해 연도 납부 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의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이 소득세의 기본공헌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반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나.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 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전항의 차액은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투자공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해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이 소득세의 기본공헌도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현저히 낮은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전항의 차액에 대하여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투자공제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저세부담제도의 정신에 부합되게 하였다(所得基本稅額條例 §4).

다. 소득액이 新臺幣(NT$)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만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연간 종합소득총액이 당해 연도에 규정한 면세액 및 기준공제액의 합산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자는 결산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소득액이 新臺幣(NT$)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所得基本稅額條例 §5).

라. 결론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일반소득세액과 기본세액 양자 가운데서 많은 것을 선택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즉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일반소득세액으로 납세하고,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일반소득세액을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차액부분은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투자공제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연간 종합소득총액이 당해 연도에 규정한 면세액 및 기준공제액의 합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산신고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기본소득액이 新臺幣(NT$)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5.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세액의 계산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세액은 영리사업조직의 과세소득에 면세소득을 더하고 공제액(新臺幣 200만원)을 차감하여 얻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세액
=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액 + 면세소득(所得基本稅額條例 제7조에 따라 더한 면세소득) − 공제액(新臺幣 200만원)〕 × 세율(10%)

영리사업조직의 일반소득세액 ≥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세액
→ 일반소득세액으로 납세

영리사업조직의 일반소득세액 <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세액
→ 일반소득세액 +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 납세

가. 영리사업조직의 일반소득세액

영리사업조직이 당해 연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에서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투자공제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영리사업조직의 일반소득세액이다(所得基本稅額條例 §6).

나.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소득액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소득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액에 다음 각항 소득액을 더한 합산금액이다(所得基本稅額條例 §7).

1) 증권교역소득 및 선물교역소득

소득세법 제4조의 1 및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권교역소득세 및 선물교역소득세의 부과징수를 중지한 소득액이다. 다만 본 조례 시행 후 발생하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확정을 거친 손실은 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연도의 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獎勵民間參與交通建設條例"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액

3)"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액

4)"科學工業園區設置管理條例"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액

① "科學工業園區設置管理條例"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액

② 2001년 1월 20일에 수정, 공포한 "科學工業園區設置管理條例"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액

6)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법(企業併購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액

7) 국제금융업무지점(國際金融業務分行)의 면세소득

"國際金融業務條例"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금융업무지점(國際金融業務分行)의 소득에 대해 영리사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액. 다만 소득세법 제73조의 1의 규정에 따라 授信수입총액을 규정 공제율에 따라 신고납세한 소득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밖에, 본 조례 시행 후에 발생하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확정을 거친 손실은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연도 각 해당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8) 새로 추가한, 영리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기타 소득액

① 본 조례 실시 후 법에 새로 추가한 영리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액 및 소득과세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액을 財政部에서 공고한 경우
② 규정에 따라 가산한 감면소득액 및 소득에 불산입한 소득액이 발생한 손실은 財政部에서 공고한 경우 전항 규정에 준한다.

다. 공제액

영리사업조직의 공제액은 新臺幣(NT$) 200만원이다. 즉 기본소득액이 新臺幣(NT$)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적용하지 않는다(所得基本稅額條例 §8).

라. 세율

대만은 경제발전 및 조세공평의 달성 등을 고려하는 외에 기타 최저세부담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세율을 최저 10% 이상 최고 12% 이하의 범위로 정하고, 그 징수율은 行政院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정하는데 현재는 10%로 잠정 결정하였다. 주변국의 법인세(회사소득세) 또는 최저세부담 세율과 비교할 때 대만은 10%로 대만의 세율은 기타 주변 국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고 할 수 있다(所得基本稅額條例 §8).

마. 기본세액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본소득액에서 新臺幣(NT$) 200

만원을 공제한 후에 行政院에서 제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所得基本稅額條例 §8).

6. 기본세액과 양세합일의 결합

가.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자진납부한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 및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확정을 거쳐 증가된 납세액은 모두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잔액에 산입하며, 그 산입일자는 납세일자이다.

영리사업조직이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확정을 통해서 줄어든 세액은 당해 연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일자는 세액환급확정통지서의 송달일이다(所得基本稅額條例 §9).

나. 미분배이익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자진납부한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 및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확정을 통해서 늘어난 납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미분배이익의 공제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所得基本稅額條例 §9).

7. 개인기본세액의 계산

상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일반소득세액이 개인의 기본세액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에는 일반소득세액에 따라 납세하고, 개인의 일반소득세액이 개인의 기본세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소득세액 외에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납세해야 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일반소득세액 ≥ 개인의 기본세액
→ 일반소득세액으로 납세
개인의 일반소득세액 < 개인의 기본세액
→ 일반소득세액 + (기본세액과 일반소득세액의 차액) 납세

가. 개인의 일반소득세액

개인의 일반소득세액은 당해 연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의 납부세액에서 기타 법률규정에 따른 투자공제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所得基本稅額條例 §11).

나. 개인의 기본세액

개인의 기본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순소득에 면세소득을 더하고 공제액(新台幣 60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세율(20%)을 곱해서 산정할 수 있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기본세액 =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순소득 + 면세소득(所得基本稅額條例 제12조에 따라 가산한 면세소득) - 공제액(新台幣 600만원) × 세율(20%)

다. 개인의 기본소득액

개인의 기본소득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순소득액에 다음 각항의 금액을 가산한 후의 합산금액이다(所得基本稅額條例 §12).

① 非臺灣 원천소득

종합소득총액에 산입되지 않은 非臺灣 원천소득, "홍콩 및 마카오 관계조례

(香港澳門關係條例)"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 다만 한 신고단위(申報戶)의 연간 동 항목의 소득 합산금액이 新臺幣(NT$)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② 보험급부

본 조례 실시 후 체결한 수익자와 보험서 소지인(要保人)이 동일인이 아닌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에 있어서 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급부. 다만 사망 시 매 신고단위(申報戶)에게 지급한 연간 합산금액이 新臺幣(NT$) 3,000만원 이하인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다음 유가증권의 교역소득

ⓐ 증권교역소에 상장하지 않았거나 또는 證券商영업소에서 매매하지 않은 회사가 발행하거나 私募한 주식, 신주권리증서, 주식대금교부증빙 및 그 권리를 표명하는 증서

ⓑ 사모증권이 신탁기금에 투자한 수익증빙

유가증권교역소득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역 손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 연도의 교역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의 교역소득이 없어 공제할 수 없거나 또는 공제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그 교역소득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손실 및 공제신고 연도에 모두 실제교역가격 및 원시취득원가로 손익을 계산하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확인 및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유가증권교역소득의 조사확인에 있어서 그 교역가격, 원가 및 비용인정방식, 실제교역가격 또는 원시취득원가를 미신고 또는 제시할 수 없을 경우의 확정 등 사항과 관련된 방법은 財政部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④ 비현금기부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한 비현금

기부금액

⑤ 새로 추가한 기타 면세액 또는 공제액

본 조례 실시 후 법률에 새로 추가된 종합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액 또는 공제액에 대해 財政部에서 공고를 한 경우. 교역 손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 연도의 교역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당해 연도의 교역소득이 없거나 공제액이 부족할 경우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그 교역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손실 및 신고공제 연도에 모두 실제교역가격 및 원시취득원가로 손익을 계산하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확인 및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라. 가정을 신고단위로 함(消費單位制)

종합소득세는 가정을 신고단위로 하기 때문에 개인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合併申報)해야 하는 배우자 및 부양친족에게 면세소득(제12조 제1항 각항 금액)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본소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所得基本稅額條例 §4).

마. 공제액

개인의 기본소득액이 新臺幣(NT$)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공제액은 600만원이다(所得基本稅額條例 §13).

바. 세율 및 기본세액

① 세율

세율은 20%이다. 대만의 "所得基本稅額條例"는 개인의 세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와 비교할 때 영리사업조직과 유사하며 비교적 낮은 편이다(所得基本稅額條例 §13).

② 기본세액

개인의 기본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본소득액에서 新台幣(NT$) 600만원을 공제한 후 20%로 계산한 금액이다(所得基本稅額條例 §13).

사. 중복과세의 방지

대만은 非臺灣 원천소득(종합소득총액에 산입하지 않는 非臺灣 원천소득 및 "홍콩, 마카오 관계조례규정〈香港澳門關係條例〉"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을 개인의 기본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함으로써 국가와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외 소득에 관하여 소득원천지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공제금액이 당해 소득을 가산함으로써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증가하는 기본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전항의 공제는 소득원천지국의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동일 연도 납세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소재지의 대만 대사관, 영사관 또는 기타 대만 정부인허가 기구의 확인(簽證)을 취득해야 한다(所得基本稅額條例 §13).

8. 처벌

가. 규정에 따라 계산 및 신고한 기본소득액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이 본 조례규정에 따라 계산 및 신고한 기본소득액에 누락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세액탈루의 상황이 있을 경우, 탈루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규정에 따라 계산 및 신고하지 않은 기본소득액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액을 계산 및 신고하지 않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를 거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액을 발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보충징수하는 외에 보충징수세액에 따라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所得基本稅額條例 §15).

다. 1년을 연기하여 시행함으로써 홍보(宣傳), 輔導를 강화

대만의 "所得基本稅額條例"는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지만 처벌 관련 부분만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즉 시행 첫해에 과소신고, 누락신고의 상황이 있지만 보충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이로써 정책시행 초기에 기업(厂商) 또는 개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법령이 너무 엄격하여 民怨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9. 과도기간의 완충규정

대만은 조세의 공평정의를 실현하고 고소득의 영리사업조직 또는 개인이 조세장려 또는 감면특혜를 과도하게 적용받음으로써 납세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소액의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所得基本稅額條例"를 제정하여 국가의 재정에 대한 공헌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다만 조세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실시 초기에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며 또한 국가 경제발전을 고려하고 국내외 기업(厂商)이 신속히 투자계획 또는 업무(開工)를 완성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소득액 계산 시에 계속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조세의 공평 및 산업발전 양자를 모두 고려하였고 동 완충기간의 면세는 최장 12년에 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가. 이미 비준한 면세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財政部에서 비준한 면세(促進產業昇級條例 등 규정에 따라 이미 5년 면세를 받는 소득)

나. 이미 투자계획을 완성한 경우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중앙의 사업목적 주관기관으로부터 심사를 통과한 후 완성된 증명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이미 투자계획서를 완성하고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財政部의 심사비준을 받아 면세한 경우

다. 이미 투자계획 심사비준문서를 취득하고 업무를 시작(開工)한 경우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중앙의 사업목적 주관기관이 심사발급한 투자계획심사비준문서를 취득하고 업무를 시작(開工)하였으며, 투자계획한 제품 또는 서비스 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라. 1년 이내에 開工 및 3년 이내에 투자계획을 완성하는 경우

본 조례 시행 전에 중앙의 사업목적 주관기관이 심사발급한 투자계획비준문서를 취득하고 아직 시작(開工)하지 않았으나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開工)하고 또한 심사비준문서를 발급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계획을 완성하며 투자계획한 제품 또는 서비스 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마. 이미 공공건설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조례 시행 전에 民間機構業과 주관기관에서 공공건설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 약정일자 이내에 시작(開工) 및 완공을 하였으며 투자계획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다만 주관기구의 요구에 따라 투자계획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所得基本稅額條例 §16).

Ⅴ. 이전가격세제(移轉訂價稅制)

1. 법원

"영리사업소득세 중 정상교역(常規)에 부합되지 않는 이전가격(移轉訂價)에 대한 조사·확정(查核) 준칙(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19]"의 법원에는 "所得稅法", "금융지주회사법(金融持股公司法)", "기업인수합병법(企業併購法)"이 있다.

가. 所得稅法

일부 영리사업조직은 국내외에 종속관계 또는 지배관계가 있는 기타의 영리사업조직(예를 들어 모자회사 또는 자매회사 등)을 이용하여 정상교역(常規)에 부합되지 않는 교역에 종사함으로써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대응하여 대만 소득세법 제43-1조는 "영리사업조직이 국내외의 기타 영리사업조직과 종속관계 또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조직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고, 그 상호간의 관련 수익, 원가, 비용 및 손익의 분담에 있어서 정상교역(常規)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가 있어 납세의무를 회피 또는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당해 사업조직의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財政部의 심사·비준을 거쳐 정상교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만으로는 부족하여 2004년 12월 28일에 "영리사업소득세 중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확정 준칙(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이하 "준칙")을 공포하여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교역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리사업 소득세 조사·확정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제114-1조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교역이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이전가격에

19) 전문 7개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 유사함.

대한 조사와 심사확정(審核)에 대하여는 동 준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지주회사법(金融控股公司法)

"금융지주회사법(金融控股公司法)" 제5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간,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와 국내외의 기타 개인, 영리사업조직 또는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 사이에 관련 수입, 원가, 비용 및 손익의 분담에 있어서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로 납세의무를 회피 ·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분인수(股權收購), 재산의 이전 또는 기타 허위의 행위로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하여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관련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심사 · 확정을 거쳐 정상교역(交易常規) 또는 조사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와 그가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본국 자회사 간의 교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인수합병법(企業併購法)

동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와 그 자회사 사이, 회사 또는 그 자회사와 국내외 기타 개인, 영리사업조직,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 사이에 관련 수입, 원가, 비용 및 손익의 분담에 있어서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가 있어 납세의무를 회피 ·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분인수, 재산의 이전 또는 기타 허위의 행위로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하여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 ·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稽徵機關)이 관련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주관 기관의 심사 · 확정을 거쳐 정상교역 또는 조사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그가 발행지분 총수의 100%를 소유한, 대만 경내에 설립한 자회사 간의 교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경우, 당해 연도에 前

條의 영리사업소득세 합산신고(合併申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적용대상

가. 관련기업의 교역이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영리사업조직과 국내외 기타 영리사업조직 간에 종속관계 또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조직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그 상호간의 관련 수익, 원가, 비용 또는 손익 분담의 교역은 정상교역(營業常規)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련 영리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서의 납세의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로 대만 경내의 납세의무를 회피 또는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관련 영업사업조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소득세법 제43-1조의 규정에 따라 財政部의 심사·비준을 거쳐 정상교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2).

나. 관련기업의 판정

소득세법 제43-1조에서 말하는 영리사업조직과 국내외 기타 영리사업조직 사이에 종속관계 또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조직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란 영리사업조직 상호간에 다음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3).

- ○ 영리사업조직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영리사업조직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을 소유하고, 그 금액이 당해 다른 영리사업조직이 이미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 영리사업조직과 다른 영리사업조직이 직간접적으로 동일인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금액이 각각 이미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영리사업조직이 다른 영리사업조직의 의결권 있는 지분총수 또는 자본총액에 대한 소유비율이 가장 높고 또한 10%를 초과하는 경우
○ 영리사업조직과 다른 영리사업조직의 업무집행 주주 또는 이사(董事)가 50% 이상 같을 경우
○ 영리사업조직 및 그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영리사업조직이 다른 영리사업조직에 파견한 이사(董事)가 당해 다른 영리사업조직 이사 총인원 수(董事總席次)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 영리사업조직의 이사장(董事長), 總經理 또는 그와 상당하거나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자와 다른 영리사업조직의 이사장, 총경리 또는 그와 상당하거나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배우자 또는 2촌(等親) 이내의 친족관계일 경우
○ 본부(總機構)가 대만 경외에 있는 영리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 설립한 지점(分支機構)과 당해 본부 또는 당해 영리사업조직이 대만 경외에 있는 기타의 지점. 본부가 대만 경내에 있는 영리사업조직, 그 본부 또는 그가 대만 경내에 설립한 지점과 당해 영리사업조직이 대만 경외에 있는 지점
○ 영리사업조직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영리사업조직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 영리사업조직과 기타 영리사업조직이 합자 또는 연합경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영리사업조직이 다른 영리사업조직에 대하여 지배능력이 있거나 또는 인사, 재무, 업무경영이나 관리정책 면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상황

3. 관련 용어 정의

가. 관련기업(關係企業)

영리사업 상호간에 상술한 종속 또는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특수관계자(關係人)

관련기업을 말하거나 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영리사업조직과 그의 기부를 받는 금액이 실제납입기금총액(實收基金總額)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재단법인

② 영리사업조직과 그 이사(董事), 감사(監察人), 總經理 또는 그와 상당하거나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자, 副總經理, 부경영자(協理) 및 총경리 직속의 부서 주관

③ 영리사업조직과 그 이사, 감사, 총경리 또는 그와 상당하거나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자의 배우자

④ 영리사업조직과 그 이사(董事), 감사(監察人), 總經理 또는 그와 상당하거나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자의 2촌(等親) 이내의 친족

⑤ 영리사업조직과 당해 영리사업조직에 대하여 지배능력이 있거나 또는 인사, 재무, 업무경영, 관리정책 면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

다. 비특수관계자(非關係人)

전항 이외의 경우

라. 피지배교역(受控交易)

특수관계자 상호간에 종사하는 교역과 동 준칙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마. 제3자 교역(未受控交易)

비특수관계자 간의 교역

바. 교역결과(交易結果)

교역가격 또는 이익

사. 정상교역 또는 교역관례에 부합되지 않음

교역자 상호간에 상업 또는 재무상 체결한 조건에 있어서 쌍방이 비특수관계자였다면 그 중 어느 한 교역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당해 조건으로 인하여 당해 교역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아. 有形資産

상품, 원료, 자재(物料), 미완성품, 완제품, 부산물(副産品), 단기투자,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외상채권 및 기타 고정자산, 소모성 자산(遞耗資産)(Wasting assets), 장기투자 및 기타 유형자산

자. 無形資産

영업권, 저작권, 특허권(專利權), 상표권, 사업명칭, 브랜드명칭, 디자인 또는 모형, 計書, 노하우(秘密方法), 영업비밀, 또는 공업, 상업 또는 과학경험과 관련된 자료정보(資訊) 또는 전문지식, 각종 특허권리, 판매망(行銷網路), 고객자료 및 재산가치가 있는 기타의 권리

차. 이전가격(移轉訂價)

영리사업조직이 피지배교역에 종사하면서 제정한 가격 또는 이익

카. 정상교역방법(常規交易方法)

피지배교역의 결과가 정상교역 또는 교역관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피지배교역의 영업정상교역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기업인수합병법에서 규정한 회사 또는 그 자회사와 비특수관계자 간에 관련 수입, 원가, 비용 및 손익의 분담(攤計)이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를 진행할 때, 이들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그 서로 간에 발생하는 교역을 피지배교역으로 본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4).

4. 독립기업원칙(常規交易原則)

영리사업조직이 영리사업소득세 결산신고를 할 때 규정에 따라 피지배교역의 결과가 정상교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피지배교역의 정상교역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 및 확정 진행 시에도 마찬가지이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 6).

영리사업조직과 과세당국(稽徵機關)은 규정에 따라 피지배교역의 결과가 정상교역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피지배교역의 정상교역결과를 결정 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7).

가. 비교가능원칙(可比較原則)

비특수관계자가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비교가능한 제3자와의 교역에 종사할 때의 결과를 정상교역결과로 하여 피지배교역의 결과가 정상교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정상교역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을 채택

교역의 유형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정상교역방법을 채택하여 정상교역결과를 결정한다.

영리사업조직과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최적정상교역방법을 결정할 때 피지배교역의 교역유형별로 다음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가. 비교가능성

영리사업조직 및 그가 종사하는 피지배교역과 비교가능 대상 간의 비교가능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유사 정도가 높을수록 적용성도 높아진다.

나. 자료와 가설의 품질(資料與假設之品質)

품질이 좋을수록 적용성도 높아진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9).

다. 개별적인 교역에 따라 평가

적용하는 정상교역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인 교역을 기초로 각자 정상교역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적인 교역 간에 관련성 또는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교역을 합하여 정상교역방법을 적용하고 그 정상교역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라. 교역 당해 연도의 자료를 사용

① 원칙

정상교역결과를 결정시 영리사업조직이 피지배교역에 종사하는 당해 연도의 자료 및 동일 연도에 비특수관계자가 비교가능 제3자 교역에 종사하는 자

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

② 예외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및 이전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몇 년간의 교역자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

㉮ 영리사업조직이 속하는 산업이 상업순환의 영향을 받을 경우

㉯ 교역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서비스가 생명주기의 영향을 받는 경우

㉰ 영리사업조직이 시장점유율 책략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익을 기초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정상교역결과를 결정하는 경우

㉲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상황

ⓑ 당해 연도의 자료를 제때에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상술한 교역의 당해 연도의 자료가 제20조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재무제표 자료에 속하고 또한 영리사업조직이 교역 당해 연도의 영리사업소득세 결산신고 시에 취득하지 못한 자료인 경우, 영리사업조직은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이전 연속 3개 연도의 평균 수로 대체할 수 있다. 영리사업조직이 전술한 단서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연속 다년간의 비교가능 제3자 교역 자료를 기초로 할 수 있다.

③ 영리사업조직이 앞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정상교역에 부합되지 않는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 및 확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리사업조직과 같은 원칙을 채택하여 사용할 자료를 결정해야 한다.

마. 정상교역 범위의 채택

1) 4分位法

정상교역의 범위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이 같은 정상교역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상교역결과의 범위를 말한다.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그것과 피지배교역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조

정을 진행함으로써 당해 차이가 교역결과에 대하여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비교가능 제3자교역 결과의 25%부터 75% 사이의 구간을 정상교역 범위로 한다.

2) 평균 수

규정에 따라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교역 결과의 다년간 평균값으로 앞의 규정에 따라 정상교역범위를 구할 수 있다.

3) 중위값(中位數)

피지배교역이 앞의 교역자료를 기초로 한 교역결과가 정상교역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관례에 부합된다고 보아 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정상교역 범위 밖에 있을 경우 모든 비교가능 제3자 교역 결과의 중위수 또는 모든 다년간 평균수의 중위수에 따라 피지배교역의 당해 연도의 교역결과를 조정한다.

4) 영리사업조직과 비특수관계자 사이 내부의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이 피지배교역과 상당히 높은 정도의 비교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를 근거로 피지배교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상교역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경우, 당해 결과로 피지배교역의 정상교역 결과를 결정하고 앞의 3개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5) 앞의 2개 항에 따라 조정한 결과가 대만 경내의 납세의무가 조정 전보다 낮게 될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바. 결손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영리사업조직이 결손을 신고하였으나 그 집단의 전 세계 총이익은 正數일 경우, 그 결손의 발생원인 및 그와 관련기업 상호간의 교역결과가 관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사. 수익지출 구분평가(收支分別評價)

피지배교역의 교역자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금액과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금액은 각각 교역당사자 일방의 수입과 지출의 교역가격평가에 산입해야 한다.

아. 기타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정상교역원칙도 적용할 수 있다.

5. 비교가능대상의 선정

가. 가격 또는 이익에 영향 주는 요소 고려

비교가능 상황 또는 비교가능교역란이 같거나 유사한 상황 또는 교역을 말한다. 영리사업조직과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상황 또는 그가 종사하는 피지배교역과 제3자 교역이 같거나 유사한지 및 그 비교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가격 또는 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8).

1) 교역대상물의 자산 또는 서비스의 특징

① 교역대상물이 유형자산일 경우에는 자산의 실체특징, 품질, 수량 및 무형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② 교역대상물이 무형자산일 경우에는 교역형태, 자산의 유형, 법정사용연수 및 당해 자산 사용의 예상이익. 교역형태란 예를 들어 授權 또는 양도를 말한다.

③ 교역대상물이 서비스일 경우는 서비스의 성질 및 무형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집행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연구와 발전
② 제품설계
③ 구입(採購) 및 원료, 자재의 관리
④ 제조, 가공, 조립
⑤ 판매(行銷), 도매(配銷), 재고관리, 보증, 광고, 제품서비스
⑥ 운송 및 창고보관
⑦ 경영관리, 회계, 재무, 법률, 신용, 대금수령(收款), 훈련 및 인원관리서비스

3) 계약조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보수의 수령, 지급방식
② 교역수량
③ A/S(售後)보증 범위 및 조건
④ 업데이트(更新) 또는 계약내용 수정의 권리
⑤ 授權 또는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재협상의 권리
⑥ 교역 쌍방 간에 부속 또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협의
⑦ 물품 인도(交付)의 조건, 예를 들어 발송지인도 또는 목적지 인도
⑧ 授信 및 대금지급조건

4) 위험부담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시장위험(예를 들면 원가, 수요와 공급, 가격의 변동, 재고수준위험 등)
② 연구 개발활동의 성패 위험
③ 재무위험(예를 들면 외환환율, 이자율변동의 위험)
④ 신용위험(예를 들면 수신, 대금수령의 위험)
⑤ 제품책임의 위험

5) 경제 및 시장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지역시장의 유사성
② 시장규모 및 발전 잠재력

③ 시장의 등급(層級)(예를 들면 도매 또는 소매 시장 등)
④ 시장점유율
⑤ 시장경쟁 정도, 소비자구매력, 교역쌍방의 기타 선택성
⑥ 정부의 시장에 대한 관리
⑦ 산업개황(예를 들면 신흥 또는 사양산업〈夕陽産業〉)
⑧ 운송원가

6) 상업책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창조 및 제품개발 전략
② 위험회피 전략
③ 시장점유율 전략

7)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나. 조정을 통하여 차이를 없앨 수 있는 영향인 경우에는 비교가능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영리사업조직과 비특수관계자의 상황 또는 그가 종사하는 피지배교역과 제3자 교역 사이에 상술한 각종 요소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당해 차이가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가격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해야 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당해 차이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당해 비특수관계자 및 제3자 교역을 선정하여 비교가능대상으로 해야 한다.

영리사업조직과 비특수관계자 간에 종사하는 제3자 교역과 당해 영리사업조직과 특수관계자 간에 종사하는 피지배교역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하고, 이를 비교가능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정상교역방법(常規交易方法)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可比較未受控價格法)

비특수관계자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유형자산의 이전 또는 사용,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자금의 사용 등 비교가능 제3자 교역에 종사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을 피지배교역의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4).

나. 비교가능 제3자 교역법(可比較未受控交易法)

비특수관계자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무형자산의 이전 또는 사용 등 비교가능 제3자 교역에 종사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을 피지배교역의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5).

다. 재판매가격법(再售價格法)

피지배교역에 종사하는 영리사업조직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서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총이익률(毛利率)에 따라 계산한 총이익(毛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피지배교역의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정상가격 =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 × (1 –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총이익률)
총이익률 = 총이익 / 매출순소득(銷貨淨額)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이라 함은 피지배교역의 대상물인 유형자산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을 말하고, 해당 가격이 없을 경우 같은 유형자산을 재판매 시 또는 재판매 전·후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총이익률이란 당해 영리사업조직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같

은 종류의 유형자산을 구입하여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총이익률을 말한다. 해당 총이익률이 없을 경우는 집행기능, 위험부담 및 계약조항 등이 유사한 기타 영리사업조직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을 구입하여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총이익률을 기준으로 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6).

라. 원가가산법(成本加價法)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원가 또는 자체제조의 원가에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원가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총이익을 가산한 후의 금액을 피지배교역의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정상가격 = 제3자교역자로부터 구입한 원가 또는 자체제조의 원가 × (1 +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원가가산율)

원가가산율 = 총이익 / 구입원가 또는 자체제조의 원가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의 原價加算率(成本加價率)이란 피지배교역에 종사하는 영리사업조직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체제조한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을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원가가산율을 말한다. 해당 원가가산율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기능, 위험부담 및 계약조항이 유사한 기타 영리사업조직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 또는 자체제조한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을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원가가산율을 기준으로 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7).

마. 비교가능 이익법(可比較利潤法)

비교가능 제3자 교역이 특정 연한 내의 平均利益(利潤)率指標를 기초로 비교가능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피지배교역의 정상교역 결과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 이익법에서 사용하는 이익률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營業資産報酬率

영업순익(營業淨利)을 분자로, 영업자산을 분모로 계산한 비율

2) 영업순익률(營業淨利率)

영업순익을 분자로, 매출순소득(銷貨淨額)을 분모로 하여 계산한 비율

3) Berry 비율

영업총이익(營業毛利)을 분자로, 영업비용을 분모로 계산한 비율

4)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이익률지표

영업순익(營業淨利)란, 영업총이익(營業毛利)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고, 대상활동(受測活動)에 속하지 않는 소득 및 대상개체(受測個體)의 계속경영과 무관한 非常損益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자산이란, 대상개체(受測個體)가 관련 영업활동에서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데,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을 포함하고, 초과현금(超額現金), 단기투자, 장기투자, 방치자산(閒置) 및 당해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비용이라 함은 본 영업의 경영에 속하지 않는 이자비용, 소득세 및 대상활동(受測活動)과 무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8).

바. 이익분할법(利潤分割法)

피지배교역의 각 참여자가 종사하는 활동이 고도로 통합되어 그 교역결과를 단독으로 衡量하기가 어려울 경우, 각 참여자가 모든 참여자의 합병영업이익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각 참여자가 분배받아야 할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營利事業所得稅

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9).

7. 유형자산의 정상교역방법

유형자산의 이전 및 사용에 적용되는 정상교역방법(常規交易方法)은 다음과 같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0).

① 비교가능 제3자 교역법
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비교가능이익법
⑤ 이익분할법
⑥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정상교역방법

8. 무형자산의 정상교역방법

무형자산의 이전 및 사용에 적용되는 정상교역방법은 다음과 같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1).

① 비교가능 제3자교역법
② 비교가능이익법
③ 이익분할법
④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정상교역방법

9. 서비스 제공의 정상교역방법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정상교역방법은 다음과 같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2).

① 비교가능 제3자 교역법
② 원가가산법

③ 비교가능이익법
④ 이익분할법
⑤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정상교역방법

10. 자금사용의 정상교역방법

자금의 사용에 적용되는 정상교역방법은 다음과 같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13).

① 비교가능 제3자교역법
② 원가가산법
③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정상교역방법

11. 조사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 및 자료(文據)

가. 자료의 제출(揭露)

영리사업조직은 소득세 결산신고 시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관련기업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및 당해 관련기업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교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 21).

나. 문서 및 자료의 준비

피지배교역에 종사하는 영리사업조직은 교역연도의 소득세 결산신고를 할 때 다음의 문서 및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22).

① 企業總攬
② 조직구조
③ 피지배교역의 정리(匯整)
④ 이전가격보고

⑤ “公司法” 제369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관련보고서, 관련기업 합산영업보고서(關聯企業合併營業報告書) 등 자료
⑥ 특수관계자 또는 피지배교역과 관련되고 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문건

다. 문서 및 자료의 제출(提示文據)

과세당국(稽徵機關)이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 시 영리사업조직은 과세당국(稽徵機關)의 書面調查函이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만기 전에 연기를 신청해야 하고 연장기간은 최장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한다.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영리사업조직이 제출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당해 문서 및 자료를 지지하는 기타의 필요한 문건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영리사업조직은 1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영리사업조직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문서 및 자료는 목록 및 색인을 첨부해야 하고, 제공하는 자료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稽徵機關)의 비준을 거쳐 영문판을 제출할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22).

12. 이전가격사전합의(預先訂價協議)

가. 신청

1) 신청조건

영리사업조직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교역이 다음 각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신청하고 정상교역 결과를 상의 및 결정(議定)할 수 있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23).

①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교역은 그 교역총액이 新臺幣(NT$) 10억원 이상에 달하거나 또는 연간 교역금액이 新臺幣(NT$) 5억원 이상에 달해야 한다.
② 이전 3개 연도에 중대한 세금 탈루상황이 없어야 한다.
③ "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문서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④ 이미 이전가격보고를 완성해야 한다.
⑤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조건

2) 신청기한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신청한 영리사업조직(이하 '신청인' 이라 약칭)은 전항 제1호의 교역이 포함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 종료 전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인이 여럿일 경우 1인을 추천 · 파견하여 신청해야 한다.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신청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受理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수리를 동의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문건 및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연장기간은 최장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23).

3) 협의절차의 종료

이전가격사전합의에 있어서 합의를 달성하기 전에 예상교역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요소가 발생할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1개월 이내에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전조(준칙 §24) 제1항의 문건 및 보고를 수정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수정 후의 문건 및 보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은 합의절차의 진행을 종료할 수 있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25).

나. 사전합의 체결

1) 심사·평가(審核評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공한 문건 및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 · 평가를 진행하고 결론을 작성해야 한다. 심사 · 평가 시에는 필요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의(諮詢)하거나 또는 보충자료 및 문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26).

2) 사전합의의 체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심사평가 결론을 작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함께 비교가능대상 및 그 교역결과, 가설조건, 가격결정(訂價)원칙, 계산방법, 적용기간 및 기타 주요 문제에 대하여 토론해야 하고, 쌍방이 합의에 도달한 후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법정대표인 또는 授權 서명인과 함께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이전가격사전합의가 체결되면 쌍방은 이행 및 준수의 의무를 진다. 이전가격사전합의의 적용기간은 신청연도로부터 3년 내지 5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청교역의 존속기간이 비교적 짧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27).

3) 적용기간 연장 신청

신청인이 이전가격사전합의의 각 조항을 확실하게 준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만료 전에 사전합의 내용의 관련 사실과 환경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적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심사, 동의를 받을 경우 사전합의를 다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32).

4) 합의 규정의 준수 또는 위반(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30).

① 합의규정에 부합

신청인이 이전가격사전합의의 적용기간에 실제로 진행하는 교역이 합의의 규정에 부합되고 합의 조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합의의 정상교역방법 및 계산결과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② 합의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합의조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중대 사항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행위와 관련될 경우 당해 합의는 당연무효로 된다.

13. 조사·확정(核定) 및 조정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영리사업조직에 대하여 이전가격조사를 진행할 때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33).

가. 규정에 따라 문서·자료를 제출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본 준칙의 규정에 따라 피지배교역의 정상교역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을 확정해야 한다.

나. 규정에 따라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리사업조직이 규정에 따라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조사자

료가 없고 또한 영리사업조직이 제출하지 못한 문서 및 자료가 그 소득계산의 원가 또는 비용에 관계되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규정에 따라 당해 부분과 관련되는 영업수익 순소득(營業收入淨額)에 관하여 동종 업종의 이익기준에 따라 그 소득을 확정할 수 있다.

다. 문서·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영리사업조직이 제공을 거부하는 문서 및 자료가 소득에 관계되는 자료 및 문서일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은 "稅捐稽徵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新臺幣(NT$) 3,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4. 처벌

피지배교역에 종사하는 영리사업조직은 규정에 따라 그 정상교역 결과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감소하는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이 "所得稅法" 및 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관련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소·누락신고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所得稅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34).

① 피지배교역의 신고가격이 과세당국(稽徵機關)이 확정한 정상교역가격의 2배 이상 또는 확정한 정상교역가격의 50% 이하인 경우

② 피지배교역에 관하여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정 또는 확정 결과, 증가한 소득액이 영리사업조직의 연간 확정 소득금액의 10% 이상이고 또한 연간 확정 영업수입 순소득의 3% 이상인 경우

③ 영리사업조직이 準則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이전가격보고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기타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 그 가격결정(訂價)결과가 정상교역결과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④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 결과 기타의 구체적인 과소, 누락 신고 사항이 있고 또한 그 금액이 거대할 경우

제3편 소비세제

Ⅰ.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치형 영업세

1. 서론

영업세는 일종의 소비세로서 대만의 "부가가치형(加値型) 및 비부가가치형(非加値型) 영업세법"(이하 "영업세법"이라 약칭)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만 경내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수입재화를 판매할 경우 모두 부가가치형 또는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세는 제조·도매 및 소매 등 교역 각 단계의 판매행위에 대한 과세로서 일종 다단계의 판매세이다. 또한 영업세는 전가행위를 통하여 세부담을 전가하고, 즉 영업세의 세금 납부자와 실제부담자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세이기도 하다. 영업세는 臺灣省 정부의 기능 및 업무가 조정되기 전에는 省稅이었으나, 조정 후에는 1999년 7월 1일부터 국세로 변경되었다. 영업세와 영리사업소득세는 그 성질이 달라 전자는 간접세이고 후자는 직접세이다. 또한 전자는 영업행위가 있으면 이익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해야 하지만 후자는 소득이 있어야만 과세한다.

대만은 영업세 실시 초기에 영업총액(營業總額, 營業毛額)에 따라 다단계 과세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에는 많은 결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재화를 매번 판매할 때마다 한 번의 영업세가 과세되므로 동일한 과세표준(稅基)에 대한 중복과세가 발생되고, 또한 판매자의 영업세 세부담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전가됨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과세표준에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영업세가 포함되게 되어 세금에 세금이 붙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영업총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자원분배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동 제도는 또한 다양한 업무를 다하는 영업인(一貫作業者)에게 유

리하고 분업 작업자, 특히 분업 작업이 세밀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상술한 중복과세, 세금에 세금이 붙는 상황 및 조세중립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결점을 개선하고 대만의 해외판매제품(外銷產品)의 세액환급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해외판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6년 4월 1일부터 종전에 실시하던 총액형 영업세제를 부가가치형 영업세제로 변경하여 재화와 용역이 각 생산, 판매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 즉 "매출가액(銷售價格)" "매입가액(進貨價格)"을 초과하는 "부가가치(加值)"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그 밖에 공평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영업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이번 영업세 개혁으로 인하여 부가가치형 영업세가 위주로 되었지만 아직 금융보험업, 특수음식업 및 소규모 營業人 등 일부 영업세는 여전히 영업총액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대만의 현행 영업세제는 부가가치형 영업세와 총액형 영업세를 같이 채택하는 제도이다. 세법의 명칭이 실제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9일에는 세법의 명칭을 "營業稅法"에서 "부가가치형(加值型) 및 비부가가치형(非加值型) 영업세법"으로 바꾸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 납세의무자

영업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2)

○ 영업인: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영업인

營業人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6)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영, 사영 또는 공사합영의 사업조직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조직, 기관, 단체, 조직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 외국의 사업조직, 기관, 단체, 조직이 대만 경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 수취인(收貨人) 또는 소지인(持有人): 수입재화의 수취인 또는 소지인

○ 매수인, 대리인: 외국의 사업조직, 기관, 단체, 조직이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그가 용역을 제공하는 매수인. 다만, 외국국제운송사업조직이 대

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대리인이 있을 경우는 그 대리인

3. 과세대상

대만의 영업세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대만 경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및 재화의 수입은 모두 영업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영업세법 §1). 영업인이 해외에 지점이 있고 당해 지점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는 대만의 영업세 납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재화의 판매란 재화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판매란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재화를 제공하여 타인과 함께 사용·수익함으로써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영업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업무집행자가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사, 의사, 약사, 조산사, 작가(著作人), 중매인(經紀人), 대서인, 세무대리인, 공연자(表演人), 도선사(引水人) 및 기타 기예로 자기 힘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의 업무수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않는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施行細則 §6).
- ○ 개인이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는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

따라서 영업세의 과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대만 경내에서 재화를 판매한다고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4)

- ○ 판매하는 재화의 교부에 관하여 이전운송(移運)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발송지가 대만 경내에 있어야 함.
- ○ 판매하는 재화의 교부에 관하여 이전운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그 소재지가

대만 경내에 있어야 함.

나. 판매로 보는 경우

○ 재화의 판매로 보는 경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판매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영업세법 §3).

- 영업인이 판매를 위하여 제작, 수입, 구매한 재화를 영업인 자신에게 공급하거나, 또는 그가 제작 · 수입 · 구매한 재화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를 이전하는 경우
- 영업인이 영업을 해산 또는 폐지 시 남은 재화 또는 재화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 영업인이 자신의 명의로 재화를 대신 구매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 영업인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화를 대신 판매하게 하는 경우
- 영업인이 대리판매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 용역의 판매로 보는 경우

- 재화의 판매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판매로 보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탁재산을 다음의 각 신탁관계자 사이에서 이전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하는 경우는 판매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신탁행위의 성립으로 인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 신탁관계 존속 중에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원래의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
- 신탁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 · 해제 · 취소 또는 신탁관계 소멸 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다. 대만 경내에서 용역의 판매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4)

○ 판매하는 용역이 대만 경내에서 제공 또는 사용되는 경우
○ 국제운송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서 여객 · 화물을 실어 출국하는 경우
○ 외국보험업조직이 대만 경내의 보험업조직으로부터 재보험을 보증(承保)하는 경우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해외 판매 재화 또는 용역은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하지만, 기업의 해외 판매를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 판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채택하기 때문에 해외 판매 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각 이전 단계의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영업세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영업세 부담을 지지 않는다.

라.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5)

○ 재화를 해외에서 대만 경내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정부가 확정한 면세수출구 내에 수입하는 해외판매사업조직, 科學工業園區 내의 園區사업조직 및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공장, 보세창고 또는 물류센터의 보세재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화가 상기 사업조직, 공장, 창고 또는 물류센터로부터 대만 경내의 기타 지역에 유입되는 경우

즉, 재화가 해외로부터 국내의 면세수출지역 내의 해외판매사업조직, 科學工業園區 내의 園區사업조직 및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에 유입되는 경우는 수입이 아니므로 영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곳으로부터 대만 경내의 기타 지역에 유입될 경우는 수입이므로 영업세를 과세해야 한다.

상술한 해외판매사업조직, 科學工業園區 내의 園區사업조직 및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다음을 말한다.

○ 면세수출구 내의 해외판매사업조직: 가공수출구설치관리조례(加工出口設置管理條例)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해외판매사업조직
○ 科學工業園區내의 園區사업조직: 科學工業園區設置管理條例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園區사업조직
○ 보세공장: 세관의 보세공장관리방법(海關管理保稅工廠辦法)의 규정에 따라 등기·설립하고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공장
○ 보세창고: 보세창고의 설립 및 관리방법(保稅倉庫設立及管理辦法)의 규정에 따라 세관의 등기·비준을 거쳐 설립한 보세창고
○ 물류센터: 세관의 비준·등기를 거쳐 주로 보세재화의 창고보관(倉儲), 이전운송(轉運) 및 배송업무(配送業務)를 경영하는 보세장소를 말한다.

4. 세율

대만의 영업인이 영업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부가가치형 영업세와 "영업총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비부가가치형 영업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또한 "일반세액계산"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영업인이라고도 하고, 후자는 "특수세액계산"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영업인이라고도 한다.

가. 부가가치형영업세를 납부하는 경우(일반세액계산의 영업인)

○ 일반 : 영업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세의 세율은 최저 5%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최고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징수율은 行政院이 규정한다. 현행 세율은 최저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行政院은 징수율이 5%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해외판매 : 영세율(0%)
○ 면세

나. 비부가가치형영업세를 납부하는 경우(특수세액계산의 영업인)

1) 금융보험업

○ 은행업, 보험업, 신탁투자업, 증권업, 선물업, 票券業 및 전당업. 비전문적으로(非專屬) 본 업종을 경영하는 매출액의 세율이 5%인 것을 제외하고, 그 세율은 2%이다. 다만 보험업의 재보험료수입의 세율은 1%이다.

○ 상술한 금융보험업 소속의 각 업종에서 보험업의 재보험업수입을 제외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그 비전문적으로(非專屬) 본 업종을 경영하는 이외의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목적사업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각 업종의 만기 채권을 상쇄하거나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기한 내에 상쇄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목적사업 주관 기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의 매출액에 관하여 별도로 3%의 영업세를 징수해야 한다.

○ 전항의 3%의 영업세로 만기채권을 상쇄하거나 또는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는 적용기간은 금융보험업 소속 각 업종의 기구가 만기대출비율(逾期放款比率)이 1%보다 적을 때 적용하지 않는다.

○ 동 규정을 적용하는 각 업종은 2002년 1월부터 "行政院金融重建基金設置管理條例" 제3조 제1항 제1목에서 규정한 行政院 금융재건기금의 재원에 산입을 정지하는 날까지의 영업세 세액은 行政院 금융재건기금에 전문 공급(專款撥供)하여 문제의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財政收支劃分法" 관련 조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특수음식업

대만은 특수 음식업에 대하여 고세율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징수를 통한 금지(寓禁於徵)의 정책적 의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술집(酒家, 酒吧)에 대한 적용세율은 25%에 달한다.

① 나이트클럽, 오락프로그램이 있는 음식점의 세율은 15%이다. 오락프로그램이라 함은 영업시간에 다음 사항 중 하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악기공연의 인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직업적인 노래, 공연이 있는 경우(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施行細則 ”8)

② 술집 및 여성의 陪伺가 있는 茶室, 커피숍, bar 등의 세율은 25%이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12)

3) 농산품 인수인(承銷人) 및 소규모영업인

소규모 영업인 및 기타 財政部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신고를 면제하는 영업인의 세율은 1%이다.

농상품도매시장의 인수인(承銷人) 및 농산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업인의 영업세 세율은 0.1%이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13)

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징수율

대만은 특수한 경제상황으로 물자공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71조의 입법예에 따라 行政院에서 수입하는 밀, 보리, 옥수수 또는 콩에 대한 영업세를 탄력적으로 조정(機動調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 밀, 보리, 옥수수 또는 콩에 대하여 징수해야 할 영업세는 行政院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제10조의 최저 5% 최고 10%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行政院은 상술한 물자의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10일에 공고하여 2008년 3월 10일부터 2009년 3월 9일까지 수입 밀, 보리, 옥수수 및 콩에 대한 영업세를 하향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조정폭은 100%이다. 즉 5%에서 0%로 조정하였다.

적당한 탄력을 보류하고 특수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항의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재화의 종류, 조정의 폭, 실시기간 및 실시개시일 및 종료일은 모두 財政部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行政院에 보고하여 行政院이 확정 · 공지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9-1).

5. 납부세액의 계산

가. 과세개시점(起徵点)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확정(查定)에 따라 영업세액을 계산하는 농산품 도매시장의 인수인(承銷人), 농산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업인, 소규모 영업인 및 기타 財政部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 신고를 면제하는 영업인의 영업세 과세개시점(起徵点)은 다음과 같다.

〈표 3-Ⅰ-1〉 소규모영업인의 영업세 과세개시점(起徵点)

	업종	과세개시점(起徵点)
제1欄	매매업, 제조업, 수공업, 신문업, 출판업, 농림업, 축목업, 수산업, 채광야금업(鑛冶), 包作業, 인쇄업, 공용사업, 오락업, 운송업, 사진업, 일반음식업	新臺幣(NT$) 8만원
제2欄	인테리어업, 광고업, 수리업, 가공업, 여행숙박업, 이발업, 목욕업, 용역도급업, 창고업, 임대업, 대리업(代辦), 중개업(行紀), 기술 및 설계업, 공증업	新臺幣(NT$) 4만원

영업인이 제1란 및 제2란의 영업을 겸영할 경우, 각 매출액이 해당 欄의 과세개시점에서 차지하는 백분비 합계액이 100%를 초과할 경우 영업세를 징수해야 하고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제1欄의 매출액}}{\text{제1欄의 課稅開始点}} + \frac{\text{제2欄의 매출액}}{\text{제2欄의 課稅開始点}} \geq \frac{100}{100}$$

나. 세액의 계산

1) 부가가치형 영업세를 납부하는 경우(일반세액계산의 영업인)

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溢付稅額)

○ 부가가치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영업인의 영업세액의 계산은 매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그 잔액이 正數라면 바로 "납부세액"이 되고, 반대로 負數라면 환급세액이 된다.

- "매출세액"이란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경우 규정에 따라 수취해야 하는 영업세액을 말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14).
- "매입세액"이란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영업세액을 말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15).

납부세액(정수일 경우) 또는 환급세액(부수일 경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런 부가가치형 영업세액의 계산방법을 稅額相減法이라고 하고, 대만은 바로 세액 상감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밖에 과세표준 상감법(稅基相減法)이 있는데 동 방법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세액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 과세표준 상감법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품목별 복수세율이나 면세제도를 두는 경우, 계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세부담의 전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 세액 상감법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수출 등에 대해 완전면세가 가능하고 세부담의 전가가 명료하여 부가가치세(영업세)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고 통일영수증(統一發票;세금계산서)의 수

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양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소득의 결과는 같지만 세액 상감법의 계산이 더 편리하고 낫다.

② 매출세액의 계산

○ 매출대상이 영업인일 경우 : 매출세액의 계산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 매출대상이 비영업인일 경우 :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는 영업인이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비영업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급하는 二聯式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은 매출세액과 매출액의 합계이다. 즉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기재된 금액은 영업세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그 매출액을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施行細則 §32-1)

매출액 = 당기에 발급한 二聯式 통일영수증 총액 / (1 + 징수율 5%)
매출세액 = 매출액 × 징수율

③ 매입세액

○ 매입세액이란 영업인이 재화, 용역, 고정자산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할 때 규정된 세율에 따라 지불하는 영업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 매입액 × 세율

○ 매입세액의 공제 : 영업인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경우 그 명칭, 주

소 및 통일번호를 기재한 다음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33)

-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시 취득한 영업세액을 기재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
- 판매로 볼 경우, 자체로 발급한 영업세액을 기재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
-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영업세액을 기재한 기타의 증빙

○ 금전등록기(收銀機) 통일영수증(統一發票) 매입세액의 계산

- 營業人이 통일번호를 기재한 二聯式 계산기(收銀機)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세액의 환급 및 공제의 증빙으로 사용할 경우, 기간별로 매입세액을 합산(匯總計算)해야 한다.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施行細則 §38)

매입세액 = 계산기 통일영수증 총액 × 징수율 5% / (1 + 징수율 5%)

2) 비부가가치영업세의 체계(특수세액계산)

① 세액의 계산

○ 영업총액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는 영업인은 매달의 매출액에 규정된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영업세액으로 한다.

○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매출액 × 세율

② 매출액은 업종별 및 영업규모의 크기에 따라 실제매출액 또는 확정(查定)매출액을 채택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보험업 : 은행업, 보험업, 신탁투자업, 증권업, 선물업, 票券業, 전당업은 그 매출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영업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전당업은 확정(查

定)한 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21).

○ 특수음식업 : 매출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영업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은 확정한 매출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22).

○ 농산품의 인수인(承銷人) 및 소규모영업인 : 농산품 도매시장의 인수인(承銷人), 농산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영업인, 소규모영업인 및 財政部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신고를 면제하는 기타의 영업인은 부가가치형 체계의 적용을 신청하는 외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확정한 매출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영업세액을 계산해야 한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23).

따라서 소규모 영업인의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확정한다.

③ 소규모 영업인의 매입세액의 공제

○ 소규모 영업인이란 규모가 작고 교역이 작으며(零星) 매달 매출액이 통일영수증(統一發票)기준을 사용하는 영업인에 도달하지 못하는 영업인을 말한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施行細則 §9).

○ 특수세액의 계산 중에서 확정에 따라 영업세액을 계산하는 소규모 영업인의 매입세액은 본래 공제할 수 없으나 소규모 영업인이 재화를 매입할 때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취득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세법은 소규모 영업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시 영업세액을 기재한 증빙을 취득하고 규정에 따라 1월, 4월, 7월, 10월의 5일 전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할 경우 주관 과세당국은 그 매입세액의 10%에 따라 확정세액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였다.

○ 다만, 확정세액이 課稅開始点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의 10%가 확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차기에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25, 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施行細則 §44).

3) 수입재화의 세액계산

수입재화는 관세 납부 가격(關稅完稅價格)에 수입조세, 화물세 또는 담배주류세(菸酒稅)를 더한 후의 금액에 규정된 세율 5%에 따라 영업세액을 계산하고(영업세법 §20), 수입 시에 세관에서 대리징수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 41).

4) 기타

營業人이 그가 일반세액에 따라 계산하지 않는 영업인으로부터 구매한 중고 승용차 및 오토바이(機車)를 판매할 경우, 즉 일반세액계산(부가가치형)의 영업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고, 특수세액계산(비부가가치형)의 영업인으로부터 구매한 중고승용차 및 오토바이(機車)를 판매 시 당해 구입원가에 규정된 징수율 5%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 구입원가/(1 + 징수율) × 징수율

전항의 매입세액은 영업인이 해당 중고 승용차 및 오토바이(機車)의 매출액을 신고하는 당기에 해당 매출세액의 공제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영업인이 제1항의 매입세액을 신고 시 해당 승용차 및 오토바이(機車)를 구매한 매입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본 조문의 발효일에 아직 확정과세(核課) 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정과세(核課)를 確定하지 않았을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15-1).

다. 매출액의 계산

1) 일반매출액의 인정

① 매출액

매출액이란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수취하는 전부의 대가로서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이외에 수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당기 매출에 대한 영업세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술한 재화가 화물세 또는 담배주류세(菸酒稅)를 부과해야 하는 재화일 경우 그 매출액에 화물세액 또는 담배주류세액(菸酒稅額)을 포함시켜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16).

- ○ 오락티켓(娛樂票券) : 오락티켓의 티켓 가격 내에 대리징수한 오락세 및 영업세를 포함하는 경우 우선 이를 차감한 후에 세금불포함(不含稅)의 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 ○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외에 추가로 수취한 모든 비용에 관하여 상술한 영업세 및 오락세를 제외하고 기타 각종 추가수취비용은 모두 매출액에 산입해야 한다.
- ○ 화물세 납세대상의 기업이 화물세 과세대상의 재화를 판매할 경우 그 매출액에 화물세액을 가산해야 한다.

② 매출환불(銷貨退回) 또는 할인(折讓)

영업인이 매출환불 또는 할인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매입세액은 매출환불 또는 할인 발생 당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영업인이 매입환불(進貨退出) 또는 할인(折讓)으로 인하여 회수하는 영업세액은 매입환불 또는 할인의 발생 당기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15).

2)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경우

영업인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시가에 따라 그 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17)

3) 국제운수사업

국제운수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서 여객, 재화를 실어 출경할 경우 그 매출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18).

○ 해운사업 : 대만 경내에서 여객을 실어 출관하거나 또는 재화를 운반하여 수출하는 모든 표값 또는 운비
○ 항공운송사업(空運事業)
- 여객운송 : 대만 경내에서 여객을 실어 대만 경외의 첫 번째 역까지의 탑승권 가격
- 화물운송: 대만 경내에서 화물을 실어 출경하는 전 노정의 운송비. 다만, 화물을 실어 출경하는 국제공운사업조직이 예를 들어 항공노선 제한 등의 원인으로 운송 도중에 적재화물을 기타 國際空運事業組織의 항공기에 옮겨 실을 경우, 화물을 실어 출국하는 國際空運事業組織이 실제 운송하는 항공노정의 운송비에 따라 계산한다.

4) 교환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으로 타인과 재화 또는 용역을 교환할 경우 그 매출액은 환출 또는 환입한 재화의 시가 중 높은 것에 따라 인정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施行細則 §18).

시가라 함은 현지의 같은 시기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시장가격을 말한

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施行細則 §25).

5) 판매로 보는 경우

영업인이 판매를 위하여 제작 · 수입 · 구매한 재화를 영업인 자신이 사용하거나 또는 그가 제작 · 수입 · 구매한 재화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를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인이 영업을 해산 또는 폐지할 때에 남은 재화 또는 재화로 채무를 변제하고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는 모두 재화의 판매로 보고 그 매출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영업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신 재화를 구매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영업인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화를 대리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營業人이 대리판매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인정에 있어서, 수탁받아 대리구매하는 경우는 대리구매재화의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위탁 및 수탁으로 대리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대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施行細則 §19).

6) 할부

영업인이 할부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할부기간중에 수취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施行細則 §20).

7)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매(合併銷售)할 경우

영업인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매출가격이 토지와 정착물에 따라 각각 명확히 기재(載明)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평가기준가격이 토지공시시가 및 건물평가기준가격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례에 따라 정착물 부분의 매출액을 계산한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施行細則 §22).

8) 대금의 預收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화를 교부하기 전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할 경우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施行細則 §22).

9) 장려금

영업인이 중개판매(經銷)계약에 따라 취득 또는 지불하는 장려금은 매입 또는 매출할인에 따라 처리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施行細則 §23).

10) 보증금(押金)

○ 부가가치세체계를 적용하는 영업인이 재산을 임대하면서 수취하는 보증금은 매달 그 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 (보증금 × 1년 정기예금이자율 ÷ 12) / (1 + 징수율)

○ 특수세액계산을 적용하는 영업인이 재산을 임대하면서 수취하는 보증금은 매달 그 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 보증금 × 1년 정기예금이자율 ÷ 12

상술한 1년 정기예금이자율은 郵政貯金匯業局의 당해 연도 1월 1일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라. 불공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체계를 적용하는 영업인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19).

- ○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빙을 취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본 업무 및 부속업무의 사용에 공급하는 것이 아닌 재화와 용역. 다만 국방건설 협조, 군대위문 및 정부에 대한 기부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접대(交際應酬)용의 재화 또는 용역
- ○ 직원 개인에게 사례(酬勞)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자가용 승용차. 자가용승용차란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9좌석 이하의 승용차를 말한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施行細則 § 26)

불공제 매입세액은 본래 속하는 매입계정(進項科目)에 계산해야 한다.

상술한 다섯 가지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면세" 및 "규정을 위반하여 보충발급한 영수증(違章補開之發票)"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면세 : 영업인이 영업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전문 경영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겸영할 경우 매입세액은 일부는 공제할 수 있고 일부는 공제할 수 없다. 그 비례 및 계산방법은 財政部에서 정한다.
- ○ 규정을 위반하여 보충발급한 영수증(違章補開之發票) : 영업인이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발급을 누락하거나 금액을 적게 발급하여 조사에서 확인된 경우,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보충발급해야 하고 비고란에 "규정을 위반하여 보충발급한 영수증(違章補開之發票)"이라고 기재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19). 매수인이 취득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 공제란에 "규정을 위반하여 보충발급한 영수증(違章補開之發票)"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또는 확정

세액에서 차감(扣減)하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매수인의 신고, 고발(檢擧)로 인하여 보충발급할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價値型及非價値型營業稅 施行細則 §30).

6. 감면범위

영업세의 감면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영세율(零稅率)

해외 판매의 재화 또는 용역은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이란, 영업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대하여 여전히 과세는 하지만 그 세율이 0(零)이고, 따라서 매출세액이 0(매출액×세율)이 되며, 또한 판매를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즉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영세율의 적용대상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영업세 세율은 '0' (零)이다(영업세법 §7)

- ○ 해외판매 재화
- ○ 해외판매와 관련된 용역, 또는 국내에서 제공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용역
- ○ 법에 따라 설립된 면세상점이 판매하는 출관(過境) 또는 출국(出境) 여객의 재화
- ○ 면세수출구 내의 해외판매사업조직, 科學工業園區 내의 園區사업조직,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의 기계설비, 원료, 자재(物料), 연료, 반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 국제운송. 다만 외국운송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서 국제운송업무를 경영할 경우 각 당해 나라가 대만의 국제운송사업조직에 대하여 동등한(相等) 대우를 부여하거나 또는 유사한 조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 국제운송용의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
○ 국제운송용의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사용하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그 수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구비해야 할 문서

영업인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구비해야 한다. (영업세법 시행세칙 §11)

○ 재화를 해외로 판매할 경우 세관에 보고하여 수출하는 자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외에, 郵政機關이 발급한 국제소포 증명서의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 해외판매와 관련되는 용역 또는 국내에서 제공하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용역에 있어서 취득한 외환을 결제(外匯結售)하였거나 또는 정부지정은행에 저금하였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외환은행에서 제작 발급한 외환증명문서를 구비해야 하고, 취득한 외환을 결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저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시외환수입증빙의 사본(原始外匯收入款憑證影本)을 구비해야 한다.
○ 법에 따라 설립한 면세상점이 출관(過境) 또는 출국(出境) 여객에게 재화를 판매할 경우, 담당세관의 비준을 거쳐 전자형식으로 저장하고 출관 · 출국 여객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물품판매서. 다만, 국제공항, 항구 통제구역 내에 설치한 면세상점의 물품판매서는 출관 또는 출국 여객의 여권, 여행증명 번호의 작성을 면제한다.
○ 면세수출구 내의 해외판매사업조직, 科學工業園區 내의 園區사업조직,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에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하고 수출로 간주하는 증명문서 또는 당해 각 사업조직, 공장, 창고에서 발급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공제란(統一發票扣抵聯)을 구비해야 한다.
○ 국제운송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국외의 여객, 재화 탑승운송수입명세서(載運收入淸單)
○ 국제운송용의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을 판매할 경우 판매계약의 사본

○ 재화를 판매하거나 국제운송용의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을 위한 수선용역을 제공할 경우, 세관이 발급한 수출신고서(出口報單), 세관이 발급하여 이미 사용 교부한 증명서류 또는 수선계약의 사본
○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타의 증명문서

나. 면세

면세란 영업인이 어떤 특정한 재화를 판매하거나 특정 용역을 제공 시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이 안 되므로 면세는 영세율과 다르다.

1) 면세의 적용대상

대만은 농업 · 어업을 배려하고 사회정책을 실현하며 교육문화를 제고하고 국방공업을 촉진하거나 또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하여 일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대하여 면세를 실시한다.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8).

○ 매각하는 토지
○ 농지에 공급하는 관개용수
○ 병원, 진료소,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약품, 병실의 숙식
○ 탁아소, 양로원, 장애복지기구에서 제공하는 양육, 요양의 용역
○ 학교, 유치원과 기타 교육문화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및 정부위탁에 의한 문화용역
○ 출판업 조직이 발행하고 주관 교육행정기관의 심사 확정을 거쳐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정부에서 법에 따라 장려하는 중요 학술전문서적
○ 외부영업을 하지 않는 직업학교의 실습상점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에 따라 등기한 신문사 · 잡지사 · 통신사 · TV · 라디오 방송국이 판매하는 그

본 사업조직의 신문 · 출판물 · 통신원고 · 광고 · 프로그램방영 및 방송. 다만 신문사의 광고 및 방송국의 광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합작사에서 법에 따라 경영하고 사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정부위탁에 의한 업무

○ 農會, 漁會, 工會, 상업회, 공업회가 법에 따라 경영하고 회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정부위탁에 의한 업무

○ 법에 따라 조직한 자선구제사업조직이 판매(標售) 또는 자선경매하는 재화와 자선공연에 있어서 그 수입에서 판매(標售), 자선경매, 자선공연의 필요비용을 지불하는 외에 모두 당해 사업조직 자체에 사용하는 경우

○ 정부기관, 공영사업조직 및 사회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로 영업하지 않는 직원복지기구를 조직, 설립, 경영하면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감옥의 공장(工廠) 및 그 작업품판매소(作業成品售賣所)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 전신기관이 법에 따라 경영하는 업무 및 정부 확정에 의한 업무

○ 정부전매사업조직이 판매하는 전매품 및 허가를 거쳐 전매품을 판매하는 영업인이 규정된 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전매품

○ 印花稅票 또는 郵票 대리판매의 용역

○ 노점상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사료 및 미가공의 신선한 農·林 · 漁 · 牧畜 생산물 및 그 부산품, 農 · 漁民이 수확 · 포획한 農·林 · 漁 · 牧畜 생산물 및 그 부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 어민이 그가 잡은 생선을 판매하는 경우

○ 벼, 밀가루의 판매 및 정미가공

○ 비부가가치형 영업세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영업인이 그가 비경상적으로 매입 · 매출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 보험업조직이 정부가 추진하는 군 · 공 · 교육인원 및 그 친족의 보험, 노동자(勞工)보험, 학생보험, 농어민보험, 수출보험 및 강제자동차 제3자책임보험을 취급(承辦)하고, 또한 보험료수입에서 공제하는 재보험보험료(再保分出保費), 생명보험공탁(提存)의 책임준비금, 연금보험공탁의 책임준비금 및 건강보험공탁의

책임준비금. 다만, 생명보험 · 연금보험 · 건강보험의 보험탈퇴수익 및 보험탈퇴로 인하여 회수하는 책임준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각급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및 법에 따라 증권교역세(證券交易稅)를 과세해야 하는 증권

○ 각급 정부기관이 판매(標售)하는 잉여(賸剩) 또는 폐기물자

○ 국방단위에 판매하여 사용하는 무기 · 잠수함 · 비행기 · 작전차량 및 작전과 관련되는 정보 · 통신기자재

○ 비료 · 농업 · 축목업용의 약, 농경용의 기계설비, 농지운송차 및 그 소요되는 기름 · 전기

○ 연안 · 근해어업의 사용에 공급하는 어선, 어선의 사용에 공급하는 기계설비, 어망 및 그 사용유

○ 은행업조직의 본점 · 지점 간의 이자, 신탁투자업조직이 위탁인을 이용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손익은 위탁인 부담으로 하는 신탁자금수입 및 전당업조직이 판매하는 받을 원금,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전당품(流當品)

○ 막대형 금괴, 금덩이, 金片, 金幣 및 순금의 악세사리 또는 장식품(飾金). 다만 가공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학술, 과학기술연구기구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 파생금융상품, 회사채, 금융채권, 은행 간 新臺幣(NT$) 단기대차(拆款) 및 은행 간 외환 단기대차(拆款) 경영의 매출액. 다만 커미션 및 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면세권의 포기

면세는 현재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최후소비단계에서 면세해야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만약 면세가 제조 또는 도매 단계에서 발생한다면 영업인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액을 가격에 반영하여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영업인 및 소비자에 대하여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 영업인이 면세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財政部의 비준을 거쳐

면세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인이 매입세액이 많을 때 면세포기를 선택하고 매입세액이 적을 때는 면세적용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세법 제8조는 財政部의 비준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세는 꼭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용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영세율은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적용포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 수입면세

수입재화에 대하여 영업세를 징수해야 하고 세관이 대리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영업세를 면제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9).

- ○ 국제운송용의 선박, 항공기, 원양어선, 비료, 막대형 금괴(金條), 금괴, 금조각(金片), 금화(金幣) 및 순금의 악세사리(金飾) 또는 장식품(飾金) 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 ○ "關稅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하는 관세를 면제하는 재화. 다만 양도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추가(보충)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세도 추가(보충)납부해야 한다.
- ○ 본국의 古物

라. 신탁

수탁자가 공익신탁으로 인하여 판매(標售) 또는 자선경매하는 재화와 자선공연에 있어서 그 수입에서 판매(標售) 또는 자선경매, 자선공연의 필요비용을 지불하는 외에 모두 당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세를 면제한다.

전항의 판매(標售) 또는 자선경매, 자선공연의 수입은 수탁자의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는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8-1).

7. 징수관리

가. 세무등기(稅籍登記)

○ 영업인의 본부 및 기타 고정사업장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각각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영업등기를 신청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28).

○ 영업등기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영업인 합병, 양도, 해산 또는 폐지 시에 모두 사실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0).

○ 영업인이 영업을 잠정 정지할 경우 영업정지 전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여 비준·비치(核備)해야 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을 때(復業)에도 마찬가지이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1).

나. 신고와 납부

○ 일반

- 영업인이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영업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두 달에 한번이고 매출액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인은 매 홀수달(單月)(즉 매년 1, 3, 5, 7, 9, 11월)의 15일 이전에 규정된 격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환급, 공제 및 기타의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매출액, 납부세액 또는 과납한 영업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 납부해야 할 영업세액이 있을 경우 먼저 국고(公庫)에 납입한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함께 신고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5, 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施行細則 §38-1).

○ 영세율 적용자

- 영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함에 있어서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청하여 매달을 하나의 기간으로 하여 그 다음 달의 15일 이전에 전달의 매출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일연도 내

에는 변경할 수 없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5).

○ 조사확정과세(查定課徵): 조사확정에 의하여 영업세액을 계산하는 전당업 및 소규모 營業人(농산품 도매시장의 인수인(承銷人), 농산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營業人 및 기타 財政部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신고를 면제하는 營業人)의 납부세액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서 매 3개월(1월, 4월, 7월 및 10월 말 전)에 각각 조사확정한 세액에 따라 세금납부서(繳款書)를 계산, 작성하여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施行細則 §45).

○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사용할 경우 매 기간(월)에 매출액을 신고 시 통일영수증(統一發票)명세표를 첨부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5).

○ 營業人이 매입세액의 증빙을 취득하고 당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기로 연장하여 신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차기에도 여전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신고 당기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施行細則 §29).

○ 외국의 사업, 기관, 단체, 조직이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용역의 판매가 있을 경우 용역의 매수인이 보수를 급부하는 차기로부터 시작하여 15일 이내에 영업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6).

○ 외국국제운송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대리인이 대만 경내에서 용역을 판매할 경우 그 대리인은 여객, 화물을 싣고 출관하는 차기로부터 시작하여 15일 이내에 영업세액을 계산, 납부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6).

○ 外國技藝공연업조직이 대만 경내에서의 공연에 대한 영업세는 규정에 따라 공연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지방에서의 공연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공연이 끝난 후의 1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외국기예공연업조직이 전항의 영업세 신고납부기한 만기 전에 출국해야 할 경우 그 영업세는 출국 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7).

○ 영업인의 본부 및 기타 고정사업장을 대만 경내의 각 지역에 설치할 경우 각각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매출액,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일반세액에 따라 계산하는 영업인은 財政部의 심사, 비준을 거쳐 본부 및 모든

기타 고정사업장이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본부가 합병하여 소재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매출액,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8).

다. 환급세액(溢付稅額)의 처리

부가가치세체계를 적용하는 영업인은 정상적인 경우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장래기간에 매출이 매입보다 크므로 인하여 상쇄(抵銷)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간편화하고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급세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기의 세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업인이 합병, 양도, 해산 또는 폐지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다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계속하여 공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경우 세법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영업인이 해외판매에 있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고정자산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훨씬 클 수 있어 공제만 가능하게 한다면 영업인은 자금이자의 부담을 안게 되고 또한 영업인이 100% 해외판매일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반드시 0(零)이 되므로 사실상 공제할 만한 익월 또는 차기의 세액이 없어 환급세액이 영원히 장부에만 남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대만의 해외판매 및 투자자본재에 대한 격려 정책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상술한 상황에 대하여 세법은 공제하지 않고 즉시 세액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환급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1) 세액의 환급

영업인이 다음의 환급세액을 신고할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 확인한 후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9).

○ 해외판매로 영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환급받아야 할 영업세

○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영업세
○ 합병, 양도, 해산 또는 폐지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환급받아야 할 영업세

그 밖에 누적 공제한 환급세액이 과다하고 그 상황이 특수할 경우에도 財政部에 신청하여 환급을 비준받을 수 있다.

2) 공제

상술한 세액환급 이외에 나머지 환급세액은 모두 차기(월)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차기(월)에 공제한 후 여전히 잔액이 있다면 이후 각 기간(월)에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고 세법은 공제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8. 통일영수증제도(統一發票制度)

가.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구입 및 사용, 발급 면제의 범위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營業人開立銷售憑證時限表"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영업성격이 특수한 營業人 및 소규모 營業人은 일반영수증(普通收據)을 제작발급(制發)하고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32).

1) 사용면제 또는 발급면제의 범위

영업인은 다음의 경우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사용 또는 발급을 면제할 수 있는 외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은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사용을 확정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3). 그 사용 또는 발급면제의 범위는 주로 소규모 영업인,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자, 은행보험업조직, 조사확정에 따라 과세하는 특수음식업조직 및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해외의 매수인에게 직접 해외판매하는 등 총 33항목을 포함한다.

○ 소규모 영업인

– 소규모 營業人은 영수증을 사용하고, 그 영업액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규정에 따라 조사·확정(查定)한다.

○ 택시업 및 기타 교통운송사업조직의 승차권(客票) 수입 부분

○ 법에 따라 설립한 면세상점

○ 농지에 공급하는 관개용수

○ 병원, 진료소, 요양원이 제공하는 요양용역, 약품, 병실의 숙식

○ 탁아소, 양로원, 장애복지기구에서 제공하는 양육(育養)용역

○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문화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및 정부위탁으로 인한 문화용역

○ 직업학교의 대외를 대상으로 경영하지 않는 실습상점

○ 정부기관, 공영사업조직 및 사회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설립하여 경영하고 대외를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 직원복지기구

○ 감옥의 공장 및 그 작업품 판매소(售賣所)

○ 우정, 전신기관이 법에 따라 경영하는 업무 및 정부의 확정에 의한 업무, 정부의 전매사업조직이 판매하는 전매품

– 다만 본 업무 이외의 경영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비준, 등기를 거친 노점상

○ 공용사업

– 다만 본 업무 이외의 경영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발업 및 목욕업

○ 조사·확정(查定)에 따라 과세하는 특수음식업

○ 법에 따라 등기한 신문사·잡지사·통신사·TV·라디오 방송국이 본 사업조직의 신문·출판물·통신원고·광고·프로그램방송·방영을 판매하는 경우

– 다만 신문사가 판매하는 광고 및 방송국의 광고방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印花稅票 또는 우표 대리판매의 용역

○ 합작사, 農會, 漁會, 工會, 상업회, 공업회가 법에 따라 그 사원 · 회원에게 경영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정부위탁으로 인한 업무
○ 각급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및 법에 따라 증권교역세를 징수해야 하는 증권
○ 각급 정부기관이 판매(標售)하는 잉여 또는 폐기 물자
○ 법원, 세관 및 기타 기관이 경매 몰수 또는 압류한 재산 · 재화 또는 저당물건
○ 은행업
○ 보험업
○ 신탁투자업, 증권업 및 短期票券業
○ 전당업의 이자수입 및 전당물건이 증식(慈生)하는 임대료
○ 오락업의 입장료 수입, 說書場, 연예장(遊藝場), 撞球場, 卓球場, 釣魚場 및 兒童樂園 등의 수입
○ 외국국제운송사업조직이 대만 경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외로부터 여객 · 화물을 실어 대만 경내에 들어오는 운송비를 대리인이 수취하는 수입
○ 영업인이 취득한 배상수입
○ 법에 따라 조직한 자선구제조직이 입찰판매(標售) 또는 자선경매하는 재화 또는 자선공연에 있어서 그 수입 중 입찰판매(標售), 자선경매, 자선공연의 필요비용을 지불하는 외에 전부 해당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경우
○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학술, 과학기술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 농산품 도매시장의 인수인(承銷人)
○ 영업인이 재화를 해외판매, 해외판매와 관련된 용역 또는 국내에서 제공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용역
○ 財政部의 확정을 거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사용 또는 발급을 면제하는 경우(統一發票使用辦法 §4)

2)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구매

영업인은 처음 또는 매년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수령, 사용(領用)할 때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청하여 통일영수증(統一發票) 구매증(購買證)을 심사 · 발급받고

통일영수증(統一發票) 전용도장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구매·사용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5).

나.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종류와 용도

부가가치세체계(일반세액계산)를 적용하는 영업인이 사용하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統一發票使用辦法 §7).

○ 三聯式 통일영수증(統一發票)
- 營業人이 營業人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한다.
- 첫 聯은 보존란(存根聯)으로서 발급자가 보존한다.
- 두 번째 聯은 공제란(扣抵聯)으로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세액 공제(扣抵) 또는 차감(扣減) 신고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 세 번째 聯은 收執聯으로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기장증빙으로 사용하게 한다.

○ 二聯式 통일영수증(統一發票)
- 營業人이 非營業人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한다.
- 첫 聯은 보존란으로서 발급자가 보존한다.
- 두 번째 聯은 收執聯으로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보관(收執)에 사용하게 한다.

○ 금전등록기(收銀機) 통일영수증(統一發票)
-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금전등록기(收銀機)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한다.
- 보존란은 발급인이 보존하고, 收執聯은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보관(收執)에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과 신고는 "營業人使用收銀機辦法"의 규정에 따른다.

○ 전자계산기 통일영수증(統一發票)
-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영업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시에 전용으로 사용한다.
- 첫 聯은 보존란으로서 발급인이 보존한다.
- 두 번째 聯은 공제란으로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세액공제 또는 차감 신고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다만 매수인이 비영업인일 경우는 발급인이 자체로 폐기

한다.

- 세 번째 聯은 收執聯으로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기장증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비부가가치세체계(특수세액계산)를 적용하는 영업인이 사용하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 특수 통일영수증(統一發票)
- 첫 번째 聯은 보존란으로서 발급인이 보존한다.
- 두 번째 聯은 收執聯으로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보관(收執)에 사용하도록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7).

○ 전자계산기 통일영수증(統一發票)
-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하는 營業人이 사용하는 것이다.
- 첫 번째 聯은 보존란으로서 발급인이 보존하고, 두 번째 聯은 收執聯으로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보관(收執)에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1) 매출액과 세액의 구분 및 合併(영업세법 §32)

○ 매수인이 영업인인 경우
- 三聯式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하고 매출액과 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매수인이 비영업인인 경우
- 二聯式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하고 매출액과 세액은 합계하여 발급해야 한다.

2) 발급시간

영업인은 업종유형별로 "營業人開立銷售憑證時限表" 및 "統一發票使用辦法"에서 규정한 時限에 따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금 수령 시에 발급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

-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으로 타인과 재화 또는 용역을 교환할 경우 환출 시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12).

○ 상품권(禮券)의 발행

- 상품권(商品禮券) : 상품권에 본 상품권으로 일정 수량의 재화를 지불(兌付) 받을 수 있다고 이미 기재한 경우, 상품권 판매 시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한다.
- 현금상품권(現金禮券) : 상품권에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재화를 구입(兌購)하는 경우, 재화의 교부(兌付) 시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14).

○ 할부판매

- 영업인이 할부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할 경우 제1기 대금을 수취하기로 약정한 때에 일차적으로 전액 발급하는 외에 각 할부기간의 대금을 수취하기로 약정한 때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18).

○ 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

- 영업인이 자동판매기로 재화를 판매할 경우 대금수령 시(收款)에 실제 수령금액의 총액에 따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18).

○ 합계하여 당월 월말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하는 경우 : 營業人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소재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기타 영업인에 대하여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매달 합계하여 당월 월말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할 수 있다.

- 이미 확정한 영업세 및 벌금, 영리사업소득세 및 벌금에 대한 누적, 체납(積

欠)이 없을 것

- 최근 2년의 영리사업소득세가 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조사, 확정, 서명(查核簽證)하거나 또는 비준을 받아 청색신고서를 사용할 것

영업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 합계하여 기타 영업인에게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하는 것을 신청할 경우 각 해당 매수인 영업인의 명칭, 주소 및 통일번호가 있는 명부(名册)를 첨부하여 소재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제출해야 하고, 당해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비준 시에 각 매수인 소재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통지(副知)한다.

영업인이 비준을 거쳐 월별 합계하여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한 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월별 합계 발급을 정지하고 건당 교역에 따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統一發票使用辦法 §15-1).

3) 직접 해외판매로 영수증 발급을 면제하는 경우

영업인이 재화를 해외판매하고, 해외판매와 관련된 용역 또는 국내에서 제공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발급을 면제할 수 있다(統一發票使用辦法 §4). 다만 영업인은 세관에 신고하는 당일에 세관이 공고한 세관 신고 적용의 환율에 따라 매출액을 환산해야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우체국의 빠른우편 또는 육상 및 항공 운송이 연계(陸空聯運)된 소포 또는 법에 따라 비준 설립하고 국제특송(國際快遞)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인에게 재화를 우송(寄送)하여 해외판매할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특송(快遞)업무조직이 집행영수증(執據)을 발급한 일자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 금액이 외국화폐에 속할 경우에는 당일 교역은행의 매입환율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한다. 영업인이 해외판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제공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대금수령일(收款日)을 기준으로 하고 당일 교역은행의 매입환율에 따라 매출액을 환산해야 한다.

4) 시간순서에 따라 발급

영업인은 교역발생일의 선후순서에 따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하고 영수증 공제란 및 收執聯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 전용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 영세율 또는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8).

5) 기재사항

영업인이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교역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매출액, 과세별, 세액 및 총계를 기재해야 한다.

- ○ 영업인이 三聯式 통일영수증(統一發票) 또는 전자계산기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칭 및 통일번호를 동시에 기입해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매수인의 명칭을 인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영리사업통일번호만 인쇄할 수 있다.
- ○ 제조업 또는 수입무역을 경영하는 영업인이 비영업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할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칭 및 주소 또는 신분증통일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 ○ 영업인이 매수인이 비영업인인 자에게 발급하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과 관련하여 전항의 규정 외에 매수인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영업인이 신용카드(簽帳卡)를 소지한 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 발급 시에 영수증 비고란에 신용카드(簽帳卡)의 번호에서 뒷자리 4개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다만 二聯式 收銀機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인이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함에 있어서 분류코드(分類號碼)로 품명을

대체할 경우 우선 대체품명의 분류코드대조표를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제출하여 심사, 비치(核備)해야 한다. 변경(異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統一發票使用辦法 §9).

6) 매출환불 또는 할인

영업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한 후에 매출환불, 재화의 교환 또는 할인 등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실 발생 시에 각각 다음 각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재화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 재화의 금액에 따라 별도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① 매수인이 영업인일 경우

○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한 매출액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래 발급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收執聯 및 공제란을 회수하여 본래의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보존란에 붙이고 "폐기(作廢)"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본래의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매수인의 명칭 및 통일번호가 기입되어 있을 경우 매수인이 발급한 매출환불, 매입퇴출 또는 할인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미 신고한 경우 매수인이 발급한 매출환불, 매입퇴출 또는 할인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본래의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매수인의 명칭, 통일번호가 기입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매수인이 비영업인일 경우

○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한 매출액에 대하여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래 발급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收執聯을 회수하여 본래의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보존란에 붙이고 "폐기(作廢)"라고 표시해야 한다.
○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미 신고한 경우 매수인이 발

급한 매출환불, 매입퇴출 또는 할인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는 외에 또한 본래 발급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收執聯을 회수해야 한다. 收執聯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收執聯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쌍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본래 발급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매수인의 명칭 및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래 발급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 收執聯의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매출환불, 매입퇴출 또는 할인증명서는 1式 4聯이고, 첫 번째 聯 및 두 번째 聯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영업인이 매출세액 공제신고 및 기장의 증빙으로 사용하고, 세 번째 聯 및 네 번째 聯은 매수인이 보존하여 매입세액 차감(扣減) 신고 및 기장의 증빙으로 사용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20).

7) 비당기 영수증의 제한

비당기의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은 발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의 비준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21).

8) 미기입(空白) 영수증

영업인이 당기에 구매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이 남아(剩餘空白)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을 잘라내어(截角) 폐기(作廢) 보존하여 과세당국(稽徵機關)의 검사(抽查) 시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통일영수증(統一發票)명세표를 작성, 신고할 때 그 字軌 및 시작마감(起讫)번호를 기입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22).

9) 영수증의 분실

○ 공백 미사용 영수증의 분실 : 영업인은 분실 당일에 분실원인을 설명하고 분실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종류, 字軌번호를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여 심사, 삭제(核銷)하게 해야 한다.

○ 이미 발급한 영수증의 보존란 분실 : 영업인이 매수인이 날인하여 증명한 본래의 收執聯 사본을 취득한 경우에는 收執聯의 사본으로 보존란을 대체할 수 있다.
○ 영수증 공제란 또는 收執聯 분실 : 영업인이 원판매영업인이 날인, 증명(蓋章證明)한 보존란의 사본을 취득하거나 또는 미분실聯의 사본으로 자체로 날인하여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제란 또는 收執聯을 대체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기장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統一發票使用辦法 §23).

10) 기재(書寫) 착오

영업인이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함에 있어서 기재(書寫)의 착오가 있을 경우 별도로 다시 발급해야 하고 誤寫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 收執聯 및 공제란에 "폐기"라고 표시하여 보존란에 붙이고 당기의 통일영수증(統一發票)명세표에도 표시해야 한다(統一發票使用辦法 §24).

라. 통일영수증 장려판법(統一發票給獎辦法)

1) 經費來源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고 세원에 대한 통제 및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사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財政部는 統一發票給獎辦法을 수정할 수 있고, 그 경비는 연간 영업세수입총액에서 3%를 지출할 수 있다(以資支應)(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58).

2) 발표일 및 상금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은 매 단수월(單月)의 25일에 그 전기의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관하여 特殊獎 한 개 및 기타 각 상 3부터 10조의 당첨번호를 발표하고, 상금은 최고 新臺幣(NT$) 200만원 최저 200원이다(統一發票給獎辦法 §3).

3) 상금 수령기한

당첨자는 발표일의 다음달 6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지의 상금 대리발급단위에서 상금을 수령해야 한다(統一發票給獎辦法 §8).

4)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항의 통일영수증(統一發票) 收執聯은 給獎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규정에 따라 금액을 기입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한 영리사업조직의 통일영수증(統一發票) 전용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 파손되어 불완전하거나 또는 기재 모호로 명확하지 않아 인식이 안 될 경우. 다만 영수증을 발급한 영리사업조직이 그 收執聯 및 보존란에 기재한 사항이 확실히 서로 부합됨을 증명하고 조사결과 잘못이 없을(无讹)일 경우는 제외한다.
- 기입한 매수인을 지우고 고친(塗改)한 경우
- "폐기" 표시를 한 경우
- 영세율 적용의 경우
- 규정에 따라 일별 합계하여(按日匯開) 발급하는 경우
-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발급을 누락하거나 금액을 적게 발급하여 조사 발견된 후 보충발급한 경우
- 매수인이 정부기관, 공영사업, 공립학교, 부대 및 영업인일 경우
- 규정된 상금 수령기한을 지나서 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9. 겸영 영업인

가. 정의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겸영 영업인에 속한다(兼營營業人營業稅額計算辦

法 §2).

○ 부가가치세체계를 적용하는 영업인이 과세 및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겸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체계를 적용하는 영업인이 특수세액계산의 업무를 兼營하는 경우

나. 세액의 계산

겸영 영업인에 해당할 경우 그 매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비례(이하 불공제비례라 약칭)에 따라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財政部에서 공표한 "兼營營業人營業稅額計算辦法"의 규정에 의하면 겸영 영업인의 영업세액의 계산방법은 직접공제법과 간접공제법 두 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간접공제법

겸영 영업인의 당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兼營營業人營業稅額計算辦法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 × (1 – 당기 불가공제비례)

$$\text{당기(연도) 불공제비례} = \frac{\text{당기(연도) 면세매출순소득(銷售淨額; 특수세액계산의 매출순소득 포함)}}{\text{당기(연도)의 전부 매출순소득}}$$

상술한 산식의 매출순소득은 토지 및 각급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및 법에 따라 증권교역세를 징수해야 하는 증권의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는다(兼營營業人營業稅額計算辦法 §3).

겸영 영업인은 당해 연도의 마지막 한 기간의 영업세를 신고납부 시 당해 연도의 불

공제비례에 따라 세액을 조정한 후에 마지막 한 기간의 영업세액과 합께 신고, 납부해야 하고,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兼營營業人營業稅額計算辦法 §7).

조정세액 = 당해 연도에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 – (당해 연도의 매입세액 – 당해 연도에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 매입세액) × (1 – 당해 연도의 불공제비례)

2) 직접공제법

겸영 영업인이 장부기재가 완벽하고, 구매한 재화, 용역 또는 수입한 재화의 실제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직접공제법을 채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용도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금액 및 동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구매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채택 후 3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兼營營業人營業稅額計算辦法 §8-1).

비준을 받아 직접공제법을 채택하는 겸영 영업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 겸영 영업인은 구매한 재화, 용역 또는 수입재화, 국외의 용역을 구매한 용도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장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兼營營業人營業稅額計算辦法 §8-2).

- 동법 제4장 제1절의 규정에 따른 과세(영세율 포함) 영업에 전문 공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이하 "과세영업전문공급용"이라 약칭)
- 동법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영업에 전문 공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이하 "면세영업전문공급용"이라 약칭)
- 상술한 두 가지에 공급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이하 "공동사용"이라 약칭)

○ 겸영 영업인의 당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兼營營業人營業稅額計算辦法 §8-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 – 면세영업전문공급용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 공동사용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 당기 불공제비례)

○ 겸영 영업인이 국외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영업세액을 계산하고 당기의 영업세액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 = 면세영업전문공급용 용역의 급부액 × 징수율 + 공동사용 용역의 급부액 × 징수율 × 당기 불공제비례

○ 겸영 영업인은 당해 연도의 마지막 한 기간의 영업세를 신고납부할 때 당해 연도의 불공제비례에 따라 세액을 조정한 후 마지막 한 기간의 영업세액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兼營營業人營業稅額計算辦法 §8-2).

① 조정세액 = 당해 연도에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 – (당해 연도의 매입세액 – 당해 연도에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 – 당해 연도의 면세영업전문공급용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 당해 연도의 공동사용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 당해 연도의 불공제 비례)

② 겸영 영업인이 국외의 용역을 구매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조정세액 = (당해 연도의 면세영업전문공금용의 용역 급부액 + 당해 연도의 공동사용용역을 구매한 급부액 × 당해 연도의 불공제비례) × 징수율 – 당해 연도의 구매 용역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영업세액

○ 겸영 영업인이 당해 연도의 마지막 한 기간의 영업세를 조정 · 신고 · 납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계사 또는 세무대리인의 조사 확정, 사

인증명(簽證)을 받아야 한다.

-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
- 당해 연도의 매출금액의 합계가 신대만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처벌

○ 기한초과 납부

- 납세의무자가 기한을 초과하여 세액 또는 연체신고금(滯報金), 태만신고금(怠報金)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매 2일에 체납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
- 30일이 넘어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하는 외에 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 전항의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연체신고금(滯報金), 태만신고금(怠報金)은 체납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거나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징수납부한 날까지 그 납부세액, 연체신고금(滯報金), 태만신고금(怠報金) 및 체납금에 대하여 현지 은행업 통용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일별로 이자를 가산하여 함께 징수해야 한다(영업세법 § 50)

○ 납세의무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누락세액의 1배 내지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외에 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51).

- 규정에 따라 영업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 규정된 기한을 30일을 초과하여 매출액 또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명세표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세액에 따라 영업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을 과소신고 또는 누락신고하는 경우
- 말소등기를 신청한 후 또는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동법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을 정지한 후에 여전히 계속하여 영업하는 경우
- 매입세액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 규정된 기한을 30일을 초과하여 여전히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세금누락사실이 있는 경우

○ 영업인이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발급을 누락하거나 또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매출액을 적게 기입 · 발급한 것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될 경우, 누락 및 적게 발급한 매출액에 관하여 규정된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외에 1배 내지 10배의 벌금에 처한다.
- 1년 이내에 조사 확인 결과 동 사항이 3회 이상일 경우 동시에 그 영업을 정지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52).
-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기한을 訂定해야 하고 최장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영업정지기한이 만료된 후 처분을 받은 당해 영업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여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전항의 영업정지처분은 경찰기관이 협조 집행하고 집행 전에 영업인의 주관기관에 통지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53).

○ 영업인이 규정에 따라 영업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주어 보충처리하도록 통지하는 외에 新臺幣(NT$)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한이 지나 여전히 보충처리하지 않을 경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54).

○ 영업인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기한을 주어 개정 또는 보충을 통지하는 외에 新臺幣(NT$) 1,5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이 지나 여전히 개정 또는 보충을 하지 않을 경우 개정 또는 보충할 때까지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변경,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영업일시정지, 재개장(復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영업, 변경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사항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不實) 경우
- 장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규정된 기한 내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제출하

여 檢印을 받지 않은 경우((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46).

○ 영수증 불사용 또는 전용

- 납세의무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한 내 개정 또는 보충을 통지하는 외에 新臺幣(NT$) 3,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이 지나 여전히 개정 또는 보충하지 않을 경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의 사용이 확정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타인에게 주어 사용하게 한 경우
- 영업세 세금납부서(繳款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47)

○ 기재사항의 누락

- 영업인이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급함에 있어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기재가 사실이 아닐(不實) 경우 기한 내 개정 또는 보충을 통지하는 외에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기재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그 금액은 최저 新臺幣(NT$) 1,500원보다 낮아서는 아니되고 최고 1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의 보충·개정통지를 받고도 여전히 보충·개정하지 않거나 또는 보충·개정도 여전히 사실이 아닐 경우 연속하여 처벌한다.
-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매수인의 명칭, 주소 또는 통일번호일 경우 그 연속처벌 부분의 벌금은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기재한 매출액의 2%이고, 그 금액은 新臺幣(NT$) 3,000원 이상 3만원 이하여야 한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48).

○ 체납신고(滯報), 태만신고(怠報)

- 營業人이 동법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매출액 또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신고하지 않고 30일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매 2일 초과 시 납부세액의 1%의 연체신고금(滯報金)을 추가징수하고 그 금액은 新臺幣(NT$) 1,200원 이상 12,000원 이하여야 한다.
-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확정납부세액의 30%의 태만신고금(怠報金)을 추가징

수해야 하고 그 금액은 新臺幣(NT$) 3,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이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을 경우 연체신고금(滯報金)은 新臺幣(NT$) 1,200원이고, 태만신고금(怠報金)은 新臺幣(NT$) 3,000원이다((價值型及非價值型營業稅 §49).

Ⅱ. 화물세(貨物稅)

1. 서론

화물세는 특정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재화는 모두 貨物稅條例에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재화는 국내에서 생산하든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든 모두 공장 출고 또는 수입 시에 과세하므로 일종의 단일단계의 판매세(銷售稅)이다(貨物稅條例 §1, §2). 생산자 또는 輸入商이 세금을 납부한 후 통상 납부한 세금을 재화의 가격에 산입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므로 간접세에 속하고 또한 일종의 소비세이기도 하다.

대만은 화물세를 과세하는 재화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貨物稅條例"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 재화에 대해서만 화물세를 과세하고 열거하지 않은 경우는 화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종(개별)소비세라고도 한다. 현행 화물세의 과세방식은 종량과세 및 종가과세 두 가지 방식 모두를 같이 채택하고 있고 그 중 종가세를 위주로 하여 시멘트 및 가스류에 대하여 종량과세를 하는 외에 나머지는 모두 종가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재화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율 및 저율 세율 또는 세액을 정하고 있고, 비필수품 특히 사치품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으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경과세를 함으로써 징수를 통한 금지의 효과(寓禁於徵)를 달성할 수 있고, 사회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과세품의 선택 및 세율의 운용을 통하여 경제정책에 맞춤으로써 경제조절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그 장점이다. 이 밖에 화물세는 또한 징수가 간편하고 거부감이 없으며 세수가 많은 등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화물세의 단점은 세부담의 누진성이 있고, 소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수출세액 환급의 곤란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대만은 현재 화물세 과세재화 중 냉장고, 컬러 TV 등 일부 항목이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필수품이 됨에 따라, 위에서 말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과세 또는 비과세에

대한 설명에 따라 세율을 낮춰야 하는지 또는 심지어 화물세를 취소해야 하는지 등 향후 화물세법을 수정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2. 납세의무자

화물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貨物稅條例 §2).

- ○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경우 재화의 생산자
- ○ 위탁제조 재화의 경우 수탁생산자. 다만 위탁 생산자가 과세대상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일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청하여 위탁 생산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 ○ 국외수입 재화의 경우 재화의 수취인, 물품인수증(提貨單) 또는 재화의 소지인(貨物持有人)

3. 과세대상 재화의 종류·세율 및 세액

"貨物稅條例"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화는 국내에서 생산하든 또는 국외에서 수입하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貨物稅의 과세대상이다(貨物稅條例 §1). 자세한 내용은 〈표 3-Ⅱ-1〉을 참조하기 바란다(貨物稅條例 §6~§12).

〈표 3-II-1〉 화물세 세율(세액)표

과세대상의 재화	세율(%) 또는 세액(원)	과세대상의 재화	세율(%) 또는 세액(원)
고무 타이어		전기제품류	
대형 客車 및 대형화물차의 사용자	10%	냉장고	13%
기타 각종 고무타이어	15%	컬러TV	13%
튜브, 솔리드타이어, 인력 및 獸力 차량 및 농경기용 고무타이어	면세	냉난방기(일반) 냉난방기(중앙시스템형)	20% 15%
시멘트		제습기	15%
백색 시멘트 또는 유색 시멘트	매 톤 600원	공장에서 사용하는 습도조절기	면세
portland 1형 시멘트	매 톤 320원	캠코더	13%
portland 용광로 시멘트	매 톤 280원 (2000년1월1일 이후 NT$196원으로 인하)	휴대용 레코드 플레이어 32cm 이하의 레코드 플레이어	10% 면세
대용시멘트(代水泥) 및 기타 시멘트	매 톤 440원	녹음기	10%
음 료		음향조합	10%
희석천연과일야채즙	8%	전기오븐	15%
기타 음료	15%	차량류	
국가 기준에 부합되는 100% 천연과즙, 과일 시럽, 고당도과일 시럽, 농축과즙 및 100% 천연야채즙	면세	소형객차: 실린더 배기량 2000cc이하	25%
유 리		소형객차: 실린더 배기량 2001cc이상	35%
판유리	10%	연구발전용 수입 차량, 특수장치를 부착한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 목적 전용의 특종차량, 우편물 운송용 차량, 농업용 견인차, 농지운반차 및 공공도로에서 달리지 않는 각종 공사작업차량(工程車)	면세
열전도유리 및 생산모형 용 강화유리	면세		
가스류			
휘발유	매 kℓ 6830원		
디젤유	매 kℓ 3990원		
등유	매 kℓ 4250원		
航空燃油	매 kℓ 610원	화물차, 대형 객차 및 기타 차량	15%
벙커유	매 kℓ 110원	기관차	17%
溶劑油	매 kℓ 720원	전동차량	상술한 각종 차량의 50%
액화석유가스	매 톤 690원		

주: 行政院은 실제 상황에 비추어 시멘트류, 가스류에서 규정한 징수해야 할 세액(應徵稅額)의 50%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납부세액의 계산

가. 납부세액(應納稅額)의 계산

○ 시멘트와 가스류는 종량과세방식으로서, 납부해야 할 화물세액은 단위당 과세해야 할 세액에 과세해야 할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 기타 과세대상 재화는 종가과세방식으로서, 납부해야 할 화물세액의 계산은 단위당 "完稅價格"에 당해 재화의 적용세율 및 과세해야 할 수량을 곱한다.

나. 세후가격(完稅價格)의 계산

○ 국내에서 생산하는 음료는 용기의 원가를 차감하여 공장출고가격을 계산한다(貨物稅條例 §8).
○ 기타 과세대상 재화의 完稅價格은 모두 당해 재화의 포장물의 가격을 포함한다(貨物稅條例 §13).
○ 국산재화의 完稅價格의 계산
  - 국산재화의 完稅價格은 생산자의 매출가액에서 그 중 포함된 화물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完稅價格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貨物稅條例 §13, §14).

    完稅價格 = 매출가액 / (1 + 세율)

  - 전항의 산식에서 매출가액이란 생산자가 당월분의 매출 재화를 도매상에게 출고하는 매출가액을 말한다. 중간 도매상이 없을 경우 도매상의 매출총이익(毛利)을 공제할 수 있다. 그 가격이 서로 다를 경우 매출 수량의 가중평균(加權平均)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중평균에 넣어서 계산해서는 아니 된다.
    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② 자가용 또는 공장 출고 시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 화물세의 생산자가 중간도매상이 없을 경우 그 매출가액에서 도매상의 매출총이익을 공제할 수 있다. 각 업종의 도매상의 매출총이익의 비율은 財政部가 확정한다. 즉 고무타이어업 · 음료업 · 판유리업 · 전기업은 8%, 차량업은 9%이다. 完稅價格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完稅價格 = 매출가액(1 − 도매상의 매출총이익) / (1 + 세율)

- 생산자가 기타 생산자가 제공하는 원료를 받고 과세대상의 재화를 대리 제작할 경우, 위탁생산자의 매출가액을 출고가격으로 하여 규정에 따라 그 完稅價格을 계산한다(貨物稅條例 §15).
- 생산자가 출고하는 재화가 당월분에 매출가액이 없어 규정에 따라 完稅價格을 계산하지 못할 경우, 당해 과세대상 재화의 이전 달 또는 최근 월분의 完稅價格을 기준으로 하고, 이전 달 또는 최근 월분의 完稅價格이 없을 경우 유사 재화의 完稅價格으로 계산한다. 신제품이어서 유사 재화가 없을 경우 우선 당해 재화의 제조원가에 이윤을 가산하여 完稅價格으로 하고 판매 후 다시 그 매출가격에 따라 完稅價格을 계산하여 징수를 조정할 수 있다(貨物稅條例 §16).
- 생산자가 신고하는 과세대상 재화의 매출가격 및 完稅價格에 관하여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를 진행할 경우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 첨부하여 財政部 賦稅署 貨物稅評價委員會에 보고하여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貨物稅條例 §17).

○ 수입재화 完稅價格의 계산

-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수입재화의 完稅價格은 세관에서 관세 完稅價格에 수입조세(稅捐)의 총액을 가하여 계산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貨物稅條例 §18).

  完稅價格 = 관세 完稅價格 + 수입조세

5. 감면규정

가. 면세대상의 재화

○ 과세대상의 재화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화물세를 면제한다(貨物稅條例 §3).

- 다른 과세대상 재화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 국외로 운송판매될 경우
- 전시품으로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 군사위문에 기부하는 경우
- 국방부가 확정한 직접 군수용으로 사용되는 재화
- 연구발전용의 수입차량, 특수 장치를 부착한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종 차량, 우편물운송용 차량, 농업공구를 장착한 견인차, 정부가 규정한 규격에 부합되는 농지운반차량 및 공공도로에서 달리지 않는 각종 공사작업차량(貨物稅條例 §12)
  ① 연구발전용의 수입차량이란, 새로운 차종의 개발 설계, 기능시스템 분석, 테스트 또는 안전성능,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등의 개진 및 부품 개발설계 등을 위한 수입자동차
  ② 특수 장치를 부착한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종 차량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안전에 전문 사용되는 경비차, 수사탐험용차, 犯人追捕車輛, 소방차 및 공사구급차 등. 둘째, 공공위생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구급차, 진료차, 살수차, 액체비료 운반차(水肥車), 쓰레기차, 소독차, 거리청소차, 개 잡는 차(捕犬車), 공기오염측정차 등.

나. 세액환급 또는 기장상쇄(沖銷記帳) 화물세의 재화

○ 화물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또는 保稅 기장된 재화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화물세 기장을 상쇄한다(貨物稅條例

§4).

- 국외에 운송판매하는 경우
- 해외판매물품의 원료를 제작할 경우
- 적체상품의 공장 반품정리 또는 같은 품종의 과세대상 재화를 가공 정제하는 경우
- 손상을 입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수량이 과세단위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본래의 완세증명(完稅照)를 분실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공장에서 출고하여 운송 또는 보존 중 화재 또는 낙수 침몰 및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재화가 소멸된 경우

6. 징수관리

가. 납세절차

1) 생산자등기 및 제품등기

화물세의 세무등기는 생산자등기와 제품등기 두 가지를 포함한다.

생산자는 재화의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공장 소재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화물세의 생산자등기와 제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貨物稅條例 §19).

2) 변경, 취소 등기

생산자의 등기신청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생산자가 합병, 양도, 해산 또는 폐지 등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변경 또는 취소등기를 신청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貨物稅條例 §20).

○ 생산자 변경, 취소 등기

- 생산자등기표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생산자가 휴업할 경우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변경 또는 취소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貨物稅稽徵規則 §12, §13).

- 생산자가 생산을 정지한 지 1년이 되었거나 또는 이전이 불명확할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은 그 생산자등기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미납세 재고 또는 화물세를 체납하거나 또는 위장 종결한 사건이 있을 경우 사건을 정리하여 종결한 후 다시 취소해야 한다(貨物稅稽徵規則 §14).

○ 이미 비준을 받아 등기를 한 제품은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제품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이미 비준을 받아 등기를 한 제품의 생산을 정지할 경우 그 제품등기의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貨物稅稽徵規則 §19).
- 제품등기 비준을 받은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생산, 판매를 하지 않거나 또는 생산, 판매를 정지한 지 2년이 지난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은 그 제품등기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貨物稅稽徵規則 §20).

3) 화물세 증빙(照證)의 수령 및 사용

完稅 또는 면세 재화는 모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 또는 세관에서 화물세 증빙(貨物稅照證)을 수령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財政部의 비준을 받아 기타 증빙으로 대체할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貨物稅條例 §21).

화물세와 관련된 증빙은 각각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과 세관에서 제작 반포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貨物稅稽徵規則 §21).

○ 完稅證明 : 完稅財貨의 증빙으로 파란색으로 인쇄 제작한다.

○ 면세증명 : 면세 허가를 받은 재화의 증빙은 오렌지색으로 인쇄 제작한다.

○ 임시운송장 :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기장하지 않은 재화, 또는 면세 재화의 임시이전운송의 증빙은 흰색으로 인쇄 제작한다.

4) 장부증빙의 설치와 보존

생산자는 화물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 증빙 및 회계기록을 비치 · 보

존해야 한다(貨物稅條例 §22).

5) 부과징수시기

貨物稅는 과세대상의 재화를 출고 또는 수입할 때에 징수한다.

6) 신고납부(報繳)

貨物稅의 신고납부방식은 국산재화 또는 수입재화에 따라 다르다. 전자는 자동신고납부 방식을, 후자는 위탁대리징수 방식을 채택한다.

○ 자진신고납부
- 생산자의 당월 출고재화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익월 15일 이전에 자체로 公庫에 납부해야 하고 財政部에서 규정한 격식에 따라 세액계산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금납부서 영수증과 함께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해야 한다.
-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해야 한다.

○ 위탁대리징수
- 위탁대리징수는 주로 국외에서 과세대상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할 때 화물세를 대리징수한다.

○ 생산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은 3일 내에 보충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은 즉시 조사를 진행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여 추징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세액을 완납할 때까지 재화의 출고를 정지할 수 있다(貨物稅條例 §25).

나. 행정구제

"貨物稅條例"를 위반하여 과세당국(稽徵機關)로부터 세금을 보충하도록 확정된 경

우, 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처분에 불복 시 "稅捐稽徵法" 상의 관련 행정구제절차에 따라 재조사(復查), 訴願 및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7. 처벌

가. 세금누락에 대한 처벌

납세의무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금을 보충 징수하는 외에 보충세액의 5배 내지 15배의 벌금에 처한다.

- ○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과세대상의 재화를 생산하여 출고하는 경우
- ○ 과세대상 재화에 대하여 조사 결과 화물세 증빙 또는 허가를 받은 대체증빙이 없는 경우
- ○ 고가의 재화를 저가의 재화로 속이는 경우
- ○ 면세재화에 대해 보충 납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화물세 증빙 및 화물세 납세서를 독단적으로 고치거나 다시 사용하는 경우
- ○ 재고 원료 또는 완성품의 수량이 장부와 불일치하여 탈루한 것이 확실한 경우
- ○ 출고 수량을 과소신고하거나 또는 누락신고하는 경우
- ○ 매출가격 또는 完稅價格을 과소신고 또는 누락신고하는 경우
- ○ 출고가 정지된 기간에 독단적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
- ○ 국외에서 수입하는 과세대상 재화를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 기타 위법적인 탈루, 허위 수령 또는 허위 환급 등의 경우

나. 연체신고금(滯報金) 및 태만신고금(怠報金)

생산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액계산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보충신고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따라 10%의 연체신고금을 추

가 징수하고, 금액은 新台幣(NT$) 3,000원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최고 新台幣(NT$)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생산자가 규정된 보충신고기한 내에도 신고납세를 하지 않을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 확정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따라 20%의 태만신고금을 추가 징수하며 금액은 新台幣(NT$) 9,000원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최고 新台幣(NT$) 9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을 경우 연체신고금은 新台幣(NT$) 3,000원이고, 태만신고금은 新台幣(NT$) 9,000원이다(貨物稅條例 §29).

다. 장부상 해외판매제품의 원료로 기장되어 있고, 기장일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가공하여 해외 판매하여 상쇄(外銷沖帳)하거나 또는 내수판매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보충징수(補徵)하는 외에 기장일의 익일부터 세금을 완납한 날까지 보충해야 할 세액에 따라 일별 체납금 1만분의 5를 추가징수(加徵)한다. 다만 해외판매할 수 없는 책임이 본국의 생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財政部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貨物稅條例 §30).

라. 납세의무자가 기한을 초과하여 세금 또는 연체신고금, 태만신고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매 2일마다 체납금액에 따라 1%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貨物稅條例 §31).

마. 과세대상 재화를 경영 판매하는 영리사업에 있어서 납세증빙이 없는 과세대상 재화를 소지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생산자를 指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보충 징수하는 외에 보충 징수세액의 5배 내지 15배의 벌금에 처한다(貨物稅條例 §33).

Ⅲ. 담배주류세(菸酒稅)

1. 서론

대만은 일찍부터 담배 · 주류 전매제도를 시행하여 정부가 전매이익을 수취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충족시켰다. 따라서 당시에는 관세, 영업세 및 담배주류세(菸酒稅)를 포함하는 담배 및 주류와 관련된 모든 세금은 징수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 후 WTO에 가입하고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담배 및 주류를 민간에 개방해야 되었기 때문에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2000년 4월 19일에 담배주류세법(菸酒稅法)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함에 따라 담배주류세(菸酒稅)가 조세제도에 포함되었고, 담배 및 주류에 과세하게 되었다.

담배 및 주류는 사치 속성이 있는 기호품으로서 담세능력이 크므로 외국에서는 대부분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담배주류세(菸酒稅)는 특종소비세에 속하는데 이 역시 일종의 간접세이다. 담배주류세(菸酒稅)의 목적은 재정수요 외에도 징수를 통한 금지(寓禁於徵)라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담배 및 주류에 대하여는 모두 종량과세를 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

담배주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菸酒稅法 §4).

- ○ 국내에서 생산하는 담배 및 주류의 경우는 담배 및 주류의 생산기업
- ○ 위탁하여 대리생산하는 담배 및 주류의 경우는 수탁자인 생산기업
- ○ 국외수입 담배 및 주류의 경우는 수취인, 인수증 또는 화물의 소지인
- ○ 법원 및 기타 기관이 경매하는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및 주류는 낙찰인 면세 담배 및 주류를 양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면세규정에 부합되지 않

을 경우는 양도인, 기타 용도로 사용하게 한 자 또는 화물의 소지인

3. 과세대상품목 및 세액

가. 과세범위

현행 담배주류세법(菸酒稅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규정하는 담배 및 주류(菸酒)는 국내에서 생산하든지 외국에서 수입하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동법의 규정에 따라 담배주류세(菸酒稅)를 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그 과세범위에는 담배 및 주류(菸酒) 그리고 수입 담배 및 주류(菸酒)가 포함된다. 담배 및 주류(菸酒)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菸酒稅法 §2).

1) 담배(菸)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흡입하거나(吸用) 씹거나(嚼用) 입에 머금거나(含用) 또는 냄새 맡기(聞用)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동 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담배세(菸稅)는 담배제품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연초 등 담배의 원료는 담배세의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담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궐련(紙菸) : 잎담배는 연초를 잘게 썰어 가공한 후 담배용지에 말아 제작하여 필터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은 담배제품을 말한다.
- ○ 실담배(菸絲): 연초를 잘게 썰어 조제한 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제품이다.
- ○ 시가(雪茄) : 시가 종류의 연초로 가공한 후 속 담배잎(塡充葉)을 중심으로 하여 중간 담배잎(中包葉), 바깥 담배잎(外包葉)으로 말아서 길고 가는 모양으로 만든 담배제품이다.
- ○ 기타 담배제품 : 잎담배, 실담배, 시가 이외의 담배제품을 말한다.

2) 주류(酒)

주정성분을 용량으로 계산하여 0.5%를 초과하는 음료와 기타 이러한 음료를 만들거나 조제하는 데 사용하는 성질이 변화되지 않은(未變性) 주정(酒精) 및 기타 제품을 말한다. 다만 "菸酒管理法" 제4조에서 주류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주류 제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주류제품", "성질이 변화되지 않은(未變性) 주정"에 대하여 모두 주세를 과세해야 하나 이미 성질이 변한 주정은 담배주류세(菸酒稅)의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정성분을 용량으로 계산하여 0.5%를 초과하는 음료에 대하여도 담배주류세(菸酒稅)를 과세하고, 0.5% 이하인 경우에는 음료품貨物稅를 과세한다.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양조주류(釀造酒類)

○ 양곡, 과실 및 기타 전분 또는 당분을 포함한 식물을 원료로 하여 糖化하거나 또는 당화를 거치지 않고 양조한 다음의 주정 포함음료를 말한다.

- 맥주 : 보리, 홉을 주요 원료로 하고 기타 곡물류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거나 또는 전분을 부원료로 하여 당화 후 발효 제작한 탄산주정음료를 말한다. 식물성 보조재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을 수 있다.
- 기타 양조주 : 맥주 이외의 양조주류로서 각종 과실양조주, 곡물양조주 및 기타 양조의 방법으로 만든 주류를 말한다.

② 증류주류(蒸溜酒類)

○ 양곡류, 과실류 및 기타 전분 또는 당분을 포함한 식물성원료로 당화 또는 당화를 거치지 않고 발효시킨 후 다시 증류하여 만들어낸 주정류 음료를 말한다.

③ 재제주류(再製酒類)

○ 주정, 증류주 또는 양조주를 기본으로 동물성 보조재, 약재 또는 광물 또는

기타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주류로서 그 추출물의 함량이 2%보다 낮지 않은 경우

④ 요리주(料理酒)

○ 곡물 또는 기타 전분을 포함한 식물성원료로 당화를 거친 후 주정을 추가하여 만든 제품을 기본으로 하거나, 또는 직접 양조주 · 증류주 · 주정을 기본으로 하고 0.5% 이상의 소금을 넣고 기타 조미료를 첨가 또는 불첨가 조제하여 요리용으로 만든 술을 말한다. 0.5% 이상의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매 100ml의 요리주에 1g 이상의 소금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⑤ 기타 주류

○ 상술한 네 가지를 제외한 粉末酒, 膠狀酒, 含酒香精 및 기타 각종 주류를 말한다.

⑥ 주정

○ 주정성분을 용량으로 계산하여 90%를 초과하는 未變性酒精을 말한다. 주정성분이란 섭씨온도계로 20℃일 경우 본래의 용량 중에 포함된 에탄올 용량의 백분비를 말한다.

나. 납부세액

특종소비세의 과세방식은 종량과세, 종가과세 및 종가와 종량의 혼합과세 등 세 가지가 있다. 대만의 담배주류세(菸酒稅)의 과세방식은 국제적 추세를 따라 종량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그 중 담배는 모두 궐련, 실담배, 시가 및 기타 담배제품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주류는 그 사용원료 및 제조과정에 따라 맥주, 기타 양조주, 증류주, 再製酒, 米酒, 料理酒, 기타 주류 및 주정 등 유형으로 나눈다. 이들에 관한 상세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담배 납부세액(菸酒稅法 §7)

① 잎담배 : 매 1천 개피에 新臺幣(NT$) 590원을 징수
② 살담배 : 매 kg에 新臺幣(NT$) 590원을 징수
③ 시가 : 매 kg에 新臺幣(NT$) 590원을 징수
④ 기타 담배제품 : 매 kg에 新臺幣(NT$) 590원을 징수

2) 주류의 과세항목 및 납부세액(菸酒稅法 §8)

○ 양조주류:
  - 맥주 : 매 ℓ(升)에 新臺幣(NT$) 26원을 징수
  - 기타 양조주 : 매 ℓ(升)에 酒精성분에 따라 도수당 新臺幣(NT$) 7원을 징수한다.
○ 증류주류 : 매 ℓ(升)에 酒類성분에 따라 도수당 新臺幣(NT$) 205원을 징수
○ 再製酒類 : 주정성분이 용량으로 계산하여 20%를 초과할 경우 매 ℓ(升)에 新臺幣(NT$) 185원을 징수하고, 주정성분이 용량으로 계산하여 20%를 이하일 경우 매 ℓ(升)에 주정성분에 따라 도수당 新臺幣(NT$) 7원을 징수한다.
○ 요리주 : 매 ℓ(升)에 新臺幣(NT$) 9원을 징수
○ 기타 주류 : 매 ℓ(升)에 주정성분에 따라 매 度 新臺幣(NT$) 7원을 징수
○ 酒精 : 매 ℓ(升)에 新臺幣(NT$) 15원을 징수

대만은 2008년 5월 7일에 담배주류세법(菸酒稅法)을 수정 공포하여 요리주의 담배주류세(菸酒稅)를 인하하여 매 ℓ당 세액을 新臺幣(NT$) 22원으로부터 9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요리주가 술에 0.5% 이상의 소금을 넣기 때문에 그 맛은 米酒와 유사하고 식물요리를 만드는 데 매우 적합하므로 정부는 요리주를 많이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또한 요리주의 세부담을 인하하는 것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었다.

그 밖에 이번 담배주류세의 개정은 본래의 米酒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요리주로 米

酒를 대체하였다. 따라서 법 개정 후에 담배주류세법(菸酒稅法)에는 米酒라는 단어가 없다.

4. 과세시점

담배주류세는 담배 및 주류가 공장에서 출고되거나 또는 수입 시에 징수한다. 즉 국산 담배 및 주류의 경우는 제작되어 공장출고 시에 세금을 징수하고, 수입 담배 및 주류의 경우는 수입 시에 징수한다(菸酒稅法 §3).

담배 및 주류가 다음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출고한 것으로 본다.

- ○ 공장 내에서 소비에 제공하는 경우
- ○ 공장 내에서 비과세제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 ○ 공장 내에서 법원의 강제집행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타인에 이전하여 소지하게 되는 경우
- ○ 제조기업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재고로 있는 담배 및 주류
- ○ 세금을 내지 않고(未稅) 가공 · 포장장소로 이동하거나 또는 세금을 내지 않은(未稅) 창고 또는 공장에 보관 시 화재에 타거나 또는 낙수침몰 및 기타 인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재해 이외의 사정으로 적어진(短少) 경우

5. 건강복지세(健康福利捐)의 추가징수

담배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기오염도 인간에 유해하다. 따라서 담배제품에 대하여 상술한 세금을 징수하는 외에 담배제품 건강복지세(健康福利捐)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건강복지세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안전준비금, 중앙과 지방의 담배피해방지, 위생보건 및 사회복지에 사용하도록 지정된다. 건강복지세도 종량과세를 실시하고 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菸酒稅法 §22).

- ○ 잎담배 : 매 천개피에 新臺幣(NT$) 500원을 징수
- ○ 살담배 : kg당 新臺幣(NT$) 500원을 징수
- ○ 시가 : kg당 新臺幣(NT$) 500원을 징수

○ 기타 담배제품 : kg당 新臺幣(NT$) 500원을 징수

전항의 건강복지세의 금액은 동법 공포 실시 후 2년 후에 다시 검토한다.

동법에 따라 징수하는 건강복지세는 그 90%를 전민건강보험안전준비금에 사용해야 하고, 10%는 중앙과 지방의 담배피해 방지, 위생보건, 저질담배제품의 수사 검거, 담배제품 조세의 탈루방지 및 사회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전항의 건강복지세의 분배 및 운영방법은 중앙의 주관 기관이 동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訂定하고 立法院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6. 감면규정

가. 면세범위

○ 담배 및 주류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담배주류세를 면제한다(菸酒稅法 §5).

- 다른 과세 담배 및 주류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 해외에 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 전시회에 참가하고 전시 완료 후에 그대로 공장에 돌려가거나 수출할 경우
- 여객이 국외로부터 휴대하는 자체 사용(自用)의 담배 및 주류 또는 調岸 선원이 휴대하는 自用의 담배 및 주류가 정부규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나. 세액환급이 가능한 경우

○ 담배주류세를 이미 납부한 담배 및 주류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래 납부한 담배주류세를 환급한다(菸酒稅法 §6).

- 해외에 운송 판매하는 경우
- 해외판매물품을 제작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적체로 인하여 공장반환정리 또는 과세 담배 및 주류로 가공할 경우

- 변질, 파손되거나 또는 품질이 정부규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소각하는 경우
- 생산 또는 수입기업이 담배 및 주류를 운송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타거나 또는 낙수침몰 및 기타 인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하여 물체가 소멸되게 된 경우

7. 징수관리

가. 납세절차

1) 등기

○ 기업등기와 제품등기

담배 및 주류의 생산기업은 "菸酒管理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許可執照)을 취득하는 외에 화물세와 마찬가지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공장소재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서 담배주류세(菸酒稅) 기업등기와 제품등기를 해야 한다(菸酒稅法 §29).

○ 변경등기, 말소등기

생산기업이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담배 및 주류 업무를 해산 또는 종료할 경우 사실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자체로 생산을 중지하거나 이전(他遷)불명의 경우

생산기업이 제품의 생산을 자체로 중지한 지 1년이 지났고, 이전불명 또는 중앙 주관 기관의 공고를 거쳐 말소 또는 취소, 폐지허가를 받은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은 그 등기를 직접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조사결과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로 있거나, 담배주류세를 체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미해결한 사건이 있을 경우 사건을 정리 마감한 후 다시 말소해야 한다(菸酒稅法 §10).

담배주류세는 執照, 증명(照證) 관리 면에서 화물세와 다르다. 즉, 모든 完稅 담배

및 주류는 모두 증명을 발급하거나 또는 납세증빙을 붙이는(黏貼) 데 관한 규정이 없다.

2) 납부(菸酒稅法 §12)

○ 국산과세 담배 및 주류

국산화물의 생산기업의 당월분의 공장출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다음달 15일 이전에 자진하여 公庫에 납부하고 財政部가 규정한 격식에 따라 세액계산신고서(計算稅額申報書)를 작성한 후 세액납부서 영수증(繳款書收據)을 첨부하여 주관 과세당국(각 지역의 국세국)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주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수입과세 담배 및 주류

납세의무자가 수입 시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할 때 담배주류세를 대리징수한다.

○ 경매 담배 및 주류

법원 및 기타 기관이 경매하는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및 주류는 낙찰인이 수령 전에 소재지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납세해야 한다.

나. 처벌

1) 벌금

납세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담배주류세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세 탈루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담배주류세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세를 보충징수하는 외에 보충징수금액에 따라 1배 내지 3배의 벌금에 처한다(菸酒稅法 §19).

○ 규정에 따라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등기 및 제품등기를 하지 않고 함부로 과세 담배 및 주류를 생산하여 출고하는 경우

○ 제14조에서 규정한 출고정지기간에 함부로 과세 담배 및 주류를 생산하여 출고

하는 경우

○ 국외수입의 담배 및 주류에 대하여 담배주류세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면세 담배 및 주류에 대하여 담배주류세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세를 보충징수하지 않고 함부로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공장재고원료 또는 제품의 수량이 조사 결과 장부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 과세수량을 과소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담배 및 주류 과세 유형에 대한 신고가 사실이 아닐(不實) 경우

○ 기타 담배주류세 또는 담배제품 건강복지세를 위법 탈루하는 경우

2) 연체신고금(滯報金)

생산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세액계산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고, 규정된 보충납부기한에 따라 담배주류세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세를 보충신고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담배주류세의 세액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세의 금액에 따라 1%의 연체신고금(滯報金)을 추가징수하고 그 금액은 최고 新臺幣(NT$) 10만원, 최저 新臺幣(NT$) 1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생산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을 경우 滯報金은 新臺幣(NT$) 5,000원이다(菸酒稅法 §17).

3) 태만신고금(怠報金)

생산기업이 규정된 보충신고기한 내에도 담배주류세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이 조사 확정한 담배주류세 세액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세의 금액에 따라 2%의 태만신고금(怠報金)을 추가징수하고 그 금액은 최고 新臺幣(NT$) 20만원, 최저 新臺幣(NT$) 2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생산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을 경우 태만신고금(怠報金)은 新臺幣(NT$) 1만원이다(菸酒稅法 §17).

4) 체납금

납세의무자가 기한을 초과하여 담배주류세 및 담배제품 건강복지세 또는 연체신고금(滯報金), 태만신고금(怠報金)을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매 2일에 체납금액에 따라 1%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 30일이 넘어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菸酒稅法 §18).

Ⅳ. 오락세(娛樂稅)

1. 서론

오락세는 각종 오락장소, 오락시설 또는 오락 활동에서 수취하는 표값(票價) 또는 요금에 대하여 징수하는 간접세로서 직할시 및 현(시)세에 속한다. 처음에 동 세목을 설치한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과 사회적 낭비를 억제하려는 의도에 있었다. 지금은 사회 환경이 변하여 오락도 국민생활의 필요부분이 됨에 따라서 소비자는 당해 세목의 징수로 인하여 고통(痛苦感)이 따를 수 있고 따라서 징수도 쉽지 않다.

2. 납세의무자 및 대리징수인

오락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전을 지불하고 오락을 하는 사람이다(娛樂稅法 §3).

오락세의 대리징수인은 오락장소, 오락시설 또는 오락활동의 제공자 또는 개최자이다(娛樂稅法 §3).

3. 과세대상

오락세는 다음의 오락장소, 오락시설 또는 오락활동에서 수취하는 표값(票價) 또는 요금에 대하여 징수한다.

- ○ 영화
- ○ 직업성 노래(歌唱), 만담(說書), 무용(舞蹈), 곡마(馬戱), 마술, 기예공연 및 나이트클럽의 각종 공연(表演)
- ○ 희극, 음악연주 및 비직업성 노래, 무용 등 공연
- ○ 각종 경기시합(競技比賽)

○ 무도장(舞廳, 舞場)
○ 골프장 및 기타 오락시설을 제공하여 오락에 사용하는 경우

상술한 각종 오락장소, 오락시설 또는 오락활동에서 표를 판매하지 않고 별도로 기타의 음료수 또는 오락시설로 이용자(오락자)에게 공급(供應)할 경우 그 수취요금에 따라 오락세를 과세한다(娛樂稅法 §2).

종전의 "오락세법"은 당구장과 볼링장도 오락세의 과세범위에 넣었으나 이는 대만이 처음부터 당구장을 불량 오락장소로 보고 문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말썽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당시 심지어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대만은 당구장에 대하여 오락세를 과세함으로써 징수를 통한 금지(寓禁於徵)라는 정책적 의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 대만에서 볼링장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사회 및 경제 환경의 변화로 당구장에 대한 불량 오락장소라는 인식이 줄어들었고, 볼링도 일반적인 여가 활동의 하나가 됨에 따라 징수를 통한 금지(寓禁於徵)라는 과거의 기계적인 인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들을 없애고 세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立法院은 이번 법 개정에서 당구장, 볼링장 및 오락 성질과 다른 구기(球類) 운동 종목을 오락세의 과세범위에서 없앰으로써 오락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되었다.

4. 세율

오락세법은 오락세의 세율에 관하여 최고규정만 두고 있고 直轄市 및 縣(市) 정부에서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정최고세율의 범위 내에서 오락세의 징수율을 각각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해 징수율은 동급 민의기관에서 통과된 후 財政部의 심사(核備)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해당 징수율을 실제 과세의 근거로 한다(娛樂稅法 §5, §6). 오락세법이 규정한 최고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3-Ⅳ-1〉 오락세의 세율

(단위: %)

과 세 유 형	법정최고세율
1. 영화: 외국어영화 국어(중국어)영화	 60 30
2. 직업적 노래(歌唱), 만담(說書), 무용(舞蹈), 곡마(馬戱), 마술, 기예공연 및 나이트클럽의 각종 공연(表演)	30
3. 戱劇, 음악연주 및 비직업성 노래, 무용 등 공연	5
4. 각종 경기시합(競技比賽)	10
5. 무도장(舞廳, 舞場)	100
6. 당구장	50
7. 볼링장	30
8. 골프장	20
9. 기타 오락시설을 제공하여 오락에 사용하는 경우	50

5. 감면규정

다음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오락세를 면제한다(娛樂稅法 §4).

○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단체, 民法總則에 부합되는 공익 사단 또는 재단의 조직,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관 기관의 등기 또는 立案을 거친 자가 개최하는 각종 오락에 있어서 그 전체 수입을 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전체 수입에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외에 모두 재난구조 또는 노동자, 군인(勞軍)용의 각종 오락에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공제가 허가되는 필요비용은 최고로 전체 수입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관, 단체, 公私사업 또는 학교 및 기타 조직이 대내적으로 개최하는 임시적 성격의 문화건강활동(文康)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도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6. 징수관리

가. 등기 및 관련 절차

○ 경상영업의 경우

규정에 따라 오락세를 징수해야 할 영업을 경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開業 · 이전 · 改業 · 변경 · 개편 · 합병 · 양도 및 휴업 시에 모두 사전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서 등기절차 및 오락세 대리징수,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임시개최의 경우

임시로 오락활동을 개최하고 대외적으로 표를 판매하여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개최 전에 주관 과세당국에 가서 등기 및 오락세 징수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시로 개최하는 오락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최 전에 주관 과세당국에 신고(報備)해야 한다(娛樂稅法 §8).

나. 대리징수하는 세금의 납부(娛樂稅法 §9)

○ 자진신고납부

오락세의 대리징수인은 매달 대리징수하는 세금에 대하여 다음달 10일 전에 자진신고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해야 한다.

○ 확정징수(查定課徵)

경영방식이 특수하거나 영업규모가 작아 주관 과세당국의 조사 확정을 거쳐 오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세금납부서를 작성 · 발급하며, 송달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임시 개최의 경우

임시로 개최하는 有償 오락활동의 경우, 주관 과세당국은 매 5일에 1회씩 세금을 계

산하여 대리징수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세금납부서를 작성·발급하며, 송달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 娛樂票

오락세의 대리징수인은 대리징수 시 오락표를 발급하여 증빙으로 사용하게 하고 오락자가 이를 소지하고 입장할 때 찢어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대리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만 경영방식이 특수하거나 영업규모가 작고 주관 과세당국의 조사 확정을 거쳐 영업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락표의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娛樂稅法 §10).

7. 장려 및 처벌

가. 장려

오락세의 대리징수인이 법에 따라 대리징수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주관 과세당국은 그가 대리징수한 세액의 1%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주어야 한다. 당해 장려금은 대리징수인이 매번 세액을 납부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령(扣領)한다(娛樂稅法 §11).

나. 처벌

開業, 이전, 改業, 변경, 개편, 합병, 양도 및 휴업 전에 주관 과세당국에 가서 등기 및 오락세의 대리징수, 신고납부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新臺幣(NT$) 15,000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娛樂稅法 §12).

임시 오락활동을 개최시에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新臺幣(NT$) 1,5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관, 단체, 공영기관 또는 학교일 경우 그 주관 기관에 통지하여 담당자를 징계하도록 한다(娛樂稅法 §13).

오락세의 대리징수인이 대리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징수, 과소신고, 신고은닉(匿報)의 경우, 추가징수 외에 납부세액의 5배 내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또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기한을 정(訂定)해야 하고 최장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영업정지기한이 만료된 후 당해 대리징수인이 이행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하여 처분할 수 있다(娛樂稅法 §14).

대리징수인이 기한을 넘겨서 대리징수세액을 납부할 경우 체납금을 추징해야 한다(娛樂稅法 §14).

제4편 재산세제(財産稅制)

대만의 재산세제는 보유단계의 세제로 地價稅, 田賦 및 房屋稅가 있다. 교역단계의 세제로는 土地增值稅 및 契稅가 있다. 기타 재산세로 證券交易稅, 遺産稅, 贈與稅, 使用牌照稅, 印花稅 등이 있다.

정부는 토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관련세제를 地價稅, 田賦 및 土地增值稅로 구분하고 있다. 이미 地價를 규정한 토지는 평소에 地價稅를 부과하고 移轉 시에 土地增值稅를 부과하며, 地價를 규정하지 않은 토지는 평소에 田賦를 부과하고 이전 시에 契稅를 부과한다. 농업생산 상황을 조정하거나 또는 농업발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財政部는 1987년에 行政院에 보고하여 1987년 하반기부터 田賦의 징수정지를 확정하였다.

Ⅰ. 지가세(地價稅)

1. 서론

대만의 地價稅 및 土地增值稅는 孫文 先生이 제창한 "平均地權理論"에 의한다. 平均地權의 4대방법은 "規定地價", "照價徵稅", "照價收買" 및 "漲價歸公"인데, "照價徵稅"에 따라 地價稅를 부과하며, "漲價歸公"에 따라 土地增值稅를 부과하고 있다.

1930년 6월 국민당 정부는 "土地法"을 제정·공포했으며, 同法 第4編 土地稅部分에 地價稅 및 土地增值稅의 부과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地價稅 및 土地增值稅에 대한 입법의 효시이다. 同法에서는 이 두 종류의 稅를 합해서 土地稅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토지개량물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평가해서 "土地改良物稅"를 부과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土地法" 및 "土地法施行法"은 1936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土地法의 규정에 따라 각 현시에서는 우선 지적 측량이 이루어졌고 측량이 끝난 지역에는 土地登記 및 規定地價를 한 후 地價稅 및 土地增値稅가 부과되었다.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도시용 토지의 가격이 매년 급등하고, 소수인의 토지투기 및 독점 등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올리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1954년 대만성에서 도시토지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實施都市平均地權條例"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地價稅 및 土地增値稅의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1976년에 "平均地權條例"를, 1977년에 "土地稅法"을 제정·공포해서 地價稅와 土地增値稅의 세율, 우대세율 적용대상 등을 조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地價稅는 직할시 또는 현(시)의 관할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별로 종합한 지가총액을 기준으로 누진과세하는 보유단계의 세목으로서 대만지구의 지방재정수입상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稅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조세의 고유목적 외에 도시의 토지문제 해결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촉진을 부차적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비도시용 토지가 도시용 토지로 많이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地價稅의 과세대상 戶數 및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토지 소유 분포에 관한 통계가 없어서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과세대상 戶數의 지속적인 증가란 토지가 세분화됨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면에서는 토지 소유가 일부 계층에게 편중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납세의무자

가. 납세의무자

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土地稅法 §3).

○ 토지소유권자
○ 전당권(典權)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전당권자(典權人)
○ 점유허가를 받은 토지(承領土地)의 경우 점유허가를 받은 자(承領人)
○ 개간승인을 받은 토지(承墾土地)의 경우 경작권을 가진 자(耕作權人)

나. 公有 또는 公同共有

토지소유권이 공유 또는 공동공유에 속할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이고, 분할공유(分別共有)일 경우 각 공유인이 각자 보유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이다(土地稅法 §3).

다. 信託土地

토지가 신탁재산일 경우 신탁관계 존속 시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전항의 토지는 위탁자의 동일 직할시 또는 현(시) 관할구역 내의 모든 토지와 합산하여 지가총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규정된 세율에 따라 地價稅를 부과하며 각 당해 토지지가가 지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地價稅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니고 다음 각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전항의 토지는 수익자의 동일 직할시 또는 현(시) 관할구역 내의 모든 토지와 합산하여 지가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이미 확정되고 또한 전부의 신탁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
○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土地稅法 §3-1)

라. 사용자대리납부(使用人代繳)

토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 과세당국은 토지사용자를 지정하여 그 사용부분의 地價稅를 책임지고 대리납부(代繳)하게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권리의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토지소유권자가 점유인이 대리납부할 것을 신청한 경우

토지소유권자가 동일 직할시, 현(시)내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 토지를 서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토지에 대한 地價稅를 산정할 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각 토지사용자는 사용토지의 지가비율에 따라 地價稅를 대리납부할 의무를 진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하는 地價稅는 사용기간의 토지임대료와 상계(抵付)하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土地稅法 §4).

3. 과세대상

이미 지가가 규정된 토지는 법에 따라 반드시 田賦를 부과해야 하는 외에 地價稅를 부과해야 한다(土地稅法 §14). 대만지역은 현재 일부 토지(예를 들면 中央山脈)에 대하여 여전히 지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지가를 규정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농지의 경우는 田賦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는 모두 地價稅를 부과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價稅의 세수는 매우 풍부한 편이다.

규정은 직할시 또는 현(시) 주관기관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平均地權條例 §15).

○ 區를 나누어 최근 1년의 토지매매가격 또는 수익가격을 조사한다.
○ 조사결과에 따라 地價區段을 나누고 區段地價를 예상한 후 地價評議委員會에 제출하여 평의한다.
○ 宗地單位의 지가를 계산한다.
○ 지가를 공고 및 신고하고, 그 기한은 30일이다.
○ 地價册 및 總歸戶册을 만든다(編造).

지가를 규정한 후에 매 3년에 한 번씩 지가를 재규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 시에 연장할 수 있다(平均地權條例 §14).

4. 세율

가. 일반세율

地價稅의 기본세율은 1%이다. 토지소유권자의 地價총액이 토지소재지 직할시 또는 현(시)의 累進起點地價(누진개시지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地價稅는 기본세율에 따라 징수한다. 累進起點地價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누진과세한다.

- ○ 累進起點地價를 5배 미만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 ○ 累進起點地價를 5배 이상 10배 이하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 ○ 累進起點地價를 10배 이상 15배 이하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 ○ 累進起點地價를 15배 이상 20배 이하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 ○ 累進起點地價를 20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5.5‰의 세율을 적용한다.

위의 累進起點地價는 각 당해 직할시 및 현(시) 토지 700㎡(7公畝)의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만 공장용지, 광업용지, 농업용지 및 면세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土地稅法 §16).

地價稅 累進起點地價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平均地權條例施行細則 §27).

地價稅累進起點地價 = 〔直轄市 또는 縣(市)의 規定地價總額 - (공업·광업·농업용用地 地價 + 면세지 지가)〕 / 〔直轄市 또는 縣(市)의 規定地價의 총면적 -(공업·광업·농업용 用地 면적 + 면세지 면적)〕 × 7

地價稅의 일반세율표는 다음과 같다(平均地權條例施行細則 제28조).

〈표 4-Ⅰ-1〉 地價稅의 일반세율표

稅級	과세구간(級距)	稅 率
제1급	累進起點地價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0‰
제2급	累進起點地價를 5배 미만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15‰ 부과
제3급	累進起點地價를 5배 이상 10배 이하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25‰ 부과
제4급	累進起點地價를 10배 이상 15배 이하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35‰ 부과
제5급	累進起點地價를 15배 이상 20배 이하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45‰ 부과
제6급	累進起點地價를 20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55‰ 부과

정부가 地價稅를 부과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公告地價(공시지가)라고 한다. 다만 公告地價가 市價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地價稅의 유효세율이 높지 않으며, 전국에서 적용하는 세율은 같지만 각 현시에서 評定한 公告地價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 현시의 납세자의 부담에는 차이가 있다.

나. 특별세율(우대와 징벌)

대만은 자가 주택용지, 공업용지, 공공시설보류지 및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空地에 대해서는 空地稅를 추가로 징수하여 징벌한다.

1) 우대세율

○ 自家 住宅用地

자가 주택용지란 토지소유권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이 현지에서 호적등기를

완료하고 동시에 임대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용지를 말한다(土地稅法 §9).

다음의 규정에 부합하는 자가 주택용지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된다.

① 도시 토지 면적이 300㎡(3公畝)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

② 비도시 토지 면적이 700㎡(公畝)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

토지소유권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부양친족이 자가 주택용지의 세율을 적용받아 地價稅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 곳에 한한다(土地稅法 §17).

국민주택 및 기업 또는 공영사업조직이 건설한 노동자숙소에 관하여 시공일 또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용지의 地價稅는 전항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징수한다(土地稅法 §17).

○ 공업용지, 광업용지, 휴게(遊憩)용지, 종교용지 및 주유소, 주차장 등

다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10‰의 세율로 地價稅를 계산·징수한다. 다만 목적사업 주관기관이 확정한 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공업용지, 광업용지

② 사립공원, 동물원, 체육장소용지

③ 寺廟, 교회용지, 정부가 지정한 명승고적용지

④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치한 주유소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용의 주차장용지

⑤ 기타 行政院의 확정을 거친 토지

법에 따라 工業區 또는 공업용지로 확정·공고하기 전에 이미 非工業區 또는 공업용지에 설립한 공장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土地稅法 § 18).

○ 공공시설보류지

도시계획상의 공공시설보류지로서 보류기간 중에 여전히 건축에 사용된 경우, 자가주택용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외에, 모두 6‰의 세율로 地價稅를 계산 · 징수한다. 어떠한 사용도 하지 않거나 또한 사용중인 토지와 격리되어 있는 경우는 地價稅를 면제한다(土地稅法 §19).

○ 公有土地

공유토지는 기본세율에 따라 地價稅를 징수한다. 다만 공유토지를 공공사용할 경우는 地價稅를 면제한다(土地稅法 §20).

2) 중과세(징벌)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地價稅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직할시 또는 현(시) 정부의 확정을 거쳐 空地稅를 징수해야 하는 토지는 당해 토지에 납부해야 하는 地價稅 기본세액의 2배 내지 5배의 空地稅를 추가로 징수한다(土地稅法 §21).

空地는 상수도(自來水)가 있는 지역에 도로 · 배수 및 전력시설을 완성하고 또한 상수도시스템을 완성하였으나 아직 법에 의해 건축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또는 건축에 사용하였으나 그 건축개량물의 가치가 그가 점유한 부지(基地) 신고(申報) 지가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직할시 또는 현(시) 정부의 인가를 거쳐 확대 건설,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야 하는 사유 및 公有非公用 건축용지를 말한다(土地稅法 §11).

〈표 4-Ⅰ-2〉 地價稅의 우대세율과 중과세율표

우대와 중과	사용상황	세 율
우대	자가 주택	2‰
	공업용지 등	10‰
	공공시설보류지	6‰, 아무 사용도 하지 않고, 사용중인 토지와 격리된 경우 면세
중과세	空地	2~5배의 空地稅를 추가징수

5. 과세표준

地價稅는 각 토지소유권자의 각 직할시 또는 현(시) 관할구역 내의 지가총액에 따라 계산·징수하므로, 지가총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가총액은 매 토지소유권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지가를 규정(規定地價)하거나 지가를 재규정(重新規定地價)하여, 확인을 거친 후 帰戶册에 기재한 지가총액을 말한다(土地稅法 §15).

토지소유권자의 지가총액이 토지소재지 직할시 또는 현(시)의 累進起點地價(누진개시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累進起點地價의 배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다.

6. 감면규정

경제를 발전시키고 토지이용을 촉진하며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 정부기관, 공공시설, 騎樓走廊, 연구기관, 교육, 교통, 수리, 급수, 소금업(鹽業), 종교, 의료, 위생, 公私墓, 자선 또는 공익사업 및 합리적인 자가 주택 등에 사용한 토지 및 새로 계획하거나 황무지를 개척하거나 개량한 토지의 경우 적당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土地稅法 §6).

가. 公有土地의 免稅

다음의 공유토지는 地價稅를 전액 면제한다(土地稅減免規則 §7).

- ○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 ○ 각급 정부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용지 및 그 직원의 기숙사 용지. 단 사업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 국방용지 및 군사기관 · 부대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토지
- ○ 공립 병원, 진료소, 학술연구기구, 사회교육기구, 구제시설 및 公 · 私立學校가 직접 사용하는 용지, 그 직원 기숙사 용지 및 학교의 학생실습에 사용하는 직접 생산 용지. 다만 외국교민학교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설립 또는 인가해야 하고 외국교민학교설치방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국가와 대만이 동일한 특혜대우를 하거나 또는 行政院의 전문사건 비준을 받아 면세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국의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立案한 경우에 한한다.
- ○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공업, 광업 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시험용지
- ○ 양식관리기관의 창고용지
- ○ 우정, 철로, 도로, 航空站, 공항, 상수도(自來水)공장 및 쓰레기, 오수처리장(池, 場) 등에 직접 사용되는 용지 및 그 직원의 숙소용지. 다만 그 부속영업단위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수리시설 및 그 건조물의 용지
- ○ 정부가 무상으로 국민에게 분배(配供)하여 거주하게 하는 주택용지
- ○ 명승고적 및 선현과 선열을 기념하는 사당 · 祠廟와 公墓 용지
- ○ 관광주관기관이 관광사업을 개발 및 건설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또는 협의 매수한 토지로서, 관광사업자에게 판매하기 전 수익이 없는 경우
- ○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중 사용 주차장용지

전항의 공유 토지를 수용(徵收), 수매(收購) 또는 受撥用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완성하기 전에 당해 사용기관이 증명문서를 제출하여 그 용도가 면세기준에 부합될 경우, 수용된 토지는 수용확정일로부터, 수매(收購)土地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受撥用土地는 撥用日로부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존에 규정에 부합되어 공·사립학교에서 사용되던 공유토지가 변경등기를 거쳐 비공유토지로 등기된 후 계속해서 원래 학교에 사용될 경우 상기 규정을 준용한다.

공립학교의 학생기숙사를 민간기구와 해당 책임기관(主辦機關)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하여 당해 학생숙소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당해 운영기간 만기 후에 당해 숙소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건설 및 운영기간에 그 부지(基地)의 地價稅는 현지 주관 과세당국이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에 전문사건신청을 하여 면세를 비준할 수 있다.

나. 私有土地의 감면

사유토지란 공유토지 이외의 토지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음 각항의 사유토지는 地價稅를 감면한다(土地稅減免規則 §8).

① 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건설하고 이미 立案을 거친 사립학교용지, 학생들의 농업·임업·어업·목축업·공업·광업 등의 실습에 사용되는 생산용지 및 직원·학생 숙소용지가 재단법인의 소유로 등기될 경우 전부 면세한다. 다만 사립보습학원 또는 통신(函授)學校 용지는 모두 감면하지 않는다.

② 주관 교육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립사회교육기구설립 및 장려방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설립한 사립도서관·박물관·과학관·예술관 및 학술연구기구설립방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설립한 학술연구기구의 직접용지는 전부 면세한다. 다만 이미 재단법인등기를 마쳤거나 또는 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 조직하고 그 용지가 당해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설립하고 대외적으로 절대공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립공원 및 체육장·체육관은 그 용지에 대해 50%를 감면하고, 재단법인조직일 경우는 70%를 감면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사립 농업·임업·어업·목축업·공업·광업 시험장이 5년 이상 운영되고 시험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토지를 기타 용도

로 사용하지 않고 당해 주관기관의 증명을 거친 경우, 그 용지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사립병원 · 헌혈기구 · 사회구제 · 자선 및 기타 공중이익을 촉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同業 · 同鄕 · 동창(同學) · 宗親 구성원 또는 기타 특정인을 주요 수익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 그 자체사업용지에 대하여 전부 면세한다. 다만 공중이익을 촉진하는 사업은 현지 주관 과세당국이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단법인등기를 마치거나 또는 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 운영하고 그 용지가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私立公墓는 그가 재단법인조직이고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 용지는 전부 면세한다. 다만 도시계획에 의해 公墓用地 또는 비도시토지로 계획되어 분묘용지로 편제된 경우에 한한다.

⑦ 사업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건설한 민영철도 · 도로(公路) 또는 전용철도 · 도로(公路)가 경상적으로 개방되고 여객 · 화물운송을 부수적으로 처리(附帶)할 경우, 그 용지(基地)는 전액 면제한다.

⑧ 사업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서 건설하는 농경지(農田) 수리사업에 있어서 물끌어대기(引水), 저수(畜水), 배수(洩水) 등에 필요한 각종 건조물용지는 전부 면제하고 사무소 및 작업소 건물용지는 50%를 감면한다.

⑨ 사회풍속교화에 유익한 종교단체가 재단법인 또는 寺廟登記를 마치고 전적으로 전도 및 포교(傳敎佈道)에 사용하는 교당, 內政部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宗敎 敎義 연구기구 용지 · 寺廟 용지 및 선현 · 선열을 기념하는 기념당(館堂) 및 祠廟用地는 전부 면제한다. 다만 수익에 사용하는 이들 소유의 용지(祀田) 또는 임대주는 용지(基地) 또는 그 토지를 개인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정부기관, 공립학교 및 군사기관, 부대, 학교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사용기간에 전액 면제한다.

⑪ 각급 農會, 漁會의 공장, 集貨場, 법에 따라 農倉登記를 한 창고 또는 漁會 부속의 冷凍漁貨 창고용지는 50%를 감면한다.

⑫ 주관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지정한 私有古蹟用地는 전액 면제한다.

상기 ①항의 사립학교, ②항의 사립학술연구기구 및 ⑤항의 사립사회구제 및 자선사업은 토지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의 전부를 직접 각 당해 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 地價稅를 전문안건(專案)으로 보고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③항, ④항, ⑥항, ⑦항, ⑧항 및 ⑪항의 각 사업용지는 각 당해 사업조직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③항의 사업조직이 公有地(公地)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그 公有地(公地)는 여전히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무상사용토지

무상으로 公共사용에 제공되는 사유토지는 조사를 거쳐 사실일 경우 사용기간 내에 地價稅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그것이 주택건설에 속할 경우 보류해야 하는 공지부분은 면세하지 않는다(土地稅減免規則 §9).

라. 騎樓走廊地

공공통행에 사용하는 騎樓走廊地(지붕이 있는 주랑 용지)가 건축개량물이 없는 경우에는 地價稅를 면제하여야 하고, 건축개량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地價稅를 감면한다.

- ○ 지상에 건축개량물 1층이 있을 경우 2분의 1을 감면한다.
- ○ 지상에 건축개량물 2층이 있을 경우 3분의 1을 감면한다.
- ○ 지상에 건축개량물 3층이 있을 경우 4분의 1을 감면한다.
- ○ 지상에 건축개량물 4층 이상이 있을 경우 5분의 1을 감면한다.

건축개량물은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또는 구축물(工事)를 말한다(土地稅減免規則 §10).

마. 管制區 토지

國防部가 內政部와 함께 해안, 산지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구를 지정하고 법에 따라 管制區로 구분한 후 건설제한 또는 건설금지를 실시하는 토지에 대해 地價稅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건설제한 토지는 30% 범위 내에서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이 감면할 수 있다.
- ○ 건설금지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건설금지로 인하여 건축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이 없을 경우 전액 면제한다(土地稅減免規則 §11-1).

바. 水源保護區

水源水質水量保護區는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수원 특정된 경우 地價稅를 감면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農業區 및 保護區는 50%를 감면한다.
- ○ 住宅區는 30%를 감면한다.
- ○ 商業區는 20%를 감면한다(土地稅減免規則 §11-2).

사. 古蹟保存區

법에 의해 고적보존구로 확정되거나 또는 고적보존용지로 편제된 토지는 地價稅를 감면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및 건조가 제한을 받는 경우는 30%를 감면한다.
- ○ 건설금지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건설금지로 인하여 건축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이 없는 경우 전액 면제한다(土地稅減免規則 §11-3).

아. 飛行管制區

飛行管制區는 계류장(航空站), 空港 항공보조설비(助航設備) 주변에 건축물 및 기타

장애물을 금지·제한하는 "高度管理辦法"에서 규정한 건축금지 토지로, 地價稅를 50% 감면한다. 다만 건축을 금지하여 건축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이 없는 경우 전액 면제한다. 규정에 의해 건축제한지역의 토지는 실제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地價稅를 30% 범위 내에서 直轄市, 縣(市) 주관기관이 감면할 수 있다(土地稅減免規則 §1-4).

자. 기타

○ 산사태(山崩), 지반 함몰(地陷), 流失 등 환경제한으로 인하거나 기술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 또는 개간중인 토지는 地價稅를 전액 면제한다(土地稅減免規則 §12).

○ "耕地三七五減租條例"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농가집(農舍) 토지는 地價稅를 전액 면제한다(土地稅減免規則 §16).

○ 區段징수 또는 새로 구분한 지역 내의 토지는 처리기간에 경작할 수 없거나 원래대로 사용할 수 없어,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地價稅를 전액 면제한다. 처리완료 후 완료일로부터 그 地價稅를 2년간 50%를 감면한다(土地稅減免規則 §17).

○ 이미 주요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세부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도시계획지구는 그 주요 계획 변경안을 2007년 12월 19일에 동 규칙 수정 시행 전에 內政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홍수방지계획의 제한을 받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실시하기 전에 그 地價稅 또는 田賦를 30% 범위 내에서 현지 주관 과세당국이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상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土地稅減免規則 §11-5).

○ 중대 공공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구가 건설 또는 운영기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地價稅, 房屋稅 및 취득 시에 납부해야 할 契稅를 적절히 감면할 수 있다(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39).

7. 징수절차

가. 地價申告

지가를 규정, 또는 재규정 시 토지소유권자는 지가의 공고신고기간 내에 지가를 자진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자가 공고기간 내에 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80%를 申告地價로 한다. 토지소유권자가 공고기간 내에 지가를 신고했을 경우 그 신고한 지가가 공시지가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120%를 申告地價로 하고, 신고한 지가가 공시지가의 80% 미만일 경우는 가격대로 收買하거나 또는 공시지가의 80%를 申告地價로 할 수 있다(平均地權條例 §16).

나. 地價底册의 작성

地政機關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지가처리를 완료한 후에 地價稅總額帰戶册를 작성해야 하고, 현지 과세당국에 보내어 申告地價에 따라 地價稅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 징수시작(開徵)

地價稅는 본래 매년 상, 하 두 분기로 나누어 징수하였는데 납세자 편의(便民)와 세무행정 간소화에 대한 고려로 1984년 1월부터 매년 한 번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현재의 징수기간은 매년 11월이다.

라. 우대세율의 신청기한

자가 주택용지(土地稅法 §17) 및 공업용지(土地稅法 §18) 등 규정에 부합되어 특별세율(2‰ 및 10‰)의 적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권자는 매년(期) 地價稅 징수개시 40일 전에 신청하여야(즉 아무리 늦어도 9월 22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당기에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신청 다음 연

도부터 적용한다. 이미 확정되고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재신청을 면제한다. 다만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원인·사실이 소멸되는 때에 주관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土地稅法 §41). 주관 과세당국은 매년(期) 地價稅 징수개시 60일전에 "土地稅法" 제17조 및 제18조의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地價稅 징수에 관한 규정 및 신청절차를 공지해야 한다(土地稅法 §42).

8. 처벌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 매 2일 초과 시 납부세액에 따라 1%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고 30일이 지나서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土53).

납세의무자가 세무등기(籍)를 변경하거나 地目等則을 은닉하거나 또는 특별세율을 적용하거나, 地價稅 또는 田賦의 감면 원인·사실의 소멸 시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세금을 탈루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 부분을 추징하는 외에 과소신고 및 은닉한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 추징세액 및 벌금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土地稅法 §54).

Ⅱ.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1. 서론

대만의 地價稅 및 土地增值稅는 孫文 先生이 제창한 "平均地權理論"에 의한다. 平均地權의 4대방법은 "規定地價", "照價徵稅", "照價收買" 및 "漲價歸公"인데, "照價徵稅"에 따라 地價稅를 부과하며, "漲價歸公"에 따라 土地增值稅를 부과하고 있다.

1930년 6월 국민당 정부는 "土地法"을 제정·공포했으며, 同法 第4編 土地稅部分에 地價稅 및 土地增值稅의 부과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地價稅 및 土地增值稅에 대한 입법의 효시이다. 同法에서는 이 두 종류의 稅를 합해서 土地稅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토지개량물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평가해서 "土地改良物稅"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土地法" 및 "土地法施行法"은 1936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土地法"의 규정에 따라 각 현(시)에서는 우선 지적 측량이 이루어졌고 측량이 끝난 지역에는 土地登記 및 規定地價를 한 후 地價稅 및 土地增值稅가 부과되었다.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도시용 토지의 가격이 매년 급등하고, 소수인의 토지투기 및 독점 등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올리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1954년 臺灣省에서 도시토지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實施都市平均地權條例"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地價稅 및 土地增值稅의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1976년에 "平均地權條例"를, 1977년에 "土地稅法"을 제정·공포해서 地價稅와 土地增值稅의 세율, 우대세율적용대상 등을 조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土地增值稅는 지가가 규정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또는 그러한 토지에 전당권(典權)을 설정할 경우에, 해당 토지의 증가된 가격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본이득세의 일종으로서, 개인의 노동이나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산출된 불로소득적 성격의

가치증가분(Land Value Increment)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수입은 육아 · 양로 · 구재 · 위생 등 공공복지사업과 국민주택의 건축, 시 · 현의 도로,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및 국민교육에 사용됨으로써, "漲價歸公"을 實現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土地增值稅는 토지의 교역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부동산경기의 호황 시에는 교역이 활발하므로 토지의 이전 필지수, "土地移轉現值" 및 "증가된 가치 총액" 등이 증가할 것이다. 즉 부동산경기의 호황으로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公告土地現值도 증가할 것이며, 土地移轉現值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된 가치 총액"도 증가할 것이다.

대만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토지의 유통 및 사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3년 동안 土地增值稅의 50%를 감면하였다(土地稅法 §33). 또한 2005년 2월 1일부터는 영구적으로 土地增值稅率을 하향 조정 하였는바, 기존의 40%, 50%, 60%에서 20%, 30% 및 40%로 인하하였다. 그 밖에 土地增值稅는 증가된 價值總額(漲價總數額)이 본래 규정된 지가를 초과하거나 또는 지난번 이전 시에 확정 계산한 土地增值稅의 현재가치액(現值數額)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세율을 적용하는바, 즉 가치상승 배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연한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土地增值稅가 최저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를 감면하고, 30년을 초과하는 경우 30%를 감면하며 40년을 초과할 경우 40%를 감면하도록 추가로 제정하였다. 상술한 조항은 2005년 1월 30일에 總統令으로 공포되었고 2005년 2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장기적으로 대만의 公告土地現值(공시지가)는 줄곧 정상교역가격보다 낮아 그 효율성과 공평성은 질의와 질책을 받아 왔다. 이번의 법 개정은 한편으로는 土地增值稅의 세율을 낮추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표준(公告土地現值)를 점차 일반정상교역가격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公告土地現值를 일반정상교역가격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국 평균 公告土地現值를 일반정상교역가격의 90%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세율의 수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항의 세율 수정으로 直轄市 및 縣(市) 정부 세수의 실질손실을 초래할 경우, "財政收支劃分法"을 수정하여 중앙의 세금총괄분배 규모를 확대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상기 손실을 보충하여 주어

야 할 것이다. 전항의 실질손실의 계산은 중앙의 주관기관과 직할시 및 현(시) 정부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납세의무자

土地增値稅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토지가 유상이전일 경우는 原소유권자
  - 유상이전은 매매, 교환, 정부가 가격에 따라 수매(照價收買) 또는 수용 등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土地稅法 §5).

○ 토지가 무상이전일 경우는 소유권 취득자
  - 무상이전은 상속 및 증여 등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土地稅法 §5).

○ 토지에 典權(전당권)을 설정할 경우는 出典人(전당권 설정자)

○ 대리납부(代繳) :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 납부해야 하는 土地增値稅를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대리납부한다. 규정에 따라 권리인이 단독으로 토지이전시가(土地移轉現値)를 신고하는 경우, 그 납부해야 할 土地增値稅는 권리인이 대리납부한다(土5-1).

○ 신탁(信託) : 수탁자가 신탁관계 존속 중에 수탁토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典權을 설정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자체소유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土地增値稅를 징수한다.
  -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취지에 따라 신탁토지를 위탁자 외의 귀속권리인에게 이전할 경우 당해 귀속권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土地增値稅를 징수한다(土地稅法 §5-2).

3. 과세대상

이미 지가를 규정한 토지는 토지소유권 이전 시에 토지가치상승총액(土地漲價總數額)에 따라 土地增値稅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토지, 각급 정부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증여하는 공유토지, 및 증여받은 사유토지는

土地增值稅를 면제한다(土地稅法 §28). 이미 地價를 규정한 토지에 典權(전당권)을 설정할 경우 出典人(전당권 설정자)은 土地增值稅를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出典人이 되찾을 경우에 원 土地增值稅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환불해주어야 한다(土地稅法 §29).

4. 세율

가. 일반세율

土地增值稅의 세율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土地稅法 §33).

○ 토지가치상승총액(土地漲價總數額)이 본래의 規定地價 또는 전회 이전 시에 확정계산한 土地增值稅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이 100% 미만일 경우 그 가치상승총액에 대하여 土地增值稅 20%를 징수한다.

○ 토지가치상승총액(土地漲價總數額)이 본래의 規定地價 또는 전회 이전 시에 확정계산한 土地增值稅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이 100% 이상 200% 미만일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초과부분에 대하여 土地增值稅 30%를 징수한다.

○ 토지가치상승총액(土地漲價總數額)이 본래의 規定地價를 초과하거나 또는 전회 이전 시에 확정계산한 土地增值稅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이 200%를 초과할 경우 앞의 2개 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외에 초과부분에 대하여 土地增值稅 40%를 징수한다.

나. 장기보유한 경우의 감면규정

○ 토지보유연한이 20년을 초과할 경우, 그 土地增值稅가 제1항 최저세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20%를 감면한다.

○ 토지보유연한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그 土地增值稅가 제1항 최저세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30%를 감면한다.

○ 토지보유연한이 40년을 초과할 경우, 그 土地增值稅가 제1항 최저세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40%를 감면한다.

다. 우대세율

1) 自家 住宅用地

토지소유권자가 자가주택용지를 매각할 경우 도시 토지면적이 300㎡(3公畝)를 초과하지 않거나 비도시 토지면적이 700㎡(7公畝)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의 土地增值稅는 당해 부분의 토지가치상승총액(土地漲價總數額)에 따라 10%로 징수하고, 300㎡(3公畝) 또는 700㎡(7公畝)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토지가치상승총액은 일반세율로 징수한다.

토지를 판매하기 1년 전에 영업에 사용하였거나 임대한 경우 및 자가주택을 평가한 시가(現值)가 점유한 부지(基地)의 公告土地現值(공시지가)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모두 자가주택 우대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자가주택 건축공사를 완성한지 만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소유권자가 자가 주택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1회에 한한다(土地稅法 §34).

아파트에 층을 나누어 번지(門牌)를 편성하거나 또는 층을 나누어 등기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토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각층의 실제 사용상황 및 점유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기 자가주택용지 및 일반용지 세율을 적용하여 土地增值稅를 계산해서 부과한다.

2) 공장용지

대만은 회사가 공장을 이전(遷廠)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促進産業昇級條例(2010년 5월 폐지됨)" 제17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가 다음 원인 중 하나가 있어 공업구, 도시계획공업구 또는 본 조례 시행 전에 原獎勵投資條例에서 편제한 공업용지에 공장을 이전하고, 그 原공장용지를 판매 또는 이전 시에 납부하는 土地增值稅는 最低等級(級距)稅率에 따라 징수한다.

○ 공장용지가 도시계획 또는 구역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分區使用規定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오염을 방지하고 공공안전 또는 자연경관 유지의 필요로 인하여 주도적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신청하고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
○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지도한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공장 건설 후 공장용지를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전하기 전에 판매 또는 이전한 原공장용지의 土地增值稅 감면 부분은 법에 따라 보충징수해야 한다(促進産業昇級條例 §17).

라. 세율 하향조정 관련 부속조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만은 일반세율 및 自家住宅用地의 세율에 따라 계산·징수하는 土地增值稅를 2002년 1월 17일부터 수정 실시하여 3년 이내에 50%를 감면함으로써 土地增值稅의 일반세율을 20%, 25% 및 30%로 조정하였고, 자가주택용지의 우대세율을 5%로 하였다. 또한 2005년 1월 30일에 "華總一義字第 09400016321號令"으로 제33조를 수정·공표하여 土地增值稅의 세율을 영구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전항 세율의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할시 및 현(시) 정부 세수의 실질적 손실에 대하여는 "財政收支劃分法"에서 중앙이 총괄분배하는 세금규모를 확대하는 수정 규정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이를 보충하며 "豫算法" 제23조의 공채수입은 경상지출용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전항 실질적인 손실의 계산은 중앙의 주관기관과 직할시 및 현(시)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 밖에, 公告土地現值(공시지가)는 일반정상교역가격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가 일반정상교역가격의 90% 이상으로 조정될 경우 상기 20%, 30% 및 40%의 세율은 수정을 검토하고(土地稅法 §33) 새로 제정하여야 한다.

〈표 4-II-1〉 土地增值稅 세율

급수	계산산식
제1급	납부세액 = 토지가치상승 총액[본래의 規定地價 또는 前回 이전 시의 申告現值(대만지역의 소비자물가총지수에 따라 조정 후)를 초과한 금액이 100%에 달하지 않을 경우] × 세율(20%)
제2급	납부세액 = 토지가치상승 총액[본래의 規定地價 또는 前回 이전 시의 申告現值(대만지역의 소비자물가총지수에 따라 조정 후)를 초과한 금액이 100% 이상 200% 이하일 경우] × [세율(30%) - (30%-20%) × 감면율] - 누진차액(대만지역의 소비자물가총지수에 따라 조정한 후의 본래의 規定地價 또는 前 回 移轉現值 × A) 주: 토지보유연한이 20년 미만인 경우 감면하지 않음. A는 0.10 토지보유연한이 20년 이상인 경우 감면율 20%, A는 0.08 토지보유연한이 30년 이상인 경우 감면율 30%, A는 0.07 토지보유연한이 40년 이상인 경우 감면율 40%, A는 0.00
제3급	납부세액 = 토지가치상승 총금액[본래의 規定地價 또는 前回 이전 시의 申告現值(대만지역의 소비자물가총지수에 따라 조정 후)를 초과한 금액이 200% 이상일 경우] × [세율(40%) - (40%-20%) × 감면율] - 누진차액(대만지역의 소비자물가총지수에 따라 조정한 후의 본래의 規定地價 또는 前 回 移轉現值 × B) 注: 토지보유연한이 20년 미만인 경우 감면하지 않음. B는 0.30 토지보유연한이 20년 이상인 경우 감면율 20%, B는 0.24 토지보유연한이 30년 이상인 경우 감면율 30%, B는 0.21 토지보유연한이 40년 이상인 경우 감면율 40%, B는 0.18
10%	自家住宅用地 판매 시에 도시 토지면적 300㎡ 또는 비도시 토지면적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표 4-II-2〉 수정후의 일반토지세율 속산표

보유연한/稅級別	20년 이하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제1급	a×20%	a×20%	a×20%	a×20%
제2급	a×30% - b×10%	a×28% - b×8%	a×27% - b×7%	a×26% - b×6%
제3급	a×40% - b×30%	a×36% - b×24%	a×34% - b×21%	a×32% - b×18%

주: a : 토지가치상승총액(土地漲價總數額)
b : 본래의 規定地價 또는 지난번 移轉申告現值(물가변동총지수에 따라 조정한 후의 금액)

설명 :
감면 후의 세율 = 原稅率 - [(原稅率 - 최저세율) × 감면세율]
1. 토지보유연한이 20년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 20%
   제2급 세율 : 28% = 30% - [(30%-20%)×20%]
   原 累進差額 10%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8%로 됨
   제3급 세율: 36% = 40% - [(40%-20%)×20%]
   原 累進差額 30%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24%로 됨
2. 토지보유연한이 30년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 30%
   제2급 세율 : 27% = 30% - [(30%-20%)×30%]
   原 累進差額 10%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7%로 됨
   제3급 세율: 34% = 40% - [(40%-20%)×30%]
   原 累進差額 30%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21%로 됨
3. 토지보유연한이 40년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 40%
   제2급 세율: 28% = 30% - [(30%-20%)×20%]
   原 累進差額 10%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6%로 됨
   제3급 세율: 32% = 40% - [(40%-20%)×40%]
   原 累進差額 30%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18%로 됨

5. 납부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

土地增値稅의 과세표준은 각 토지의 토지가치상승총액(土地漲價總數額)이고, 토지가치상승총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 소유권의 이전 또는 典權 설정 시에 이미 확정 신고한 이전시가(移轉現値)에서 다음 각항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가치상승총액(漲價總數額)으로 한다.

○ 地價 규정 후 이전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그 본래 규정된 지가. 지가가 규정된 후 이전한 토지의 경우 그 前回의 이전시가(移轉現値)이다.

○ 토지소유권자가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 전액. 이미 납부한 공사수익비, 토지구획정리비용(土地重劃費用) 및 토지사용 변경으로 인하여 일정 비율의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무상 기부 시 기부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을 포함한다.

본래의 規定地價 및 지난번 이전 시에 확정계산한 土地增値稅의 시가에 관하여 일반 물가 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가 발표한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후에 다시 그 토지가치 상승총액(土地漲價總數額)을 계산한다(土地稅法 §32). 토지가치상승 총금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토지가치상승총액 = 신고토지이전시가 - 본래의 規定地價 또는 지난번 이전시 신고한 토지이전시가 × 대만지역의 소비자물가총지수 / 100 - (토지개량비용 + 공사수익비 + 토지재확정부담 총비용 + 토지사용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용지로 무상기부한 기부토지의 公告現値總額)

이전시가(移轉現値)는 당해 기간의 公告土地現値를 기준으로 한다(土地稅法 §30).

나. 2년 내 토지를 재구입시의 세액환급

토지소유권자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토지를 수용당한 후 이전등기를 완성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다음 사항 중 하나와 부합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토지의 지가가 이미 매각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지가 또는 보상금에서 납부한 土地增値稅額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한다면 주관 과세당국에 이미 납부한 土地增値稅額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토지 구입에 따르는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다.

- ○ 자가주택용지를 매각하거나 수용된 후, 별도로 300㎡ 미만의 도시토지를 구매하거나 700㎡ 미만의 비도시토지를 구매하여 자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단 매각 1년 전에 영업에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아야 한다.
- ○ 自營工場用地를 매각하거나 收用된 후, 별도로 기타 도시계획공업구 또는 정부에서 조성한 공업용지 내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 自耕農業用地를 매각하거나 收用된 후, 별도로 자경농업용지를 구입한 경우

토지소유권자가 토지를 우선 매입 후 이전등기를 완성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를 판매하거나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상술한 규정을 준용한다(土地稅法 §35).

당사자의 투기를 방지하고, 세액을 환급받은 후 새로 구입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자가 토지 재구입으로 인하여 土地增値稅를 환급받는 경우, 그 재구입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완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전하면 당해 이전에 따른 가치상승총액(漲價總數額)에 대해 土地增値稅를 부과하는 외에 본래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재구입한 토지를 기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土地稅法 §37).

다. 지가세로 토지증치세를 충당(抵繳)

토지소유권자가 토지를 이전하면서 土地增値稅를 납부 시에,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에 새로 지가를 규정(重新規定地價)함으로 인해서 地價稅를 더 부담했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土地增値稅에서 환급하는 것을 허가한다. 단, 환급이 허가된 총액이 토지 이전 시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증치세 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土地稅法 §31).

그 밖에 "증액 납부하는 地價稅로 土地增値稅를 충당하는 방법(增激地價稅抵繳土地增値稅辦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새로 地價를 규정한 경우, 그 증액 납부하는 地價稅는 새로 地價를 규정한 날로부터 (새 地價에 따라 계산한 세액) 地價稅를 매년 납부할 때마다 당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土地增値稅 총액의 1%를 충당할 수 있다(반년분을 납부했을 경우 0.5%를 충당함). 납세의무자가 실제 증액납부세액에 따라 土地增値稅의 충당을 신청하는 경우, 地價稅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당국에 제출하여 사실대로 충당하며,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특별세율, 공공시설보류지세율 및 기본세율에 따라 地價稅를 부과하는 경우

증액 징수하는 地價稅 = 〔(최근 한차례 새로 규정한 地價의 申告地價 - 토지취득시의 原規定地價 또는 새로 규정한 地價의 申告地價) × 原징수 地價稅 세율〕 × 동 세율에 따라 이미 징수한 地價稅의 年數

○ 기존에 누진세율에 따라 地價稅를 징수한 경우

증액 납부하는 地價稅 = 〔각 당해 戶의 누진부과 地價稅 토지의 연간 地價稅額 ÷ 각 당해 戶의 누진부과 地價稅 토지의 徵收地價總額 × (최근 한 차례 새로 규정한 地價의 申告地價 - 토지취득시의 원규정地價 또는 새로 규정한 地價의 신고地價)〕 × 동 세율에 따라 이미 징수한 地價稅 年數

상술한 계산산식에 따라 계산한 증액 납부하는 地價稅는 지가를 새로 규정하거나, 지가의 변동이 있거나 사용상황에 변동이 있음으로 인하여 地價稅를 적용하는 세율이 다른 경우 각기 계산하여야 한다.

6. 감면규정

○ 상속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된 토지는 징수를 면제한다.

○ 각급 정부가 매각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증여한 공유토지 및 受贈한 사유토지는 土地增値稅를 면제한다(土地稅減免規則 §20).

○ 개인이 기부한 사회복리사업 또는 법에 의해 설립한 사립학교에 사용하는 토지는 土地增値稅를 면제한다(土地稅法 §28-1).

○ 부부의 상호증여

배우자가 상호 증여하는 토지는 土地增値稅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당해 토지의 제1차 증여전의 原規定地價 또는 前回 이전

시가(移轉現値)를 原地價로 하여 가치상승총액(漲價總數額)을 계산하고 土地增値稅를 부과한다(土地稅法 § 28-2).

○ 信託土地는 다음 각항 신탁관계인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土地增値稅를 부과하지 않는다(土地稅法 §28-3).

- 신탁행위가 성립됨으로 인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 신탁관계 존속 중에 수탁자를 변경 시 본래의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
-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 신탁관계 소멸 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 유서로 성립된 신탁에 있어서 신탁관계 소멸 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 신탁행위의 불성립, 무효, 해제 또는 취소 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 수용당한 토지는 土地增値稅를 면제받는다.

○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한 공공시설보류지를 아직 수용당하기 전에 이전한 경우 土地增値稅를 면제한다.

○ 區劃整理(重劃)한 토지는 구획 정리 후 처음으로 이전시에 40%를 감면한다(土地稅法 §39).

○ 區段徵收하는 토지로서, 그 地價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 土地增値稅를 면제한다. 그 가치에 상응하는 토지로 그 地價를 보상하는 경우, 土地增値稅를 면제한다(土39-1).

○ 농업에 사용하는 농업용지를 자연인에게 이전 시에 土地增値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土39-2).

○ 토지분할과 합병

- 분할 : 분할공유토지(分別共有土地)를 분할한 후 각자가 취득한 토지가치와 그 분할 전 보유가치가 동일한 경우, 土地增値稅를 면제한다. 그 가치가 감소될 경우 감소부분에 대해 土地增値稅를 징수한다. 공동공유토지를 분할한 후 그 土地增値稅의 징수는 상술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합병 : 토지를 합병한 후, 각 공유인 보유부분의 가치와 합병 전의 토지가치가 동일한 경우, 土地增値稅를 면제한다.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 감소부분에 대하여 土地增値稅를 징수한다.

토지가치의 계산은 공유토지의 분할 또는 토지합병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土細42).

○ 水質水量保護區를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水源特定區域으로 확정한 토지에 있어서 그 土地增値稅의 감면은 토지세법의 규정 외에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농업구, 보호구, 行水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使用分區管制內容과 보호구가 같을 경우, 50%를 감면한다. 다음의 사항에 속할 경우는 100% 면제한다.

㉮ 水源特定區計劃을 공포·실시하기 전에 이미 당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 실시 후 처음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후 처음으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돗물법(自來水法) 제12-1조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당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동법의 실시 후 처음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후 처음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주택구는 30%를 감면한다.

③ 상업구 및 아파트단지(社區中心)는 20%를 감면한다(水源特定區土地減免土地增値稅贈與稅及遺産稅標準 §2).

7. 징수관리

토지소유권의 이전 또는 典權(전당권) 설정 시에 권리 및 의무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및 관련문서를 별첨하여 공동으로 주관 과세당국에 토지이전시가(土地移轉現値)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권리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권리인이 단독으로 그 이전시가를 신고할 수 있다.

주관 과세당국은 토지이전시가(土地移轉現値) 신고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土地增値稅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세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土地增値稅를 自家住宅用地의 세율에 따라 징수할 것을 신청한 안건은 그 기한을 20일로 연장할 수 있다(土地稅法 §9).

신고한 토지가치가 공시지가(공고된 土地現値)보다 낮을 경우 주관기관은 그 신고

한 土地現值에 따라 收買하거나 또는 공시지가(공고된 土地現值)에 따라 土地增值稅를 징수할 수 있다(土地稅法 §30).

土地增值稅의 납세의무자는 土地增值稅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公庫에 납부하여야 한다(土地稅法 §50).

8. 처벌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2일 초과시 체납금액의 1%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하고,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

토지매매에 있어서 權利移轉登記를 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경우 재차 판매한 이전시가의 2%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세법 제28조의 1에 의하여 受贈土地의 재단법인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土地增值稅 납부세액을 추징하는 외에 동시에 土地增值稅 납부세액의 2배의 벌금에 처한다.

- ○ 기부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각 당해 사업의 설립취지를 위반한 경우
- ○ 토지수익을 각 당해 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 과세당국의 조사 또는 타인의 적발을 통해 기부인이 임의의 방식으로 기부한 토지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9. 공고지가(公告地價)와 공고현치(公告現值)의 비교

대만은 토지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公告現值 및 公告地價에 따라 地價稅와 土地增值稅를 계산 · 징수한다. 公告地價와 公告現值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표 4-II-3〉 公告地價와 公告現値의 비교

	公告地價	公告現値
세목별	地價稅 부과기준	土地增値稅 부과기준
조사근거	수익가격	교역가격
공고시간	매 3년 地價를 새로 규정(필요시 연장 가능)	매년 한차례 토지 시가(現値)를 공고
신고	地價 신고	토지 이전시가(移轉現値) 신고
신고범위	"고地價" 公告地價의 80%에서 120% 사이에서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公告地價의 80%를 申告地價로 함.	"고토지의 이전시가(申報土地移轉現値)" 公告現値보다 낮아서는 안됨.

Ⅲ. 방옥세(房屋稅)

1. 서론

土地法이 제정되기 전부터 대만정부는 건축물(정확히 말해서 토지개량물임)에 대해서 "房捐"을 부과했었으며, 1967년에 "房捐"을 "房屋稅(house tax)"로 개칭해서 房屋稅를 징수하고 있다.

房屋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영업용 · 업무(工作)용 및 주택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房屋稅條例 §2).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房屋稅는 일종의 재산세이고 또한 건축물(房屋)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보유세이기도 하다.

대만의 房屋稅는 부동산의 사용상황에 따라 주거용(住家用), 영업용 및 비주거용(住家用)비영업용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각자의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2. 납세의무자

房屋稅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房屋稅條例 §4).

○ 건축물의 소유인

房屋稅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한다.

○ 전당권(典權)자

전당권(典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당권(典權)자에 대하여 징수한다.

소유권자 또는 전당권(典權)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관리인 또는 거주인이 납부해야 한다. 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리납부한 후 임대료에서 차감한다.

○ 공유인

공유건축물의 경우는 공유인에 대하여 징수하고, 공유인이 그 중 한명을 추천하여 납부한다. 추천하여 정하지 않을 경우는 거주인 또는 사용인이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한 房屋稅는 그가 부담해야 할 부분 이외의 세액에 관하여 기타 공유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 起造人, 거주인 또는 관리인

건물소유권의 제1차 등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그 房屋稅는 使用執照에 기재한 起造人에 대하여 징수한다. 使用執照가 없는 경우는 建造執照에 기재한 起造人에 대하여 징수하고, 建造執照가 없는 경우는 거주인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징수한다.

○ 수탁자

건축물이 신탁재산일 경우 신탁관계 존속 시에 수탁자를 房屋稅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3. 과세대상

房屋稅는 토지에 부착된 각종 건축물 및 당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관련 건축물(기타 부속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房屋稅條例 §3). 건축물(房屋)이란 토지에 고정된 것으로서 영업용, 업무용 또는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당해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이란 房屋稅를 과세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기타의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房屋稅條例 §2).

4. 세율

房屋稅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住居用(住家用) 부동산

최저 부동산 시가의 1.2%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최고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체 주거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 시가의 1.2%이다. 현행 징수율은 1.2%이다.

나. 非住居用(非住家用) 부동산

○ 영업용

최저 부동산 시가의 3%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최고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행 징수율은 3%이다.

○ 비영업용

개인병원, 진료소, 자유직업사무소 및 인민단체 등 비영업자일 경우 최저 부동산 시가의 1.5%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최고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모두 2%이다. 예를 들어 臺北市, 高雄市의 현행 징수율은 모두 2%이고, 金馬(金門, 馬祖)지역의 현행 징수율은 1.5%이다.

다. 住居用(非住家用) 및 非住居用(非住家用) 부동산

건축물을 동시에 주거용(住家用) 및 비주거용(非住家用)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사용 면적에 따라 각각 주거용(住家用) 또는 비주거용(非住家用) 세율을 적용하여 房屋稅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비주거용(非住家用)의 경우 과세면적은 최소 전체 면적의 1/6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房屋稅條例 §5).

〈표 4-III-1〉 房屋稅의 稅率

(단위: %)

항 목		법정세율		현행징수율
		최 저	최 고	
住居用(住家用)		1.2	2	1.2
非住居用	영업용	3	5	3
	비영업용 : 개인병원, 진료소, 자유직업사무소 및 인민단체 등을 포함	1.5	2.5	2 또는 1.5

5. 과세표준

房屋稅는 건축물의 시가(房屋現値)에 따라 과세한다(房屋稅條例 §5). 주관 과세당국은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산정(評定)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시가를 계산해야 한다(房屋稅條例 §10). 건축물의 기준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따라 각각 평가·산정하고 직할시, 현(시) 정부가 이를 공고한다.

- ○ 건축물은 건설에 사용된 각종 건설재료에 따라 종류 및 등급을 구분한다.
- ○ 각종 유형 건축물의 내용연수 및 상각기준
- ○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街道村里)의 상업교통 상황 및 부동산의 수요공급 상황을 참작하고, 각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에서 地價 부분을 차감하여 그 기준을 제정한다.

상술한 房屋標準價格은 매 3년에 한 번씩 평가·산정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함에 따라 그 가격은 점차 감소한다(房屋稅條例 §11).

6. 감면규정

대만은 규정에 부합되는 공유, 사유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房屋稅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公有公用의 건축물(정부기관, 군사기관, 감옥, 학교사무용의 부동산 및 그 職員宿舍 등), 민간에서 공익에 사용하는 건축물(학교, 학술연구기관, 자선구제사업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및 중대 재해손실을 입은 건축물 등을 포함)은 모두 면세이고, 정부가 적정가격(平價)으로 배급판매(配售)하는 평민주택은 50%를 징수한다. 그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공유건축물이 다음 각종 사항에 사용될 경우 房屋稅를 면제한다(房屋稅條例 §14).

- ○ 각급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의 사무용 건축물 및 그 직원 宿舍
- ○ 군사기관 부대의 업무용 건축물 및 그 官兵의 宿舍
- ○ 감옥, 구치소 및 그 업무용 건축물과 직원 宿舍
- ○ 공립학교, 병원, 사회교육학술연구기관 및 구제기관의 學校宿舍, 研究員宿舍, 업무용 건축물 및 그 직원 宿舍.
- ○ 工鑛, 農林, 水利, 漁牧사업기관의 연구 또는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 ○ 糧政機關의 양식창고, 監務機關의 監倉, 公賣사업조직 및 정부경영의 수돗물(自來水)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장 및 업무용 건축물
- ○ 우정, 전신, 철도, 공로, 항공, 기상, 港務사업조직이 자체의 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직원 숙사
- ○ 각종 고적 및 선현선열 기념을 위한 祠廟
- ○ 정부가 빈민 거주용으로 배급(配供)하는 건축물
- ○ 정부기관이 퇴역 관병의 취업지도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나. 사유건축물을 다음 각종 사항에 사용할 경우 房屋稅를 면제한다(房屋稅條例 §15).

○ 이미 立案한 사립학교 및 학술연구기관에 있어서 재단법인등기를 마친 경우, 그 학교 숙사 또는 업무에 사용되는 자체 소유의 건축물
○ 이미 立案한 사립자선구제사업조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단법인등기를 마친 경우, 그 사업조직에 직접 사용하는 자체 소유의 건축물
○ 제사에 전문 사용하는 사당, 종교단체에서 전도 등에 사용하는 교당 및 사당. 다만 재단법인 또는 사당등기를 마치고 건축물이 그 자체 소유인 경우에만 한함.
○ 무상으로 정부기관에 공용 또는 군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축물
○ 정부가 비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단의 자체 소유의 업무용 건축물. 다만 同業, 同鄕, 同學 또는 宗親社團을 수익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工會法에 따라 조직한 공회가 현지 주관 과세당국을 통하여 直轄市, 縣(市)정부의 비준을 받아 房屋稅를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家禽家畜의 사양에 전문 사용하는 건축물, 농산품의 재배에 사용하는 온실, 벼모종재배센터의 작업실, 인공번식장, 양수기의 부동산과 농민의 燻菸房, 벼 및 차잎 건조기방, 농기구 보관창고 및 堆肥 등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중대 재해를 입고 훼손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리 복원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 司法보호조직이 소유하는 부동산
○ 주거용 부동산의 시가가 新臺幣(NT$) 10만원 이하인 경우
○ 農會 소유의 창고, 糧政기관의 公糧 보관에 전적으로 사용되고 주관 기관의 증명을 거친 경우
○ 목적사업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신탁에 있어서 그 수탁자가 당해 신탁관계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직접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다. 사유건축물에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이 있을 경우 房屋稅를 50% 감면하여 징수한다(房屋稅條例 §15).

○ 정부가 적정가격(平價)으로 배급판매(配售)하는 평민주택
○ 합법적으로 등기한 공장을 직접 생산에 사용하는 자체 소유의 건축물
○ 農會 소유의 자가용 창고 및 檢驗場에 있어서 주관기관의 증명을 받은 경우
○ 중대 재해를 입어 훼손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50% 이하를 차지하는 건축물

7. 징수관리

房屋稅는 본래 매년 상·하분기 두 번으로 나누어 징수하였는데, 그 후 국민의 편의(便民) 및 세무행정 간편화를 위해서 매년 한 차례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징수시기는 5월이다.

신축·증축 부동산의 신고 및 房屋稅의 징수 납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각 직할시, 현(시)(局)은 관련 주관인원 및 건축기술 전문인원을 파견하여 건축물평가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현지 민의기관 및 관련 인민단체는 대표를 추천 및 파견해서 건축물평가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하며, 그 인원 수는 총인원 수의 2/5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房屋稅條例 §9). 이렇게 조직된 건축물평가위원회는 건축물 기준가격을 평가·산정(評定)한다(房屋稅條例 §11).

나. 건축물 시가(房屋現值)의 계산

주관 과세당국은 건축물평가위원회가 평가·산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시가를 계산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의 시가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이의

가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계산을 신청해야 한다(房屋稅條例 §10).

다. 부동산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改建)에 대한 신고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을 완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주관 과세당국에 부동산의 시가 및 사용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증축 · 개축 · 사용변경 또는 이전이 있거나 계승(承傳)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房屋稅條例 §7).

라. 1년 미만일 경우 세액의 계산

신축 · 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이 당기에 완공된 경우 모두 월별 비례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일 경우는 계산하지 않는다(房屋稅條例 §12).

마. 거주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이 소각 · 붕괴 · 철거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 납세의무자가 현지 주관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조사 · 확인한 후 재건축해서 완공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房屋稅條例 §8).

바. 빈 건축물(空屋)

건축물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가에 따라 使用執照에 기재한 용도 또는 都市計劃分區 사용범위에 따라 각각 주거용 및 비주거용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한다. 다만 臺北市는 臺北市房屋稅徵收自治條例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가를 적용하여 使用執照에 기재한 용도 또는 都市計劃分區 사용범위에 따라 각각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비영업용(非住家用非營業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사. 조세의 보전

房屋稅를 체납한 건축물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전당권(典權)등기를 설정할 수 없다. 체납세액은 부동산의 인수인(承受人)이 대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대리납부세액은 납세의무자에게 구상하거나 또는 매입가(買價), 저당가(典價)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다(房屋稅條例 §2).

8. 처벌

房屋稅에 관한 처벌은 "稅捐稽徵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한초과 납부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 2일 초과시 체납금액에 따라 1%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하고,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房屋稅條例 §18).

나. 기한초과의 신고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주관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금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의 보충징수를 명하는 외에 누락세액에 따라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房屋稅條例 §6).

다. 악의적 세금의 탈루

납세의무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拘役 또는 新臺幣(NT$) 6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房屋稅條例 §41).

Ⅳ. 유산세(遺産稅) 및 증여세(贈與稅)

1. 서론

대만의 유산세 역사는 비교적 오래되어, 1915년에 "遺産稅徵收條例"를 제정하고 또한 1929년에 "遺産稅條例"를 제정해서 과세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조례 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또한 당시의 환경적인 면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그 시행이 용이하지 않았다.

대만 정부는 1938년 10월 6일에 "遺産稅暫行條例"을 제정·공포해서 194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세율은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병행했다.

1946년에 "遺産稅法"과 "遺産稅法實施細則"이 공포되면서 "遺産稅暫行條例"가 폐지되어 현행 遺産稅의 모습을 갖추었다.

1973년에 "遺産及贈與稅法"과 "遺産及贈與稅法施行細則"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贈與稅가 비로소 부과되기 시작했다.

현행 遺産·贈與稅는 유산과세형을 및 贈與稅制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적인 근거는 "遺産及贈與稅法"이다.

유산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이다. 遺産稅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소유권에 이전이 발생할 경우 그 유산소득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에 속한다는 것이 대만의 일반론이다.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전가가 불가능하므로 遺産稅는 일종의 직접세이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동산, 부동산 및 기타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며(遺産及贈與稅法 §4), 따라서 일종의 재산세이며 직접세이다. 종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생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사후의 遺産稅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贈

與稅를 징수함으로써 遺産稅의 부족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증여세는 유산세의 보조세이고, 贈與稅의 성질 및 징수방식은 모두 遺産稅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생전에 계획적인 여러 차례의 증여로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나 유산세는 사후의 한 차례 유증이므로 대다수 사람들은 증여세의 세율이 유산세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종전에는 증여세의 세율이 유산세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遺産稅와 贈與稅는 누진세율을 채택함으로써 공평과 응능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며, 富의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의의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대만 정책당국은 침체된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유산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기존의 복잡한 누진체계에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해서 2009년 1월 23일 이후부터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과세유형

가. 총유산세제(總遺産稅制; 遺産稅方式)

遺産稅는 징수제도에 따라 總遺産稅制(遺産稅方式)과 分遺産稅制(유산취득세방식) 및 混合稅制 등 세 가지가 있다. 總遺産稅制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므로 "사망세"라고도 하고, 分遺産稅制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거나 수유증자(受遺贈人)가 취득한 유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과 피상속인 또는 수유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각각 차별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라고도 한다. 混合稅制는 우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遺産稅를 과세한 후 다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總遺産稅制의 장점은 징수가 간편한 것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또는 수유증자 간의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만은 總遺産稅制를 채택하고 있다.

나. 총증여세제(總贈與稅制)

贈與稅는 遺産稅의 보조과세이다. 즉, 贈與稅를 징수하는 목적은 납세의무자가 생전에 증여를 통하여 사후의 遺産稅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贈與稅의 과세방식은 遺産稅와 일치할 때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대만도 總遺産稅制에 따라 贈與稅에 관해서도 總贈與稅制를 채택하고 있다. 總贈與稅制는 원칙적으로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증여총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다. 사실상 贈與稅 과세방식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總贈與稅制 외에 分贈與稅制와 混合贈與稅制가 있다. 分贈與稅制에 있어서는 수증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수증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고, 混合贈與稅制에 있어서는 증여인과 수증인에 모두 과세한다.

3. 납세의무자

가. 유산세

유산세 납세의무자의 선후순서는 다음과 같다(遺産及贈與稅法 §6).

- ○ 유서집행인
- ○ 상속인 및 수유증인
- ○ 법에 따라 선정한 유산관리인

나. 증여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다만 증여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수증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遺産及贈與稅法 §7).

- ○ 행방불명
- ○ 규정된 납부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고 대만 경내에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4. 과세대상

가. 유산세의 과세대상과 범위

1) 경상 거주하는 국민

대만 경내에 경상 거주하는 대만 국민이 사망 시에 그의 대만 경내 외의 전부 유산에 대하여 遺産稅를 징수해야 하고, 사망사실 전의 2년 이내에 스스로 원해서 대만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만 경내 외의 전부의 유산에 대하여 遺産稅를 징수해야 한다. "대만 경내에 경상거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경내외 재산"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다음 [5] 및 [6] 부분에서 각각 설명하기로 한다.

2) 대만 경외에 경상 거주하는 대만의 국민 및 非臺灣의 국민

이들이 사망 시에 대만 경내에 재산이 있을 경우 그의 대만 경내의 유산에 대하여 遺産稅를 징수한다(遺産及贈與稅法 §1, §3-1).

3) 유산

동산, 부동산 및 기타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한다(遺産及贈與稅法 §4).

4) 유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다음 개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보아 그 유산총액에 산입하여 遺産稅를 징수해야 한다(遺産及贈與稅法 §15).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민법 제1138조[20] 및 1140조[21]의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각 순서의 상속인

○ 각 순서 상속인의 배우자

전항의 유산으로 보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생전의 여러 차례 증여를 통하여 사후의 遺産稅를 회피 또는 감소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망 전 2년 이내의 증여는 여전히 遺産稅의 과세범위에 넣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2년 이내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로 증여한 재산, 즉 매년 新台幣(NT$) 100만원(물가지수연동법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2006년부터 贈與稅의 기본면세액은 매년 111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의 기본면세증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6). 다만 이미 납부한 贈與稅와 土地增値稅는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와 함께 遺産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제액은 증여재산에 유산총액을 가한 후 증가하는 납부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遺産及贈與稅法 §11).

나.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범위

○ 대만 경내에 경상 거주하는 대만 국민이 대만 경내 또는 경외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遺産及贈與稅法 §3)

○ 대만 경외에 경상 거주하는 대만 국민 및 대만 국민이 아닌 자가 그의 대만 경내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遺産及贈與稅法 §3)

○ 증여란 재산소유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수락을 통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이다(遺産及贈與稅法 §4).

○ 증여로 보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형식상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하고자 하는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징

---

20) 민법 제1138조는 법정상속인 및 그 순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산상속인은 배우자 이외에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直系血親卑親屬; 2. 부모; 3. 형제자매; 4. 조부모

21) 민법 제1140조: 제1138조에서 규정한 제1순서의 상속인이 상속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그 直系血親卑親屬이 그 상속분을 代位상속한다.

수한다(遺産及贈與稅法 §5)

- 청구권 시효 이내에 무상으로 채무를 免除 또는 부담(承擔)할 경우, 그 면제 또는 부담하는 채무
- 현저히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를 면제 또는 부담할 경우, 그 차액부분
- 자신의 자금으로 무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재산을 구매할 경우 그 자금. 다만 당해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그 부동산
- 현저히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출자하여 타인을 위하여 재산을 구매하는 경우, 그 출자와 대가 간의 차액부분
- 제한행위능력인 또는 무행위능력인이 구매한 재산은 법정대리인 또는 監護人의 증여로 본다. 다만 그 지불한 금액이 구매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년, 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행위능력이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이미 결혼했을 경우는 행위능력이 있고, 7세 미만일 경우는 행위능력이 없다. 그 밖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허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본인 · 배우자 또는 가장 가까운 친속 2인의 요청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할 수 있고, 금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없다.
- 二等親(二親等) 등 이내의 친족 간의 재산의 매매에 있어서 대금지불의 확실한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확실한 증명을 제출할 수 있고 당해 지불대금이 매도인이 대여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닐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친(親等)의 계산은 민법 제968조의 규정에 따른다. "血親 親等의 계산은 直系血親 · 본인으로부터 계산하여 一世를 一親等으로 하고, 傍系血親은 본인으로부터 同源의 直系血親까지, 다시 同源의 直系血親이 그와 親等을 계산하는 血親까지 계산하여 그 총 世數를 親等의 수로 한다."

다. 대만 경내에 경상거주

유산 및 贈與稅法에서 말하는 "대만 경내에 경상거주한다"라고 함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遺産及贈與稅法 §4).

○ 사망사실 또는 증여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2년 이내에 대만 경내에 주소가 있는 자

○ 대만 경내에 주소가 없으나 居所가 있고, 사망사실 또는 증여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2년 이내에 대만 경내에 체류한 시간이 합계 365일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대만 경내에 특정 체류기한이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만 경외에 경상거주한다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라. 대만 경내외의 재산에 대한 인정

유산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대만 경내 또는 경외의 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시 또는 증여자가 증여 시의 재산의 소재지에 대한 인정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遺産及贈與稅法 §9).

○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에 부착된 권리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선박 · 차량 및 항공기는 그 선적 · 차량 또는 항공기의 등기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광업권은 광구 또는 鑛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어업권은 그 행정관할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특허권 · 상표권 · 저작권 및 출판권은 그 등기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기타 영업상의 권리는 그 영업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기관이 수수하는 예금(存款) 및 기탁물은 금융기관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채권은 채무자의 경상거주 소재지 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공채, 회사채, 주주권(股權) 또는 출자는 그 발행기관 또는 피투자사업조직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신탁과 관련된 권리, 이익(權益)은 그 신탁사업을 인수(承受)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술한 각 재산 이외의 재산의 소재지에 관한 인정에 의문이 있을 경우 財政部에서 확정한다.

마. 중복과세의 방지

상술한 바와 같이 대만 경내에 경상 거주하는 대만 국민이 사망 시에는 그 대만 경내외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유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만은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외(국외)의 재산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이미 납부한 유산세 또는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재지국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빙을 제출하고 소재지국 대만 대사관 · 영사관의 공증(簽證)을 받아야 하며, 대사관 · 영사관이 없을 경우 현지의 공인회계사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납부해야 할 유산세 또는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제액은 그 국외유산을 가산하여 국내의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증가하는 납부세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遺産及贈與稅法 §11).

바. 세수의 보전

유산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유산을 분할하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교부하거나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증여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유산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 과세당국에 신청하여 이전동의 증명서를 비준 · 발급받거나 또는 과세당국이 면세증명서를 확인 · 발급하여 유산총액 증명서 또는 증여총액증명서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遺産及贈與稅法 §8).

5. 세율과 계산

가. 유산세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遺産及贈與稅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유산총액

에서 각종 공제액, 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유산액(遺産淨額)에 규정된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유산총액 - 공제액 - 면세액 = 과세표준의 유산액(遺産淨額)
과세표준의 유산액 X 세율 - 세액공제 = 遺産稅 납부세액

최근 대만 정책당국은 침체된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유산세의 세율을 기존의 10단계 누진체계에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해서 2009년 1월 23일 이후부터의 상속에 대해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4-IV-1〉 2009년 1월 23일 이전의 유산세 세율 및 속산표

(단위: 원, %)

유산액(新台幣)	세율	누진차액((新台幣)
0 ~ 670,000	2	0
670,000 ~ 1,670,000	4	13,400
1,670,000 ~ 3,340,000	7	63,500
3,340,000 ~ 5,010,000	11	197,100
5,010,000 ~ 6,680,000	15	397,500
6,680,000 ~ 11,130,000	20	731,500
11,130,000 ~ 16,700,000	26	1,399,300
16,700,000 · 44,530,000	33	2,568,300
44,530,000 ~ 111,320,000	41	6,130,700
111,320,000 이상	50	16,149,500

나.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자의 매년 증여총액에서 각종 규정에 따른 공제액 및 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증여액에 다음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遺産及贈與稅法 §19).

연간 증여총액 – 공제액 – 면세액 = 연간 과세표준의 증여액
연간 과세표준 증여액 × 세율 – 누진차액 = 연간 贈與稅 납부세액
연간 贈與稅 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贈與稅額 = 본회 납부해야 할 贈與稅額

최근 대만 정책당국은 침체된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증여세의 세율을 기존의 10단계 누진체계에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해서 2009년 1월 23일 이후부터의 증여에 대해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4-Ⅳ-2〉 2009년 1월 23일 이전의 증여세 세율 및 속산표

(단위: %, 원)

증여액(新台幣)	세율	누진차액(新台幣)
0 ~ 670,000	4	0
670, 000 ~ 1,890,000	6	13,400
1,890,000 ~ 3,120,000	9	70,100
3,120,000 ~ 4,340,000	12	163,700
4,340,000 ~ 5,570,000	16	337,300
5,570,000 ~ 8,020,000	21	615,800
8,020,000 ~ 15,580,000	27	1,097,000
15,580,000 ~ 32,280,000	34	2,187,600
32,280,000 ~ 50,090,000	42	4,770,000
50,090,000 이상	50	8,777,200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증여가 있을 경우 그 증여액을 합산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贈與稅額을 차감한 후의 가액이 그 회차의 贈與稅額

이 된다.

6. 유산 및 증여재산 가치의 계산

가. 평가원칙(遺産及贈與稅法 §10)

유산세 또는 증여세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또는 증여자의 증여시의 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선고를 받는 경우라면 법원의 사망 판결선고 기간 내에 확정된 사망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時價란 토지의 경우는 公告土地現値 또는 評定標準價格을 말하고, 房屋(주택)의 경우는 評定標準價格을 말한다. 기타 재산의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한다.

本條의 수정 전에 사망사실 또는 증여행위가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 본조 수정공포 발효일에 아직 확정과세(核課)하지 않거나 또는 확정과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의 가치평가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나. 국외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유산 또는 증여인이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財政部에서 유산 또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대만 대사관 · 영사관에 위탁하여 그 가액을 조사 · 평가하게 하고, 대사관 · 영사관이 없을 경우에는 현지의 공인회계사 또는 공증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23).

다. 林木의 평가

임목은 그 종류 · 수량 및 임지의 時價를 기준으로 평가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24).

라. 진주, 보석 등의 평가

동산 중의 진주, 보석, 古物, 미술품, 도서 및 기타 그 市價를 확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25).

마. 운송설비의 평가

차량, 선박, 항공기의 가치는 그 原始原價에서 합리적인 상각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原始原價의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출한 原始原價의 증명이 사실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年式 및 사용상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26).

바. 채권 자산의 평가

채권의 평가는 그 채권액을 평가가액으로 한다. 이자약정이 있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증여행위의 발생일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액을 가산해야 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27).

사. 유가증권의 평가

- ○ 증권교역소에 상장하거나(이하 상장) 또는 證券商 영업처에서 매매(이하 上櫃)하는 유가증권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당해 증권의 마감가격(收盤價)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당일에 매매가격이 없을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1일의 마감가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이전 한 달 이내 매일 마감가격의 평균가격에 따라 평가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28).
- ○ 유가증권이 최초 상장 또는 최초 上櫃할 경우, 증권 주관기관에 그 계약을 비준받은 후 공시(掛牌) 매매 전까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하는 날 해당 증권의 인수

(承銷)가격 또는 推薦證券商이 인수(認購)하는 가격에 따라 평가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28).

○ 未上場 또는 未上櫃의 股分有限公司의 주식은 제2항의 유가증권의 최초 상장 또는 최초 上櫃의 경우 그 규정에 따르는 외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당해 회사의 순자산가치(資産淨値)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非股分有限公司 조직 사업의 출자가치의 평가는 동항의 규정을 준용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29).

아. 선불임대료(預付租賃)의 평가

선불임대료는 당해 선불임대료의 금액에 관하여 임대기간의 비례에 따라 잔여기간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임대료로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30).

자. 地上權의 평가

지상권의 설정에 기한 또는 年租(1년 분의 임대료)가 있을 경우,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31).

○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의 地租額을 평가가액으로 한다.

○ 잔여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인 경우, 1년의 地租額의 2배를 그 평가가액으로 한다.

○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30년 이하인 경우, 1년의 地租額의 3배를 그 평가가액으로 한다.

○ 잔여기간이 30년 이상 50년 이하인 경우, 1년의 地租額의 5배를 그 평가가액으로 한다.

○ 잔여기간이 50년 이상 100년 이하인 경우, 1년의 地租額의 7배를 그 평가가액으로 한다.

○ 잔여기간이 100년 이상인 경우, 1년의 地租額의 10배를 그 평가가액으로 한다.

지상권의 설정에 관하여 연한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1년 地租額의 7배를 그 평가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지에 별도의 습관이 있을 경우 그 습관에 따라 잔여연한을 결정할 수 있다.

지상권의 설정에 연한이 없을 경우 그 年租는 신고한 연이자(年息)의 4%에 따라 계산한다.

지상권을 설정하고 임대료를 1회에 지불하고, 매년 임대료를 추가하거나 또는 일정한 이익으로 임대료를 대신할 경우, 그 설정기간에 따라 평균 年租를 계산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차. 기타 재산의 평가

○ 永佃權, 전당권(典權)의 평가: 永佃權 가치의 계산은 1년에 납부해야 할 佃租額의 5배를 기준으로 하고(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32), 저당권은 저당가(典價)를 그 평가가액으로 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33).

○ 조건부권리 및 不定期의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에 관하여 당시의 실제상황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39).

○ 공유재산 또는 共營財産 가액의 평가는 우선 그 재산의 총순가치(總淨値)를 평가한 후 다시 피상속인의 유산부분 또는 증여자의 증여부분의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40).

7. 감면 및 공제 규정

가. 유산세

1) 유산총액 불산입 재산

정부 · 공익관련기관에 기부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창작 · 생활필수품 · 보험금부 및 5년 이내에 이미 遺産稅를 납부한 적이 있는 등의 경우인 다음 각항은 유산총액에 산

입하지 않는다.

○ 수증인, 수유증인(受遺贈人) 또는 상속인이 각급 정부 및 공립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에 기부한 재산

○ 수증인, 수유증인(受遺贈人) 또는 상속인이 공유사업기관 또는 100% 공유주식(公股)인 공영사업에 기부한 재산

○ 수증인, 수유증인(受遺贈人)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시에 이미 법에 따라 재단법인조직으로 등기 · 설립하고 또한 行政院이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교육, 문화, 공익, 자선, 종교단체 및 祭祀公業조직에 기부한 재산

○ 유산 중 문화 · 역사 · 미술과 관련된 도서 · 물품에 관하여 상속인이 주관 과세당국에 聲明登記를 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당해 도서 물품을 양도 시에는 여전히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 피상속인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 발명특허권 및 예술품

○ 피상속인의 일상생활필수의 기구 및 용품에 있어서 그 총가치가 新台幣(NT$) 80만원 이하인 부분

○ 피상속인의 직업상의 工具에 있어서 그 총가치가 新台幣(NT$) 45만원 이하인 부분

○ 법에 따라 채벌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삼림. 다만 금지 또는 제한 해제 후에는 여전히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 피상속인 사망 시에 그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급부하기로 약정한 생명보험의 금액, 軍, 公敎人員, 勞工 또는 농민보험의 금액 및 互助金

○ 피상속인의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이미 유산세를 납부한 경우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본래의 재산 또는 특유재산에 관하여 등기를 하거나 또는 확실한 증명이 있을 경우

○ 피상속인의 유산 중에 정부가 공중통행도로로 지정한 토지 또는 기타 무상으로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는 도로의 토지에 관하여 주관 기관의 증명을 받은 경우. 다만 그것이 건설주택으로 보류해야 할 法定空地 부분은 여전히 유산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채권 및 기타 청구권에 관하여 수취 또는 행사할 수 없음에 확실한

증명이 있는 경우

2) 면세액

피상속인 본인의 면세액은 新台幣(NT$) 1,200만원이고, 그가 軍警公敎인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할 경우는 배로 계산하여 면세액은 新台幣(NT$) 2,400만원이다(遺産及贈與稅法 §18).

3) 공제액

다음 각항은 유산총액에서 공제한다(遺産及贈與稅法 §17)[22].

①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유산총액에서 新臺幣(NT$) 445(4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直系血親卑親屬일 경우 유산총액에서 1인당 新臺幣(NT$) 45(4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20세 미만일 경우는 동시에 그 연령과 20세까지의 차이에 따라 매년 新臺幣(NT$) 45(4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친족관계가 가까운 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 친족(次親) 등 卑親屬이 상속할 경우 공제금액은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피상속인에게 부모가 있을 경우 유산총액에서 1인당 新臺幣(NT$) 111(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자가 "身心障礙者保護法" 제3조에서 규정한 중증(重度) 이상의 심신장애자일 경우, 또는 "精神衛生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자일 경우 1인당 추가로 新臺幣(NT$) 557(500)만원을 더 공제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그가 부양하는 형제자매, 조부모가 있을 경우 유산총액에서 1인당 新臺幣(NT$) 45(40)만원을 공제할 수 있고, 그 형제자매 중 20세 미만인 자가 있을 경우 동시에 그 연령과 20세와의 차이 연수에 따라 매년 新臺幣(NT$)

22) 물가지수연동법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2006년 이후에 발생한 상속분에 대해서 상향조정된 가액이다. ( ) 안의 가액이 조정되기 전, 즉 遺産 및 贈與稅法상의 가액이다.

45(4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할 수 있다.

⑥ 유산 중에 농업에 사용하는 농업용지 및 그 지상농작물이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증인이 인수(承受)할 경우 그 토지 및 지상농작물 가치의 전액을 공제한다. 인수인(承受人)이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농업에 사용하지 않고 또는 관련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농업용으로 회복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이미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다시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경우, 그 납부해야 할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당해 인수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당해 인수토지가 징수당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비농업용지로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⑦ 피상속인의 사망 전 6년부터 9년 사이에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이미 遺産稅를 납부한 경우 매년 각각 80%, 60%, 40% 및 20%에 따라 공제한다.

⑧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조세, 벌금(罰鍰 및 罰金)

⑨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환하지 않은 채무로서 확실한 증명이 있을 경우

⑩ 피상속인의 장례(喪葬) 비용은 新臺幣(NT$) 111(100)만원으로 계산한다.

⑪ 유서를 집행하고 유산을 관리하는 직접 필요비용

피상속인이 대만 경외에 경상 거주하는 대만 국민이거나 또는 대만 국민이 아닐 경우, 상술한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술한 제8항 내지 제9항 규정의 공제는 대만 경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고,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할 경우 상술한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증여세

1) 다음 각항의 금액은 증여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遺産及贈與稅法 §20).

① 각급 정부 및 공립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에 기부한 재산

② 공유사업기구에 기부하거나 또는 100% 공유주식(公股)인 공영사업조직에 기부한 재산

③ 법에 따라 재단법인조직으로 등기하고 또한 행정원이 규정한 기준의 교육, 문화, 공익, 자선, 종교단체 및 祭祀公業조직에 기부한 재산

④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인을 위하여 지불하는 생활비, 교육비 및 의약비

⑤ 농업에 사용하는 농업용지 및 그 지상농작물을 민법 제1138조에 규정한 상속인에게 증여할 경우 그 토지 및 지상농작물 가치의 전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수증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농업에 사용하지 않고 또는 관련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농업용으로 회복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이미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다시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경우 그 납부해야 할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당해 수증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당해 수증토지가 수용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비농업용지로 변경될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배우자 간에 서로 증여하는 재산

⑦ 부모가 자녀 결혼(婚嫁) 시에 증여하는 재물의 총금액이 新台幣(NT$)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중 제⑥항, 제⑦항은 1995년 1월 14일에 "遺産及贈與稅法"을 수정할 때 추가한 내용이다. 따라서 1995년 1월 14일 이전에 배우자 서로 간에 증여한 재산 및 결혼(婚嫁) 시에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물이 新台幣(NT$) 100만원 이내일 경우, 본항의 수정공포 발효일에 확정과세(核課)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정과세를 確定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부담부 증여

증여에 부담이 부가되어 있을 경우 수증인의 부담부분은 증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遺産及贈與稅法 §21).

3) 증여세의 기본 면세액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증여총액에서 면세액 新台幣(NT$) 22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遺産及贈與稅法 §22). 贈與稅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기 때문에 동 기본면세액 新台幣(NT$) 220만원은 증여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다. 水源特定區域으로 확정한 토지에 대한 유산세 또는 증여세

水質水量保護區를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水源特定區域으로 확정한 토지에 관하여 유산세 또는 증여세를 확정과세(核課) 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농업구, 보호구, 行水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使用分區管制 내용과 보호구가 같을 경우, 당해 토지가액의 절반을 공제한다. 다음의 사항에 속할 경우는 100% 공제한다.

① 水源特定區域을 계획 · 공포 · 실시하기 전에 이미 당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공포 실시 후에 발생한 상속, 첫 번째 이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후 처음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自來水法 제12-1조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당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실시 후에 발생한 상속, 첫 번째 이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후 처음으로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는 당해 토지가액의 30%를 공제한다.

○ 상업구 및 아파트단지(社區中心)는 당해 토지가액의 20%를 공제한다(水源特定區土地減免土地增值稅贈與稅及遺産稅標準 §3).

8. 납세절차

가. 유산세의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재산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호적 소재지 주관 과세당국에 유산세를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대만

경외에 경상 거주하는 대만 국민이거나 또는 대만 국민이 아닌 자가 사망 시에 대만 경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만 중앙정부 소재지의 주관 과세당국에 유산세 신고를 해야 한다(遺産及贈與稅法 §23).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연장신청기한은 3개월이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수한 사유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실제상황을 감안하여 확정(核定)할 수 있다(遺産及贈與稅法 §26).

대륙지역 인민이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대만지역과 대륙지역의 인민관계조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대만지역 국민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遺産 및 贈與稅法의 규정에 따라 유산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遺産 및 贈與稅法 제23조에서 규정한 6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의 법원에 상속을 표명(表示)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遺産 및 贈與稅法 제26조 규정의 연장신고신청기한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상속 안건에 대륙지역 이외의 납세의무자가 있을 경우, 대륙지역 이외의 납세의무자가 遺産 및 贈與稅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상술한 유산세를 신고해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이미 대륙지역 이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했거나 또는 과세당국이 직접 확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한다(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施行細則 §60).

나. 증여세의 신고

○ 일반신고

증여총액에 산입하지 않는 증여 이외에 증여인은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총액이 贈與稅 면세액을 초과할 때 면세액을 초과하는 증여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贈與稅를 신고해야 한다(遺産及贈與稅法 §34).

○ 연기신고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연장신청기한은 3개월이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수 사유로 인할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가 실제상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遺

産及贈與稅法 §26).

다. 유산세 및 증여세의 납부

유산세 또는 증여세 모두, 납세의무자는 납세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필요 시 기한 내에 2개월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新台幣(NT$)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확실한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된 납세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12개 기간으로 나누어 납부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매 기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물 또는 기타 환가(變價) 또는 보관이 용이한 실물로 일차적으로 충당(抵繳)하도록 할 수 있다. 분납(分期繳納)을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날까지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각각 이자를 가산해야 하고, 이자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 후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遺産及贈與稅法 §30).

실물로 세금을 충당(抵繳)할 경우, 실물의 가액이 납부세액보다 낮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충당(抵繳) 시에 현금으로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그 가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실물을 처리하여 환가한 후 그 가격에 관하여 충당 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충당실물 전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례에 따라 환급해야 할 가액을 계산하고 환가처리를 끝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에 통지하여 수령하도록 한다(遺産及贈與稅法 施行細則§ 48).

9. 행정구제 및 벌칙

가. 유산세 및 증여세의 행정구제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이 확정한 납부세액에 불복할 경우 세금납부서를 송달받은 후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재조사(復査)를 신청해야 한다(稅捐稽徵法 §35).

나. 유산세 및 증여세의 처벌

○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유산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 납부세액에 따라 1배 내지 2배의 벌금에 처한다(遺産及贈與稅法 §44).

○ 과소신고, 누락시고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신고한 유산 또는 증여재산에 관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누락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누락세액에 따라 1배 내지 2배의 벌금에 처한다(遺産及贈與稅法 §45). 고의로 사기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유산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누락세액의 1배 내지 3배의 벌금에 처하는 외에(遺産及贈與稅法 §46), 稅捐稽徵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유기징역, 拘役 또는 新臺幣(NT$) 6만원 이하의 벌금을 竝科한다.

○ 기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유산을 분할하고 유증한 재산을 교부하거나 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贈與稅를 납부하기 전에 증여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遺産及贈與稅法 §50).

10. 기타

가. 중국 대륙지역의 인민이 법에 따라 상속받는 경우

대륙지역의 인민이 피상속인의 대만지역에 있는 유산을 법에 따라 상속받을 경우, 그 소득재산의 총액은 1인당 新臺幣(NT$) 2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초과부분은 대만지역의 동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대만지역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대만지역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대만지역에 상속인이 없을 경우는 국고에 귀속된다.

전항의 유산에 있어서 본 조례 실시 전에 이미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保管款專戶로 잠정 예금한 경우에는 여전히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유언자(遺囑人)가 대만지역의 재산을 대륙지역의 인민 · 법인 · 단체 또는 기타 기구에 유증할 경우, 그 총액은 新臺幣(NT$)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유산 중에 부동산을 대상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대륙지역 상속인의 상속권리를 가액으로 환산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대만지역 상속인이 거주해야 하는 부동산일 경우 대륙지역의 상속인은 이를 상속받을 수 없다(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67).

대륙지역의 인민이 대만지역과 대륙지역의 人民關係條例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대만지역 인민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遺産稅 신고 시 그 공제액은 유산 및 贈與稅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대륙지역 상속인의 공제액을 보충 계산(補列)할 것을 신청하고 더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稅捐稽徵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施行細則 §61).

나. 신탁과 유산세

유언(遺囑) 방식을 통해서 사망 후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유언신탁(遺囑信託)이라 한다. 유언신탁은 유증의 성질이 있다. 그것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그 신탁재산은 여전히 유인자 소유이므로 유언자가 사망 시에 그 신탁재산은 遺産 및 贈與稅의 규정에 따라 유산세를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관계 존속 중에 수익자가 사망 시에는 그가 향유하는 신탁이익 중 미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유산세를 징수해야 한다(遺産及贈與稅法 §3-2).

상술한 유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권리에 있어서 그 가치의 계산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遺産及贈與稅法 §10-1).

① 신탁이익의 권리를 전부 향유할 경우, 당해 신탁이익이 금전일 때 신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탁이익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는 수익자 사망 시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孳息(과실, 이자) 이외의 신탁이익의 권리를 향유할 경우, 당해 신탁이익이 금전일 경우는 신탁금액을 수익자 사망 시로부터 수익 시까지의 기간에 수익자 사망 시의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자율의 複利에 따라 시가(現値)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신탁이익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는 수익자 사망 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수익자 사망 시로부터 수익 시까지의 기간에 수익자 사망 시의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자율의 복리에 따라 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 孳息(과실, 이자) 부분의 신탁이익의 권리를 향유할 경우, 당해 신탁금액 또는 수익자 사망 시 신탁재산의 시가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孳息(과실, 이자)이 공채, 회사채, 금융채권 또는 기타 약정 고정이자일 경우, 그 가치의 계산은 매년 받는 이자를 수익자 사망 시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자율의 복리에 따라 시가로 환산한 총액에 따라 계산한다.

④ 신탁이익을 향유하는 권리가 정기정액급부일 경우, 그 가치의 계산은 매년 향유하는 신탁이익의 금액을 수익자 사망 시의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자율의 複利에 따라 시가로 환산한 총액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이익을 향유하는 권리가 전부의 신탁이익에서 정기정액급부를 공제한 후의 잔액일 경우, 그 가치의 계산은 수익자 사망 시의 신탁재산의 시가에서 전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전 4항에서 규정한 신탁이익의 일부를 향유할 경우 수익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다. 신탁과 증여세

신탁계약상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를 비위탁자로 명확히 규정한 경우, 위탁자가 신탁이익을 향유하는 권리를 당해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징수해야 한다.

신탁계약상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를 위탁자로 명확히 규정한 경우, 신

탁관계 존속 중에 비위탁자로 변경할 경우, 변경 시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신탁관계 존속 중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추가함으로 인하여 비위탁자가 향유하는 신탁이익의 권리가 증가되는 경우, 추가 시에 증가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다.

상술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다만 위탁자가 행방불명 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대만 경내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遺産及贈與稅法 §5-1).

상술한 증여세를 징수해야 하는 권리의 가치의 계산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遺産及贈與稅法 §10-2).

① 신탁이익의 권리를 전부 향유할 경우, 당해 신탁이익이 금전일 때 신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탁이익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는 증여 시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孳息(과실, 이자) 이외의 신탁이익의 권리를 향유할 경우, 당해 신탁이익이 금전일 경우는 신탁금액을 증여 시로부터 수익 시까지의 기간에 증여 시의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자율의 複利에 따라 시가(現値)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신탁이익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는 증여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증여 시로부터 수익 시까지의 기간에 증여 시의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자율의 복리에 따라 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 孳息(과실, 이자) 부분의 신탁이익의 권리를 향유할 경우, 당해 신탁금액 또는 증여 시 신탁재산의 시가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孳息(과실, 이자)이 공채, 회사채, 금융채권 또는 기타 약정 고정이자일 경우, 그 가치의 계산은 매년 받는 이자를 증여 시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자율의 복리에 따라 시가로 환산한 총액에 따라 계산한다.

④ 신탁이익을 향유하는 권리가 정기정액급부일 경우, 그 가치의 계산은 매년 향유하는 신탁이익의 금액을 증여 시의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자율의 복리에 따라 시가로 환산한 총액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이익을 향유하는 권리가 전부의 신탁이익에서 정기정액급부를 공제한 후의 잔액일 경우 그 가치의 계산은 증여 시의 신탁재산의 시가에서 전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전 ④항에 규정한 신탁이익의 일부분을 향유할 경우 수익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그 밖에, 신탁재산을 다음 각항 신탁관계자 간에 이전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할 경우 贈與稅를 징수하지 않는다(遺産及贈與稅法 §5-2).

① 신탁행위의 성립으로 인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② 신탁관계 존속 중에 수탁자가 변경될 때, 본래의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

③ 신탁관계 존속 중에 수탁자가 신탁의 취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할 경우,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④ 신탁관계의 소멸로 인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또는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⑤ 신탁행위의 불성립, 무효, 해제 또는 취소로 인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Ⅴ. 계세(契稅)

1. 서론

契稅는 일종의 재산세이고 지방세에 속한다. 契稅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에 징수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유통세에 속한다. 대만의 현행 契稅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2. 납세의무자

契稅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 매수인: 賣買 契稅의 경우는 매수인(契稅條例 §4)
- ○ 전당권자: 典當 契稅의 경우는 전당권자(契稅條例 §5)
- ○ 교환인: 交換 契稅의 경우는 교환인이 각자 부담부분의 대하여 신고 및 납부(契稅條例 §6)
- ○ 수증인: 贈與 契稅의 경우는 수증인(契稅條例 §7)
- ○ 분할인: 分割 契稅의 경우는 분할인(契稅條例 §8)
- ○ 점유인: 占有 契稅의 경우는 부동산의 점유로 인하여 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契稅條例 §9)

건축물을 완공하기 전에 매매, 교환, 증여로 인하여 인수인(承受人)을 건설집조(建造執照)의 原始起造人(최초의 起工者)으로 하거나 또는 중도에 起造人의 명의를 변경하고 使用執照를 취득할 경우, 使用執照에 기재한 起造人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契稅條例 §12).

3.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 저당(承典), 교환, 증여, 분할 또는 점유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모두 契稅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土地增値稅를 납부하는 지역의 토지는 契稅를 면제한다(契稅條例 §2). 따라서 契稅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방식에 따라 매매, 전당권(典權), 교환, 증여, 분할 및 점유 등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賣買 契稅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다(契稅條例 §4). 법에 따라 公産(공공재산)을 領買 또는 標購하거나 법원이 경매하는 부동산을 標購할 경우에도 契稅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契稅條例 §11). 그 밖에 이전(遷移), 보상 등 다른 형태(變相)의 방식으로 소유권가격(産價)을 지불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賣買 契稅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契稅條例 §12).

나. 전당권(典權) 契稅

계약서에 기입한 가액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다(契稅條例 §5). 전당권이란 민법 제9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가(典價)를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사용 및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먼저 전당하고 후에 양도할 경우 본래의 전당권에 관하여 납부한 契稅의 금액으로 賣買契稅를 충당(抵繳)할 수 있다. 다만 전당권자와 양수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한다(契稅條例 §10). 그 밖에 저당(抵押), 대차(借貸) 등 다른 형태(變相)의 방식으로 전당권의 설정을 대체하고 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전당권 契稅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契稅條例 §12).

다. 交換 契稅

交換 契稅는 교환인이 가액을 평가하여 계약을 작성하고(立契) 각각 그 부담(承受)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한다. 다만 교환에 가격차액의 급부가 있을 경우 그 가격차액은 賣買 契稅의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契稅條例 §6).

라. 贈與 契稅

수증인이 가액을 평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 및 납부한다(契稅條例 §7).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할 경우 수탁자가 신탁의 취지에 따라 위탁자 이외의 귀속권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시 귀속권리인이 가액을 평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규정된 기한에 따리 贈與 契稅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契稅條例 §7-1).

마. 分割 契稅

분할인이 가액을 평가하여 계약을 작성하고 신고 및 납부한다(契稅條例 §8).

바. 占有 契稅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가액을 평가하여 계약을 작성하고 신고 및 납부한다(契稅條例 §9).

4. 세율

契稅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契稅條例 §3).

- ○ 賣買 契稅의 경우는 그 계약서에 기재한 가액(契價)의 6%
- ○ 典權 契稅의 경우는 그 계약서에 기재한 가액(契價)의 4%
- ○ 交換 契稅의 경우는 그 계약서에 기재한 가액(契價)의 2%
- ○ 贈與 契稅의 경우는 그 계약서에 기재한 가액(契價)의 6%
- ○ 分割 契稅의 경우는 그 계약서에 기재한 가액(契價)의 2%
- ○ 占有 契稅의 경우는 그 계약서에 기재한 가액(契價)의 6%

〈표 4-Ⅴ-1〉 契稅의 세율

(단위: %)

종 류	세 율
賣買 契稅	6
典權 契稅	4
交換 契稅	2
贈與 契稅	6
分割 契稅	2
占有 契稅	6

5. 납부세액의 계산

契稅는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가액(契價라 약칭)에 따라 신고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契價가 신고 시 현지의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評定)한 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평가(評定)기준가액에 따라 契稅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공공재산(公産)을 領買 또는 標購, 및 법원으로부터 標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契稅條例 §13).

6. 감면규정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契稅를 면제한다(契稅條例 §14, §14-1)

○ 각급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립학교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다만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제외함.

○ 정부가 경영하는 우정사업에 있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정부가 공적인 수요로 인해서 公有부동산으로 교환하거나 또는 구획정리(重劃)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교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 건축물을 완공하기 전에 起造人(기공자)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다만 매매, 교환,

증여로 인하여 인수인(承受人)을 原始起造人(최초 기공자)으로 하거나 또는 중도에 起造人(기공자)을 변경하고 使用執照를 취득할 경우, 使用執照에 기입한 起造人(기공자)이 신고납세해야 한다.

○ 건축물을 완공하기 전에 건설중인 건축공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계속하여 건축하고, 미완공부분으로 인하여 起造人(기공자)의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당해 양수인을 起造人(기공자)의 명의로 하여 使用執照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이 신탁재산일 경우 다음 각종 신탁관계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契稅를 과세하지 않는다.

- 신탁행위의 성립으로 인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 신탁관계 존속 중에 수탁자가 변경될 때, 원래의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
- 신탁계약에 명확히 규정한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할 경우, 신탁관계 소멸 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 유언으로 인한 신탁에 있어서 신탁관계 소멸 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 신탁행위의 불성립, 무효, 해제 또는 취소로 인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7. 징수관리

가. 契稅의 신고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매매, 典當, 교환, 증여 및 분할계약이 성립하는 날로부터 또는 점유로 인하여 법에 따라 소유인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契稅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정 양식의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현지의 주관 과세당국에 契稅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물소유권 제1차 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 교환, 증여, 분할은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契稅條例 §16).

나. 세액의 확정

주관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契稅 신고 안건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

료하고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서를 발급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주관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문서에 관하여 부족하다고 인정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문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보충 또는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契稅條例 §18).

다. 기준가격 미달일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契價가 신고 시 현지의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評定한 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주관 과세당국은 評定기준가격에 따라 契稅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라 공공재산(公産)을 領買 또는 標購 및 법원으로부터 標購한 부동산의 경우는 제외한다(契稅條例 §13).

라. 세금의 납부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확정세금납부서를 송달한 후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契稅條例 §19).

마. 조세의 보전

부동산의 매매, 전당, 교환, 증여, 분할 및 점유로 인하여 소유권등기를 할 경우, 地政機關은 契稅납부영수증, 면세증명서 또는 이전동의증명서를 근거로 권리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契稅條例 §23).

8. 장려 및 처벌

가. 장려

납세의무자가 세금의 탈루, 은닉, 과소신고 또는 기타 부정당한 행위로 세금을 탈루

하는 행위가 있음을 고발 또는 신고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벌금의 20%를 고발인에게 포상금(獎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고발인을 위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상술한 고발 또는 신고의 포상금(獎金)에 관하여 과세당국은 벌금을 수령한 3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통지하여 기한 내에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고발인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동 장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契稅條例 §32).

나. 처벌

- ○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 3일 초과 시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태만신고금(怠報金)을 추가징수한다. 다만 新台幣(NT$) 1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契稅條例 §24).
- ○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2일 초과 시 체납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징수하고 30일이 넘어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契稅條例 §25).
- ○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契稅에 관하여 신고 은닉 또는 과소신고의 사항이 있어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의 조사 결과 또는 고발, 신고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에 속할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납부세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契稅條例 §25).
- ○ 납세의무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拘役 또는 新台幣(NT$) 6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稅捐稽徵法 §41).

Ⅵ. 전부(田賦)

1. 서론

田賦는 1987년 제2기부터 징수를 정지하였으나 세법규정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장은 田賦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로 한다.

2. 명사 정의

田賦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土地稅法 §13).

- ○ 地目 : 각 直轄市, 縣(市) 地籍册에 기재한 토지사용 유형을 말함.
- ○ 等則 : 각종 地目의 토지단위면적 연간수익 또는 地價의 금액에 따라 구분한 賦率等級
- ○ 賦元 : 각종 地目等則의 토지단위면적 연간수익 또는 地價에 따라 연간 賦額을 규정하는 단위
- ○ 賦額 : 매 종류의 地目等則의 토지면적에 따라 각 당해 地目等則의 단위면적의 賦元을 곱하여 얻은 매 筆地 토지의 연간 賦元의 合計(積)를 말한다.
- ○ 實物 : 각 지역에서 징수한 벼, 보리 또는 이것을 충당하여 징수한(折徵) 다른 종류의 농작물
- ○ 代金 : 실물을 충당하여 징수하는(折徵) 현금
- ○ 혼합물(夾雜物) : 실물에 포함된 모래, 진흙, 흙, 돌멩이 등 잡물

3. 납세의무자

田賦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土地稅法 §3).

○ 토지소유권자
○ 典權을 설정한 토지의 典權人
○ 承領土地의 承領人
○ 承墾土地의 耕作權人
○ 公有 또는 公同共有토지의 관리기관 또는 관리인
○ 분할공유토지(分別共有土地)에 있어서 共有人이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공유인이 각자 보유부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된다.
○ 토지사용자는 대리납부자(代繳人)가 될 수 있다(土地稅法 §4).

4. 과세대상

농업용지는 농업사용기간 및 농업경영과 분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모두 田賦를 부과한다. 즉, 비도시토지가 법에 의하여 농업용지로 편제되거나 또는 지가를 규정하지 않은 토지 및 도시토지가 다음 규정에 부합할 경우 모두 田賦를 징수한다.

① 도시계획에 따라 농업구 및 보호구로 편제되어 농업용지로만 사용되는 경우
② 공공시설이 아직 완공되기 전 여전히 농업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③ 법에 의해 건축을 제한받는 토지가 여전히 농업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④ 법에 의해 건축을 금지하는 토지가 여전히 농업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⑤ 도시계획에 의해 공공시설보류지로 편제되어 여전히 농업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상기 제②호 및 제③호는 자경농지 및 "耕地三七五減租條例"에 따라 임대하는 경작지에 한한다.

⑥ 농민단체와 합작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창고, 냉동고(냉장고), 農機센터, 누에(蠶種)제조(번식)장, 집화장, 검역장, 벼육모(育苗)용지, 저수지, 농업용온실, 농산품도매시장 등 용지는 여전히 田賦를 징수한다(土地稅法 §22).

5. 징수기준

○ 벼징수구역 : 매 賦元에 실물 벼 27kg을 징수한다.
○ 보리징수구역 : 매 賦元에 보리 25kg을 징수한다.

동 기준은 行政院에서 각지 토지세금부담 상황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土地稅法 §24).

○ 田賦 징수실물 : 각 지방이 생산한 벼 또는 보리를 징수한다. 벼 또는 보리를 생산하지 않는 토지 및 특수상황이 있는 지방은 실물징수에 충당하는 현지 생산 雜糧 또는 충당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土23).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田賦 실물을 부과하는 토지는 구간에 따라 歸戶 후 실제증명서를 만들 때에 賦額이 5賦元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대금으로 충당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土地稅法 實施細則 §28).

6. 荒地稅 부가징수

농업용지를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직할시 또는 현(시) 정부가 內政部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기한 내 사용을 통지하거나 위임경영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거나 위임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田賦에 따라 1배 내지 3배의 荒地稅를 부가징수하고, 荒地稅를 부가징수한 지 3년이 되어도 여전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격에 따라 收買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다.

① 농업생산 또는 정책의 필요로 인하여 방치하는 경우
② 지역성 생산이 비경제적이어서 휴경한 경우
③ 공해오염으로 인해 경작할 수 없는 경우
④ 관개, 배수시설의 손상으로 인해 경작할 수 없는 경우
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경작할 수 없는 경우(土地稅法 §22-1)

7. 감면규정

公, 私有 토지의 田賦 관련 감면규정은 地價稅와 동일하다.

8. 납세절차

① 直轄市 및 縣(市)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가 각 토지소유권자가 소유한 토지를 각 구간 帰戶 후의 賦額에 따라 확정하고 매년 상하 2기로 나누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농작물 수확 후 1개월 내에 징수하며, 매 기의 徵收成數는 매 기 실물 수확량의 비율에 따라 賦額을 구분하여 계산, 징수할 수 있다(土地稅法 § 45).

② 납세의무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土地稅法 §47).

③ 田賦 징수개시 10일 전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는 징수개시일자, 납부장소 및 납부시 주의점 등 사항을 공고하여 알린 후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납부의무자에게 나누어주어 이를 가지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土地稅法 §46).

9. 처벌

1)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2일 초과 시 체납금액의 1%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하고 30일이 지나서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土地稅法 §53).

2) 地目等則을 변경, 은닉하거나 田賦감면의 원인, 사실 소멸 시에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세금을 탈루하거나 감소한 경우 납부세액 부분을 추징하는 외에 과소신고, 은닉세액 또는 賦額의 3배의 벌금에 처한다.

   ② 실물납부를 탈루한 경우 납부세액 부분을 추징하는 외에 납부해야 할 田賦실물액의 1배의 벌금에 처한다.

Ⅶ. 증권교역세(證券交易稅)와 선물교역세(期貨交易稅)

1. 서론

대만은 현재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하여 증권교역세를 징수하고 있고, 주가지수선물(股價指數期貨), 주가지수선물옵션(股價指數期貨選擇權) 또는 주가옵션(股價選擇權)의 교역에 대하여 선물교역세를 징수하고 있다.

證券交易稅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매매교역가격에 따라 일정 비례를 과세하는 유통세이다. 證券交易稅와 證券交易所得稅는 그 성질 또는 과세표준의 인정에서 전혀 다르다. 전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하고, 후자는 유가증권의 판매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득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證券交易所得은 1990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정지하였으므로 현재는 증권교역세만 징수하고 있다.

선물교역세(期貨交易稅)는 대만 경내에서의 선물 교역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유통세에 속하고 국세이다. 그 성질은 證券交易稅와 많이 비슷하고 선물교역소득세(期貨交易所得稅)와는 전혀 다르다. 선물교역세는 선물의 교역에 종사하는 데 대한 과세이고, 선물교역소득세는 선물교역에 종사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이다. 또한 현재 소득세법은 선물교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잠정 정지하였다(所得稅法 §所4-2) 현재 선물교역세의 대상으로 되는 선물은 주가(股價)유형의 선물계약, 이자율(利率)유형의 선물계약, 옵션(選擇權)계약 또는 선물옵션(期貨選擇)계약 및 기타 선물교역계약을 포함한다.

2. 증권교역세(證券交易稅)

가. 납세의무자 및 대리징수인

證券交易稅의 납세의무자 및 대리징수인(代徵人)은 다음과 같다(證券交易稅條例 §3, §4).

○ 납세의무자

증권교역세의 납세의무자는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자이다.

○ 대리징수인

증권교역세는 대리징수인이 매번 매매결제(賣買交割) 당일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대리징수하고, 대리징수 다음 날에 세금납부서를 작성하여 국고에 납입한다. 대리징수인은 다음과 같은 자를 포함한다.

- 증권인수인(承銷人) : 정부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유가증권의 모집취급(承募), 대리모집(代募), 판매취급(承銷) 및 대리판매(代銷) 업무에 종사하는 인수인을 통하여 매매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그 인수인이 대리징수인이 된다.
- 증권브로커(經紀人) : 정부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교역소의 장내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에 종사하는 브로커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브로커가 대리징수인이 된다. 브로커가 비준을 거쳐 증권교역소 장내에서 자체로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그 증권의 판매에 관한 대리징수인은 기타 브로커가 된다.
- 증권양수인(證券受讓人) : 소지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리징수인은 증권을 양수하는 자이다.

나. 과세대상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모두 증권교역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급 정부가 발행한 채권, 회사채 및 금융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교역세를 면제한다(證券交易稅條例 §1).

유가증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각급 정부가 발행한 채권

○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

○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 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개모집, 판매(募銷)할 수 있는 기타의 유가증권

다. 세율

증권교역세는 매번 매매교역가격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한다(證券交易稅條例 §2).

○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주식의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 또는 증빙에 대하여 0.3%

○ 회사채 및 기타 정부의 비준을 받은 유가증권은 0.1%

라. 감면규정

다음 각항에 대해서 증권교역세를 면제한다.

○ 각급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證券交易稅條例 §1)

○ 회사채 및 금융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동 항의 규정은 채권시장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促進産業昇級條例 §20-1).

○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이는 교역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권교역세를 면제한다(證券交易稅條例實施注意事項 §3).

○ 회사가 창립 또는 증자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또는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모집하는 회사채. 이는 교역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권교역세를 면제한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가 매입(認股)한 주식 또는 응모한 회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여전히 법에 따라 증권교역세를 과세해야 한다(證券交易稅條例實施注意事項 §2).

○ 법원이 유가증권을 몰수(沒入)할 경우에는 증권교역세를 면제한다. 다만 판매 시에는 여전히 과세해야 한다(證券交易稅條例實施注意事項 §4).

○ 유가증권의 소지인이 증권을 은행에 저당(抵押)하여 대금을 차입하고 質權을 설정할 경우 증권교역세를 면제한다. 차입자(借款人)가 사후에 당해 증권으로 본래의 채무를 변제(抵償)할 경우에는 변제 시의 시가에 따라 증권교역세를 납부해야 하고, 대출은행이 법에 따라 대리징수한다(證券交易稅條例實施注意事項 §5).
○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배당금 소득을 분산할 경우, 세금을 보충(補稅)하고 처벌이 확정된 후 당해 타인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회수하여 소유할 것을 신청할 때 당해 이전에 대하여 증권교역세를 면제한다.
○ 회사가 양도가능 회사채(可轉讓公司債)를 발행하고 당해 회사채의 소지인이 그가 소지하고 있는 회사채를 당해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아직 유가증권의 매매행위가 아니므로 증권교역세의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股分有限公司의 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때 이전등기에 사용하는 각종 "지분양도증빙" 및 기타 "지분"을 대표하는 증빙은 증권교역세조례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증권교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개인 또는 영리사업조직이 그가 소지하고 있는 股分有限公司의 주식으로 주금(股款)을 충당하여 다른 영리사업조직에 투자할 경우는 주식을 투자대상의 영리사업조직에 이전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권교역세를 면제한다.

마. 징수관리

1) 증권교역소 장내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절차(證券交易稅條例 §3)

○ 매매결제 당일 : 대리징수인이 매매증권교역가격의 0.3%에 따라 증권 매도인에게서 세금을 대리징수한다.
○ 매매결제 다음일 : 대리징수인이 세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대리징수한 세금을 국고(은행 또는 세금대리수납처)에 납부한다. 대리징수인은 증권교역의 매도인의 성

명, 주소, 유가증권의 명칭, 수량, 단가, 총액 및 대리징수세액 등에 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 매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확인, 수령(核收)하여 주식의 "양도이전신청서" 의 뒷면에 "증권교역세 대리징수 완료" 를 기입하고 증권 브로커 또는 인수인(承銷人)의 번호, 대리징수일자를 기입하여 증권발행회사가 조사(查驗), 보존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증권교역소 이외에 개인간의 유가증권 직접 매매에 관한 절차

○ 대리징수인(즉 증권양수인)은 우선 과세당국에서 공백의 "세금대리징수자동신고납부서"를 수령해야 한다(매 매도인이 1부를 작성).
○ 대리징수인은 매매당일에 매매가격의 0.3%에 따라 세금을 대리징수하고 그 다음날에 "세액대리징수자동신고납부서"를 작성하여 국고(은행 또는 세금대리수납처)에 납부해야 하며, 세금납부서의 第2聯을 증권 매도인에게 교부하여 세금납부 증빙(完稅憑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第3聯을 증권발행회사에 檢送하여 이를 증빙으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3) 행정구제

증권발행인 또는 대리징수인이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이 확정한 배상납부, 보충납부 세액 및 체납금에 대하여 불복 시 "稅捐稽徵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復查)를 신청하고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태만신고금(怠報金)에 관해서는 행정구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證券交易稅條例 §13, 稅捐稽徵法 §35).

바. 장려 및 처벌

1) 장려

○ 대리징수

대리징수에 있어서 법정절차 및 기한에 따라 대리징수의무를 이행할 경우, 관할 과세당국은 대리징수세액의 0.1%에 해당하는 장려금(獎金)을 지급한다. 다만 각 대리징수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新臺幣(NT$) 2,400만원을 한도로 한다(證券交易稅條例 §8).

○ 고발 또는 신고

증권교역세 대리징수인이 대리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거나 또는 누락행위, 증권매매인이 사기 및 기타 부정당한 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상황에 대하여 고발 · 신고 시 조사결과 사실로 판정될 경우, 과세당국은 벌금의 20%를 고소인에게 포상금(獎金)으로 지급하고 고발인을 위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무인원이 고발인 및 세금탈루행위의 신고인일 경우 본조의 포상금(獎金)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證券交易稅條例 §7).

2) 처벌

○ 대리징수인이 대리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대리징수세액이 적거나 누락이 있을 경우, 배상 납부(賠繳)를 명령하여 관할 과세당국에서 보충징수하는 외에 추가로 대리징수해야 할 세액의 10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證券交易稅條例 §9).

○ 대리징수인이 규정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에 증권교역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작성사항에 허위로서 사실이 아닌 상황이 있을 경우 新臺幣(NT$) 1,5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태만신고금(怠報金)에 처한다(證券交易稅條例 §9).

○ 대리징수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대리징수하지 않을 경우, 매 2일 초과 시 1%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 30일이 지나서 과세당국의 조사로 확인될 경우 세금을 추징하고 체납금을 보충징수하는 외에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하고 공금횡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證券交易稅條例 §1, 稅捐稽徵法 §20).

○ 증권발행회사는 증권소지인이 이익분배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증권교역세 세금납부증빙(完稅憑證)을 檢視하여야 하고, 증권교역세를 납

부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는 세액에 대한 배상납부 책임을 진다(證券交易稅條例 §6).

○ 유가증권의 매매인이 고의로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행위로 세부담을 회피할 경우 "稅捐稽徵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유기징역, 拘役에 처하거나 6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證券交易稅條例 §10, 稅捐稽徵法 §41).

3. 선물교역세(期貨交易稅)

가. 납세의무자 및 대리징수인

○ 납세의무자 : 선물교역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매 쌍방 교역자이다(期貨交易稅條例 §2).

○ 대리징수인 : 선물교역세의 대리징수인의 선물교역업자이다(期貨交易稅條例 §3).

나. 과세대상

대만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교역에 대하여는 모두 법에 따라 선물교역세를 납부해야 한다(期貨交易稅條例 §1).

다. 세율

대만의 현행 선물교역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주가유형의 선물계약 : 매번 교역의 계약금에 따라 과세하고, 세율은 최저 백만분의 0.125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최고 천분의 0.6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 이자율 유형의 선물계약 : 매번 교역의 계약금에 따라 과세하고, 세율은 최저 백만분의 0.125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최고 백만분의 2.5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 옵션계약 또는 선물옵션계약 : 매번 교역의 계약금에 따라 과세하고, 세율은 최

저 천분의 1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최고 천분의 6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 기타 선물교역계약 : 매번 교역의 계약금에 따라 과세하고, 세율은 최저 백만분의 0.125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최고 천분의 0.6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전 항의 각종 선물교역세의 징수율은 財政部가 계약의 유형에 따라 각각 제정하여 行政院에 제출하여 확정한다.

매매 쌍방 교역인이 만기 전 또는 만기 시에 현금으로 차액을 결산할 경우, 각각 결산시장가격에 따라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물교역세를 납부한다.

○ 제1항 제3목의 옵션계약 또는 선물옵션계약 : 그 유형에 따라 제1항 제1목, 제2목 또는 제4목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1항 제1목, 제2목 또는 제4목의 선물교역계약 : 각 해당 항의 징수율에 따라 계산한다(期貨交易稅條例 §2).

라. 징수관리

선물교역세는 선물교역업자가 교역 당일에 선물교역세 세율에 따라 대리징수하고, 대리징수한 다음날에 세금납부서를 작성하여 국고에 납입한다. 대리징수인은 매일의 선물교역의 교역인의 성명, 주소, 선물교역의 명칭, 수량, 금액 및 대리징수한 세액 등에 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미디어자료를 녹화하여 다음달 5일 이전에 관할 과세당국(稽徵機關)에 보고해야 한다(期貨交易稅條例 §3).

마. 장려 및 벌칙

1) 장려

대리징수인이 법정절차 및 기한에 따라 대리징수의무를 완성할 경우 관할 과세당국은 대리징수세액에 따라 0.1%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대리징수인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新臺幣(NT$) 2,400만원을 한도로 한다(期貨交易稅條例 §3).

2) 처벌

○ 대리징수인이 대리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대리징수세액이 적거나 누락이 있을 경우, 배상 납부를 명령하여 관할 과세당국에서 보충징수하는 외에 추가로 대리징수해야 할 세액의 10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期貨交易稅條例 §5).

○ 대리징수인이 규정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에 선물교역명세서 또는 미디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작성사항에 허위로 사실이 아닌 상황이 있을 경우, 新臺幣(NT$) 15,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태만신고금(怠報金)에 처한다(期貨交易稅條例 §5).

○ 대리징수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대리징수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을 추가징수해야 한다(期貨交易稅條例 §6).

Ⅷ. 인화세(印花稅)

1. 서론

印花稅는 일종의 증비세(憑證稅)로서 直轄市 및 縣(市)세에 속한다. 대만 경내에서 은행영수증, 동산매매계약, 도급계약, 부동산의 典賣(다시 사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 양수, 분할계약 등 각종 증빙(憑證)을 체결(書立) 시 모두 印花稅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대만 경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관한 憑證이 아닐 경우에는 印花稅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印花稅는 輕稅重罰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세율은 매우 낮으나 처벌은 매우 강하다.

2. 납세의무자

印花稅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印花稅法 §7).

○ 銀錢收據 : 立據人

○ 동산매매계약 : 立約, 또는 立據人

○ 도급계약(承攬契約) : 立約, 또는 立據人

○ 부동산의 典賣, 讓受 및 분할계약 : 立約 또는 立據人

3. 과세대상

印花稅의 과세범위는 다음과 같은 憑證을 포함한다(印花稅法 §5).

○ 금융업영수증(銀錢收據)

금융업(銀錢)에서 발행한 單據(영수증, 증표), 簿, 摺을 받는 것을 말한다. 銀錢收據, 收款回執, 解款條, 取租簿, 取租摺 및 付款簿 등을 收受 또는 대리수령

의 경우가 속한다. 다만 영업영수증 성질을 겸한 銀錢收據 및 銀錢收據 성질을 겸한 영업영수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동산매매계약

동산매매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

○ 도급계약(承攬契約)

일방이 타방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을 완성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각종 공사도급계약, 인쇄품 인쇄도급계약 및 대리가공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 부동산의 典賣, 讓受 및 분할계약

부동산에 대하여 전당권(典當權)을 설정하거나 매매, 교환, 증여, 분할 시 주관기관에 物權登記를 신청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세율 또는 세액

印花稅의 세율 또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印花稅法 §7).

○ 銀錢收據 : 금액의 0.4%를 붙인다. 보증금 영수증은 금액의 0.1%를 붙인다.

○ 동산매매계약 : 매건의 세액은 新臺幣(NT$) 12원이다.

○ 도급계약 : 금액의 0.1%를 붙인다.

○ 부동산의 典賣, 讓受 및 분할계약 : 금액의 0.1%를 붙인다.

5. 감면세

다음의 각종 증빙(憑證)은 印花稅를 면제한다(印花稅法 §6).

○ 각급 정부기관 및 향(진, 시, 구) 公所의 所立組織 또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조직에 사용하는 각종 증빙(憑證)

○ 公立, 私立학교에서 공금(公款)을 처리하면서 발급하는 증빙(憑證)

○ 公營, 私營事業組織 내부에서 사용하는 대외권리의무관계를 발생하지 않는 單據(증빙), 이는 총조직과 분조직 간에 서로 사용하고 대외작용을 발생하지 않는 單據를 포함한다.

○ 채무독촉 또는 금액 확인에 사용하는 帳單(명세서)
○ 각종 憑證의 정본에 이미 印花稅票를 붙인 경우 그 부본 또는 사본
○ 車票, 船票, 항공기표 및 기타 往來客票, 짐표
○ 농민(農, 林, 漁, 牧)이 자체로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하는 영수증; 농산품의 제1차 도매교역에서 도매시장이 농민(農林漁牧) 또는 농민단체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賣出憑證(銷貨憑證); 농민(農林漁牧) 또는 농민단체가 共同供銷(공동 공급과 판매), 運銷(운송판매), 직접 공장에 공급 또는 해외 수출판매함에 있어서 발급하는 매출증빙(銷貨憑證).
○ 급여, 임금의 영수증
○ 재난구조금(賑金), 撫恤金, 양로금의 수령 영수증
○ 의무적으로 조세 또는 기타 정부에 기부하는 금액을 대리수령할 경우, 대리수령 시에 발급하는 영수증
○ 정부의 금액(款項)을 의무적으로 대리발급할 경우, 정부에 금액을 수령 시에 제출하는 영수증
○ 환급세액 수령의 영수증
○ 印花稅票 판매의 收款收據
○ 재단 또는 사단법인조직의 교육, 문화, 공익 또는 자선단체가 기부를 수령하는 영수증
○ 農田水利會에서 회원수리비를 수취하는 영수증
○ 국제항행노선에서 항행하는 선박을 건조 또는 검사, 수리(檢修)함에 있어서 체결한 계약

6. 징수관리

가. 납부방식(印花稅法 §8)

○ 印花稅票의 貼用

印花稅를 납부해야 하는 증빙(憑證)은 체결 후 교부 또는 사용 시에 충분한

금액의 印花稅票를 붙여야 한다.

○ 세금납부서의 작성

세액이 많아서 印花稅票를 붙이기에 불편할 경우 주관 과세당국(稽徵機關)에 신청하여 세금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 총괄(匯總)납부

공영, 사영사업조직이 사용하는 각종 증빙(憑證)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印花稅는 주관 과세당국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총괄(匯總)납부할 수 있다.

나. 貼用註銷

印花稅票의 貼用은 납세자가 每枚의 稅票를 원본 지면의 騎縫處에 붙이고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말소(註銷)하고, 개인은 사인 또는 지장으로 도장을 대체할 수 있다(印花稅法 §10). 印花稅票의 貼用으로 註銷하는 경우 뜯어내 다시 사용할 수 없다(印花稅法 §11).

다. 印花稅는 元단위까지 계산한다.

印花稅는 통용화폐의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매건 세액의 끝자리수가 통용화폐의 1원에 부족한 부분은 모두 貼用하지 않는다. 총괄(匯總)납부하는 印花稅에 있어서 총괄(匯總)稅額이 통용화폐의 1원에 부족하거나 또는 납부세액의 끝자리수가 통용화폐의 1원에 부족할 경우 모두 납부를 면제한다(印花稅法 §9).

라. 정본, 부본 및 사본

동일 憑證은 반드시 2부 이상 구비해야 하고 쌍방 또는 각 관계자들이 각 한부씩 가지고 매부에 각각 印花稅票를 붙여야 한다. 동일 憑證의 부본 또는 사본을 정본으로 보아 사용할 경우에도 印花稅票를 貼用해야 한다(印花稅法 §12).

마. 동일 증빙(憑證)의 여러 가지 성질

동일 증빙(憑證)이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질 경우 세율이 같으면 한 가지에 따라 印花稅票를 貼用하고, 세율이 다르면 비교적 높은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印花稅法 §13).

바. 代用憑證

高稅額을 사용해야 하는 증빙(憑證)에 低稅額의 憑證으로 대체할 경우 高稅額의 증빙(憑證)에 따라 印花稅票를 貼用해야 한다. 非納稅憑證으로 納稅憑證을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그 성질의 소속 유형에 따라 印花稅票를 貼用해야 한다.

사. 미기재금액

印花稅票를 붙여야 하는 증빙(憑證)에 금액을 명확히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증빙(憑證)에 기입한 품명 및 수량에 따라 사용 시 현지의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붙여야 한다(印花稅法 §18).

아. 동일행위 여러 가지 憑證

동일행위에 두 가지 이상의 증빙(憑證)을 발생할 경우 동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그 성질의 소속 유형에 따라 각자 印花稅票를 貼用해야 한다(印花稅法 §14).

자. 續用憑證

관계인의 약정에 의하여 이미 시효를 상실한 증빙(憑證)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별도의 印花稅票를 붙여야 한다(印花稅法 §15).

차. 修訂(修改)憑證

이미 印花稅票를 붙인 증빙(憑證)에 사실 변경으로 인하여 본래의 증빙(憑證)을 수정하여 계속하여 사용 시 그 변경부분에 대하여 印花稅票를 추가로 붙여야 할 경우 충분한 금액만큼 보충해야 한다(印花稅法 §16).

카. 임시영수증(印花稅法 §20)

하나의 교역에 있어서 임시영수증을 먼저 발급하고 다시 정식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에는 먼저 기간별 대금수령영수증을 발급하고 다시 총영수증을 발급하며, 임시영수증 또는 대금분기수령영수증은 우선 각각 印花稅票를 붙여 정식영수증 또는 총영수증을 발급할 때 임시영수증 또는 대금분기수령영수증을 회수하여 그 뒷면에 붙여야 한다. 그 금액이 같을 경우 정식영수증 또는 총영수증은 印花稅票를 다시 붙이지 않아도 되고,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정식영수증 또는 총영수증에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정식영수증 또는 총영수증을 발급할 때 규정에 따라 임시영수증 또는 분기수령영수증을 회수하여 뒷면에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한 전부 금액에 따라 印花稅票를 붙여야 한다.

7. 처벌

印花稅는 조사 및 징수가 어렵고 세액이 적기 때문에 대만은 重罰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탈루를 겁주는(吓阻) 효과를 상정하고 있다. 처벌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課稅憑證에 印花稅票를 붙이지 않거나 또는 貼用金額이 부족할 경우 印花稅票를 보충 貼用하는 외에 貼用漏落稅額에 따라 5배 내지 15배의 벌금에 처한다(印花稅法 §23).
- ○ 총괄(匯總)납부의 방식으로 印花稅를 납부할 경우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 "稅捐稽徵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 2일 초과 시 체납금액의 1%의 체납금을

징수하고,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하는 외에 동시에 정도에 따라 체납세액의 1배 내지 5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印花稅法 §23).

○ 규정에 따라 印花稅票를 註銷하지 않을 경우 5배 내지 10배의 벌금에 처한다(印花稅法 §24).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稅務違章案件減免處罰標準 §1).

- 註銷를 하지 않은 印花稅票의 금액이 다음 규정의 하나에 부합될 경우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매건의 憑證의 註銷하지 않은 印花稅票의 금액이 新臺幣(NT$) 1,000원 이하일 경우 처벌을 면한다.
  ② 매건 憑證의 註銷하지 않은 印花稅票의 금액이 新臺幣(NT$)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일 경우 註銷하지 않은 印花稅票의 금액에 따라 2배의 벌금에 처한다.
- 납세의무자의 印花稅票의 註銷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註銷한 매건 憑證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印花稅票의 금액이 新臺幣(NT$) 3,000원 이하일 경우 처벌을 면한다.
  ② 註銷한 매건 憑證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印花稅票의 금액이 新臺幣(NT$) 3,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일 경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註銷 印花稅票의 금액의 1배의 벌금에 처한다.

○ 印花稅票를 사용 후 뜯어서 다시 사용할 경우 20배 내지 30배의 벌금에 처한다(印花稅法 §24).

상술한 바와 같이 印花稅票의 처벌은 매우 무겁다.

Ⅸ. 사용패조세(使用牌照稅)

1. 서론

使用牌照稅는 公共水陸道路에서 사용하는 교통 또은 차량운반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재산세의 성질을 갖고 있고 지방세에 속한다. 대만의 현행 使用牌照稅는 정액누진세를 채택하여 차량의 유형 및 실린더의 배기량에 따라 그 세액을 결정한다.

2. 납세의무자

교통도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이다(使用牌照稅法 §3).

3. 과세대상

機動車輛(기계로 움직이는 차량) 및 선박 등 公共水陸道路에 사용하는 公用·私用 또는 軍用의 교통도구는(使用牌照稅法 §2)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증명허가서(證照)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소정의 수수료(規費)를 납부하는 외에 그 교통도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은 소재지 주관 과세당국에 使用牌照(사용허가증)를 요청·수령하고 使用牌照稅를 납부해야 한다(使用牌照稅法 §3). 선박에 대해서는 현재 使用牌照稅의 징수를 잠정 정지하였다.

4. 납부세액의 계산

대만의 使用牌照稅는 정액누진방식을 채택하여 교통도구의 유형에 따라 과세하며, 機動車輛의 경우 종류별로 실린더의 총배기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使用牌照稅法의 규정에 따라 계산·징수하는 외에, 기타 교통도구의 징수율은 직할시 및 현(시)정부가 제정하여 동급 민의기관에서 통과한 후 財政部에 보고하여 비치한다(使用牌照稅法 §5).

각종 교통도구 使用牌照稅의 세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使用牌照稅法 §6).

○ 기동차량

소형차, 대형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네 가지 차량 유형으로 나누고, "使用牌照稅法" 제6조 附表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다음 표와 같음).

○ 선박

총 최대적재량이 5噸 이상일 경우 영업용은 매 척 연간 新台幣(NT$) 16,380원, 비영업용은 매척 연간 新臺幣(NT$) 40,320원, 5噸 미만일 경우는 영업용은 매척 연간 新臺幣(NT$) 9,900원, 비영업용은 매 척 연간 新臺幣(NT$) 17,550원이다.

〈표 4-IX-1〉 소형차 使用牌照稅 세액표

(단위: 新臺幣(NT$), 원)

차량유형 및 세액(新臺幣(NT$)) 실린더 총 배기량(㎤)	소형차(탑승좌석이 9인 이하)	
	자가용	영업
500 이하	1,620	900
501~600	2,160	1,260
601~1,200	4,320	2,160
1,201~1,800	7,120	3,060
1,801~2,400	11,230	6,480
2,401~3,000	15,210	9,900
3,001~4,200	28,220	16,380
4,201~5,400	46,171	24,300
5,401~6,600	69,690	33,660
6,601~7,800	117,000	44,460
7,801 이상	151,200	56,700

주: 소형의 客貨 兩用 차량의 세액은 자가용 소형차의 세액에 따라 과세한다.

〈표 4-IX-2〉 대형차 및 화물차 使用牌照稅 세액표

(단위: 新臺幣(NT$), 원)

차량유형 및 세액(新臺幣(NT$)) 실린더 총 배기량(㎤)	대형객차(탑승좌석이 10인 이상)	화물차
500 이하	-	900
501~600	1,080	1,080
601~1200	1,800	1,800
1,201~1,800	2,700	2,700
1,801~2,400	3,600	3,600
2,401~3,000	4,500	4,500
3,001~3,600	5,400	5,400
3,601~4,200	6,300	6,300
4,201~4,800	7,200	7,200
4,801~5,400	8,100	8,100
5,401~6,000	9,000	9,000
6,001~6,600	9,900	9,900
6,601~7,200	10,800	10,800
7,201~7,800	11,700	11,700
7,801~8,400	12,600	12,600
8,401~9,000	13,500	13,500
9,001~9,600	14,400	14,400
9,601~10,200	15,300	15,300
10,201 이상	16,200	16,200

주: 견인차(曳引車)의 세액은 화물차의 세액에 따라 30%를 추가징수한다.

〈표 4-IX-3〉 오토바이(機器脚踏車) 使用牌照稅 세액표

(단위: 新臺幣(NT$), 원)

차량유형 및 세액(新臺幣(NT$)) 실린더 총 배기량(㎤)	오토바이
150(150 이하 포함)	0
151~250	800
251~500	1,620
501~600	2,160
601~1200	4,320
1,201~1,800	7,120
1,801 이상	11,230

5. 감면세

다음의 교통도구는 使用牌照稅를 면제한다(使用牌照稅法 §7).

○ 군대장비편제 내의 교통도구

○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통행하고, 세관이 收助航服務費를 이미 징수한 輪船

○ 공공안전용으로 전적으로 사용되는 고정특수설비 및 특수표시가 있는 교통도구. 예를 들면 경비차, 수사탐험차(偵查勘驗車), 범인추포차(追捕提解人犯車), 소방차, 공사구조차 및 해난구조선 등이 있다.

○ 위생기관 및 공공단체가 설립한 병원에서 위생용으로 전문 사용하는 고정특수설비 및 특수표시가 있는 교통도구. 예를 들면 구급차, 진료차, 麗水車, 水肥車, 쓰레기차 등이 있다.

○ 외교대우를 받는 기관 및 인원의 교통도구에 있어서 외교부에서 확정하고 교통관리기관이 專用牌照를 발급한 경우

○ 전신우편물 운송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특수설비 또는 특수표시가 있는 교통도구

○ 교육문화의 순회 선전(宣傳巡廻)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교통도구로서 고정특수설비 및 특수표시가 있는 경우

○ 심신장애수첩을 소지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교통도구. 매 1인 1대를 한도로 한다. 다만 심산장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매 가족(戶) 1대를 한도로 한다.

○ 이미 立案한 사회복지단체와 기관에 전적으로 사용되고, 각 지방 社政機關의 증명을 거친 경우에는 매 단체와 기관에 3대를 한도로 한다.

○ 교통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친 도로자동차여객운송업 및 도시지역 자동차여객운송업조직이 대중운송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공버스

○ 離島建設條例가 적용되는 지역의 교통도구가 당해 지역에서 허가서를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소형차 엔진의 총배기량이 2,400cc를 초과할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술한 使用牌照稅를 면제하는 각종 교통도구는 사용 전에 使用牌照稅 면제절차를 밟아야 하고, 교통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양도, 교체(改裝), 改設 또는 사용성질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6. 징수관리

가. 징수시간과 회수

使用牌照稅는 매년 4월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번 징수한다. 다만 영업용 차량은 납부세액에 따라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두 번으로 나누어 평균 징수한다(使用牌照稅法 §10).

나. 세금납부서의 송달

주관 과세당국은 使用牌照稅를 징수하기 전에 使用牌照稅 세금납부서를 작성하여 교통도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에게 송달하고, 각 유형의 교통도구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및 징수의 시작 및 만기 일자를 각각 공지해야 한다(使用牌照稅法 §10).

다. 임시 및 시운전 牌照

교통도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이 臨時牌照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자동차운송기관 · 자동차 매매 · 제조 · 수리업체가 試運轉牌照(試車牌照)를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은 일별로 계산한다. 다만 臨時牌照를 수령 · 사용할 경우 기간은 15일을 한도로 한다. 臨時牌照를 수령 · 사용하는 차량의 납부세액은 제6조 附表에서 규정한 각종 차량에 적용되는 세액의 중간수(中位數)에 따라 계산한다. 試運轉牌照를 수령 · 사용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표에서 열거한 자동차, 오토바이의 최고세액에 따라 계산한다(使用牌照稅法 §11).

라. 신규(新置) 및 이전등기

새로 생산 · 수입 또는 조립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는 교통도구는 使用牌照稅를 납부해야 하고, 연간 세액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일수의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징수한다(使用牌照稅法 §16).

새로 구매, 수입 또는 조립한 교통도구는 교통관리기관에 登記檢查(檢驗)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 합격 후 신청인이 등기검사한 합격증서를 가지고 상술한 증거서류와 함께 주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 차량의 종류 및 사용성질이 확실히 부합되는지를 조사 · 확인(查對)하고 당기의 使用牌照稅를 납부한 후 다시 납세영수증 및 모든 증거서류를 가지고 교통관리기관에서 번호패(號牌)를 수령한다(使用牌照稅法 §12).

교통도구에 대하여 使用牌照稅 및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使用牌照稅法 §12).

교통도구에 대하여 이전등기 신청을 하거나 또는 이미 정지신고(報停)를 한 교통도구에 대하여 사용회복신청을 할 경우, 교통관리기관은 이미 납부한 당기의 使用牌照稅를 조사한 후에 접수를 하고 관련된 변동자료를 관할 과세당국에 통지한다(使用牌照稅法 §12).

마. 사용정지신고(使用牌照稅法 §13)

교통도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은 이미 使用牌照稅를 수령한 교통도구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교통관리기관에 사용정지를 신고해야 하고 이미 사용한 기간의 납부세액은 실제 사용한 기간의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사용회복 시의 납부세액은 연간 세액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일수의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교통도구에 대하여 소유인 또는 사용인이 사용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使用牌照稅를 과세한다.

바. 교체(改裝)(使用牌照稅法 §14)

이미 使用牌照를 수령한 교통도구에 부품(機件)교체 또는 좌석 改設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도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은 교통관리기관에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변경 전후의 납부세액이 같을 경우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래 면세이거나 또는 본래 비교적 낮은 세액을 납부하는 교통도구가 비교적 높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별로 차액부분의 세액을 계산·징수해야 한다. 본래 높은 세액을 납부하는 교통도구가 면세 또는 낮은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될 경우는 일별로 차액부분의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해야 한다.

교통도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이 교통관리기관에 변경수속을 밟지 않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보충납부하지 않을 경우, 使用牌照를 유용(移用)한 것으로 본다.

사. 양도

使用牌照를 이미 수령한 교통도구의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교통관리기관에 이전등기를 처리해야 한다(使用牌照稅法 §15).

교통도구를 이전한 후의 사용성질이 본래 면세이거나 또는 낮은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부터 과세 또는 높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될 경우, 일별로 그 차액부분의 세액을 계산하여 새로운 소유인 또는 사용인이 납부해야 한다. 본래 과세 또는 높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면세 또는 낮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될 경우, 일별로 그 차액부분의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해야 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환급한다. 규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세액을 보충납부하지 않을 경우 使用牌照를 유용(移用)한 것으로 본다(使用牌照稅法 §15).

이미 使用牌照稅를 납부한 교통도구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본래의 소유인이 全 기간의 使用牌照稅를 납부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인은 당기의 세금납부를 면제받는다(使用牌照稅法 §16).

아. 조사 및 수사(査緝)절차

使用牌照稅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사 · 수서(査緝)절차를 따라야 한다.

1) 牌照의 관리

使用牌照는 전매, 유용(移用)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使用牌照稅法 §20).

2) 기습조사(突擊調査)

使用牌照稅의 징수기간이 만료된 후 주관 과세당국은 경찰기관과 함께 조사대를 조직하여 차량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주관 과세당국 또는 警憲은 수시로 기습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使用牌照稅法 §21).

3) 담보의 제공

동법을 위반한 교통도구를 수색 · 체포하였을 경우, 당해 소유인 또는 사용인에게 세금 및 벌금과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상당한 재산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야 한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상당한 재산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당해 교통도구의 번호패 또는 운전면허를 대신 보관하고, 보관영수증을 발급하여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한 후에 다시 영수증을 증빙으로 반환할 수 있다(使用牌照稅法 §23).

4) 공개경매

규정을 위반한 교통도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이 수색 · 체포 시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리고, 수령공고를 게시한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수하는 자가 없을 경우, 과세당국은

당해 교통도구를 공개경매에 넘겨 취득한 가액으로 본세를 공제하는 외에 국고에 입금할 수 있다(使用牌照稅法 §24).

7. 처벌

○ 교통도구의 소유인 또는 사용인이 세금납부서에 기재한 납부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2일 초과 시 체납세액에 따라 1%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하고,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使用牌照稅法 §25).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통도구를 체납기간이 만료된 후에 公共水陸道路에서 사용하다가 수색 체포된 경우, 세금을 보충납부하는 외에 납부세액의 1배의 벌금에 처한다(使用牌照稅法 §28).

○ 牌照의 사용정지신고, 반납폐기(繳銷) 또는 말소(註銷)한 교통도구를 公共水陸道路에서 사용하다가 수색 체포된 경우, 세금을 보충납부하는 외에 납부세액의 2배의 벌금에 처한다(使用牌照稅法 §28).

○ 牌照를 수령하지 않은 교통도구를 새로 구입하여 公共水陸道路에서 사용하다가 수색 · 체포된 경우, 세금을 보충하는 외에 납부세액의 1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使用牌照稅法 §30).

○ 교통도구의 使用牌照를 轉買, 유용(移用)할 경우 납부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액이 新臺幣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用牌照稅法 § 31).

제5편 조세행정법제

1. 서론

조세입법의 방법에는 "綜合立法"과 "分稅立法"이 있다. 전자는 모든 조세를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각종 조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별개의 세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만은 소수의 세법(예를 들어 土地稅는 地價稅, 田賦, 土地增值稅 등 조세를 포함)에 관하여 전자의 입법체제를 채택하는 외에 대부분의 경우 주로 "分稅立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조세가 제정 또는 수정 시 그 사회적 배경이나 경제 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종 세목의 징수절차 · 처벌 등의 규정은 모두 상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되는 규정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감안하여 1976년 10월 22일에 "稅捐稽徵法"을 제정 · 공포하고, 각종 세법에 있어서 과세 시 모두 부딪치게 되는 일련의 공통적인 문제에 관하여 "稅捐稽徵法"에서 통일된 규정을 함으로써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稅捐稽徵法"(조세징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稅捐稽徵法"의 적용범위는 모든 법정의 國, 省(市) 및 縣(市)의 세목을 포함하고 다만 關稅와 鑛稅를 제외한다. 또한 "稅捐稽徵法施行細則"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말하는 조세(稅捐)라 함은 각종 세목에 관하여 법에 따라 징수(附徵) 또는 대리징수(代徵)하는 세금(捐)을 말한다." 조세에 대한 조사 및 징수(稽徵)는 모두 "稅捐稽徵法"의 규정에 따르고, "稅捐稽徵法"상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기타 각종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稅捐稽徵法 §1).

이 밖에 財政部가 "稅捐稽徵法" 또는 세법에 따라 공포한 "解釋函令"은 이를 근거로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할 경우 아직 확정과세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한다(稅捐稽徵法 §1-1).

본 編에서는 조세징수관리제도를 "稅捐稽徵法" 및 동 施行細則을 중심으로 정리

한다.

2. 조세우선권

"稅捐稽徵法" 제6조는 공권력을 보장하고 조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조세의 징수는 보통의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는 각종 조세를 납부한 후에 기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함을 의미하고, 또한 "土地增值稅, 地價稅, 房屋稅의 징수는 모든 채권 및 저당권에 우선한다. 法院 또는 行政執行署가 경매를 집행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인수(承受)하도록 한 토지와 관련하여, 執行法院 또는 行政執行署는 경매확정 또는 인수 5일 이내에 경매확정 또는 인수가액(承受價額)을 현지의 주관 기관에 통지하고 법에 따라 土地增值稅, 地價稅, 房屋稅를 부과하도록 하며, 執行法院 또는 行政執行署에서 대신 부과징수한다"(稅捐稽徵法 §6).

상술한 土地增值稅, 地價稅, 房屋稅의 징수우선 규정은 당해 토지 및 건축물에 부과해야 할 土地增值稅, 地價稅, 房屋稅를 그 범위로 한다(稅捐稽徵法 施行細則 §3).

3. 납세의무

가. 공유재산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관리인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공유인 각자의 소유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공유인일 경우는 전체 공동공유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稅捐稽徵法 §12).

나. 해산·청산

동업기업(合夥) 또는 비법인단체가 해산·청산 시, 청산인은 잔여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법에 따른 조세 납부 순서에 따라 조세를 우선 납부해야 한다. 청산인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납부 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稅捐稽徵法 §13).

다. 유산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그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조세는 유언집행인, 상속인, 유증인(受遺贈人) 또는 유산관리인이 법에 따라 조세 상환의 순서에 따라 조세를 납부한 후에 유산을 분할하거나 유증재산을 교부할 수 있다. 유언집행인, 상속인, 유증인 또는 유산관리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납부 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稅捐稽徵法 §14).

라. 영업합병

영리사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할 경우 합병 전에 납부해야 할 조세는 합병 후 존속 또는 별도 설립된 영리사업체가 납세의 의무를 진다(稅捐稽徵法 §5).

납세의무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Ⅰ-1〉 납세의무자

공유재산	분할공유(分別共有)	1. 관리인 2. 관리인이 없는 경우, 각 공유인
	公同共有	전체 공유인
해산·청산	해산 시의 청산인	1. 법인 2. 동업기업 3. 비법인단체
영업합병	합병 후 존속 또는 별도 설립한 영리사업체	
유산세	1. 유언집행인 2. 상속인 3. 수유증인 4. 유산관리인	

4. 조세의 보전과 재산의 담보

가. 조세의 보전

① 이전 또는 기타 권리 설정의 금지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은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이전 또는 기타 권리의 설정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자 또는 취소등기(注銷登記)의 제한

영리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주관 기관에 통지하여 감자 또는 취소 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압류(假扣押)의 실시

세금을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이전하는 등 조세의 집행을 회피하는 기미(跡象)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은 법원에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의 제공을 면제(免)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상당한 재산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출국 제한

대만 경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대만 경내의 영리사업자의 경우, 이미 확정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체납세액 및 확정된 벌금이 단독 또는 합계하여 개인은 新臺幣(NT$) 100만원 이상, 영리사업자는 新臺幣(NT$) 200만원 이상일 경우, 또한 행정구제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개인은 新臺幣(NT$) 150만원 이상, 영리사업자는 新臺幣(NT$) 300만원 이상인 경우, 財政部는 內政部 出入國 및 移民署에 서한으로 요청하여 그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이 상술한 제①항, 제②항 또는 제③항 전단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즉 이전 또는 기타 권리 설정의 금지, 감자 또는 취소등기의 제한, 가압류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財政部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內

政部 出入國 및 移民署에 출국제한을 서한으로 요청(函請)할 수 없다. 출국제한 기간은 內政部 出入國 및 移民署에서 출국을 제한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책임자가 출국제한을 받은 후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財政部는 內政部 出入國 및 移民署에 출국제한의 해제를 서한으로 요청해야 한다.

- 출국제한이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5년)을 초과하는 경우
- 체납세액 및 벌금 전액을 완납하거나 또는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에 체납세액 및 벌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
- 행정구제 및 처벌절차를 거친 후, 확정한 체납세액 및 벌금의 합계액이 제④항에서 규정한 출국제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 세금을 체납한 회사조직이 이미 합법적으로 해산·청산하였고, 잔여재산으로 체납세액 및 벌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체납세액자가 체납한 세액에 관하여 이미 "破産法" 규정상의 화해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분배를 완료한 경우(稅捐稽徵法 §24)

⑤ 사전징수(提前開徵)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은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법정 징수기일 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이전하는 등 조세의 집행을 회피하는 기미를 보일 경우
-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법정 징수기일 전에 출국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의 특수한 원인으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裁定 결과 기업구조조정(重整)을 진행하기 전에, 조세를 징수해야 함에도 아직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선고 또는 기업조정 裁定 시에 기한만료의 파산채권 또는 구조조정채권(重整債權)으로 본다(稅捐稽徵法 §24).

나. 재산의 담보

상술한 바와 같이,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은 세금탈루사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이전하는 등 집행의 회피를 발견할 시에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稅捐稽徵法 §24, 所得稅法 §110-1), 법정 징수개시일 이전에 징수할 수 있다(稅捐稽徵法 §25).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상당한 재산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취소 또는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所得稅法 §110-1).

상당한 재산의 담보란, 담보세액에 상당하는 다음의 담보물을 말한다.

- ○ 黃金은 90%로 계산. 중앙은행에서 교역하는 외환과 상장 유가증권은 80%로 계산한다.
- ○ 정부가 발행하고 공적담보(公務擔保)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公債는 액면가로 계산한다.
- ○ 은행예금은 예금액으로 계산한다.
- ○ 財政部의 허가를 거친 처분 및 보관이 용이하고 소유권 분쟁이 없는 기타의 재산

5. 징수절차(稽徵程序)

각종 조세의 징수절차는 [그림 5-Ⅰ-1]과 같다. 동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가. 납부통지서의 작성

납부통지문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세목, 세액, 세율, 납부기한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과세당국에서 작성하여 발급한다(稅捐稽徵法 §16).

납세의무자는 납부통지문서에 기재, 계산 착오 또는 중복 등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규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확인(查對) 및 更正을 요구할 수 있다(稅捐稽徵法 §17).

나. 송달

대만은 행정절차법상의 관련 규정을 일치되게 적용하고 간단한 세정 및 국민편의(簡政便民)라는 시정방침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송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 징수시작(開徵) 전의 송달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문서는 과세당국에서 동 문서에 기재된 부과징수 시작일자 전에 송달해야 한다(稅捐稽徵法 §18).

○ 기타 피송달인(應受送達人)

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발급한 각종 문서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 대표인, 經理人 또는 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가 군복무중일 경우, 그의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송달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복무 단위에 위탁하여 대리 송달해야 한다. 土地稅 또는 房屋稅의 징수와 관련된 각종 문서는 사용인을 피송달인으로 한다. 공동공유인 중의 한 사람에게 송달할 경우 그 효력은 전체에 미친다(稅捐稽徵法 §19).

〈그림 5-Ⅰ-1〉 징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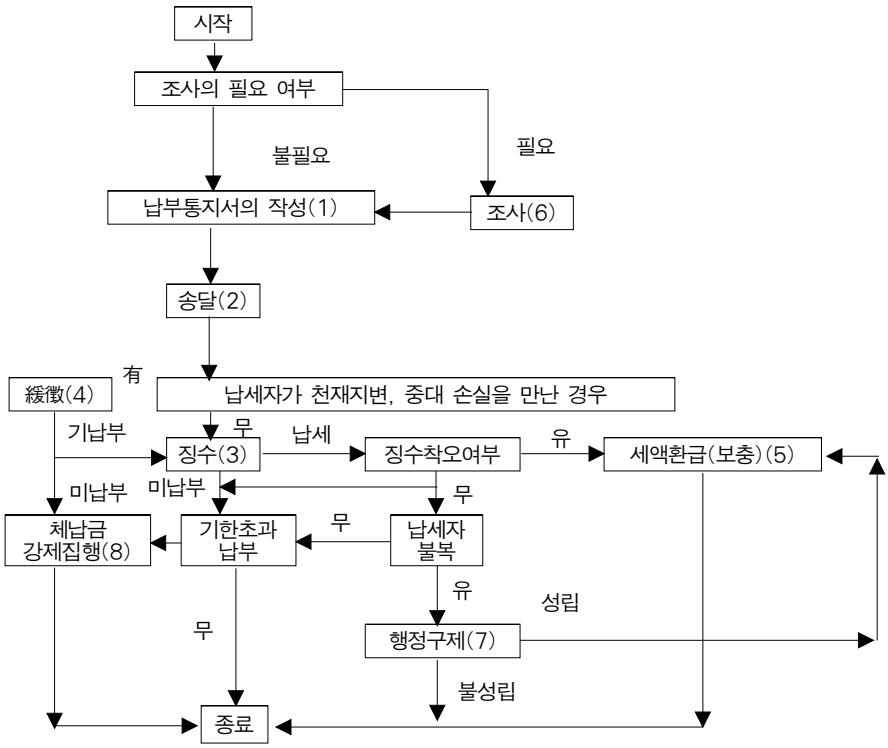

다. 조세(稅捐)의 징수

○ 체납금

납세의무자는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 체납금을 징수한다. 매 2일에 체납세액의 1%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내고,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稅捐稽徵法 §20)[23].

○ 확정과세기간(核課期間)과 추징시효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한은 확정과세권리(核課權利)와 징수권리(徵收權

23) 2001년 1월1일부터 법원에 속하는 세금체납사건을 각지의 "行政執行處"에 넘겨 집행한다.

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권리이고, 후자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확정과세기간이란, 정부가 확정과세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은 과세사실에 관하여 일정 기한 내에 서류를 발급하여 징수 또는 보충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당해 기한(즉 일정 시간 내에 과세당국이 서류를 발급하여 징수 또는 보충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경우)이 지난 후에는 확정과세(核課)의 권리가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탈루행위가 있을지라도 확정과세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당국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보충하거나 또는 벌금에 처하는 의무가 없게 된다.

추징시효란 정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 정부는 확정과세를 거쳐 확정된 세금(과세당국이 이미 납부서〈稅單〉를 발급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당국이 징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정부가 확정과세기간과 추징시효를 규정한 목적은 징납 쌍방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질서와 세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세무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의무자가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① 확정과세기간(核課期間)

조세의 확정과세기간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ㅁ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조세와 관련하여, 이미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였고 또한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고의로 조세를 탈루하지 않은 경우, 확정과세기간은 5년이다.
- ㅁ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印花稅 및 과세당국이 稅籍原帳(稅籍底册) 또는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과세하는 조세의 경우, 확정 과세기간은 5년이다. 과세당국이 稅籍原帳에 대한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과세하는 조세란 地價稅, 田賦, 房屋稅, 使用牌照稅 및 조사 확정(查定課徵)하여 징수하는 營業稅, 娛樂稅를 말한다(稅捐稽徵法 施行細則 §7).
- ㅁ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고

의로 조세를 탈루할 경우의 조세확정기간은 7년이다.

확정과세기간 내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조세를 발견했을 경우, 여전히 법에 따라 보충징수하거나 처벌을 가해야 하며, 확정과세기간 내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후에 세금을 추징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稅捐稽徵法 §21).

② 확정과세기간의 기산

확정과세기간의 기산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ㅁ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조세와 관련하여 이미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했을 경우, 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 ㅁ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조세와 관련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규정된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ㅁ 印花稅는 법에 의하여 印花稅票를 붙여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 ㅁ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에서 稅籍原帳 또는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정 징수하는 조세는 당해 조세가 소속되는 징수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稅捐稽徵法 §22).

③ 추징시효(徵收期間)

조세의 징수기간이 5년일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기산하고, 징수해야 할 조세를 징수기간에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징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이송 집행하거나 또는 "强制執行法"의 규정에 따라 분배에 참여함을 성명하거나, 또는 "破産法"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후 아직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징수해야 할 조세는 "稅捐稽徵法" 제10조,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전항의 징수시간은 당해 변경납부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39조의 이송집행 잠정연기(暫緩移送執行)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조세집행 정지의 경우, 제1항의 징수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집행잠정연기(暫緩執行) 또는 정지집행의 기간을 공제해야 한다.

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송 집행하였을 경우, 징수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5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5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집행을 시작하였다면 계속하여 집행하며, 다만 5년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 집행종료하지 못할 경우는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2007년 3월 5일 동 법 개정 전에 이미 이송집행한 후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건은, 수정일로부터 5년을 지나도 집행종료가 안 된 경우는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稅捐稽徵法 §23).

라. 기간완화징수(緩徵), 연기 또는 분할납부(分期繳納)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세의 징수기간을 놓친 경우, 관할 과세당국은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공고한다(稅捐稽徵法 §10).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산손실로 인하여 법정 기간 내에 조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규정된 납세기간 내에 과세당국에 연기 또는 분할납부신청을 해야 한다.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 기간 내에는 별도로 체납금과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받은 모든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당해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잔여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발급(發單)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일시적으로 완납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에 처한다(稅捐稽徵法 §26, §27).

마. 법령적용착오 또는 계산착오로 인한 세금 과납(溢繳) 시의 처리 및 환급(退稅)

납세의무자가 법령적용착오 또는 계산착오로 인하여 세금을 과납하였을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稅捐稽徵法 §24, §28, §11-1). 또한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우선 체납세액을 충당(抵繳)하고 공제(扣除)를 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稅捐稽徵法 § 29). 과세당국은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충당해야 한다.

① 동일 세목의 체납세액
② 동일 세목 체납세액의 체납금, 연체신고금(滯報金), 태만신고금(怠報金), 이자 및 벌금
③ 동급 정부의 기타 세목의 체납세액
④ 동급 정부 기타 세목 체납세액의 체납금, 연체신고금, 태만신고금, 이자 및 벌금
⑤ 기타 각종 세목의 체납세액 및 그 체납금, 연체신고금, 태만신고금, 이자 및 벌금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이 납부기한을 초과하였고, "稅捐稽徵法"상 규정된 재조사(復查) 신청 기간 내에도 재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까지 확실히 재조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다시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의 체납세액 충당(抵欠)을 처리해야 한다.

6. 조사, 수사, 비밀유지 및 납세자 성명의 公告

가. 조사

과세당국 또는 財政部 賦稅署가 지정한 조사인원은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사무처(辦公處)에 와서 조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고 피조사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조사자는 조사인원의 조사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조사인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상급 주관 기관에 적당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및 기타 관계인이 장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관할 과세당국 또는 財政部 賦稅署는 수령증(收據)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률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자를 제외하고 장부, 증명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모두 반환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당국 또는 賦稅署 首長의 비준을 거친 후 반환일을 7일 연장할 수 있다(稅捐稽徵法 §30).

나. 수사

과세당국은 소득세 및 영업세를 탈루함으로써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현지 사법기관에 搜索票(수색영장)의 발급을 요청하여 현지 경찰 또는 자치인원과 함께 장부, 문서 또는 증거물을 둔 곳에 진입하여 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사 시에는 상술한 기관의 인원 이외의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수사를 통하여 관련 장부, 문서 또는 증거물을 취득하였을 경우 참가한 수사인원 모두와 함께 해당 과세당국에 가져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과세당국의 상술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搜索票를 발급해야 한다. 징수시관은 搜索票를 발급한 후 10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고 搜索票를 사법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기타 수색 및 압류(扣押)와 관련된 사항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稅捐稽徵法 §31).

다. 비밀유지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재산, 소득, 영업 및 납세 등의 자료에 대하여 다음 인원 및 기관 이외에 모두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하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분을 가해야 한다. 형법에 저촉될 경우는 법원에 이송하여 죄를 물어야 한다.

○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
○ 납세의무자의 授權代理人 또는 변호인
○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
○ 감찰기관
○ 관련 세무 소원, 소송의 수리 기관
○ 법에 따라 세무조사사건에 종사하는 기관
○ 財政部의 확정을 거친 기관과 인원
○ 채권자가 이미 민사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 또는 기타의 집행명의자

과세당국은 기타 정부기관에 통계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로서,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누설하지 않을 경우 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稅捐稽徵法 §33).

라. 납세자 성명의 공고

財政部 또는 그가 지정한 과세당국은 중대한 세금체납사건 또는 중대한 세금탈루사건에 대하여 확정을 거친 후 세금체납자 또는 세금탈루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내용을 공고할 수 있고 이는 상술한 비밀유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財政部 또는 그가 지정한 과세당국은 납세액이 비교적 높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거친 후 성명이나 명칭을 공고하고 이를 장려할 수 있다. 장려방법은 財政部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상술한 確定이란 다음 각종 상황을 말한다.

○ 과세당국의 확정을 거친 사건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라 재조사(復查)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재조사 결정 후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訴願의 결정을 받은 후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라 再訴願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再訴願 결정을 받은 후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행정소송 판결을 받은 경우(稅捐稽徵法 §34)

7. 납세자권리의 보호

2010년 1월에는 稅捐稽徵法을 개정해서 제1장의 1을 신설해서 납세자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정부는 稅捐稽徵法 또는 관련 세법 · 명령 · 행정규칙에 의해서 납세의무자의 법정 납세의무를 증가시키거나 감면시킬 수 없다.

② 특정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우대정책은 시행 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러한 조세우대정책은 조세지출예산(稅式支出)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稅捐稽徵法 §11의 4)

③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 또는 財政部 賦稅署에서 지정한 조사인원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조사가 미칠 영향 또는 조사목적을 통지하는 외에, 반드시 서면으로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사유 및 범위를 통지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면, 대리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稅捐稽徵法 § 11의 5).

④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자백, 더구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또는 처벌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稅捐稽徵法 §11의 6).

⑤ 과세당국(稅捐稽徵機關)은 적절한 장소를 설치하여, 陳情을 경청하거나 납세의무자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稅捐稽徵法 §11의 7).

8. 행정구제

가. 재조사(復查)

납세의무자는 조세 확정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 시 규정된 격식에 따라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세액확정통지서(核定稅額通知書)에 납부세액 또는 보충징수해야 할 세액의 기재가 있는 경우, 납부통지서(繳款書)를 송달받은 후 납부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세액확정통지서에 납부세액 또는 보충징수해야 할 세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세액확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조사 신청기간을 지체했을 경우 해당 원인이 소멸된 후의 1개월 이내에 구체 증명을 제출하여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기간 신청의 지체가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전항의 원상회복의 신청에 있어서 재조사 신청기간 내에 진행해야 할 행위도 동시에 보충 행사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관련 재조사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재조사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작성하며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징수시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稅捐稽徵法 §35).

나. 訴願 및 行政訴訟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의 재조사 결정에 불복 시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稅捐稽徵法 §38). 지방세에 있어서 각 관할지역 稅捐徵收處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縣(市) 정부(直轄市정부)에 訴願을 제기할 수 있고, 국세에 있어서 國稅局의 처분에 불복 시 財政部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소원의 제기는 행정처분을 송달받거나 또는 공고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소원인은 소원서를 본래의 행정처분기관을 통하여 訴願 관할기관에 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원행정처분기관은 전항의 소願에 대하여 우선 원처분이 합법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한 후 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원 행정처분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여 관할 기관에 소원을 보고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소원을 제기한 후 그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소원을 제기한 후 3개월이 지나서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高等行政法院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高等行政法院의 최종판결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最高行政法院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구제기한의 계산은 도중의 기간을 공제해야 한다. 內地稅의 행정구제 수리기관 및 처리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Ⅰ-2〉 內地稅의 행정구제 수리기관 및 기한

항목	재조사(復査)	訴願	행정소송: 1심	행정소송 : 항소심
국세	각 관할구의 국세국	財政部	高等行政法院	最高行政法院
지방세	直轄市 稅捐稽徵處 각 縣市 稅捐稽徵處	直轄市 정부 각 縣市 정부	高等行政法院	最高行政法院
신청 기한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조사결정서(復查決定書)를 받은 후 30일 이내	訴願決定書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高等行政法院의 判決書를 받은 후 20일 이내
결정 기한	2개월, 필요 시 2개월 연장 가능	3개월, 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	3개월,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3개월,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9. 행정구제 후의 환급, 보충 세액의 처리

재조사(復查), 소원 또는 행정소송 등 절차를 거친 후의 최종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액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재조사결정(復查決定), 소원결정서를, 또는 행정법원의 판결서 정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수입환급서(收入退還書) 또는 국고수표(國庫支票)를 발급한 날까지 환급세액에 따라 세액납부일의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 예금이자율에 따라 일별로 이자를 가산하여 함께 환급해야 한다.

재조사, 소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친 후의 최종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재조사결정, 소원결정서 또는 행정법원의 판결서 정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세액보충납부통지서(補繳稅款繳納通知書)를 작성 발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해 보충납부세액을 본래 납부해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로부터 보충세액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까지 보충납부세액에

따라, 본래 세액납부기한 만료일의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일별로 이자를 가산하여 함께 징수해야 한다(稅捐稽徵法 §38).

10. 재조사(復査)와 更正의 구별

납세의무자는 납부통지문서에 기재 · 계산의 착오 또는 중복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규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확인 및 경정을 요구할 수 있다(稅捐稽徵法 §17). 이는 상술한 행정구제 상의 재조사와 다르며,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적용상황의 차이

재조사는 徵納 쌍방이 과세의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거나 또는 인용한 법조문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경정은 기재 · 계산의 착오 또는 중복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 행사기한의 차이

재조사는 납부기한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세액확정통지서를 송달한 후의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신청해야 하고, 경정은 납세기간 내에 행해야 한다.

11. 강제집행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만료 후의 30일 이내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법원에로 강제집행 이송을 잠정연기(暫緩)한다.

잠정연기하여 집행하는 사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당국에서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 납세의무자가 재조사에서 결정한 납부세액을 절반 납부하고 법에 따라 소원을 제기한 경우

○ 납세의무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절반의 세액을 납부함에 확실히 곤란할 경우

과세당국(稽徵機關)의 비준을 거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稅捐稽徵法 §39)

12. 세금의 자동보충(自動補稅) 시 이자 가산 및 처벌 면제

정부는 세금을 탈루한 납세의무자가 조사에서 발견되기 전에 자수하고 자동으로(자진해서) 보충 신고 및 탈루세액을 보충 납부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稅捐稽徵法 제48조의 1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탈루세액을 보충신고 및 보충납부할 경우 검거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과세당국 또는 財政部가 지정한 조사인원이 조사를 진행한 사건이 아니라면 각 세법상 규정한 세금의 누락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처벌을 모두 면제한다. 다만 보충납부하는 당해 조세의 본래의 납부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보충납부일까지 보충납부세액에 대하여 본래의 세액납부기한 만료일의 郵政貯金匯業局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일별 이자를 가산하여 함께 징수한다.

13. 경과(情節)가 경미할 경우 처벌의 면제

처벌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납세의무자가 조세법령의 규정을 모르거나 또는 일시적 소홀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稅捐稽徵法" 제48-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稅捐稽徵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완화해야 할 행위에 있어서 그 경과(情節)가 경미하거나 또는 탈루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는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경과(情節)의 경미, 금액 및 감면의 기준에 관해서는 "稅務違章案件減免處罰標準"의 규정을 참조한다.

14. 처벌

세법은 세금의 탈루 및 증빙의 미발급, 미취득 또는 미보존이나 장부 미비치, 조사거부 등 행위에 대하여 모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의 탈루(逃漏稅)

○ 납세의무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有期徒刑), 구속(拘役) 또는 新台幣(NT$) 6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稅捐稽徵法 §41).

○ 대리징수인(代徵人) 또는 원천징수의무자(扣繳義務人)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실정대로 신고하지 않거나(匿報) 또는 과소신고(短報), 과소징수(短徵) 또는 대리징수, 원천징수(代徵 또는 扣繳)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속(拘役) 또는 新台幣(NT$) 6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 또는 단독으로 처한다. 대리징수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대리징수하거나 원천징수한 조세를 횡령할 경우도 마찬가지다(稅捐稽徵法 §42).

○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속 또는 新台幣(NT$)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무인원, 업무를 집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대리인이 전항의 죄를 범할 경우 그 형벌에 1/2을 가중한다. 세무징수인원이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법에 저촉되어 법에 의해 이송, 처벌하는 외에 新台幣(NT$)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罰鍰)에 처한다(稅捐稽徵法 §43).

동법상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리징수인에 대한 징역(徒刑)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자에게 적용된다.

○ 회사법상 규정한 회사의 책임자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상 규정한 대외로 법인을 대표하는 董事 또는 理事

○ "商業登記法"상 규정한 상업책임자

○ 기타 非法人團體의 대표인 또는 관리인

나. 증빙의 미발급, 미취득 또는 미보존

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증빙 및 타인에게 발급한 증빙의 부본

(存根) 또는 사본(副本)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稅捐稽徵法 §11). 영리사업에 있어서 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증빙을 발급해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거나, 타인으로부터 증빙을 취득해야 함에도 취득하지 않고, 또는 보존해야 함에도 보존하지 않을 경우 증빙의 미발급, 미취득 또는 미보존에 관하여 조사 결과 인정한 총액의 5%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관리사업에 있어서 비실제 교역대상이 발급한 증빙을 취득할 경우 조사 결과 재화의 매입사실 및 당해 증빙이 확실하게 실제 재화 판매의 영리사업상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고, 실제 재화를 판매한 영리사업이 이미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한다(稅捐稽徵法 §44).

다. 장부 미비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않을 경우 新台幣(NT$) 3,000원 이상 7,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만료일까지 여전히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기재하지 않을 경우 新台幣(NT$) 7,5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시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기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만료일까지 여전히 설치 또는 기재하지 않을 경우 휴업(停業)처분을 가하며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또는 기재할 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復業).

규정에 따라 檢印(驗印)해야 할 장부와 관련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주관 과세당국에 檢印(驗印)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보완을 통지함과 동시에 新台幣(NT$) 1,5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여전히 보완하지 않을 경우는 보충처리할 때까지 연속하여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장부를 보존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를 영업장소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新台幣(NT$) 15,000원 이상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稅捐稽徵法 §45).

라. 조사의 거부

과세당국 또는 財政部 賦稅署가 지정한 조사인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관련 과세자료 · 문서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新台幣(NT$) 3,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稽徵機關) 또는 財政部 賦稅署가 지정한 조사인원의 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到達備詢) 하나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수임을 받은 합법적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新台幣(NT$)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稅捐稽徵法 §46).

참고문헌

한국문헌

韓相國, 『臺灣의 財政과 租稅制度』, 韓國租稅硏究院, 서울, 1995. 12.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10. 7. 6(제300호).

대만문헌

黃淑惠著, 『租稅法規理論與實務』, 新陸書局股分有限公司, 台北, 2008. 9.

陳志愷 著, 『稅務法規』, 智勝文化事業有限公司, 台北, 2008. 2.

顏靜滿編著, 『稅務法規與稽徵實務』, 華立圖書股分有限公司, 台北, 2008. 9.

財政部賦稅署編印, 『中華民國 97年度 中華民國賦稅年報』, 台北, 2009. 9.

財政部統計處賦編印, 『中華民國 97年度 財政統計年報』, 台北, 2009. 8.

林進富, 『租稅法新論』, 三民書局, 台北, 2007. 4.

劉淸景主編, 『財政法規』, 學知出版社, 台北, 2007. 7.

인터넷

國家政策硏究基金會 http://www.npf.org.tw/department/monetary

財政部 http://www.mof.gov.tw/

財政部稅務入口網 http://invoice.etax.nat.gov.tw/

財政部稅制委員會 http://www.ttc.gov.tw/

全國法規資料庫 http://law.moj.gov.tw/

臺北國稅局 http://www.ntat.gov.tw/

臺灣法律網 http://www.lawtw.com/

行政院全球資訊網 http://www.ey.gov.tw/

주요국의 조세제도

- 대만편 -

2011년 4월 22일 인쇄
2011년 4월 30일 발행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 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1
ISBN 978-89-8191-508-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2,000원